ISSN : 1975-390X

獨島硏究

제13호 2012. 12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차 례

기획특집: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상호소통과 이해

동아시아의 갈등과 화해: 유럽의 관점 ▌B.C.A. Walraven ····· 7

환동해 문화권 설정과 한 · 일간의 교류 ▌김화경 ····· 29

영토 문제 넘어서기: '독도 문제' 해법 시론 ▌현대송 ····· 59

공통의 토대에서 논의하는 독도/죽도 논쟁 ▌池內 敏 ····· 99

안용복사건 이후의 독도 영유권 문제 ▌박병섭 ····· 135

쿠릴열도를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간의 영토분쟁 ▌Bella B. Pak ····· 167

일본의 댜오위다오 '국유화'에 대한 중국의 인식 및 대응 ▌尹虎 ····· 219

일반논문

우리나라 2011년도 언론분야 독도 주제 연구의 '현황과 과제'
▌김신호 ····· 247

SCAPIN 제677호에 관한 한국정부의 견해 검토 ▌김명기 ····· 277

독도자료

『오키도지(隱岐島誌)』의 「제3편 죽도(竹島)」 ▌송휘영 ····· 305

서 평

영원한 독도인 최종덕 ▌김수희 ····· 329

논문투고규정 ····· 339

『독도연구』 간행 및 심사 규정 ····· 343

『獨島硏究』 연구윤리 규정 ····· 345

기획특집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상호소통과 이해

동아시아의 갈등과 화해:
유럽의 관점

B.C.A. Walraven*

〈목 차〉

1. 머리말
2. 유럽의 갈등
3. 유럽연합을 향한 긴 여정
4. 동아시아공동체(An East-Asian Union)?
5. 맺음말

〈국문초록〉

나는 동아시아 갈등과 화해를 위해 유럽 연합(EU)의 예로부터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첫째, 유럽의 역사적 사례는 진정으로 비전을 가진 지도자들,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능력과 무언가를 점차적으로 만들어내는 인내력을 가진 지도자들이 인간성에 대한 가장 흉악한 범죄에 의해 야기된 분노와 적대감의 장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런 방식으로 지속적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를 창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둘째, 동아시아는 유럽의 경로를 따라가선 안 된다. 유럽에선 1차 세계대전의 공포가 사람들로 하여금 초국가적 연방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는데 충분했지만, 그런 이상을 현실화하는 데는 충분하지 못했다. 현재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갈등은 엄청난 감정을 야기했다. 그러나 이런 갈등의 해결은 화해의 정신 속에 나타나야 하고, 순수한 민족적 관심을 초월하는 계획을 구상할 의지를 필요로 한다.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이것을 환기시킬 또 다른 재앙적 전쟁이 일어나선 안 될 것이다.

주제어: 동아시아, 유럽 연합, 갈등, 화해, 독도, 동아시아공동체

*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석좌교수, 라이덴대학 명예교수

1. 머리말

올 여름과 가을의 사건들은 동아시아국가들간의 상호이해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용의주도하게 준비된 것처럼 보인다. 이 학술회의의 주최 측과 참가자들은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그동안 벌어진 사건들을 확실하게 추적할 것이다. 그러나 신문을 읽거나 TV를 시청하는 어떤 시민도 중국과 일본, 한국과 일본간의 영토적 분쟁에 대해 열정적인 분노를 표출할 것이다.

두 가지 사실이 이 모든 현상에서 나타난다.

첫째, 비록 전쟁의 경험과 그것이 남긴 미해결 쟁점들이 중요한 적대요인이 되긴 하지만,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서로 갈등했던 국가들간에만 긴장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동아시아 국가들간의 가능한 모든 조합에서도 영토적 쟁점들에 대한 긴장이 존재한다.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도 이런 영토적 갈등에 개입되어 있다.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은 단지 국가간 갈등이 아니라 정부간 갈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여러 가지 경우에서 대중은 민족주의적 감정에서 이런 분쟁에 개입한다. 이것은 센카쿠 또는 댜오위다오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항한 중국인들의 항의에서 가장 극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한국 대중들의 분노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폭력적 행동은 사회적으로 전이된 식민지 약탈과 전쟁범죄들에 대한 기억들에 의해 더욱 가열된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그런 예들이 존재하는 영토적 갈등에 대한 분노는 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일본이 저질렀던 종군 위안부 문제의 부정 또는 무시 등과 같은 행위에 대한 증오에 의해 더욱 악화된다. 항의의 논조는 때때로 폭력적이고 호전적이다. 몇 년 전에 내가 목격했는데, 서울의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항의하는 퇴역 한국 해병대원들은 “미친 개한테는 몽둥이가 약이다”라고 쓰여진 플랜카드와 커다란 일본 천황과 수상의 검은 줄이 쳐진 장례식장 초상화를 들고, 큰 소

리로 전쟁까지 치르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동아시아 국가들간의 협력을 기대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일까? 나는 유럽 역사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고려해보라고 당신들에게 권합니다.

2. 유럽의 갈등

유럽에서 군사적 갈등이 많았다는 사실을 다들 알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자주 벌어졌는지는 잘 알지 못할 것이다. 내가 성장한 네덜란드의 예를 들면, 수세기에 걸쳐 네덜란드는 스페인, 프랑스, 독일, 영국, 스웨덴, 오스트리아, 벨기에, 인도네시아 등과 전쟁을 벌렸다. 수세기 동안 영국은 해양패권을 놓고 네덜란드와 경쟁한 최대의 적이었다. 프랑스는 자주 네덜란드의 적대국이 되었다. 나폴레옹 통치기에는 프랑스에 병합되기도 했다. 20세기 1차 세계대전 때, 근대적 무기로 무장한 군인들간의 전투는 전례 없는 공포의 형태를 띠었다. 1916년 4-5개월 진행된 솜므전투는 백만명 이상의 사상자(사망, 부상, 실종)를 냈고, 영국은 첫날 단 하루만에 6만명을 잃었다. 비록 초기에 '대전쟁(the Great War)'이라 불린 1차 대전이 천 6백만 명(민간인 포함) 이상의 희생자를 냈지만, 6천만명 이상의 추정 사망자를 낸 2차 대전에 비하면 약과였다. 물론 이것은 유럽만의 수치가 아니지만, 유럽에서 러시아만 해도 2천만 명의 사망자를 냈다. 곳곳에서의 고통은 헤아릴 수 없었다. 전쟁의 가장 끔찍한 측면은 지금은 '홀로코스트'라 일컬어지는 동, 서 유럽 유태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산업화된 제거였다.

전반적으로 유럽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내고, 많은 측면에서 가장 잔인한 전쟁의 최고조까지 다다른 수세기에 걸친 경쟁과 군사적 갈등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국가간 형제애의

창설을 위한 좋은 기반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비록 다양한 형태의 적대감, 혐오, 상호 선입견 등이 계속 존속함에도, 유럽에서는 유럽연합(EU)을 향한 상당한 진보가 이루어져 왔다. 전쟁의 기억에 의한 폭발적 문제들을 고려하면, 이것은 독일의 경제적 부흥인 “라인강의 기적”이나 한국의 경제적 발전인 “한강의 기적” 못지않게 “기적”이라 불릴 수 있다. 현재의 여러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EU)을 경제적 기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2011년 EU 전체의 경제적 총생산량, 즉 구매력 기준 GDP는 미국 및 중국을 능가하여 세계 1위로 추정되었다. 이것은 편향적인 유럽 측 계산이 아니라, 미 CIA의 계산임을 밝혀둔다.

3. 유럽연합을 향한 긴 여정

어떤 측면에서 사람들이 유럽 국가들간의 연방이나 통일에 대한 생각을 고려하기 시작한 것은 전쟁의 파괴적 약탈행위 때문이다. 이미 1차대전 이후 근대적 전쟁의 야만성에 충격을 받고, 투쟁보다는 협력을 주창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독일의 전 수상이자 당시 외무장관이던 슈트레제만(Gustav Stresemann, 1878-1929)의 지원을 받은 프랑스의 수상 브리앙(Aristide Briand, 1862-1932)은 1929년 각국은 독립적인 주권국가로 남지만 통상(관세와 같은)에 대한 장애를 제거하고 집단적인 시스템을 채택하는 유럽국가들간의 연방 계획을 발족했다. 그러나 이 모든 생각들은 한참 후에야 현실화되었다. 1930년대 히틀러의 부상은 독-불간 화해의 지속적 대화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독-불간 관계는 유럽협력기구 건설의 핵심이었고 현재도 그렇다. 따라서 얼마 동안 어떤 진보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생각은 잊혀지지 않고, 2차 대전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독일은 자신도 모르게 점령국의 유명한 지식인들을 구속함으로써 이것을 더욱 촉진했다. 그들 중 일부는 자신의 국가들에서 무장

레지스탕스가 독일인을 죽일 때마다 총살될 예정이었다. 그들은 함께 투옥되었고, 거기서 전쟁이 끝난 후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또 다른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오랫동안 토론했다. 이런 지식인들 중 한 명이 네덜란드인 콘슈탐(Max Kohnstamm, 1914-2010)이었다. 그는 유럽연합 건설자 중 한 명이었고, 프랑스인 모네(Jean Monnet, 1888-1979)와 긴밀하게 함께 일했다. 모네는 일반적으로 유럽연합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꼽힌다. 그는 정말 예외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미국 스스로가 전쟁에 개입하기 전에 미국의 영국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무진 애를 썼고, 미국의 연합군측 참전 확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유명한 경제학자인 케인즈의 추정에 의하면 그는 혼자의 힘으로 2차 대전의 기간을 1년 단축시켰다. 그는 프랑스 망명정부의 일원이 되었고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이고 많은 다른 문제들이 그의 관심을 요구할 때인 1943년 장래를 내다보는 다음과 같은 연설을 했다:

> "만약 국가들이 국가적 주권에 기초하여 재건될 경우, 유럽에는 평화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유럽의 국가들은 자신의 국민들에게 필요한 번영과 사회적 발전을 보장하기에는 너무나 작다. 유럽 국가들은 스스로 연방을 형성해야 한다."

전쟁이 끝난 1946년, 처칠(Winston Churchill)은 "유럽합중국(United States of Europe)"을 주장하며 이런 생각을 반영했다. 그러나 영국은 유럽연합 창설의 초기단계에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 최초로 협력기구인 유럽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를 만든 6개국은 프랑스, 독일, 이태리, 베네룩스 3국이었다. 특히 독일이 포함된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그것은 실질적 측면의 반영이었다. 즉 프랑스는 독일의 석탄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좀 더 이상주의적 마음가짐에 의해 동기부여 되었던 것이다. 전후 콘슈탐이 독일을 방문했을 때, 그는 거기서 그가 목격한 끔찍한 가난과 파괴가 부분적으로는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결과들이 장기적으로 독일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럽인들에게도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외면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여기서도 1차대전의 결과가 중요한 교훈을 제공해주었다. 비록 2차대전에서 그들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행위들에 대해 독일인들은 유죄였지만, 1919년 베르사이유 강화조약을 통해 전승국들은 독일인에게 가혹하고 보복적인 레짐을 부과했다. 이것이 야기한 반감은 히틀러의 부상에 유리하게 작용했고, 히틀러는 베르사이유 조약을 반대하며 독일을 민족주의로 이끌었다. 베르사이유 회담에 참여했던 케인즈는 독일에 부과된 전쟁배상금의 파괴적 효과에 대해 경고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2차 대전 이후 다행히 좀 더 계몽적인 사상들이 우세했고, (서)독일을 번영하는 민주국가의 대열로 끌어들이는 긍정적 노력들이 이루어졌다.

그런저런 정도로 보일지 모르지만 1951년 창설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는 경제적 질서 이상으로 적절한 시기에 발생한 지속적 발전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의도되었다. 첫째, 1957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최초 창립 6개국은 훨씬 더 폭넓은 과제를 안고 유럽경제공동체(EEC)를 창설했다. 유럽경제공동체는 공동농업정책을 개발하여 회원국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했다. 농업정책의 핵심 입안자는 네덜란드인 만숄트(Sicco Mansholt)였다. 그는 전쟁의 마지막 해에 네덜란드 서부지역의 기근과 전쟁 직후 식량의 심각한 부족에 충격을 받았다. 당시 배급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영양을 보장해야만 했다.

1960년대 나머지 국가들이 EEC에 가입하기 시작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영국이 1967년 가입했다. 1992년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창설은 이정표가 되었다. EU는 공식적으로 경제분야를 넘어 활동영역을 넓혔다. 1992년 조인된 마스트리히트조약(Treaty of Maastricht) 이래, 회원국이 꾸준히 증가하여 이제 27개 회원국이 되었고, 더 많은 국가들이 가입을 기다리고 있다.

최근의 유럽의 경제위기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유로화나 유럽통합기

구들이 정말 좋은 것인지 어떤지 회의하게 만들었다. 의심할 여지없이 어떤 것들은 좀 더 좋게 만들었어야 했다. 공동 통화는 회원국이 유로존으로 진입하기 전에 개별 회원국에게 가능한 방식으로 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자리 잡기 전에 도입되어선 안 되었다. 그러나 유로화와 EU 비판론자들은 때때로 왜 유럽통합이 처음에 하나의 이상(an ideal)으로 보였는지 망각하는 경향이 있다. 두 차례의 세계전쟁의 공포가 다시는 반복되어선 안 된다는 확신이 널리 공유되었던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EU는 완전한 성공이었다. 확실하게 개별 회원국들간에 긴장과 갈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재앙적 결정으로 이끌지는 않는다. 상호 우호적인 벨기에와 네덜란드 같은 국가들조차도 몇몇 사람들의 열정적 감정을 자극하는 갈등적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최근 다시 한 번 서로 서로에게 전쟁 아닌 전쟁을 선포하는 유럽국가들의 생각은 어리석게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구유고연방의 일부였고, 상호 적대적 역사를 가지고 있던 세르비아, 보스니아, 몬테니그로가 EU에 막 가입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의미 있는 일이다.

4. 동아시아공동체(An East-Asian Union)?

나도 즉각적으로 인정하지만 동아시아의 국가들이 유럽의 사례를 따라 동아시아 연합(East-Asian Union)을 창설하는 것은 아주 어려울 것이다. 반면,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형성 역사는 회의론자들에게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일지라도 실현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신시켜준다. 수백만 가지의 불행을 생각해 보라.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 희생자들의 유령 행렬, 수천 만명의 사람, 남자, 여자, 어린이들, 나치 유태인 학살 캠프의 말할 수 없는 공포, 민간인에 대한 무자비한 폭격, 폭력적 세기의 잔인함과 배신, 광범위한 기아와 가난. 그리고 또 생각해 보라. 이 모든 것에 의해 야기된

증오와 분노. 역설적이게도, 미래를 내다 본 남녀들이 적을 향한 증오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통합에 대한 비전을 고민하고, 그런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힘을 쏟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모든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서가 아니라 그런 역사적 사실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콘슈탐 같은 사람은 나치에 의해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레지스탕스의 저항에 대한 보복으로 매일 처형의 위협을 받는 인질이었다. 만숄트는 활동적인 지하 레지스탕스 그룹의 사령관이었다. 그들은 독일인을 증오할 충분한 개인적 이유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도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현재 동아시아의 상황을 보면, 실재 많은 긍정적 신호들이 있다. 동아시아의 국가들은 1980년대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서로 활발하게 교역을 하고 있다. "공산 중국(Red China)"과 완전히 격리되었던 한국은 외교관계 수립 이후 중국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가 되었다. 일본과의 경제적 관계도 항상 중요했다. 심지어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개성산업공단에서 보는 것과 같이 상호호혜의 개념에 기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 본토는 대만해협을 건너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상호 방문할 정도로 타이완과 아주 느슨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동아시아 국가들간에는 사업가뿐만 아니라 학자, 예술가, 학생, 그리고 적지 않은 관광객 등 상당한 인적 이동(교류)가 있다. 그 결과 외국인을 혐오하는 민족주의의 일방적 측면들은 점차 과거의 것이 되어간다.

동아시아의 국가들도 민족주의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유럽에서 EU를 향한 그리고 그와 더불어 지속적 평화에 대한 확고한 조치는 애국주의(patriotism) 혹은 민족주의(nationalism)와 같은 개념의 재평가 없이는 불가능했었다. 이런 개념들은 이전에는 대부분 의심할 여지없이 긍정적 관점에서 보여졌다. 20세기의 비극적 사건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좀 더 배타적인 형태의 민족주의, 즉 자신의 국가만 특별히 중요하고 다른 국가들 보다 더 가치 있다고 보는 그런 민족주의는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 과거 네덜란드 국가로 사용되던 노래는 이것을 잘 보여준다. 그것은 명백하게 인종주의적인 구절을 포함하고 있다. "외국인의 피로 오염되지 않은 네덜란드인의 혈관(Dutch veins by foreign blood untainted)" 민족주의의 위험성은 내가 속한 전후 세대에 강하게 느껴졌었다. 나는 고백한다. 1970년대 내가 처음 한국에 와, 민족에 대한 한국인의 생각에 직면했을 때, 유럽적 경험에 의해 형성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나를 아주 불편하게 했다. 그때 이래로 나는 점차 동아시아의 민족주의가 민족적 독립과 단결을 촉진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한국 민족주의의 부정적 측면만 보는 서구 동료들의 공격에 대항하여 민족주의적 한국 역사학(nationalistic Korean historiography)을 방어하기도 했다. 한국은 두말 할 필요도 없이 동아시아의 특수한 환경 때문에, 19세기 근대 유럽의 민족국가가 형성되기 시작한 유럽에서보다 더 많이 민족주의를 필요로 했다. 그러나 현재 만약 민족주의가 자극되지 않고 그 역할이 축소된다면, 나는 그것이 동아시아의 평화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이런 관점에서, 대중들 사이에 민족주의적 감정을 자극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특정 문제들을 바라보는 방식에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중요하다. 타 민족의 민족주의가 매력적이지 못한 것은 명백한 진리이다. 국제적 청중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들은 폭력까지 동반된다면 아주 불쾌한 것이 되어 버린다. 일본의 댜오위다오 영유권 주장에 반대하여 중국내에서 벌어진 폭력적 반일 시위는 국제적 관점에서 그런 주장을 강화시켜주기 보다 오히려 더 손해를 끼친다. 독도 문제를 대중들에게 더 각인시키려는 한국의 노력은 훨씬 더 순수하다. 그러나 이것과 관련하여서도, 나는 조심하라는 조언을 제시하고 싶다. 최근 외국의 언론인들이 독도로 초대되었다. 나는 이것에 대한 BBC리포트를 보고, 그것에 근거하여 서구에서 이것을 본 어느 누구도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확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기껏해

야 시청자들은 더욱 혼란에 빠질 것이다. 아마 태극기를 흔들며 독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중년여인들에 의해 약간은 즐거웠을지 모른다. 최악의 것은, 시청자들은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죽겠다고 선언한 한 경찰관의 웅변에 화가 났을지도 모른다. 민족주의적 선언이 더 귀에 거슬리면 거슬릴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인의 주장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의심할지 모른다. 나는 다시 한번 더 확신을 줄 수 있다. 개인적으로 나는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사실에 대해 어떤 의심도 가지고 있지 않다. 1905년이 일본의 주장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일본의 주장이 일본 제국주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보여준다. 그러나 독도를 한국 땅으로 보존하려는 방법들은 냉철하게 점검되어야 한다. 독도는 일본에 의해 탈환될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지 않다. 동아시아에 평화가 유지되는 한, 한국이 독도에 대한 주권을 상실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런 맥락에서, 대중들에게 독도문제를 인식시키려는 캠페인이 어떤 긍정적 효과를 가지는 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한국 내에서 그런 운동들은 독도에 대한 주권에 기여함이 없이 반일감정을 자극하고, 국제적으로는 역효과를 낼지도 모른다. 국제적 시청자들에게 보여준 대중운동의 실질적 효과는 적어도 연구되어야만 한다. 나의 개인적 견해로 이와 같은 영토적 주장에 대해서도 문화적 산출의 소프트 파워에 의해 한국은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볼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일본에 뒤져있다. 일본은 이미 19세기에 우키요에 판화, 칠기, 기모노로 서구인의 상상력과 애착을 사로잡을 수 있었다. 한국은 추격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은 걸릴 것이다. 한편 나는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권을 지지해 줄 당연히 필요한 학문적 지식(법률적인 것이든 다른 것이든)의 집합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다. 또한 민족주의적 감정을 자극하는 대중운동을 자제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자기 자신의 모멘텀을 가지고 통제를 벗어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이다.

5. 맺음말

나는 내가 논의한 유럽연합(EU)의 예로부터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첫째, 유럽의 역사적 사례는 진정으로 비전을 가진 지도자들,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능력과 무언가를 점차적으로 만들어내는 인내력을 가진 지도자들이 인간성에 대한 가장 흉악한 범죄에 의해 야기된 분노와 적대감의 장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지속적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를 창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런 것이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받을만한 어떤 것이다.

둘째, 동아시아는 유럽의 경로를 따라가선 안 된다. 유럽에선 1차 세계대전의 공포가 사람들로 하여금 초국가적 연방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는데 충분했지만, 그런 이상을 현실화하는 데는 충분하지 못했다. 현재 동아시아 국가들간의 갈등은 엄청난 감정을 야기했다. 그러나 이런 갈등의 해결은 화해의 정신 속에 나타나야 하고, 순수한 민족적 관심을 초월하는 계획을 구상할 의지를 필요로 한다.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이것을 환기시킬 또 다른 재앙적 전쟁이 일어나선 안 될 것이다.

The Conflicts among Asian Countries and One Suggestion for Mutual Understanding:

A European Perspective

B.C.A. Walraven*

Introduction

Events in the summer and fall of this year seem to have been purposefully designed to underline the need for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the countries of East Asia. The organizers and all the participants of the conference certainly will have followed what happened with particular interest, but no ordinary citizen reading the paper or watching television can have missed the expressions of passionate anger regarding territorial problems between China, Korea and Japan. Two facts stand out in all this. The first is that the tensions do not only exist between the states that were in conflict with each other during the Second World War, although the experience of that war and the unresolved issues it has left are an important aggravating factor. Actually, there is tension about territorial issues in every possible permutation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countries of East Asia, while The Philippines, Vietnam and Malaysia are also involved in some of these conflicts. The second striking fact is that these are not just conflicts between states, between governments. In several cases the public joins in the fray on the basis of nationalistic

* Professor, Academy of East Asian Studies, Sungkyunkwan University
Emeritus Professor, Leiden University

sentiments. This has been most dramatically demonstrated by the Chinese protests against the Japanese claim of sovereignty over the Senkaku or Diaoyu Islands, but also by Korean public fury over Japanese claims to Dokdo. Such outrage is fueled by socially transmitted memories of colonial abuse and war crimes. Thus the anger about a territorial conflict, of which there are countless examples all over the world, is aggravated because of such abominations as the denial or belittling of the problem of sexual slavery organized for the benefit of the Japanese war effort in the Second World War. The rhetoric of protest is often violent and belligerent. Veterans of the Korean marines protesting in front of the Japanese embassy in Seoul I witnessed some years ago carried placards saying that "the cure for a mad dog is the cudgel" (미친개 한테는몽둥이약이다) and large photographs depicting the Japanese emperor and prime minister with black bands over the photos, as if they had died, while they loudly expressed their willingness to go to war over the issue. Considering all this, is it realistic to expect cooperation among the nations of East Asia? I would like to invite you to consider the question from the perspective of European history.

Conflicts in Europe

I am certain that you all know that armed conflict has been frequent in Europe, but wonder whether you realize how common it has been. If I take the country I have grown up in, the Netherlands, as an example, over the centuries there have been wars with Spain, France, Germany, England, Sweden, Austria, Belgium, and Indonesia. Britain for centuries was the archenemy with whom the Dutch competed for maritime supremacy. France was another frequent opponent, and during the reign of Napoleon the Netherlands was briefly annexed by it. In the twentieth century, in the First World War the horror of battle between troops equipped with modern arms

took unprecedented forms. The Battle of the Somme in 1916, which lasted for 4,5 months took over a million casualties (dead, wounded, or missing), with the British losing 60,000 men on the first day. Altogether the Great War, as it was initially called, probably took the lives of over 16 million people (including civilians). Yet worse was still to come in the Second World War, with an estimated loss of over 60 million people. Of course this was not all in Europe, but in Europe the Russians alone suffered 20 million fatalities. Suffering in many places was enormous. The most horrendous aspect of the war was the systematic, industrialized extermination of the West- and East-European Jews, in what now is referred to as the Holocaust.

Altogether Europe has a history of many centuries of competition and armed conflict, culminating in the bloodiest and in many respects most cruel war the world has seen; not a good basis for the creation of a brotherhood of nations one would think. And yet, although various forms of hatred, aversion and mutual prejudice continue to exist, considerable progress has been made toward European union. If we consider the explosive matter collected because of memories of the war, this deserves to be called a “miracle”, no less than the “miracle on the Rhine” of the economic reemergence of Germany or the “miracle on the Han River” of Korea’s economic development. In spite of present problems one might even think of the European union as an economic miracle, too, because if one looks at its economic output in 2011 as a whole, its Gross Domestic Product adjusted for purchasing power parity was estimated to be the largest in the world, larger than that of the US and China. I should add that these are computations, not of a biased Europhile, but of the American CIA.

The long road toward European union

In a way it was because of the ravages of war that people started to entertain

the idea of a federation or unity of European nations. Already after the First World War there were visionary people who had been shocked by the barbarity of modern warfare and called for cooperation rather than strife. Supported by the German former Chancellor and then Minister of Foreign Affairs Gustav Stresemann (1878-1929), in 1929 the French Prime Minister Aristide Briand (1862-1932) launched a plan for a federation of European states, which would remain independent and sovereign nations, but abolish impediments to commerce (like customs duties) and adopt a system of collective solidarity, all ideals that would be realized only much later. The rise of Hitler in the 1930s made further talk about Franco-German reconciliation impossibl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of France and Germany was, and is, essential in the construction of European cooperative institutions. Thus for the time being no progress could be made, but the ideal was not forgotten, and reinforced by the Second World War. Ironically the Germans unwittingly promoted this by arresting prominent intellectuals in the countries they occupied, some of whom would be shot whenever the armed resistance movements in these countries killed some Germans. While they were imprisoned together, these intellectuals would discuss at length what should be done after the war, and what measures should be taken to prevent another war from arising. One of these intellectuals was the Dutchman Max Kohnstamm (1914-2010), one of the founding fathers of the European Union, who closely worked together with the Frenchman Jean Monnet (1888-1979). Monnet is universally regarded as the most important figure in the history of the European Union. He was a truly exceptional figure, who had done so much to promote American support of Great Britain before the US itself got involved and also to convince the US to actively join the fight, that the celebrated economist John Maynard Keynes (1883-1946) estimated he had all by himself shortened the duration of the Second World War by a year. He became a

member of the French government in exile and in 1943, while the war was still raging and many other matters were likely to demand his attention, made a far-sighted speech in which he said:

> "There will be no peace in Europe, if the states are reconstituted on the basis of national sovereignty... The countries of Europe are too small to guarantee their peoples the necessary prosperity and social development. The European states must constitute themselves into a federation..."

When the war had ended, in 1946, Winston Churchill echoed this idea by advocating a "United States of Europe," but Great Britain was not to play a role in the first phase of the creation of a European union. The six countries that first created a cooperative institution, the European Coal and Steel Committee, were France, Germany, Italy, Belgium, Luxemburg and The Netherlands. The inclusion of particularly Germany was remarkable. It had practical aspects -France was completely depending on German coal- but also was motivated by a more idealistic mindset. When Max Kohnstamm visited Germany after the war he realized that the terrible poverty and destruction he witnessed there could not be left unattended, partly for humanistic reasons, but also because in the long run the effects would be deleterious not only to the Germans but to all Europeans. In this, the aftermath of the First World War had provided an important lesson. Although the Germans had not been guilty of the abominable crimes they committed in the Second World War, in 1919 the victors through the Treaty of Versailles had imposed a harsh, vindictive regime on the Germans. The resentment this caused favored the rise of Hitler, who by opposing the Versailles Treaty catered to German nationalism. John Maynard Keynes, who took part in the Versailles conference, had already warned against the devastating effects of the reparation payments

that had been imposed on the Germans, but to no avail. After the Second World War fortunately more enlightened ideas prevailed and positive efforts were made to draw (West-) Germany back into the fold of prosperous democratic countries.

Modest as it may seem, the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created in 1951 was intended to be the foundation for further developments of more than an economic order, which in time duly took place. First, in 1957, the original six countries of the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formed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 with a much wider remit. The EEC developed a common agricultural policy, subsidizing the activities of farmers in the member countries. The main architect of the agricultural policies was a Dutchman, SiccoMansholt, who had been shocked by the famine in the western part of the Netherlands in the last year of the war and the great scarcity of food in the immediate post-war years, when a system of distribution had to guarantee a minimum of nourishment for everyone.

In the 1960s other countries started to join the EEC, most notably Great Britain in 1967. A milestone was the creation of the European Union in 1992, which formally extended the activities to other matters than the economy. Since the Treaty of Maastricht was signed in 1992, the number of member countries has steadily grown and now comprises 27 nations, with more wanting to join.

The economic crisis of recent years has made many people wonder if the euro and the European institutions are really a good thing. No doubt, some things could have been done better. The common currency should not have been introduced before the mechanisms were in place to adjust problems in a manner that was available to single nations before the transition to the euro was made. But critics of the euro and the EU often tend to forget why European unity was seen as an ideal in the first place. It was the widely felt

conviction that the horrors of two World Wars should not be repeated. Seen in this perspective the EU has been extremely successful. There are certainly tensions and friction between individual member states, but these do not lead to catastrophic decisions. Even countries as mutually friendly as Belgium and the Netherlands have matters of contention that engender passionate emotions in some people. Yet, the thought of European states once again declaring war on each other nowadays seems absurd. In this connection it is also meaningful that three countries that were part of the former Yugoslavia and have a history of mutual hostility, Serbia, Bosnia and Montenegro, are about to join the Union.

An East-Asian Union?

It is, I immediately admit, extremely difficult to imagine the countries of East Asia following the European example and establishing an East-Asian Union. On the other hand, the history of the formation of the European Union should convince skeptics that the seemingly impossible can be done. Think of the millions and millions of fatalities, a ghostly parade of all the dead of the two world wars, tens of millions of people, men, women, children, the unspeakable horror of the Nazi extermination camps, the merciless bombing of civilian populations, the cruelty and betrayals of a violent century, widespread hunger and poverty, and think of the hate and resentment caused by all this. Paradoxically, it was because of this, not in spite of this, that far-sighted men and women, rather than concentrating on hatred for the enemy, conceived a vision of unity and mustered the strength to realize this ideal. A man like Max Kohnstamm had been held hostage by the Nazis with the daily threat of execution as a reprisal for killings by the resistance groups hanging over him. SiccoMansholt had been active as the commander of an underground resistance group. They had good personal reasons to hate the

Germans, but instead made efforts to bring peace and prosperity to them as well.

If we look at the present situation in East Asia there are actually many encouraging signs. The countries of East Asia are engaged in flourishing trade with each other, in a way that was unimaginable in the 1980s. The Republic of Korea, which was completely closed off from "Red China," after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has become an important trading partner of China. The economic relationship with Japan always has been of major importance. Even with North Korea it still has relations that are based on the concept of mutual benefit in the form of the industrial complex in Kaesŏng. The mainland Chinese have a quite relaxed relationship with Taiwan, with visitors from both sides crossing the Straits continuously. There is generally a considerable movement of persons between East Asian countries, not only of businessmen, but also of academics, artists, students, and last but not least, tourists. The result is that the xenophobic, one-sided forms of nationalism increasingly become a thing of the past.

Perhaps the time has come also for East-Asian countries to re-think the meaning of nationalism. In Europe, the concrete steps toward European union, and with that towards a lasting peace, would have been impossible without a revaluation of concepts such as patriotism and nationalism, which previously mostly were seen unquestioningly in a positive light. The tragic events of the twentieth century made people realize that nationalism in its more exclusionist forms, when one's own nation is seen as of supreme importance and more valuable than other nations, can be a dangerous thing. A song that in the past was used as the Dutch national anthem illustrates this. It contains the explicitly racist phrase: "Dutch veins by foreign blood untainted." The dangers of nationalism were felt strongly by my own generation, that of those who were born not long after 1945. I have to confess that when I first came to Korea

in the 1970s this mindset, which had been shaped by European experiences, made me feel very uncomfortable when I was confronted with Korean ideas about the nation, minjok. Since then I have gradually come to understand that the nationalisms of East Asia have been functional in promoting national independence and solidarity and I have defended nationalistic Korean historiography against the attacks of Western colleagues who could only see its negative aspects. Because of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of East Asia, and certainly of Korea, nationalism has been as much needed as it was in nineteenth-century Europe at the time when the modern European nation-states were taking shape. But at the present it seems to me that it will be more conducive to peace in East-Asia if nationalism is down-played rather than stimulated.

In this regard it is important to realize that stimulating nationalistic emotions among the public rarely will do much good to the wa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see specific problems. It is a simple truth that other nations' nationalisms are not attractive. In the eyes of an international audience they will even become repugnant when accompanied by violence. The violent anti-Japanese protests in China because of Japanese claims to the Diaoyu islands from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have damaged rather than reinforced that claim. Korean efforts to stimulate public awareness of the Dokdo problem are much more innocent, but with regard to these, too, I would like to advice caution. Recently foreign journalists were invited to Dokdo. I have seen the BBC report of this and on the basis of that would say that no one who saw this in the West will have been convinced by such programs that Dokdo is Korean soil. At best viewers will have been puzzled and perhaps slightly amused by the middle-aged ladies who waving a Korean flag professed their love for the island. At worst, they will have been irritated by the rhetoric of the policeman who declares he is willing to die for the defense of Dokdo.

The more strident nationalistic declarations are, the more people will suspect there is something wrong about the Korean claims. I can reassure you that personally I have no doubt that Dokdo is Korean territory. The mere fact that the year 1905 plays a crucial role in the Japanese arguments is enough to show that the Japanese claims are closely linked to Japanese imperialism. But the ways to preserve Dokdo as Korean territory should be examined dispassionately. Dokdo is not in immediate danger of being taken over by the Japanese. As long as peace is maintained in East Asia there is little chance that Korea will lose authority over the islands. In this context it is difficult to see what positive effect campaigns to raise public awareness of Dokdo can have. Within Korea, they stimulate anti-Japanese feeling without contributing to the sovereignty over the island, and internationally they may even produce an adverse effect. The actual effects of publicity campaigns addressed to an international audience should at least be studied. In my personal view, Korea will benefit much more, also if it comes to territorial claims like this, by the soft power of its cultural products. In this, Korea has been lagging behind Japan, which already in the nineteenth century managed to get a hold on the imagination and affections of Westerners with its ukiyo-e prints, lacquer ware and kimonos. Korea is catching up but it will take time. In the meantime, I would advocate due attention to the gathering of academic knowledge (legal and otherwise) to shore up Korean authority over the island, but also refraining from public campaigns that stir up nationalistic feelings, which have a momentum of their own and a tendency to get out of hand.

Conclusion

I would like to draw two messages from the example of the European Union I have discussed. The first is that it shows that truly visionary leaders, men with both the ability to get things done and the patience to gradually build

up something, can overcome the barriers of resentment and hatred due to the most horrible crimes against humanity imaginable, and in this way are able to create new structures that will guarantee a lasting peace. This is truly something worth a Nobel Peace Prize. The second is that East Asia should *not* follow the track of Europe, where the horrors of the First World War were enough to make people entertain the idea of supra-national union, but not sufficient to actually translate ideals into reality. The present conflicts between East Asian nations arouse great emotions but their resolution should take place in a spirit of reconciliation and require a willingness to conceive plans that transcend purely national concerns. It should not take another catastrophic war to convince the nations of East Asia of this.

이 논문은 2012년 10월 25일에 투고하여
2012년 12월 5일까지 심사하여
2012년 12월 15일 게재 · 결정됨

환동해 문화권 설정과 한·일간의 교류

김 화 경*

〈목 차〉

1. 머리말
2. 설화들이 말해주는 한 · 일 간의 교류
   1) 쯔누가아라시토 설화
   2) 아메노히보코 설화
   3) 연오랑세오녀 설화
   4) 날개옷 설화
3. 맺음말

〈국문초록〉

동해를 사이에 두고 있는 한국의 동해안과 일본의 서해안 일대의 문화가 공통적인 요소를 지니는 것이 많다. 그러한 예로 한국의 남부지방과 일본 규슈(九州)의 북부 지방에 존재하는 '당일우귀(當日于歸)'의 혼속을 예로 들었다. 일본에서는 야마도 시대(大和時代)에 일시적인 처가 거주혼의 형태를 취했다가, 무가 시대(武家時代)에 부가 거주혼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한국의 남부지방과 같은 문화를 가졌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화적 동질성을 가지는 요소들이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이런 전제를 세우는 경우, 일본의 호쿠리쿠 지방(北陸地方)에서 문헌에 정착된 〈가가국의 뱀과 지네가 싸우는 섬에 간 사람, 뱀을 구하고 섬에 산 이야기〉가 신라의 경역에 존재한 것도 같은 문화권에 속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환동해 문화권'의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네 개의 이야기, 곧 가야의 왕자 〈쯔누가아라시토 설화(都怒我阿羅斯等說話)〉와, 신라의 왕자 〈아메노히보코 설화(天日槍說話)〉, 〈연오랑 세오녀 설화(延烏郎細烏女說話)〉, 고구려의 〈날개옷 설화(羽衣說話) 등도 고찰하였다. 이들 설화의 고찰을 통해서, 한국으로부터 일본열도로 건너가는 해로(海路)는 상당히 여러 개가 있었으며, 또 이주 집단들도 꽤 많았다는 것을 구명하였다.

* 영남대학교 명예 교수

주제어: 환동해 문화권, 문화의 동질성, 설화, 쯔누가아라시토, 아메노히보코, 연오랑세오녀, 날개설화

1. 머리말

한국의 동해안과 일본의 서해안 사이에 있는 바다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이 되었다. 그 때문에 아직까지 이름조차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동해(東海)'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반해,[1] 일본에서는 '일본해(日本海)'라는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2] 더욱이 동해 가운데 있는 독도(獨島)는 지금도 한·일 두 나라에서 제각기 자기 나라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그 영유권을 다투고 있어, 언제 해결이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 놓여 있다.[3]

이와 같은 동해는 베링 해협에서 내려오는 오야시오 한류(親潮寒流)의 지류인 리만 한류가 홋카이도(北海道) 부근에서 갈라져 들어오고, 또 남쪽의 구로시오 난류(黑潮暖流)가 흘러들어와 서로 만나는 곳이어서 천혜(天惠)의 어장(漁場)을 형성하고 있다. 더욱이 이 동해는 고대에 한반도와 일본 열도를 이어주는 해로(海路)를 제공하기도 하였으며,[4] 지금은 한국

---

1) 김신,「동해 표기의 역사적 전개」『경영사학(16-3)』(서울, 2001, 한국경영사학회), 199-222쪽.
김호동,「메이지시대 일본의 동해와 두 섬(울릉도, 독도) 명칭 변경 의도에 관한 검토」(경산, 2009,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535-561쪽.

2) 원래의 명칭은 '북해(北海)'였으나, 메이지 유신(明治維新) 이후에 '일본해'란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齋藤勘介, 권오엽 공역,『隱州視聽合記』(서울, 2007, 동북아역사재단), 33쪽.
芳井硏一,『日本海という呼稱』(新潟, 2002, 新潟日報事業社) 참조.

3) 신용하,『독도의 민족 영토사적 연구』(서울, 1996, 지식산업사) 참조.
송병기,『울릉도와 독도』(서울, 1999, 단국대 출판부) 참조.
川上健三,『竹島の歷史地理學的 硏究』(東京, 1966, 古今書院) 참조.

4) 동북아역사재단 편,『고대 환동해 교류사, 1부 고구려와 왜』(서울, 2010, 동북아

과 북한, 일본, 러시아가 서로 활발하게 교역을 하는 생명의 바다이기도 하다.[5] 이러한 입지적 조건은 일찍부터 문화 교류의 매개적 역할을 하는 데 충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는 동해를 중심으로 한 문화권을 설정할 수는 없을까, 그리하여 이 동해를 매개로 한 한·일 간 교류의 한 단면을 밝힐 수는 없을까 하는 문제를 제기해보려고 한다.

> 두루 알다시피 '문화권'이란 독일어의 Kulturkreis, Kulturkreiselehre란 단어를 번역한 것으로, 이것은 일정 지역에 존재하는 특징적인 문화복합(culture complex)[6]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와 같은 문화권에는 물질문화와 경제형태, 사회, 종교, 예술 등 문화의 모든 분야가 다 포괄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문화권은 과거의 어떤 시기에 성립하여,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을 근거로 하여 성립된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권은 시간적으로 보면 문화층(文化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7]

이러한 문화권의 개념을 도입하여 동해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의 문화현상들을 중심으로 '환동해 문화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서 서로 영향관계가 있었다고 추정되는 문화적인 요소들을 찾아내지 않으면

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편, 『고대 환동해 교류사, 2부 발해와 일본』 (서울, 2010, 동북아역사재단)

5) 근래에 경상북도와 강원도에서 환동해권의 국제 교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는 것도 이 지역의 사정을 잘 말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6) '문화복합(文化複合)'이란 어떤 집단의 문화든지 많은 문화 요소(culture elements)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는 복합체라는 인식에서 만들어진 용어로, 어떤 문화권의 문화 연구는 이 요소의 총체적인 연구이지 않으면 안 된지만, 그 문화권의 특징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특징이 있는 일련의 문화 요소들을 한 데 모아서 통합하여, 하나의 유형(類型)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을 문화 복합체라고 말한다.
下中邦彦 編, 『哲學事典』 (東京, 1971, 平凡社), 1245쪽.

7) 大林太良 共編, 『文化人類學事典』 (東京, 1994, 弘文堂), 668쪽.

안 된다. 이런 요소들로는 여러 가지가 지적되어 왔다. 그것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한국의 남부지방 분포되어 있는 '당일우귀(當日于歸)'의 혼속(婚俗)이다. 이것은 먼저 신랑이 처녀 집에 가서 결혼식을 올리지만, 그날 남자는 신부(新婦)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신랑의 집에서 잔치를 베푸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혼속은 아침에는 '처가 거주 형태(妻家居住形態)'를 취하는데 비해, 같은 날 저녁에는 '부가 거주 형태(夫家居住形態)' 형태를 취하고 있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와 같은 혼인 형태는 오늘날 전 일본에서 보편화되어 있다. 하지만 규슈(九州)의 북부 지방에서는 "아침 사위에 저녁 며느리(朝婿に夕嫁)"라고 하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례들이 보고되었다. 더욱이 한국의 '당일우귀' 혼속에는 신부가 시집을 온 지 3일 째 되는 날에 신랑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는 풍습이 있는데, 북 규슈에도 '3일째 귀가(歸家)'라고 하여 신부가 신랑을 동반하고 자기 친가를 방문하는 풍습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면 이들 두 지방의 혼속은 제각기 독립적으로 발달된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은 문화 속에서 파생된 동일한 문화요소라고 볼 수 있다.[8]

그러나 일본에서는 오늘날의 '부가 거주혼(夫家居住婚)'은 야마도 시대(大和時代)까지 지배적이었던 '일시적 처가 거주혼'이 중세에 무가(武家) 계통 아래서 진전되어 일반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9] 그렇지만 이처럼 '부가 거주혼'의 혼인 형태를 일본 내에서 자체적으로 발전했다고 보기보다는 한국의 남부 지방과 일본 규슈의 북부 지방에 존재했던 문화권의 공통된 문화였다고 보는 편이 설득력을 지니지 않을까 한다.

이런 의미에서 헤이안 시대(平安時代)에 완성된 『곤자쿠 이야기(今昔物語)』에 실려 있는 〈가가국(加賀國)의 뱀과 지네가 싸우는 섬에 가서 뱀을 구하고 섬에 산 사람의 이야기〉도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이 설

8) 江守五夫, 「婚姻形態からみた日本海文化の諸特徵」 『東アジアと日本海文化』 (東京, 1984, 小學館), 156-157쪽.

9) 柳田國男, 『日本婚姻史』 참조

화는 섬에서 지네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뱀을 도와준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와 비슷한 설화가 『삼국유사(三國遺事)』의 〈진성여왕(眞聖女王)과 거타지(居陁知)〉 조에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비슷한 이야기가 한국의 남부 지방과 일본의 호쿠리쿠 지방(北陸地方)에 전승되었었다고 하는 것은 이들 두 지역의 문화적인 관련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게 한다.[10]

이렇게 볼 때, '환동해 문화권(環東海文化圈)'을 설정하여 동해를 매개로 한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문화가 서로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구명하는 작업은 현재와 같이 급속하게 국가 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 아래서는 서로 간의 이해 증진을 위해서 대단히 긴요한 작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는 동해를 사이에 두고 한·일 간에 벌어졌던 교류의 한 단면들을 구명함으로써, '환동해 문화권'의 설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설화들이 말해주는 한·일 간의 교류

1) 쯔누가아라시토 설화

환동해 문화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화현상들의 비교가 가능할 것이다. 이를테면 물질문화와 같은 것을 비교하여 그 공통점을 추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발표자의 전공과 관련시켜, 한국과 일본에 전해지는 설화들을 고찰의 대상으로 하여, 이들 두 지역의 문화적 관련 양상을 해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 작업을 위해서는 한 유형의 설화만을 고찰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왜냐하면 문화란 것은 독립된 하나의 요소로 존

10) 大林太良, 「日本海文化と朝鮮·沿海州·蝦夷」 『東アジアと日本海文化』 (東京, 1984, 小學館), 73쪽.

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된 양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먼저 일본 측 기록에 남아 있는 〈쯔누가아라시토(都怒我阿羅斯等) 설화〉부터 살펴보기로 하겠다.

〔 자료 1 〕

미마키노스메로노미코토(御間城天皇: 崇神天皇을 가리킴) 때에 이마에 뿔이 난 사람이 한 척의 배를 타고 코시국(越國)의 게히노우라(笥飯浦)에 정박하였다. 그래서 그곳을 쯔누가(角鹿)라고 불렀다. 그 사람에게 "어느 나라 사람이냐?"라고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오호(意富) 가라국(加羅國)의 왕자로 이름은 쯔누가아라시토(都怒我阿羅斯等), 또 다른 이름은 우시키아리시찌칸기(于斯岐阿利叱智干岐)라고 한다. 전하여 듣기를 일본국에 성황(聖皇)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귀화하였다. 아나토(穴門)에 도착하였을 때에 그 나라에 이름이 이쯔쯔히코(伊都都比古)라는 사람이 있어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 나라의 왕이다. 나 외에 다른 왕은 없다. 그러니 다른 곳에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의 생김새를 보니, 결코 왕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그곳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길을 몰라서 섬들과 포구들을 헤매었다. 북해를 돌아서 이즈모국(出雲國)을 거쳐 이곳에 왔다."라고 하였다.[11]

이것은 '쯔누가(角鹿)'라는 지명 이름이 생긴 이유를 설명하는 '지명 연기담(地名緣起譚)'으로 전승되던 것이, 『일본서기(日本書紀)』에 문자로 정착된 설화인 것 같다. 곧 '이마에 뿔이 난 사람'이 왔기 때문에 '쯔누가'라는 지명이 생겼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을 사실 그대로 믿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지만

11) 「御間城天皇之世 額有角人 乘一船 泊于越國笥飯浦 故號其處曰角鹿也. 問之曰 何國人也. 大曰 意富加羅國王之子 名都怒我阿羅斯等. 亦名曰 于斯岐阿利叱智干岐. 傳聞曰 日本國有聖皇 以歸化之. 到于穴門時 其國有人 名伊都都比古. 謂臣曰 我則是國王也. 除吾復無二王 故勿往他處. 然臣究見其爲人必知非王也. 卽更還之 不知道路 留連嶋浦 自北海廻之經出雲國至於此間也.」
井上光貞 共校注: 『日本書紀(上)』 (東京, 1967, 岩波書店), 258-259쪽.

쯔누가아라시토 왕자가 뿔 모양의 의장(儀仗)을 했을 가능성은 인정해도 좋지 않을까 한다. 그 이유는 그가 한 나라의 왕자였다고 한다면, 바다를 건너서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 맞는 모습으로 꾸밀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12)]

이처럼 이상한 모습을 한 쯔누가아라시토가 최초로 도착한 곳은 나가토(長門)의 아나토(穴門)였다. 아나토는 오늘날 야마구치현(山口縣)의 시모노세키(下關) 부근에 있는 나가토(長門)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그가 도일한 이 경로는 한·일 간의 중요한 항로 중의 하나였다는 것을 시사해준다.[13)]

그런데 이 설화에서 쯔누가아라시토는 거기에 정착하지 않고, 시마네현(島根縣)의 이즈모(出雲)를 돌아서 코시국(越國)[14)]의 게히노우라(笥飯浦)에 도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코시국의 게히노우라는 후쿠이현(福井縣) 쯔루가시(敦賀市) 게히신사(氣比神社) 부근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쯔누가아라시토라는 가락국의 왕자 집단이 현재의 야마구치현으로부터 시마네현을 거쳐 후쿠이현으로 이동하여, 거기에 정착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곳에서 그가 이렇게 이동을 했다는 것은 한국의 남부 지방과 일본의 서해안 지방이 일찍부터 교류가 있었음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이것은 한국과 일본에 국가라는 통치 체제가 만들어져 서로 간의 이익을 위해 자기 중심의 논리를 전개하기 시작한, 훨씬 이전의 일이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두 지방 사이의 교류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자연스럽게 진행되어

---

12) 실제로 이병도(李丙燾)는 이것을 고대 신라나 가락국의 관모(冠帽)로 보았다. 이병도: 한국고대사연구 (서울, 1976, 박영사), 342-344쪽.

13) 오늘날도 부산에서 시모노세키를 오가는 연락선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 항로가 한국과 이 지방을 연결하는, 가장 안전한 해로(海路)였음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다.

14) 호쿠리쿠(北陸)으로 가는 길 일대를 가리킨다. 여기에서는 후쿠이현(福井縣) 쯔루가시(敦賀市) 게히신사(氣比神社)

왔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로 볼 수 있을 것이다.[15]

2) 아메노히보코 설화

한편 신라의 왕자였던 아메노히보코(天日槍)의 도일 설화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해로는 이것과 전혀 다른 길이 존재했음을 말해주고 있어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 자료 2 〕

옛날에 신라의 왕자가 있었는데, 이름은 아메노히보코(天之日矛)라고 하였다. 이 사람이 일본으로 건너왔다. 건너온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신라에 어떤 늪 하나가 있어, 이름을 아구누마(阿具奴摩)라고 했다. 이 늪 근처에 어떤 신분이 천한 여인이 낮잠을 자고 있었다. 여기에 무지개와 같은 햇빛이 그녀의 음부를 비치었다. 또 신분이 천한, 한 사람이 있어, 그 모습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항상 그 여자의 동태를 살폈다. 그리하여 이 여인이 낮잠을 자던 때로부터 태기가 있어 출산을 하였는데, 붉은 구슬이었다.

이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천한 남자는 그 구슬을 그녀에게 달라고 하여 받아낸 뒤에, 항상 싸 가지고 허리에 차고 있었다. 이 남자는 산골짜기에서 밭은 일구며 살고 있었으므로 밭을 가는 인부들의 음식을 한 마리 소에다 싣고 산골짜기로 들어가다가 그 나라의 왕자인 아메노히보코를 우연히 만났다. 이에 아메노히보코가 그 남자에게 묻기를, “어찌하여 너는 음식을 소에다 싣고 산골짜기로 들어가느냐? 필히 이 소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것이지.”라고 하며, 즉시 그 남자를 잡아 옥에 가두어 두려고 했다.

이에 그 남자가 대답하기를, “저는 소를 죽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밭은 가는 사람들의 음식을 실어 나를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아메노히보코는 이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 남자는 허리에 차고 있던 구슬을 풀어 왕자에게 바쳤다. 그러자 아메노히보코는 그 신

15) 김화경, 『일본의 신화』 (서울, 2002, 문학과지성사), 169-170쪽.

분이 천한 남자를 방면하고, 그 구슬을 가지고 와서 마루 곁에다 두었다. 그런데 그 구슬이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했다. 그리하여 아메노히보코는 그녀와 혼인을 하고 적실(嫡室)의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 후에 그녀는 항상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여 남편으로 하여금 먹게 하였다. 그러나 그 나라 왕자는 거만한 마음이 들어 아내를 나무랐기 때문에, 그녀는 "대체로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될 여자가 아닙니다. 나의 조국으로 가겠습니다."라는 말을 하고는 재빨리 남몰래 작은 배를 타고 도망쳐 건너와 나니하(難波)에 머물렀다. 그녀가 바로 나니하의 히메코소 신사(比賣碁曾神社)에 모셔지고 있는 아카루히메노카미(阿加流比賣神)이다.

아메노히보코는 아내가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고, 곧 그 뒤를 따라 건너와 나니하에 도착하려고 하였다. 바로 그 때 해협의 신이 이를 막고 나니하에 들여 보내주지 않았다. 그리하여 아메노히보코는 하는 수 없이 다시 돌아가 다지마(多遲摩)라는 곳에 정착했다. 그리고는 그곳에 머물면서 다지마노마타오(多遲摩之俣尾)의 딸 사키쯔미(前津見)라는 이름의 여인과 혼인하여 낳은 아이를 다지마모로스쿠(多遲摩母呂須玖)라고 했다. 이 사람의 자식은 다지마히네(多遲摩斐泥)이었고, 다지마히네의 자식은 다지마히나라기(多遲摩比那良岐)였으며, 다지마히나라기의 자식은 다지마 모리(多遲摩毛理), 다음이 다지마 히다카(多遲摩比多詞), 다음이 스가히코(清日子)였다.……중략……

그리고 아메노히보코가 가지고 온 물건 중에는 옥진보(玉津寶)라는 구슬이 두 줄이나 있었다. 또 파도를 일으키는 천, 파도를 가라앉히는 천, 그리고 바람을 일으키는 천 및 오키쯔카가미(奧津鏡), 헤쯔카가미(邊津鏡)라는 거울 두 개도 함께 가지고 왔다. 그가 가지고 온 물건을 모두 합하여 여덟 가지나 된다. 이를 이즈시 신사(伊豆志神社)에서 모시고 있는 야마헤 대신(八前大神)이라고 한다.[16]

16) 「昔有新羅國王之子 名謂天之日矛. 是人參渡來也. 所以參渡來者 新羅國有一沼 名謂阿具奴摩. 此沼之邊 一賤女晝寢. 於是 日耀如虹 指其陰上. 亦有一賤夫 思異其狀恒伺其女人之行. 故是女人 自其晝寢時妊身 生赤玉. 爾其所伺賤夫 乞取其玉 恒裹着腰. 此人營田於山谷之間. 故耕人等之飮食負一牛而 入山谷之中, 遇逢其國主之子 天之日矛. 爾問其人曰 何汝飮食負牛入山谷 汝必殺食是牛. 卽捕其人 將入獄因. 其人答曰 吾非殺牛 唯送田人之食耳. 然猶不赦. 爾解其腰之玉 幣其國主之子. 故赦其賤夫. 將來其玉 置於床邊 卽化美麗

이 설화에서는 아메노히보코가 본국으로 돌아간 자기의 아내 아카루히메(阿加流比賣)를 찾아서 일본으로 건너간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그는 하리마국(播磨國)[17]에 도착하였다가 상륙을 하지 못하고, 긴키(近畿) 지방으로 들어가, 우지강(宇治川)을 거슬러 올라가 오우미(近江),[18] 그리고 일본 서해안의 와카사(若狹)[19]로 나와, 다지마(但馬)[20]로 가서 정착하여, 다지마 씨족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로는 앞에서의 쯔누가아라시토와는 다른 길이었다. 다시 말해 가락국의 왕자 쯔누가아라시토는 동해를 건너서 일본의 서해안에 상륙하였다가 그 해안을 따라서 북상을 하였다. 이에 반해 아메노히보코는 오늘날의 야마구치현(山口縣)과 후쿠오카현(福岡縣) 사이에 있는 간몽해협(關門海峽)을 지나 세도 내해(瀨戶內海)로 들어가 오사카(大阪)의 난바(難波)에 도착하였으나, 거기에 상륙하지 못하고 우지강을 따라 올라가 일본의 서해안으로 나온 것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두 집단의 도일 경로가 달랐던 것은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가는 데는 여러 개의 항로가 존재했으며, 그 항로의 선택은 이주민들의 형편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주는 지속적으로 행해졌을 것으로 상정된다.

孃子 仍婚爲嫡妻. 爾其孃子 常設種種之珍味 恒食其夫. 故其國主之子 心奢詈妻. 其女人言 凡吾者 非應爲汝妻之女. 將行吾祖之國 卽竊乘小船 逃遁渡來, 留于難波. 於是 天之日矛 聞其妻遁. 乃追渡來 將到難波之間, 其渡之神 塞以不入.故更還泊多遲摩國 卽留其國而., 娶多遲摩之俣尾之女 名前津見. 生子多遲摩母呂須玖. 此之子多遲摩斐泥. 此之子多遲摩比那良岐. 此之子多遲麻毛理. ……中略…… 故天之日矛持渡來物者 玉津寶云而珠二貫. 又振浪比禮 切浪比禮 振風比禮 切風比禮, 又奧津鏡 邊津鏡 幷八種也.」

荻原淺男 共校注:『古事記 上代歌謠』(東京, 1973, 小學館), 262-265쪽.

17) 지금의 효고현(兵庫縣) 지역을 말한다.

18) 지금의 시가현(滋賀縣) 일대를 가리킨다.

19) 지금의 후쿠이현(福井縣) 서부 지역을 가리킨다.

20) 지금의 효고현 북부 지방을 가리킨다.

3) 연오랑 세오녀 설화

바로 이러한 이주 경로의 하나가 〈연오랑 세오녀 설화〉에서 이야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설화는 한·일 문화의 교류 양상을 구명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삼국유사(三國遺事)』 권1 기이편(紀異編)에 전해지는 이 설화의 내용부터 소개하기로 한다.

〔 자료 3 〕

제8대 아달라왕이 즉위한 4년 정유에 동해 바닷가에는 연오랑과 세오녀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연오랑이 바다에 나가 해조(海藻)를 따는데, 갑자기 바위 하나(물고기라고 한다.)가 나타나더니 연오랑을 태우고 일본으로 가버렸다. 일본 사람들이 보고 말하기를 "이는 범상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세워서 왕으로 삼았다(『일본제기』를 보면 전후에 신라 사람으로 왕이 된 이가 없었다. 그러니 이는 어느 변방 고을의 작은 왕이고 정말로 왕은 아닐 것이다.).

세오녀는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것이 이상했다. 바닷가에 나가서 찾아보니 남편이 벗어놓은 신발이 있었다. 바위 위에 올라갔더니, 그 바위는 또한 세오녀를 싣고 마치 연오랑 때와 마찬가지로 일본으로 갔다. 그 나라 사람들은 놀라고 이상하게 생각하여 왕에게 사실을 아뢰었다. 이리하여 부부가 서로 만나게 되었고 그녀를 귀비(貴妃)로 삼았다.

이때에 신라에서는 해와 달이 빛을 잃었다. 일관(日官)이 아뢰기를 "해와 달의 정기가 우리나라에 내려와 있었는데 이제 일본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괴변이 생기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사자를 보내어 두 사람을 찾으니 연오랑이 말하기를 "내가 이 나라에 온 것은 하늘이 시킨 일인데 어찌 돌아갈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나의 비(妃)가 짠 고운 비단이 있으니 이것으로 하늘에 제사를 드리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비단을 건너 주었다. 사자가 돌아와서 사실을 보고하고 그의 말대로 하늘에 제사를 드렸다. 그런 뒤에 해와 달의 정기가 전과 같았다. 이에 그 비단을 창고에 간수하고 국보로 삼으니 그 창고를 귀비고(貴妃庫)라고 한다. 또 하늘에 제사를 지낸 곳을 영일현 또는 도기야(都祈野)라고도 하였다.[21]

이 설화는 신라 사람이 일본으로 건너가 왕이 되었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신라 세력이 일본에 진출하여 지배 계층으로 군림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일찍부터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끌어왔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인 가네자와 쇼사부로(金澤庄三郎)는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에서 일문(逸文)으로 전해지는 『쓰국 풍토기(攝津風土記)』에 실린 신라에서 건너왔다고 하는 여신에 얽힌 설화와 이것을 예로 들면서, "이렇게 양국 사이에 신들의 왕래가 있었다는 것은 결코 희귀하지 않았던 것이다."[22]라는 지적을 하였다.

또 내선일체(內鮮一體) 운동에 앞장섰던 다나카 가오루(田中薰)는 「연오 세오고(延烏細烏考)」에서 이 연오랑 세오녀 설화가 한국의 동해안에서 일본 시마네현의 오키도(隱岐島)의 치부리(知夫里)로 건너갔던 주민의 이동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았다.

> 연오 세오는 신라의 동해 바닷가로부터 일본의 어느 지역에 이주했을까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삼국사기』 지리지에 "신라 강역(疆域)의 경계는 옛 전기가 같지 않다. 두우(杜佑)의 『통전(通典)』에는 '그 선조는 본시 진한(辰韓) 종족인데, 그 나라가 백제 · 고구려의 동남쪽에 있으며, 동쪽으로는 큰 바다에 임하였다.'하고, 유구(劉昫)의 『당서(唐書)』에는 동남쪽이 모두 바다로 한정되었다."라고 한 것처럼, 신라의 동해(東海)는 일본해(日本海)이고 남해는 대한해협(對馬海峽)이기 때문에, 연오 세오가 신라의 동해 바닷가에서 일본으로 향했다고 한다면, 첫째로 예상

---

21) 「第八 阿達羅王卽位四年丁酉 東海濱有延烏郎細烏女 夫婦而居. 一日延烏歸海採藻. 忽有一巖(一云 一魚) 負歸日本. 國人見之曰 此非常人也. 乃立爲王(按日本帝記 前後無新羅人爲王者 此乃邊邑小王而非眞王也.). 細烏怪夫不來 歸尋之 見夫脫鞋. 亦上其巖 巖亦負歸如前. 其國人警訝 奏獻於王 夫婦相會 立爲貴妃. 是時新羅日月無光 日者奏云 日月之精降在我國 今去日本 故致斯怪. 王遣使求二人. 延烏曰 我到此國 天使然也 今何歸乎. 雖然朕之妃有所織細綃 以此祭天可矣. 仍賜其綃. 使人來奏 依其言而祭之 然後日月如舊 藏其綃於御庫爲國寶. 名其庫爲貴妃庫 祭天所名迎日縣 又都祈野.」

최남선 편, 『신증 삼국유사』 (서울, 1946, 민중서관), 49쪽.

22) 金澤庄三郎, 『日鮮同祖論』 (東京, 1978, 成甲書房), 44쪽.

되는 상륙지(上陸地)는 오키 지방(隱岐國)이다. 영일만(迎日灣)과 오키의 도젠(島前) 치부도(知夫島)와는 다 같이 북위 약 36도, 동 만(灣)의 남속포(南粟浦, 울산 동북)는 약 35도 반에 있으며 (영일)만과 (오키)도와의 거리는 약 200해리이므로 영일만(포항) 또는 속포(감포(甘浦))에서 동쪽으로 향한다면 대마 난류(對馬暖流)를 타고 한 길로 용이하게 오키의 치부도에 도착할 수가 있다.[23]

이와 같은 추정을 하면서, 그는 이 치부리의 지명을 한국에서 찾아내어 아래와 같이 주민들의 이동을 증명하고 있다.

이 '치부(知夫)'는 엔기식(延喜式) 군명(郡名)의 고훈(古訓)에는 '치부리(知夫里)'라고 하였고, 도쿠가와 시대(德川時代)의 향장(鄕帳)에도 '知夫里'라고 명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치부(知夫)는 치부리(知夫里)의 끝음절이 떨어져 나간 약음(略音)이란 것은 의심할 수 없다. 한편 신라 울산의 서쪽에 있는 '언양현(彦陽縣)'은 신라시대에는 헌양현(巘陽縣)이라고 불리고 있었는데,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거지화(居知火, chi-pul)'[24]라고 하였고, 『경상도지리지』에도 '언양현은 옛날에 거지화현(居智火縣. kö-chi-pul)이었다.'고 하여, '지화'의 명칭에 나오고 있다. 어미의 '화(火)'는 신라의 지명에 흔히 보이고 있는 '부리(夫里: pöl, 촌락의 뜻)의 음차(音差)로, 거지화(居智火)의 거(居, kö)는 '거서간(居西干)의 '거'와 같이 크다는 의미이다. 오키(隱岐)의 치부리(知夫里)가 신라의 지부리와 서로 일치하는 것은 양자 사이에 우연 이상의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만든다. 아마 신라의 지부리는 연오 세오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연오가 바다를 건너서 도착하여 첫걸음을 내디딘 오키의 항구(港口)에 그 마을 이름을 옮겼을 것이다.[25]

---

23) 中田薰, 『古代日韓交涉史斷片考』 (東京, 1956, 創文社), 50쪽.

24) 나카다 가오루는 이 '거지화'를 '본지화(本知火)'라고 옮겼으나, 이것은 '거지화'의 잘못된 인용이었다는 것을 밝혀둔다.
김부식, 이병도 역주, 『삼국사기(하)』 (서울, 1983, 을유문화사), 183쪽.

25) 中田薰, 앞의 책, 51쪽.

이러한 다나카의 견해는 신라 세력의 일본 이주를 증명하는 자료로 이 설화를 이용한 것이었다. 이에 비해 가미카이도 켄이치(上垣外憲一)는 〈쯔누가아리시토(都怒我阿羅斯等) 설화〉에 나오는 '이쯔쯔히코(伊都都比古)'를 연오랑으로 간주하면서, 신라의 이서국(伊西國)에서 건너가 이 일대에 세웠던 이쯔쯔히코의 왕조는 야마토(大和)와 호쿠리쿠(北陸), 세도내해(瀨戶內海)의 세력들과 대립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26] 그리고 이 이쯔쯔히코의 세력은 신라와 동맹을 맺고 있었는데, 이때에 신라의 여자가 그 왕가에 시집을 가서 왕비가 되었는 견해를 제시했다.[27]

이 일대가 한국의 남해안과 일본의 야마토 지방을 왕래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일찍부터 한국의 발달된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던 곳이었다는 것은 쉽게 인정이 된다. 특히 이 지방 문화의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이 신라 문화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지역에 신라 계통의 집단이 소국(小國)을 세웠을 것이라는 그의 견해는 상당한 타당성을 가진다. 하지만 이쯔쯔히코라는 사람의 이름이 경상북도 청도(淸道) 지방에 존재했었던 이소국(伊蘇國, 伊西國이라고도 했다.)과 그 발음이 유사하다고 하여, 그의 출자(出自)를 이서국에서 찾는 것[28]은 너무나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 아닐까 한다.

그리고 연오랑 세오녀 설화를 가야의 왕자 쯔누가아라시토 설화와 연계시키는 것도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다. 물론 이들이 한국으로부터 일

---

26) 가미카이도는 이 자료에 등장하는 이쯔쯔히꼬와 스사노오노미꼬토(須佐之男命)의 아들 이타께루(五十猛), 그리고 쭈우아이 천황(仲哀天皇)조에 나오는 이토데(五十迹)를 원래 같은 음이었을 것으로 보면서, 이 이름(신(神)이든가 혹은 왕명(王名)이든가)에 의해 대표되는 세력은 시모노세끼를 중심으로 하여 북큐우슈우(北九州)로부터 이즈모(出雲)까지 제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上垣外憲一, 『天孫降臨の道』(東京, 1990, 福武書店), 109쪽.

27) 上垣外憲一, 위의 책, 125-126쪽.

28) 가미카이도 켄이치는, '이쯔쯔히코(伊都都比古)'의 히코는 경칭(敬稱)이고, '쯔'는 '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쯔(伊都)=이서(伊西), Itsu=Isoe와 음이 너무도 가깝다는 데 근거를 두고 이런 추정을 하였다.
上垣外憲一, 앞의 책, 114쪽.

본으로 건너갔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전자는 동해안의 일반 어민(漁民)이었고, 후자는 왕자였다는 차이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연계시키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무리가 뒤따른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한국의 이홍직(李弘稙)은 이 설화에 등장하는 연오랑을 스사노오노미코토(素殘烏尊, 須佐之男命)와 연계시키기도 하였다.

> 진한(辰韓) 지방에서 동해를 건너서 일본의 일부 지방의 지배자가 된 설화는 우리나라 고전에도 남아 있다. 즉『삼국유사』기이편(紀異編)에 나타나고 있는 연오랑·세오녀의 설화가 그것이다. …… 중략 …… 이 전설은 매우 재미있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태고시대에 정말 있을 수 있는 역사를 반영한 전설로 볼 것이며, 연오랑이야말로 일본 전설의 스사노오노미코토(素殘嗚命)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다.[29]

이와 같은 이홍직의 주장에서는 연오랑을 아메노히보코가 아니라, 스사노오노미코토를 연상하는 존재로 간주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여기에서 그가 말하는 스사노오노미코토는 이즈모계 신화(出雲界神話)의 주신(主神)으로, 다카마노하라(高天原)에서 신라의 소시모리(曾尸茂梨)로 내려왔다가 일본의 이즈모 지방으로 건너간 것으로 되어 있다.[30] 이러한 스사노오노미코토가 연오랑과 관련을 가진다고 한 것은 두 존재가 다 같이 신라에서 도일하여 일본의 지배 계층이 되었다는 것에 주목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전호천(全浩天)은 "『삼국유사』에 기재되어 있는 연오랑 세오녀 설화는 신라의 사람들이 이즈모, 호키(伯耆), 다지마(但馬), 단고(丹後) 등의 지역에 이주하여, 거기에 왕권·왕국을 구축하였던 것, 연오랑이 왕으로 추대되었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다. 신라의 옛날 지명에 근(斤; 큰), 오지

29) 이홍직,『한국 고대사의 연구』(서울, 1971, 신구문화사), 72-73쪽.
30) 井上光貞 共校注: 앞의 책, 126-127쪽.

(鳥支; 오키)가 있다. 한국어에서 '근'은 크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근오키(斤鳥支)는 커다란 오키(신라의 영일현)로, 지금의 경상북도 포항(浦項)이다. 이 큰 오키로부터 온 사람들이 오키국(隱岐國)의 '오키'가 되었다. 또 오키의 치부리섬(知夫里島)의 치부리는 신라의 옛 지명 지불(知火)에서 유래하고 있다. 한국어의 쥐불은 동시에 화전(火田)을 의미한다. 오키의 야키비(燒火) 신앙과 신사(神社), 지명은 한국과 오키가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하고 있다. 오키(隱岐)는 한국에서 이즈모로 가는 발판이었다."[31]라고 하는 주장은 상당한 타당성을 가진다고 보아도 좋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주장으로부터 신라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가던 하나의 해로, 곧 영일만에서 이즈모(出雲)와 돗토리(鳥取) 일대로 도일하던 길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날개옷 설화

그런데 일본과의 교류는 가야나 신라만이 아니었다. 고구려 사람들도 일찍부터 일본으로 진출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일본의 설화 자료들 중에 고구려로부터 전래되었다고 되어 있는 것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그렇다고 하여 고구려에서 건너간 이주민들이 옛날이야기를 가지고 가지 않았었다고 단정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까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본에 전해지는 〈날개옷 설화(羽衣說話)〉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이것이 고구려로부터 전해졌을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하겠다. 일본에서 이 유형에 들어가는 문헌설화로 가장 오래 된 것은 가마쿠라시대(鎌倉時代)에 나가요시(永祐)라는 승려가 지은 『제황편년기(帝皇編年記)』에 수록된 다음과 같은 설화이다.

---

31) 全浩天, 『朝鮮からみた古代日本』 (東京, 1989, 未來社), 137-138쪽.

〔 자료 4 〕

옛일을 아는 노인들이 전하여 말하기를, 오우미국(近江國)의 이카고군(伊香郡) 요고 마을(與胡鄕)에 이카고(伊香)라고 하는 작은 강이 마을의 남쪽에 있었다. 천상(天上)의 여덟 천녀가 다 같이 백조(白鳥)가 되어 하늘에서 내려와 강의 남쪽 나룻가에서 목욕을 하였다. 이때에 이카도미(伊香刀美)가 서쪽 산에 있다가 멀리서 백조들을 보니 그 형상이 기이하였다. 이로 인해서 어쩌면 이들이 신인(神人)이 아닐까 하고 의심을 하여, 가서 보니 정말로 이들은 신인이었다. 이에 이카도미는 곧 사랑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돌려보낼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가만히 흰 개(白犬)를 보내서 하늘의 날개옷을 훔쳐오게 하여, 제일 어린것의 옷을 얻어 감추었다. 천녀들은 곧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언니들 일곱 명은 하늘로 날아 올라갔다. (하지만) 그 제일 어린, 한 사람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였다. (게다가) 하늘로 올라가는 길도 막혀서 이내 지상의 백성이 되었다. 천녀가 목욕을 했던 물가를 지금 가미우라(神浦)라고 하는데, 바로 이것이다.

이카도미와 제일 어린 천녀는 함께 부부가 되어 이곳에서 살았다. 마침내 아들딸들을 낳았는데, 아들 둘과 딸 둘이었다. 형의 이름은 오미시루(意美志留), 동생의 이름은 나시도미(那志登美)였고, 딸의 이름은 이세리히메(伊是理比咩), 다음의 이름은 나세리히메(奈是理比賣)였다. 이들이 이카고(伊香) 집안의 조상이 되었다.

뒤에 어머니는 곧 하늘의 날개옷을 찾아서 입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카도미 혼자서 쓸쓸하게 살면서 한탄하는 노래 부르기를 그치지 않았다.[32]

---

32) 「古老傳曰 近江國伊香郡 與胡鄕 伊香小江 在鄕南也. 天之八女 俱爲白鳥 自天而降 浴於江之南津. 于時 伊香刀美 在於西山 遙見白鳥 其形奇異 因疑若是神人乎. 往見之 實是神人也. 於是 伊香刀美 卽生感愛 不得還去 竊遣白犬 盜取天羽衣 得隱弟衣 天女乃知 其兄七人 飛昇天上 其弟一人 不得飛去 天路永塞 卽爲地民. 天女浴浦 今謂神浦是也. 伊香刀美 與天女弟女 共爲實家 居於此處. 遂生男女 男二女二 兄名意美志留 弟名那志登美 女伊是理比咩 次名奈是理比賣 此伊香連等之先祖是也. 後母卽搜取天羽衣 着而昇天 伊香刀美獨守空床 唫詠不斷.」

秋本吉郎 校注: 『風土記』(東京, 1958, 岩波書店), 457-459쪽.

나가요시(永祐)가 고문서와 고기록(古記錄)들을 간추려서 만든『제황편년기』에 실려 있는 이 설화는 나라시대(奈良時代)에 편찬된『오우미국 풍토기(近江國風土記)』에 일문(逸文)으로 전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3] 이렇게 일찍부터 문헌에 정착된, 이 자료는 지금의 시가현(滋賀縣)인 오우미국 이카고군(伊香郡) 일대에 사는 이카도미 가문의 시조의 탄생에 얽힌 설화로 정착되었다. 사에키 아리키요(佐伯有淸)의『신찬성시록(新撰姓氏綠)』의 연구에 의하면 이카도미(伊香刀美)의 조상은 아메노코야네노미코토(天兒屋命)이고, 아메노코야네노미코토의 조상은 아메노미나카누시노미코토(天之御中主尊)이라는 것이다.[34]

이러한 연구 성과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이카도미의 조상은 일본의 신화 체계에서 하늘의 세계를 나타내는 다카마노하라(高天原)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다카마노하라를 다스리는 신격들이 고구려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35] 이카도미의 조상 역시 고구려 계통의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이러한 상정을 하면서, 비파호(琵琶湖)에 인접해 있는 이카고군이 지금의 후쿠이현(福井縣)인 에치젠국(越前國)의 쯔루가항(敦賀港)에 모여진 호쿠리쿠 지방(北陸地方)의 봉물(封物)이나 관물(官物)들을 오쯔(大津)를 거쳐 야마토(大和: 나라(奈良))로 보내는 길목이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36] 그리고 이 경로가 대외적인 교통로(交通路)였다는 사실도 아울러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일본서기(日本書紀)』에 의하면, 긴메이 천황(欽明天皇) 31년(AD 570

33) 井野川潔,「天女傳說の渡來と移動」『日本文化と朝鮮』(東京, 1973, 朝鮮文化社), 145쪽.

34) 佐伯有淸,『新撰姓氏綠の硏究(硏究篇)』(東京, 1981, 吉川弘文館), 307-309쪽.

35) 김화경,『일본의 신화』(서울, 2002, 문학과지성사), 179-287쪽의 다카마노하라계 신화 연구 참조.

36) 平野卓治,「ヤマト王權と近江·越前」『古代の日本(近畿Ⅰ)』(東京, 1992, 角川書店), 316쪽.

년) 4월에 고구려의 사신이 '고시(越)'에 표류해서 도착하자, 오우미(近江)를 지나 야마시로국(山城國) 사카라카군(相樂郡: 지금의 교토부(京都府) 사카라카군을 말함: 인용자 주)의 객관(客館)[37]으로 맞아들였다고 한다. 또 7월에 고구려의 사신이 오우미국에 오자, 그 달에 사카라카 객관(相樂客館)에 묵게 했었다.[38] 그리고 비다쯔 천황(敏達天皇) 2년(AD 573년) 5월에는 고구려의 사신이 '고시'의 바닷가에 표착(漂着)한 적이 있고, 또 동 3년(AD 574년) 5월에는 고구려의 사신이 '고시'의 바닷가에 표착하여 수도로 들어온 적도 있었다.[39] 물론 이것들은 6세기의 사실을 기술한 것이기 때문에, 고구려와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을 따름이다. 하지만 이 무렵에 남 야마시로(山城)에는 고마사(高麗寺)라는 절이 있었고, 그 일대에는 지금도 위 고마(上狛), 아래 고마(下狛), 고마(高麗) 등의 지명(地名)이 남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40]

그러므로 이와 같은 표착(漂着)의 기록은 고구려에서 일본으로 건너가는 해로(海路)가 있었음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북한에서 한·일 관계사를 심도 깊게 연구한 조희승(趙熙昇)의 견해에 따르면, 아래의 지도[41]에서 보는 것처럼 고구려의 영토였던 북청(北靑)이나 원산(元山)에서 일본의 도야마(富山)나 돗도리(鳥取)로 건너가는 해로(海路)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그는 "고구려 사람들의 일본열도로의 진출은 시기적으로 볼 때는 4~5세기 이후 시기이며, 그들이 정착한 곳은 주로 일본 혼슈(本州)의 서부 해안 지역이었다. 그것은 고구려가 일본열도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37) 이것을 '고마관(高楨館)'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조희승, 『일본에서 조선 소국의 형성과 발전』(평양, 1990, 백과사전출판사), 483쪽.

38) 井上光貞 共校注, 『日本書紀(下)』(東京, 1965, 岩波書店), 128-129쪽.

39) 井上光貞 共校注, 앞의 책, 135-137쪽.

40) 조희승, 앞의 책, 483쪽.

41) 지도는 조희승, 앞에서 인용한 책의 482쪽에서 옮긴 것이다.

있을 뿐만 아니라, 고구려가 남쪽으로 진출하여 영토를 그쪽으로 크게 확장한 것이 주로 4~5세기이기 때문이다. 또한 고구려가 일본열도에 진출할 당시에는 규슈(九州) 섬과 세도 내해(瀨戶內海) 연안지역은 거의 다 백제, 가야, 신라의 세력들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지리(해류) 관계와 일본열도의 정치적 형세는 고구려 사람들로 하여금 조선 동해를 거쳐 혼슈 서부 연안 일대에 진출하게 만들었다."[42]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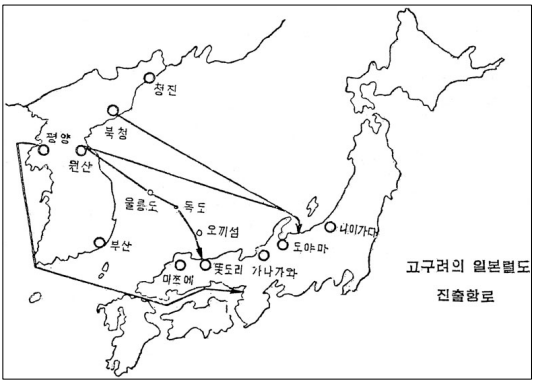

이와 같은 조희승의 연구는 고구려에서 동해의 해류를 이용하여 일본열도 혼슈(本州)의 서해안으로 진출한 집단이 있었음을 구명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추정의 근거로 이 일대를 고시(越)라고 불렀던 지명에서 찾고 있다. 곧 조 희성은 "일본열도의 혼슈 섬 가운데에서 조선 동해 연안 쪽으로 삐어져 나온 반도가 노도 반도(能登半島)이다. 예로부터 노도 반도를 중심으로 한 호쿠리쿠(北陸) 일대를 '고시(越)' 의 나라라 부르고 전, 후, 중부를 갈라서 에찌젠(越前: 후쿠이현(福井縣)), 에츄(越中: 도야마현(富山縣)), 에찌고(越後: 니가타현(新潟縣)으로 나누었다. '고시'의 나라란 일본말로 '건너온 나라'라는 뜻이다. 말하자면 그 말에는 조선에서

42) 조희승: 앞의 책, 481쪽.

건너온 나라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 그 '고시국'의 앞 바다는 오래 동안 '고시'의 바다로 불러왔다. 현재 일본에서 부르는 '일본해(日本海)'라는 명사는 고대와 중세, 심지어 근세까지 없었으며, 조선에서는 역대로 '조선동해'로 불러왔다."[43]는 견해를 밝혔다. 이렇게 본다면 자료 1의 전승이 고구려로부터 전해졌을 개연성을 인정해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추정은 『단고국풍토기(丹後國風土記)』에 전해지는 다음과 같은 설화를 통해 그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다.

〔 자료 5 〕

단고국(丹後國)의 풍토기에 말하기를, 단고국의 다니하군(丹波郡) 군청의 서북쪽 모퉁이에 히지(比治)라는 마을이 있다. 이 마을의 히지산(比治山) 꼭대기에 우물이 있어 그 이름은 마나정(眞奈井)이라고 하였는데, 지금은 이미 늪이 되었다. 이 우물에 천녀(天女) 여덟 명이 내려와서 목욕을 하였다. 이때에 노부부가 있어, 그 이름을 와나사(和奈佐) 할아버지와 와나사 할머니라고 불렀다. 이 늙은이들이 이 우물에 갔다가, 몰래 천녀 한 사람의 옷을 가져와 감추었다. 이윽고 옷이 있는 천녀들은 전부 하늘로 올라가고, 단지 옷이 없는 천녀 한 사람만이 남아서 몸을 물에 넣고 부끄러워하고 있었다.

여기에 늙은이 부부가 천녀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아이가 없소. 청하건대 천녀 당신이 우리의 아이가 되어주시오."라고 했다. (그러자 천녀가 대답하기를) "저 혼자 인간 세계에 머물면서 어찌 감히 따르지 않겠습니까? 청컨대 옷을 돌려주십시오."라고 했다. 늙은이가 말하기를, "천녀는 어찌하여 속이는 마음을 가지고 있소."라고 하자, 천녀가 "대개 하늘나라 사람들의 의지는 신의로써 근본을 삼습니다. 어찌 의심을 많이 가져 옷을 돌려주지 않습니까?"라고 하였다. (이에) 늙은이가 답하기를, "의심이 많아 신의가 없는 것은 지상(地上)의 상례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졌으니 용서하여 주구려."라고 하면서, 마침내 돌려주었다. 그리하여 (천녀는 늙은이 부부를) 따라서 집으로 돌아와 10여 년을 살았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인지 천녀는 술을 잘 빚었다. 그래서 그 술을 한

43) 조희승, 앞의 책, 482쪽.

잔 마시면 많은 병들이 다 물러갔으므로, 한 잔의 값이 수레에 쌓여 보내졌다. 때에 그 집이 풍족해져서 그 히지가타의 부자가 되었다. 그리하여 히지가타 마을이라고 한다. 이 중간 무렵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곧 히지 마을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뒤에 노부부는 천녀에게 말하기를, "너는 우리 아이가 아니다. 잠시 동안 빌려서 살았을 뿐이니 빨리 나가거라."라고 하였다. 이에 천녀가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고 땅을 내려다보며 슬퍼하면서 노부부에게 이르기를, "저는 저의 뜻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노부부가 원한 바였습니다. (그럼에도) 어찌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발하여, 갑자기 떠나는 아픔을 가지게 합니까?"라고 하였다. 늙은이는 점점 화를 내면서 나갈 것을 청했다. 천녀는 눈물을 흘리며 겨우 문밖으로 물러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인간세계에 머물러 하늘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또 친구도 없고 있을 만한 곳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라고 눈물을 닦으며 탄식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노래하기를, "하늘을 멀리서 바라보니까 안개가 자욱하게 일어나 잘 보이지 않네. 우리 집에 돌아가는 길을 알지 못해서 가야할 방향도 모르고 있네."라고 하였다.

이윽고 물러나서 아라시오촌(荒鹽村)에 이르렀다. 곧 마을 사람들에게, "노부부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제 마음은 거친 파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히지 마을의 아라시오촌이라고 하였다. 또 다니하의 마을 나키키촌에 이르러 느티나무에 의지하여 울었으므로, 나키키촌이라고 부른다. 다시 다카노군(竹野郡) 후나키 마을(船木里)의 나구촌(奈具村)에 도착하여 곧 마을사람들에 "이곳에 이르러 제 마음이 평온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에 이 마을에 머물러 살았다. 이리하여 이른바 다카노군(竹野郡)의 나구 신사(奈具神社)에 진좌하여 도요우카노메노미코토(豊宇賀能賣命)이 되었다.[44]

---

44) 「丹後國風土記曰 丹後國丹波郡 郡家西北隅方 有比治里. 此里比治山頂有井 其名云眞奈井 今旣成沼. 此井天女八人 降來浴水. 于時 有老夫婦 其名曰和奈佐老夫和奈佐老婦 此老等至此井 而竊取藏天女一人衣裳. 卽有衣裳者 皆天飛上 但无衣裳女娘一人留 卽身隱水而獨懷愧居. 奚老夫謂天女曰 吾無兒 請天女娘 汝爲兒. 天女答曰 妾獨留人間 何敢不從 請許衣裳. 老夫曰 天女娘 何存欺心. 天女云 凡天人之志 以信爲本 何多疑心 不許衣裳. 老夫答曰 多疑无信 率土之常 故以此心 爲不許耳. 遂許. 卽相副而往宅 卽相生十餘歲. 奚天女

이 문헌설화에는 백조(白鳥) 모티프가 결여되어 있고, 또 날개옷을 얻어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도 이야기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천녀(天女)가 남자의 아내가 되는 대신에 늙은이들의 아이로 양육되어 그 집을 부자로 만들지만, 뒤에는 그 집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요소는 대나무에서 딸아이를 얻었으나, 결국은 그 여식애가 달나라로 돌아갔다는 〈다케도리 이야기(竹取物語)〉[45]와 비슷한 데가 있어 관심을 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변화가 생긴 것은 풍토기의 편자(編者)가 지명(地名)의 기원을 설명하려고 무리하게 그 줄거리를 민간어원(folk-etymology)에 가깝도록 바꾸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닐까 한다.[46]

어쨌든 이렇게 그 내용이 변형된, 이 이야기는 지금의 교토부(京都府)에 해당하는 단고국(丹後國)의 나카군(中郡)에 있는 나구 신사(奈具神社)에 진좌한 도요우카노메노미코토(豊宇賀能賣命)의 연기담(緣起譚)으로 기록되었다. 그런데 이 나카군 역시 일본 서해안에 면한 단고 반도(丹後半島)에 위치한 곳이어서, 고구려와의 왕래를 쉽게 상정할 수 있는 곳이다.

특히 앞에서 이미 인용한 바 있는 고구려 사신들의 〈고시(越)〉 바다에 표류·착륙했다는 기록은 이 설화의 전승지가 고구려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증거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왜냐하면 단고 반도는 지도

善爲釀酒 飮一坏 吉萬病除之. 其一坏之直財 積車送之. 于時 其家豊 土形富 故云土形里 此自中間 至于今時 便云比治里. 後老夫婦等 謂天女曰 汝非吾兒 暫借住耳 宜早出去. 於是 天女仰天哭慟 俯地哀吟 卽謂老夫等曰 妾非以私意來 是老夫等所願 何發厭惡之心 忽存出去之痛. 老夫增發瞋願去. 天女流淚 微退門外 謂鄕人曰 久沈人間 不得還天 復無親故 不知由所居. 吾何何哉哉. 拭淚嗟歎 仰天哥曰 兒麻能波良 布理佐兼美禮婆 加須美多智 伊幣治麻土比天 由久幣志良受母. 遂退去而 至荒鹽村 卽謂村人等云 思老老夫婦之意 我心无異荒鹽者. 仍云比治里荒鹽村 亦至丹波里哭木村 據槻木而哭 故云哭木村 復至竹野郡船木里奈具村 卽謂村人等云 此處我心成奈具志久 乃留居此村 斯所謂竹野郡奈具社坐 豊宇賀能賣命也.」

秋本吉郎: 앞의 책, 466-469쪽.

45) 小山利彦, 「竹取物語」『日本昔話事典』(東京, 1977, 弘文堂), 540-541쪽.

46) 丸山林平, 『說話文學の新硏究』(東京, 1937, 藤井書店), 141-142쪽.

에서 본 해로(海路)에서 고구려의 북청이나 원산으로부터 일본의 서부 해안 일대인 도야마나 돗도리로 가던 배들이 풍랑을 만나는 경우에 착륙할 수 있는 장소였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47]

실제로 김석형은 "고구려 사람들의 일본열도에로의 진출은 위치관계로 신라, 백제, 가라 나라들보다 어려웠으리라 짐작되나 일본열도의 고시(越: 후쿠이현) 지방에서 기이 반도(紀伊半島: 지금의 와카야마현(和歌山縣)에 있음: 인용자 주)로 뻗은 일대에 고구려 유적도 보인다고 하므로, 고시 지방에나 와카사만(若狹灣) 일대에 고구려 소국이 자리 잡았을 수 있다"[48] 라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여기에서 그가 지적한 와카사만의 바로 왼쪽에 있는 것이 단고 반도이기 때문에, 이곳에 고구려 계통의 소국이 있었을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하겠다.

3. 맺음말

이제까지의 고찰을 통해, 동해를 사이에 두고 있는 한국의 동해안과 일본의 서해안 일대의 문화가 공통적인 요소를 지니는 것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환동해 문화권을 설정해도 좋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서 논의를 전개해왔다. 그러면서 그러한 예로 한국의 남부지방과 일본 규슈(九州)의 북부 지방에 존재하는 '당일우귀(當日于歸)'의 혼속을 예로 들었다. 일본에서는 야마도 시대(大和時代)에 일시적인 처가 거주혼의 형태를 취했다가, 무가 시대(武家時代)에 부가 거주혼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47) 全浩天은 발해(渤海)에서 보낸 사신들이 도착하는 일본 서부해안의 항구들 가운데 단고국(丹後國)의 오쯔항(大津濱: 교토부(京都府)의 단고반도(丹後半島)를 넣고 있다.
全浩天, 『朝鮮からみた古代日本』 (東京, 1989, 未來社), 42쪽.

48) 김석형, 『초기 조일관계사(하)』 (평양, 1988, 사회과학출판사), 87쪽.

이것은 일본 자체 내에서의 진화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처럼 일본 자체 내에서의 진화로 설명하기보다는 한국의 남부지방과 같은 문화를 가졌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화적 동질성을 가지는 요소들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성을 가질 것이라는 전제를 세웠다. 이런 전제를 세우는 경우, 일본의 호쿠리쿠 지방(北陸地方)에서 문헌에 정착된 〈가가국의 뱀과 지네가 싸우는 섬에 간 사람, 뱀을 구하고 섬에 산 이야기〉가 신라의 경역에 존재한 것도 같은 문화권에 속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환동해 문화권'의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네 개의 이야기, 곧 가야의 왕자 〈쯔누가아라시토 설화(都怒我阿羅斯等說話)〉와, 신라의 왕자 〈아메노히보코 설화(天日槍說話)〉, 〈연오랑 세오녀 설화(延烏郎細烏女說話)〉, 고구려의 〈날개옷 설화(羽衣說話) 등을 고찰하였다.

이들 설화의 고찰을 통해서, 한국으로부터 일본열도로 건너가는 해로(海路)는 상당히 여러 개가 있었으며, 또 이주 집단들도 꽤 많았다는 것을 구명하였다. 물론 본 발표에서는 가야와 신라, 고구려로부터 건너간 집단들의 설화만을 고찰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고구려로부터 일본의 노도반도(能登半島) 일대의 고시 지방과의 교류 루트는 그 후에 발해와 일본이 교류하는 루트로도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그 실상이 파악되었으면 한다는 것을 밝혀둔다.

【참고문헌】

김석형,『초기 조일관계사(하)』(평양, 1988, 사회과학출판사)
김신,「동해 표기의 역사적 전개」『경영사학(16-3)』(서울, 2001, 한국경영사학회)
김호동,「메이지시대 일본의 동해와 두 섬(울릉도, 독도) 명칭 변경 의도에 관한 고찰」『민족문화논총(43)』(경산, 2009,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김화경,『일본의 신화』(서울, 2002, 문학과지성사)
소재영,「연오 세오 설화고」『국어국문학(36)』(서울, 1967, 국어국문학회)
송병기,『울릉도와 독도』(서울, 1999, 단국대 출판부)
신용하,『독도의 민족 영토사적 연구』(서을, 1996, 지식산업사)
이병도,『한국사(고대편)』(서울, 1956, 을유문화사)
이홍직,『한국 고대사의 연구』(서울, 1971, 신구문화사)
장덕순,「한국 야래자 전설과 본 三輪山 전설의 비교연구」『한국문화(3)』(서울, 1982,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조희승,『일본에서 조선 소국의 형성과 발전』(평양, 1990, 백과사전출판사)
최남선 편,『신증 삼국유사』(서울, 1946, 민중서관)

江守五夫,「婚姻形態からみた日本海文化の諸特徵』『東アジアと日本海文化』(東京, 1984, 小學館)
金澤庄三郎,『日鮮同祖論』(東京, 1978, 成甲書房)
大林太良,『日本海文化と朝鮮·沿海州·蝦夷」『東アジアと日本海文化』(東京, 1984, 小學館)
_____, 共編:『文化人類學事典』(東京, 1994, 弘文堂)
芳井研一,『日本海という呼稱』(新潟, 2002, 新潟日報事業社)
上垣外憲一,『天孫降臨の道』(東京, 1990, 福武書店)
小山利彦,「竹取物語」『日本昔話事典』(東京, 1977, 弘文堂)
柳田國男,『日本婚姻史』
荻原淺男 共校注,『古事記 上代歌謠』(東京, 1973, 小學館)
全浩天,『朝鮮からみた古代日本』(東京, 1989, 未來社)
井上光雄 共校注,『日本書紀(上)』(東京, 1967, 岩波書店)
井野川潔,「天女傳說の渡來と移動」『日本文化と朝鮮』(東京, 1973, 朝鮮文化社)
佐伯有淸,『新撰姓氏綠の硏究(硏究篇)』(東京, 1981, 吉川弘文館)
中田薰,『古代日韓交涉史斷片考』(東京, 1956, 創文社)

津田左右吉,『古事記及日本書紀の研究』(東京, 1924, 岩波書店)
川上健三,『竹島の歷史地理學的研究』(東京, 1966, 古今書院)
崔仁鶴,『韓國昔話の研究』(東京, 1976, 弘文堂)
秋本吉郎 校注,『風土記』(東京, 1958, 岩波書店)
平野卓治,「ヤマト王權と近江·越前」『古代の日本(近畿Ⅰ)』(東京, 1992, 角川書店)
下中邦彦 編,『哲學事典』(東京, 1971, 平凡社)
丸山林平,『說話文學の新研究』(東京, 1937, 藤井書店)

< Abstract >

The East Sea Rim Cultural Area Setting and Interaction Between Korea and Japan

Hwakyong Kim

Across the east sea, the east coast of Korea and the west coast of Japan have many common cultural elements. As an example, the southern part of Korea and the northern part of Japanese Kyushu(九州) have a common traditional wedding(當日于歸), according to which the bride goes into husband's home on the wedding day. It is believed that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re are several elements of cultural homogeneity of which example is a common traditional wedding, even though another theory was claimed in Japan, that there was a custom of temporary living in wife's home in Yamato era(大和时代) and living in husband's home in Samurai era(武家时代).

On this basic premise, it can be explained that the folktale of Japan's Hokuriku(北陆地方) in which 〈A man from Gaga Kingdom arrived on the island with snakes and centipedes fighting against each other, and saved the snakes and lived on the island〉 also existed in Silla. There are another four examples of folktales which could be the base of the East Sea Rim Cultural Area Setting. They are the stories of 〈Tsnoogaarashito fable(都怒我阿羅斯等說話)〉 of the prince of the Gaya Kingdom, 〈Amenohiboko fable(天日槍說話)〉 of the prince of Silla Kingdom, 〈Yeonohrang Seohnyeo fable(延烏郎細烏女說話)〉, the Goguryeo Kingdom's 〈Wing Clothes fable(羽衣说话)〉. A study of these narratives showed that there were several sea route and a good number

of migrants from Korea to Japan.

Key Words: Korea, Japan, East Sea Rim, Cultural Area, Cultural Homogeneity, folktale, stories, 〈Tsnoogaarashito fable(都怒我阿羅斯等說話)〉, Amenohiboko fable(天日槍說話)〉, 〈Yeonohrang Seohnyeo fable (延烏郎細烏女說話)〉, 〈Wing Clothes fable(羽衣说话)〉

이 논문은 2012년 10월 25일에 투고하여
2012년 12월 5일까지 심사하여
2012년 12월 15일 게재 · 결정됨

영토 문제 넘어서기:

‘독도 문제’ 해법 시론*, **

현 대 송***

〈목 차〉

1. 서론
2.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쟁점의 검토
3. ‘독도 문제’의 문제성
4. ‘독도 문제’의 해법
5.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영토 분쟁이 심화되면서 동북아의 군비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간에 점점 분쟁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독도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논한 것이다.

우선 본고에서는 먼저 한일 양국의 영유권 문제의 쟁점에 대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본다. 즉, 역사적 근거, 국제법적 효력 및 2차 대전부터의 정치적 결정의 효력에 관한 해석에 대한 양국의 주장이 상대국에게 어느 정도의 설득력이 있는 지의 관점에서 재조명한다.

---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413-B00007).

** 본고는「독도 문제의 쟁점, 그 기원과 현황」,『한국과 일본의 역사인식』(나남, 2008), pp. 33-86.「일본사에서 보는 독도 문제의 해법」(『일본공간』 제9호, 2011년 5월, pp. 308-314) 및「3.11 동일본대지진과 독도 문제」(『독도연구저널』 제17권, 2012년 3월, pp. 44-49)를 기초로 가필한 것이다.

***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그 후, UN해양법협약 이후의 독도 문제를 영유권 문제와는 다른 차원의 감정적 대립 문제가 포함된 '독도 문제'로 설정하고, 이러한 '독도 문제'가 한일 양국 사회에 미치는 문제성에 대해서 자기비판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독도 문제'에 대한 해법의 모색에 있어서는 영토 문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16세기 다케다 신겐과 우에스기 겐신의 일화에서 보듯이 '싸울땐 싸우더라도 협력할 때는 협력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과, 한일 양국의 군사비의 0.1%를 '동아시아 역사화해와 평화를 위한 기금'과 같은 평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면 동아시아는 보다 평화로운 지역이 될 것이다는 점을 강조한다.

주제어: 독도 문제, 영토 분쟁, 분쟁 해결, 해법, 역사 화해

1. 서론

21세기에 들어 동북아 국제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심화되고 있는 동북아의 영토 분쟁은 소위 '안보 딜레마'에 따른 군비경쟁을 점점 가속화 시키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에서의 지정학적 위치와 북한 변수라는 안전보장적 제약을 안고 있는 한국은 급변하고 있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앞으로 어떠한 외교적 포지션을 취할 것이냐에 따라 국가의 영고성쇠(榮枯盛衰)가 결정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면한 문제로서 미일과 중러의 양진영이 긴장을 유지하고 있는 동북아에서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 제도(尖閣諸島)를 둘러싼 분쟁으로 정면충돌하게 되면 한국은 어느 진영에 서게 될 것인지 선택을 강요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때 한국으로서는 동북아의 긴장완화와 상생을 위해 주변국과 협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최근의 한일군사정보협정(GSOMIA) 파동에서 보듯이 과거사 문제의 앙금이 채 가시지 않은 현 단계에서 일본과의 군사협력 관계는 용이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독도 문제는 해방 후부터 줄곧 한일관계의 최대의 걸림돌이 되어 왔고

특히 지난 8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독도를 방문함으로써 촉발된 한일 간의 외교전은 한일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고 말았다. 그러나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동북아의 긴장완화와 군비경쟁 억제를 위해서는 한일 간의 협력은 필요불가결한 것이며 그를 위해서는 한일 간의 협력에 최대의 장애가 되고 있는 독도 문제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지, 해결의 방도는 없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독도에 집착하는 나머지 영토 내셔널리즘에 과도하게 경도(傾度)되어 있지 않은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에도 있다고 본다.

국경과 영토의 변경은 거의 대부분 전쟁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한국과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전쟁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미해결 상태로 긴장관계를 유지한 채 갈등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면 현재 한국과 일본이 독도를 가운데 두고 대립하고 있는 갈등 관계의 핵심은 영유권 문제이기 보다 양국의 논리의 대립이며 감정 대립의 측면이 강하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본고에서는 먼저 한일 양국의 영유권 문제의 쟁점에 대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또한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 싼 감정적 문제를 '독도 문제'로 설정하고 이러한 '독도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 사회의 문제성에 대해서 자기비판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 마지막으로 '독도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쟁점의 검토

1) 한일 영유권 논쟁사 약사(略史)

전후에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한일 양국의 중대한 외교 문제로 표면화

한 것은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이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 선언'[1]을 선포하고, 독도 외측에 '평화선'(일본명・ 이승만 라인)을 설정했을 때부터다.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 선언' 선포 열흘 후인 28일, 일본 외무성이 주일 한국대표부에 "한국은 이 선언에서 독도에 대한 영토권을 주장하는 듯하지만, 이런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2]고 항의하는 구상서(Note Verbale)를 보낸 것을 시작으로,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한일 양국 간의 구상서를 통한 공방은 지금까지 되풀이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1953년 6월, 관계 성청(省廳)을 모아 세 차례 대책을 협의하여 '다케시마 문제 대책 요강'을 결정하였다. [3] 그리고 7월 13일, 독도 영유의 근거를 이론적으로 상술한 견해를 작성하여 이를 한국 측에 송부했다. 9월 9일 한국 측이 일본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견해를 보내자, 일본 외무성 조약국은 동년 10월부터 다음해인 1954년 1월까지 독도 문제에 대해 식견을 가진 학자들을 모아 연구회를 개최하였다. 외무성은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 측의 견해에 반론하는 구상서를 작성하여 2월 10일 한국에 송부했고,[4] 9월 25일 한국 측이 재반론하는 구상서를 보내자, 당일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付託)할 것을 제의했다.[5]

1956년 9월 20일 일본 측이 제3회 견해를 밝힌데 대해, 1959년 1월 7일 한국 정부가 다시 반론을 제기했고, 1962년 7월 13일 일본 정부가 제4회 견해로 다시 반박했다.

한일 간에 국교가 정상화되기 하루 전인 1965년 12월 17일, 한국 측은

---

1) 1952년 1월 18일 국무원 공고 제14호,「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선언」, 대한민국 외무부,『대한민국 외교부 연표- 부 주요 문헌 1948-1961』, 1962, pp. 228-229 수록.

2) 외무부,『독도관계 자료집(1) 왕복 외교문서(1952-76)』, p. 1(이하 ,『왕복 외교문서』로 쓴다)

3) 일본 외무성 한일회담문서 제5차 공개 문서 (2008년 5월 2일)『XV 竹島問題』, p.8.「다케시마 문제 대책요강」은 2페이지로 되어 있으나, 제5차 공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4) 위의 문서, p. 47.

5) 한국 측은 10월 28일 거부했다.

일본의 제4회 견해에 대해 "과거 수차에 걸쳐 이미 논의의 여지가 없음이 분명해졌으며", "일본 정부가 행하는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는 어떤 주장도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6]고 하여 이를 묵살하고, 영유권 논쟁을 접었다.

국교가 정상화 된 후에는 양국 정부가 독도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쟁을 벌인 적은 없었으며, 그러한 논쟁은 민간의 학술적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2005년 3월, 시마네 현 의회가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 100주년을 맞이하여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하고, 6월에는 다케시마문제연구회를 설치하여 2007년 3월 조사연구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시마네 현이 동년 7월 이를 외무성에 제출하자, 외무성은 2008년 2월 홈페이지 상에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포인트」라는 팜플렛을 수개 국어로 게재하여 다시 한 번 한국 정부와의 독도 영유권 논쟁의 도화선을 당겼다. 이에 대해 한국 측에서 반박이 있자 외무성은 내용을 수정 보강하여 2009년 12월에 '다케시마 문제의 개요'[7]를 웹에 공개하였다. 그 후 한국 측에서도 외교통상부와 동북아역사재단을 비롯하여 관민의 각계각층에서 일본 정부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자료와 연구결과물을 내어 놓았다.[8]

이와 같이 1950년대부터 최근까지 약 60년간 전개되어온 한국과 일본의 주장은 크게 역사적 근거, 국제법적 효력, 그리고 태평양전쟁에서 한일국교정상화까지의 여러 결정 및 조치의 효력에 관한 해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역사적 근거에 있어서는 첫째, 우산도가 독도인가 울릉도인가? 둘째, 일본의 서북의 경계는 어디인가? 셋째, 안용복의 활동은 어디

---

6) 앞의 문서, p. 46.

7) 내용은 기본적으로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의 포인트』와 같으나 2008년 2월 판에 약간의 수정이 있다. 수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언급한다.

8) 가장 최근의 것으로서 김명기·이동원, 『일본외무성 다케시마문제의 개요비판 - 다케시마 10포인트 비판』, 책과 사람들, 2010년이 있다.

까지 사실인가? 넷째, 메이지 정부는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식하였는가? 다섯째, 일본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하기 전에 조선은 독도를 실제 경영하고 있었는가? 등의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국제법적 효력에 관해서는 1905년 2월 22일에 있었던 시마네 현의 독도 편입 고시의 유효성 문제가 최대의 쟁점이다. 편입결정에 관해서는 일본 측의 편입이 역사적으로 고유영토인 다케시마에 대해 국제법적으로 영유의사를 재확인 했다는 '영유의사 재확인론'과 주인이 없는 땅을 일본이 선점했다는 '무주지 선점론'에 대해 논쟁이 있다. 마지막으로 태평양전쟁에서 한일국교정상화까지의 여러 결정 및 조치의 효력에 관한 해석에서는 첫째,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의 해석. 둘째, SCAPIN-677 및 1033에 대한 해석. 셋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 (a)항의 해석. 넷째, 한일기본조약에서의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의 해석에 대해 양국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이하 간략하게 1950년대의 한일 양국 정부 간 구상서 공방과 2008년 이후의 10포인트 주장을 둘러싼 공방을 중심으로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의 주장에 대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해 본다.

2) 역사적 근거를 둘러싼 쟁점

(1) 우산도(于山島)는 독도인가, 울릉도인가?

한국의 고문헌에 등장하는 우산도가 독도인가, 울릉도인가 하는 문제는 역사적 근거를 둘러싼 쟁점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다. 우산도가 독도라는 것이 입증되면 이미 6세기부터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것이 되며 일본 정부의 영유권 주장, 즉 일본이 17세기 중반 경에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다는 것과 1905년에 독도를 시마네 현에 편입하여 독도를 영유할 의사를 재확인 했다는 주장이 근거를 잃게 되고 마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1953년 7월 13일자 제1회 견해에서, 이전에 일본과 한국 사

이에 분쟁이 있던 다케시마(竹島)는 울릉도를 말하는 것으로 현재의 다케시마(독도)가 양국 사이에서 문제가 된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9]

이와 같은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 한국 정부는 약 2개월 후인 9월 9일자 견해에서 "예로부터 울릉도는 무릉(武陵)·우릉(羽陵)이라고 불렸으며 독도는 우산도 삼봉도 등으로 불렸다"[10]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서『세종실록』(1454)과『동국여지승람』(1481)[11]의 기사를 들었지만 일본 정부는 제2회 견해에서 "한국의 문헌에 등장하는 삼봉도 혹은 우산도는 울릉도다"고 반박했다.[12] 이와 같이 우산도가 독도인가, 울릉도인가에 대해 한일 양국은 근 10년에 걸쳐 논쟁을 벌였으나 의견차의 간극이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고, 한국 측의 고문헌에 등장하는 우산도가 울릉도라는 일본 측의 주장은 현재에도 외무성의「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 포인트」에서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측이 영유권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고문헌의 기록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우선 우리가 독도가 6세기부터 한국의 영토였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삼는『삼국사기』는 1145년, 즉 12세기에 간행된 것으로, 시기적으로 600년을 거슬러 올라간 울릉도 정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으며, 과학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세종실록 지리지』(1432),[13]『고려사 지리지』(1451),『동국여지승람』(1481),『신증 동국여지승람』(1530)의 우산(于山)에 관한 기록은 본문의 내용과 다른 설을 주기(註記)에서 부언하면서 결국 본문 내용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형식이 되어 있다.『세종실록 지리지』,『동국여지승람』,『신증 동국여지승람』은 본문에서 우산과 무릉(울릉도)이 별개의 섬이라는 2도설을

9) 앞의 책, 1953년 7월 13일자 일본 측 구상서,『왕복 외교문서』, pp. 15-16.
10) 위의 책, 1953년 9월 9일자 한국 측 구상서,『왕복 외교문서』, p. 31.
11)『동국여지승람』(1481년 간행, 1486년 증산(增刪)수정, 1499년 개수)은 현존하지 않지만『신증 동국여지승람』(1530년) 안에 그 내용이 전부 기재되어 있다.
12) 앞의 책, 1954년 2월 10일자 일본 측 구상서,『왕복 외교문서』, pp. 44-45.
13) 1432년은『신찬팔도 지리지』의 간행년.『세종실록』의 간행은 1454년.

취하면서 주기에서 우산과 무릉이 본래 하나의 섬이라는 1도설을 들고 있고,『고려사 지리지』에서는 본문에서 울릉도 1도설을 취하면서 주기에서 우산 무릉 2도설을 언급하고 있다.

조선에서 우산과 울릉이 한 섬이 아니라 별개의 섬이라는 인식이 뚜렷해지는 것은 17세기 중엽 유형원의『여지지(輿地志)』(1656) 간행이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후 1756년에 저술된 신경준(申景濬)의『강계지(疆界誌)』,[14]『동국문헌비고』(1770) 등에서는 울릉과 우산을 별개의 섬으로 인식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그 중 우산도에 대해 일본에서는 송도라고 부른다(輿地志云 鬱陵于山皆于山國地 于山則倭所謂松島也)고 하여 우산도가 독도임을 말해 주고 있다. 다만, 유형원의『여지지(輿地志)』는 현존하지 않고, 신경준(申景濬)의『강계지(疆界誌)』이후에 간행된『동국문헌비고』상에도「역대국계(歷代國界)」에서는 '우산이 지금의 울릉도(于山今鬱陵島)'[15] 라고 하고 있어 우산국의 우산이 어떻게 독도를 지칭하는 우산으로 변화했는지를 명확하게 납득시키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본다면 조선의 문헌상에서 우산도가 독도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으며, 19세기 초에 간행된『만기요람(萬機要覽)』(1808)에 이르러서야 '우산도=독도'라는 등식이 흔들림 없이 성립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석도(石島)는 독도인가, 관음도인가?

대한제국 정부는 1900년 10월 25일, 칙령 제41호 "울릉도를 울도(欝島)로 개칭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하는 건"을 발포했다. 칙령 제41호 제2조는 울도 군수의 관할 구역을 '울릉 전도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로 했다. 한국 측은 여기서의 죽도는 울릉도 부근에 있는 죽서도(竹嶼島)를 가리키고 석도는 독도를 가리킨다고 주장하면서 이 칙령으로 독도가 행정구역상 울도군의 관할 하에 놓여졌다고 주장한다.[16]

---

14)『旅菴全書』卷之七「疆界誌」疆界考

15)『東國文獻備考』卷之七/ 輿地考 二/ 歷代國界 下 / 于山國

한국 정부는 제1회 견해에서 독도가 현재의 이름으로 된 것에 대해 돌 또는 바위를 의미하는 방언 '독'에서 돌섬 또는 바위섬을 의미하는 독도가 되었고, 그것이 이도(離島)를 의미하는 현재의 독도(獨島)의 발음과 같았기 때문에 한국인에 의해 독도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주장했다.[17]

독섬으로 불리던 섬이 칙령 제41호에서 석도로 실리게 된 경위에 대해서 송병기는 울릉도 시찰위원(視察委員) 우용정(禹用鼎) 등이 1900년 5월부터 6월 중순까지 울릉도 도세(島勢)를 조사하면서, 당시 전라남도 연해민들이나 도민들이 독도를 '독섬' 혹은 '돌섬'이라 부르는 것을 듣고, 이를 '석도(石島)'로 한역하여 울릉도 관제 개편안에 반영시켰다고 추론한다.[18] 또한 유미림은, 1900년 칙령을 제정하면서 현지인들이 부르던 독섬 내지 돌섬을 한자식 표기로 '석도(石島)'로 하였으나 1904년의 일본 군함 니이타카(新高)의 행동일지에 '한인(韓人)들은 독도(獨島)로 쓴다'고 기록하고 1903년에 울릉도로 부임한 심흥택 군수가 1906년 당시에 '본군 소속 독도'라고 한 것에서, 칙령의 석도가 현지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현지에서는 돌섬 내지 독섬이라는 호칭이 그대로 사용되었다고 본다.[19]

이와 같이 한국의 학자들이 석도가 독도라는 것을 어원학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한국인의 언어학적인 감각에서는 쉽게 납득이 가는 논리지만 일본인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3) 일본의 서북(西北) 한계(限界)는 어디인가?

일본 정부는 1956년 9월 20일자 제3회 견해에서 『은주시청합기(隱州視

16) 『구한국관보 제7권(하)』, 아세아문화사, 1973, p. 1113;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편, 앞의 책, p. 35.

17) 앞의 책, 1953년 9월 9일자 한국 측 구상서, 『왕복 외교문서』, p. 32.

18) 송병기, 앞의 책, p. 165-202.

19) 유미림, 「일본의 '석도=독도'설 부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해양정책연구』, 제23권 1호, 2008, p. 195.

聴合紀)』의 [隠州在北海中故云隠岐島 (中略) 戌亥間行二日一夜有松島又一日程有竹島 俗言磯竹島多竹魚鹿 此二島無人之地 見高麗如自雲州望隠州 然則日本之乾地 以此州為限矣]에서 이 주(此州)가 다케시마와 마쓰시마이며, 따라서 "다케시마 및 마쓰시마를 일본의 서북부의 한계로 본다"[20]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1959년 1월 7일자 제3회 견해에서 "은주(隱州)는 북해 가운데 있으므로 고려를 보는 것이 마치 운주(雲州)에서 은주를 바라보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일본의 서북부는 이 주(州)를 한계로 한다"는 기술의 주체는 은주이며, 은주가 일본의 건지(乾地, 서북 한계)가 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이케우치 사토시(池内敏)는 『은주시청합기』에 등장하는 66개의 '주(州)'를 모두 '구니(國)'의 의미로 읽을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이 주'를 '오키 국(隱岐国)'으로 읽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여 이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21] 다만, 오키국을 일본의 서북 한계라고 하더라도 다케시마와 마쓰시마가 조선의 영역에 속한다고는 어디에도 써 있지 않으므로 이 사료를 독도의 귀속을 보여주는 역사적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22]

(4) 안용복(安龍福)의 활동은 어디까지 사실인가?

한국 정부는 제1회 견해와 제2회 견해에서 『숙종실록』과 『증보 문헌비고』의 안용복 사건의 기술을 들어 "1696년에 안용복을 비롯한 조선의 어부는 울릉도와 독도에 가서 이 두 개의 섬이 조선령임을 알리고 일본 어선이 울릉도와 독도에 접근하지 않도록 강하게 경고했다"[23]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제2회 견해에서 "『숙종실록』의 기술은 비변사(備邊司)에서의 안용복의 진술에 의한 것으로 그 진술은 거짓말이다"[24]고

---

20) 앞의 책, 1956년 9월 20일자 일본 측 구상서, 『왕복 외교문서』, p. 143-145.

21) 池内敏, 『大君外交と"武威"』, 名古屋大学出版会, 2006, p. 351,

22) 위의 책, p. 352.

23) 앞의 책, 1953년 9월 9일자 한국 측 구상서, 『왕복 외교문서』, p. 33; 1954년 9월 25일자 한국 측 구상서, 『왕복 외교문서』, p. 82.

주장했다.

안용복의 활동에 관해서는, 한국 측은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토대로, 일본 측은 돗토리번의 이케다 가(池田家) 문서, 『인부년표(因府年表)』, 『죽도고(竹嶋考)』 등의 사료를 들어 쌍방의 주장을 전개해 왔다. 일본 측의 사료는 돗토리 번에 구속되어 있던 안용복을 어떻게 처우했는가, 그리고 요나고와 돗토리, 나가사키의 루트를 따라 송환시킨 일이 중심이 되어 있다. 그에 대해 한국 측의 사료는 안용복의 비변사에서의 진술에 바탕을 두고 있어 안용복의 족적도 오키, 호키 국, 에도막부, 나카사키, 쓰시마로 되어있어 일본 측의 기록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25] 따라서 오키에서의 안용복의 활동에 대해서는 그 진위가 불분명한 점이 많다. 그런데 2005년 5월, 안용복을 취조한 조서「원록 9 병자년 조선 배 착안 한권의 각서 (元禄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巻之覚書)」가 발견되었다.[26] 2006년 2월에 공개된 이 문서에는 안용복이 "다케시마는 조선국 강원도 동래부 울릉도이며, 마쓰시마는 울릉도와 같은 도(강원도) 안에 자산(子山)이라는 섬이다. 이 두 섬 모두 팔도지도(八道之圖) 안에 기록되어 있다"고 주장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 안용복이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를 조선 영토라고 주장했다는 사실은 일본 측 기록에 의해서도 입증되었다.

(5) 독도는 일본의 판도(版圖)안에 있었는가?

「원록 9 병자년 조선 배 착안 한권의 각서 (元禄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巻之覚書)」와 같이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령이었다는 사실은 한국 측의 기록보다 오히려 일본 측의 기록에서 보다 명확해 진다.

일본의 중앙정부는 역사적으로 두 차례 독도가 일본의 판도(版圖) 외에 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첫 번째가 1696년 1월의 '다케시마 도해금지

24) 위의 책, 1954년 2월 10일자 일본 측 구상서, 『왕복 외교문서』, p. 46.
25) 内藤正中 · 朴炳涉,『竹島＝独島論争－歴史資料から考える』, 新幹社, 2007. p. 62.
26) 〈山陰中央新報〉, 2006년 2월 15일. 원록 9년은 병자(丙子)년으로, 1696년이다.

령(竹島渡海禁止令)'이며, 두 번째는 1877년 3월의 '태정관 지령'이다. 또한 1870년의 「조선국 교제 시말 내탐서」는 메이지 정부가 당시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① 다케시마 도해금지령

1693년 3월, 오야 가(大谷家)의 배가 울릉도에서 안용복과 박어둔을 납치한 것으로 시작되어 그 후 3년 가까이 울릉도의 귀속 문제를 두고 외교 교섭을 벌인 '울릉도 쟁계(鬱陵島 爭界)' 소위 '다케시마 일건(竹島一件)은 최종적으로 에도 막부가 울릉도가 조선령임을 인정하고 일본인의 도해를 금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 과정에서 1695년 12월 24일, 에도 막부는 '다케시마(울릉도)가 언제부터 이나바 국과 호키 국에 속했는가, 다케시마 이외에 양국에 속한 섬은 있는가' 등 7개조의 질문서(「御尋の御書付」)를 돗토리 번에 보냈다. 에도의 돗토리 번저(藩邸)에서는 다음날 25일 "다케시마(울릉도)는 이나바와 호키에 부속하는 섬이 아니다"는 것과 "다케시마와 마쓰시마(독도), 기타 양국에 부속하는 섬은 없다"는 회답서(「御返答書」)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1696년 1월 28일, 에도막부는 돗토리 번에 대해 다케시마 도해를 금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② 태정관 지령

메이지 정부도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호리 카즈오(堀和生)는 메이지 정부가 지적(地籍)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1877년 일본의 국가최고기관인 태정관이 시마네 현과 내무성이 상신(上申)해온 「일본해내 다케시마 외 일도 지적 편찬 방사(日本海內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伺)」에 기초하여 당시 울릉도와 독도 두 섬을 일본령이 아니라고 공적으로 선언함으로써 독도가 조선의 판도로 인정되었다고 주장했다.[27]

27) 堀和生, 앞의 글, p. 103-104 ; 太政官編 ,『公文録』, 1877, 內務省之部 參照。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태정관 지령이 내려지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28]

내무성 지리료(地理寮)는 1876년 일본 전역의 지적을 편찬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내무성 지리료 관원(官員)이 시마네 현을 순회했을 때, 이 지역의 사람들이 에도시대에 다케시마(울릉도)에 도해한 사실을 듣고 10월 5일 시마네 현 지적편제계(地籍編製係)에 '다케시마(竹島)'라는 섬에 대한 기록과 지도 등을 조사하여 상세한 정보를 알려주도록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시마네 현 참사(參事) 사카이 지로(境二郎)는 동년 10월 16일, 에도막부의 다케시마 도해허가서, 막부의 도해금지령, 울릉도와 독도가 그려져 있는 「이소타케시마 약도(磯竹島略圖)」 등 돗토리 번의 고문서와 오야가(大谷家)의 기록을 첨부하여 품의서(稟議書) 「일본해내 다케시마 외 일도 지적 편찬 방사」를 내무경(內務卿)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 앞으로 제출하였다.

시마네 현이 내무성에 올린 품의서의 요지(要旨)는 다음과 같다.

> '다케시마는 에이로쿠(永祿) (1558년-1569년) 시기에 발견되었으며, 오야 규에몬(大谷九右衛門)과 무라카와 이치베(村川市兵衛)가 1618년부터 1695년까지 에도막부의 허가를 얻어 매년 도해하여 섬의 동·식물을 싣고 와 일본내지에서 매각한 사실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첨부하는 별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번에 섬을 실제로 직접 조사한 후에 보고해야 하나 원래 본 현의 관할로 확정된 것도 아니고 북해로 백 여리 정도 떨어져 있어 뱃길도 확실하지 않아 보통의 범선으로는 왕복할 수 없다. 따라서 오야·무라카와 양가의 기록에 따라 보고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추측하건대 관내의 오키국(隱岐國)의 북서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산인(山陰) 지방 일대의 서부에 부속한다고 본다면 본 현의 지방도(地方圖)에 기재하고 지적에 편찬할 수도 있다. 이 건을 어떻게 처

28) 이 부분은 현대송, 「태정관 지령」, 『독도대사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1), pp. 328-329.

리해야 하는지 지령을 내려주기 바란다.'

이 같은 품의서를 받은 내무성은 시마네 현의 조사보고에 추가하여 독자적으로도 겐로쿠(元禄) 연간의 '다케시마 일건(竹島一件)'에 관한 기록을 조사하여, 에도 막부가 '겐로쿠 12년(1699년) 최종적으로 일본과 관계없다'고 결론 내렸으나 '판도(版圖)의 취사(取捨)는 중대한 사건'이므로, 내무소보(內務少輔) 마에지마 히소카(前島密)는 1877년 3월 17일 태정관 우대신(右大臣)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 앞으로 「일본해내 다케시마 외 일도 지적 편찬 방사」를 제출하여 최종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내무성의 품의를 받은 태정관에서도 심사후에 내무성의 견해를 받아들여 3월 20일 다음과 같은 지령안(指令按)을 태정대신(太政大臣)에게 상신하였다.

"별지로 내무성이 품의(稟議)한 일본해내의 다케시마 외 일도 지적 편찬의 건, 위의 건은 겐로쿠 5년(1692년)에 조선인이 입도한 이래 구정부(에도 막부)와 조선국 사이에 서로 조회와 답신을 한 결과, 일본과는 관계가 없다고 결정된 일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품의한 취지를 들은 뒤 다음과 같은 지령이 있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지령안
품의한 다케시마 외 일도 건은 일본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

이 지령안은 3월 29일 태정관 우대신(右大臣)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 참의(參議) 오쿠마 시게노부(大畏重信), 데라지마 무네노리(寺島宗則), 오키 다카토(大木喬任) 등에 의하여 승인되어 내무성에 전달되었고, 열흘 뒤인 4월 9일 내무성에서 시마네 현으로 전달되었다.

③「조선국 교제시말 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

에도 막부를 무너뜨리고 근대 일본을 연 메이지 정부는 1869년 12월,

그때까지 쓰시마번이 행해 온 대(對)조선 외교를 중앙정부로 이관하는 기초 준비와 조선의 사정을 내탐하기 위해 사다 하쿠보(佐田白茅),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 사이토 사카에(齋藤榮) 등에게 14개 항목의 조사사항을 지령하고 조선에 파견했다.[29] 사다 하쿠보 등은 다음 해 4월에 귀국하여 태정관과 외무대신에게 「조선국 교제 시말 내탐서라는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한국 측은 일본 외무성과 태정관이 사다 하쿠보 일행을 조선에 파견했을 때 "다케시마(현재의 울릉도)와 마쓰시마(현재의 독도)가 조선에 부속하게 된 사정"을 조사하도록 지시한 "조선 파견 관원에 대한 조사사항 지령에 관한 품의서 및 그에 대한 태정관의 결정"과 그 보고서인 「조선국 교제 시말 내탐서」가 그 시기에 일본 정부가 다케시마와 마쓰시마를 조선의 영토로 인식한 명백한 실증 자료라고 주장했다.[30]

이에 대해 쓰카모토 다카시(塚本孝)는 "다케시마와 마쓰시마가 조선에 부속하게 된 사정"이 마쓰시마에 대해서는 "다케시마에 이웃한 섬으로, 마쓰시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게재된 문서가 없고"라고하고 울릉도에 대해서만 쓰고 있을 뿐, "다케시마와 마쓰시마가 조선에 부속하게 된 사정"에 대해서는 쓰고 있지 않으며, 표제에 대해서는 사다 일행에게 미리 준 조사 사항의 하나라고 추측되지만 "조선 파견 관원에 대한 조사 사항 지령에 관한 품의서 및 그에 대한 태정관의 결정"과 외무성이 기안해서 태정관의 결재를 받은 "조선에 파견되는 자가 명심할 것을 전달하는 안"에는 그러한 조사 사항의 명목이 없어 상세한 것은 분명하지 않다고 반론한다.[31]

---

29) 日本外務省調査部 編纂, 『大日本外交文書 第二巻 第三册』, 日本国際協会, 1938, pp. 265-269 참조.

30) 신용하 저, 한성 역, 愼鏞廈著, 韓誠訳, 『史的解明 独島(竹島)』, インター出版, 1997년, pp. 97-100;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편, 『독도 문제』, 1996, pp. 31-32.

31) 塚本孝, 『竹島領有権問題の経緯(第3版)』, 2011년, p. 4.

(6) 국제법적 견해를 둘러싼 쟁점: 1905년 시마네 현 편입과 실효적 지배를 둘러싼 문제

1904년 9월 29일, 시마네 현의 기업가인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가 내무, 외무, 농상무 세 대신 앞으로 "랸코도(島) 영토편입 및 대하원"을 제출한 것을 계기로 일본 정부는 1905년 1월 28일 다케시마의 영토 편입을 각의결정하고 2월 22일에 시마네 현에 편입했다.[32]

한국 측은 일본 정부가 나카이 요자부로의 개인적인 생각과는 전혀 별개로 러일전쟁 수행이라는 전략적 입장에서 독도를 침탈 했고, 일본의 영토편입 조치는 오히려 독도가 그 시점까지 일본의 행정관할에 속해 있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33]

또한 한국 측은 나카이가 한국 정부로부터 독도를 대여받기 위해 운동했거나 운동하려 했던 것은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 현에 편입하기 1년 전의 일이며, 이즈음 일본인이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믿고 있던 것은 독도가 본래 한국 영토라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34]

이에 대해 일본 측은 "다케시마의 편입조치는 지금까지 일본 영토로 역사적으로 믿고 있던 소속 미정의 다케시마를 근대 국제법의 형식에 따라 영유의사를 확인하여 공시한 것으로, 각의결정을 거쳐 부현(府縣)이 공시하는 것은 당시 일본의 관행(1898년의 미나미토리시마(南鳥島)[35]의 예 등)을 따른 적법한 편입 조치였고, 편입 당시도 그 이전에도 다케시마가 한국영토였던 적은 없으며 국제법상 일반적으로 조약상 특별 의무를 지는 경우(예를 들어, 콩고지역에 관한 1885년 베를린의정서)를 빼고는, 영토 취득을 타국에 통고할 의무는 국제법상 없으며 통고는 선점의 요건이

---

32) 위의 책, p. 21 ; 内藤正中, 『島根県の歴史』, 山川出版社, 1969, pp. 160-161, 田村清三郎, 앞의 책, pp. 51-52 ; 『島根県歴史大年表』, 郷土出版社, 2001, p. 465.

33) 앞의 책, 1959년 1월 7일자 한국 측 구상서, 『왕복 외교문서』, p. 194.

34) 위의 책, 1954년 9월 25일자 한국 측 구상서, 『왕복 외교문서』, p. 85.

35) 일본 본토에서 1,800 km 떨어진 일본의 최동단의 섬으로, 오가사와라(小笠原) 제도(諸島)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Marcus Island 라고도 한다.

아니다"[36]고 반박했다.

(7) 태평양전쟁에서 한일기본조약에 이르는 일련의 조치의 해석을 둘러싼 대립

①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

1943년 11월 27일, 미 · 영 · 중 3개국 수뇌가 서명한 카이로 선언은 일본이 "폭력 및 탐욕으로 일본이 약취한 일체의 지역으로부터 구축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또한 "조선 인민이 노예상태임에 유의하여 조선을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로 할 결의를 다진다"고 했다.

또한 1945년 7월 26일의 포츠담 선언은 제 8항에서"카이로 선언의 조항은 이행되어야 하며, 또한 일본의 주권은 혼슈(本州), 홋카이도(北海道), 큐슈(九州) 및 시코쿠(四國)와 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에 국한될 것이다"고 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여 연합국에 항복, 이를 법적으로 확정한 같은 해 9월 2일의 항복문서에 서명했다. 이처럼 일본의 작은 섬 중에 어느 것이 일본으로부터 분리되는지 아닌지의 결정은 연합국의 판단에 위임되었다.

이에 대한 한국 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연합국 최초의 기본 방침은 확실히 일본 영토를 청일전쟁 이전의 상태로 돌리고자 한 것이며, 1905년 일본이 한국 정부에 외교고문을 파견, 재정고문과 경찰고문까지 파견해 두고 시마네 현 고시라는 일개 지방 자치단체의 고시로 편입시킨 독도 취득은 말할 것도 없이 "폭력 및 탐욕에 의해 약취한 지역"[37]이다. 따라서 일본은 이러한 지역에서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독도는 원래 조선 영토가 아니며, 전후 일본이 반환한 지역은 1910년 8월의 한일 병합조약 당시의 한국영토이며 그 전인 1905년

---

36) 앞의 책, 1956년 9월 20일자 일본 측 구상서, 『왕복 외교문서』, p. 150; 1962년 7월 13일 일본 측 구상서, 『왕복 외교문서』, p. 246.

37) 앞의 책, 1959년 1월 7일자 한국 측 구상서, 『왕복 외교문서』, p. 198,

에 일본 영토에 편입된 지역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독도는 '폭력 및 탐욕에 의해 일본이 약취한 지역'으로서 일본에서 분리되어야 하는 지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38]

② SCAPIN-677 및 1033호

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이하, GHQ)는 1946년 1월 29일자 SCAPIN-677「일본으로부터 일정 주변지역의 통치 및 행정상의 분리」(Governmental and Administrative Separation of Certain Outlying Areas from Japan)를 발행하여 일본 정부에게 '일본 국외의 모든 지역'에 대한 정치상·행정상의 권력 행사를 정지하도록 지령했다. 본 지령의 제3항에서 일본 영토는 "홋카이도(北海道), 혼슈(本州), 큐슈(九州) 및 시코쿠(四國)와 북위 30도 이상의 류큐 제도(琉球諸島) 와 쓰시마를 포함한 약 1000여 개의 인접 제 소도로 구성된다"고 정의했다. 그리고 여기서 인접하는 제 소도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에 '울릉도와 다케시마, 제주도'가 명기되었다. 이를 가지고 한국은 SCAPIN-677에 의해 독도가 주한 미군정 당국에 이관되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함께 자동적으로 독도를 포함하는 전 영토가 반환되었다고 주장한다.[39] 또한 한국은 GHQ가 1946년 6월 22일 SCAPIN-1033 "일본의 어업 및 포경업 허가 구역에 관한 각서"에서 일본의 선박 및 국민이 독도의 주변 12해리 이내에 접근하거나 다케시마에 접근하는 것을 금했다. 이는 독도가 한국 영토이기 때문에 일본 어부와 선박이 접근할 수 없도록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40]

이에 대해 일본 측은 SCAPIN-677은 GHQ의 권한에 비추어 볼 때 일본 영토에 대한 규정이 아닌 행정상의 임시 조치임이 명백하고, 이 지령에서도 "이 지령 중의 조항 어느 것도 포츠담 선언의 제 8항에 있는 제 소도의

38) 위의 책, 1956년 9월 20일자 일본 측 구상서,『왕복 외교문서』, p. 153.
39) 위의 책, 1953년 9월 9일자 한국 측 구상서,『왕복 외교문서』, p. 38.
40) 위의 책.

최종 결정에 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SCAPIN-1033의 제 5항에서도 "이 허가가 해당구역 또는 그 외의 어떤 구역에 대해서도 국가 관할권, 국경선 또는 어업권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을 표명한 것이 아니다"고 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41]

③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

대일평화조약의 성립과정에서 독도의 귀속문제는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으로도 19차례나 변화를 거듭했다.[42] 1947년 3월 19일 성안된 조약안 제1차 초안부터 1949년 11월 2일자의 제5차 초안까지는 한국영토로서 명기되어 있다가 12월 8일자의 6차 초안부터는 일본의 영토로 귀속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1951년 들어 미국과 영국이 공동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부터는 독도가 조약안에서 빠져, 최종적으로는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에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여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결정되었다.[43]

일본은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에 독도가 빠져 있고, 대일평화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의 독립을 승인했으나 합병 이전의 일본 영토를 한국에 양도한다는 내용은 조약에 전혀 없으며,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44]

이에 대해 한국 측은 제2조 (a)가 일본에서 분리되는 모든 도서를 열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한국의 도서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뿐만이 아

41) 위의 책, 1953년 7월 13일자 일본 측 구상서, 『왕복 외교문서』, 17-18면; 1956년 9월 20일자 일본 측 구상서, 『왕복 외교문서』, pp. 151-152.

42) 이석우,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독도의 영토 처리 과정에 관한 연구」, 『북방사논총』 제7호 (2005. 10), pp.107-141.

43) 졸저, 앞의 책, pp. 72-80.

44) 앞의 책, 1953년 7월 13일자 일본 측 구상서, 『왕복 외교문서』, p. 19.

니라는 사실에 비추어보아도 명백하며, 또한 그런 논리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한다면 한국의 제주도와 거문도, 울릉도 이외의 모든 섬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할 것인가[45] 하고 반문하였다. 또한 SCAPIN-677이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규정한 사실을 강화조약이 부정하려면 명시적인 규정이 필요하지만 이 조약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46]

한편 일본 측은 1951년 7월 한국의 주미 대사가 대일강화조약 개정 영미(英美) 초안 제2조 (a)항에 대한 한국의 수정요구를 미국 국무장관 앞으로 제출했으나, 미국 국무성이 수정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볼 때 SCAPIN-677에 의한 분리와 모순되는 규정이 없는 이상, 평화조약 체결 당시의 현실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한 한국의 주장은 틀린 것이며, 또한 거꾸로 평화조약상으로 독도는 일본이 소유한 섬으로 확정되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일본 측은 1952년 2월 28일 조인된 미일안보조약의 제3조 행정협정에 따라 미일합동위원회의 미일 대표 간에 결정된 1952년 7월 26일의 "시설과 지역의 군사적 사용에 관한 결정"에 의해 미 공군의 사격 연습장으로 사용되었고, 1953년 3월 19일, 미일 통합위원회의 분과위원회가 독도를 사격연습장에서 제외한 것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사실을 전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47]

이에 대해 한국 측은 그 전제라는 것은 일본 정부의 '자위(自慰)적 해석'에 지나지 않으며 미 공군 사령관은 한국 정부의 항의로 1953년 2월 27일자로 미 공군의 사격 연습장에서 독도를 제외했음을 한국 정부에 공식 통고했다고 지적하고 있다.[48]

---

45) 위의 책, 1953년 9월 9일자 한국 측 구상서, 『왕복 외교문서』, p. 39.
46) 위의 책, p. 38.
47) 위의 책, 1953년 7월 13일자 일본 측 구상서, 『왕복 외교문서』, pp. 19-20.
48) 위의 책, 1953년 9월 9일자 한국 측 구상서, 『왕복 외교문서』, pp. 39-40.

④ 한일기본조약의「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 공문」

한일 양국은 1965년 4월 3일, 어업, 청구권, 재일 한국인의 법적지위 및 경제협력에 관해 우선 합의요강(合意要綱) 형식으로 가조인하기에 이르렀다. 합의사항에 서명한 후 사토 에이사쿠(佐藤栄作) 수상은 이동원 외무부 장관에게 "한일 간에 남은 이야기는 독도 문제뿐이며, 이는 국교 정상화 전에 해결 목표를 세우고 싶다"[49]고 말했다.

한일 기본조약 조인을 5일 앞둔 6월 17일, 제 협정안의 조문화 교섭이 최종 단계로 들어가 독도 문제 해결을 위한 조문화 교섭이 시작되었다. 그때 우시바 심의관은 총 5조로 구성된 '분쟁 해결에 관한 의정서'안을 김동조 대사에게 제시했다. 이를 본 김동조 대사는 제1조에서 독도를 특기(特記)한 것과 제4조에서 중재위원회의 재정에 구속력을 준다는 데 반대의견을 표시했다.[50]

당일, 한국 측은 독도를 명기하지 않고, 양국 간의 분쟁에서 외교상의 경로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양국이 합의하는 제3국에 의한 조정(調停)에 의해 해결을 도모한다는 취지의 '교환공문안'을 제시하였다.[51] 다음 날 일본 측은 의정서 안을 철회하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지 못한 때는 중재위원회에 맡긴다는 취지의 교환공문안을 한국 측에 제시하였다. 이로서 한국의 제3국 조정안과 일본의 중재위원회안이 맞서는 형태가 되었다.

한일기본조약의 조인을 위해 이동원 장관이 6월 20일 방일, 다음 날인 6월 21일, 시이나 에쓰사부로(椎名悦三郎) 외상과 이동원 장관 사이에 제1회 외상회담이 열렸다. 이때 일본 측은 독도 문제 해결에 관한 일본 측 최종안을 제시했다. 이 안은 17일의 한국안에 가깝게 '제3국에 의한 조정'을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중재에 부탁'하는 것으로 바꾼 점이 큰 차이였다.

---

49) 일본 외무성 한일회담문서 제5차 공개 문서 (2008년 5월 2일)『XV 竹島問題』, p. 215-216.

50) 위의 문서, pp. 220, 220-2.

51) 위의 문서, p. 226.

52) 회담 석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화가 있었다.

> 이동원 장관: 박 대통령은 독도 문제를 한일회담의 의제 밖으로 하도록 지시했으며 동시에 본 건은 한국 정부의 안정과 운명에 관계되는 중대 문제이며, 만일 한국 측이 수락할 수 있는 해결책이 없다면 한일회담을 중지해도 좋다고까지 했다.
>
> 시이나 외상: 일본 측으로서는 독도를 포함한 일괄 해결은 지상명령(至上 命令)이다.
>
> 이동원 장관: 일본 측으로서도 섬 자체의 가치에 실리가 있는 것은 아닐 것이므로, 어떻게든 서로 국회에서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을 내놓았으면 한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독도'문제로서 특기(特記)하는 일은 절대로 곤란하다.[53]

그날 밤, 김동조 대사, 연하구 아주국장, 우시바 노부히코(牛場信彦) 심의관, 우시로쿠 도라오(後宮虎郎) 아시아국장 사이에 독도 문제의 처리에 대해 실무적인 교섭이 있었다. 이때 한국 측에서는 "중재(仲裁)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조정(調停)'이 겨우"라는 것과, 한일 간에 현존하는 분쟁은 제외하고, 한일 간에 '장래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만 분쟁 해결 절차를 규정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독도 문제를 제외할 수 있는 의미의 조문을 제안했다. [54]

이는 일본 측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으며, 적어도 중립적인 표현을 취하여 '한일 간의 분쟁'이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한국 측은 한일 간에 '생기는' 분쟁이라는 표현을 고집하여, 이 교섭은 타협을 보지 못한 채 결국 다음날 시이나 외상과 이동원 장관의 회담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55]

---

52) 위의 문서.
53) 위의 문서, pp. 236-237.
54) 위의 문서, p. 239.
55) 위의 문서, p. 240.

6월 22일 오전 제2회 한일외상 회담이 개최되었다. 이 때 한국 측은 종래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 부속의 교환공문'이라는 명칭을 '한일 양국간의 분쟁의 평화적 처리에 관한 교환공문'이라고 바꿨다. 회담에서 이동원 장관은, 독도 문제에 관해 박정희 대통령과 전화로 연락한 결과라며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 공문의 문언을 '양국간에 발생하는 분쟁'으로 하고, 문언 중에서 '중재'를 삭제하고 싶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56]

일본 측은 '발생하는'이란 문구를 넣는 것을 거부하고, 한국 측이 '양국간의 분쟁'이라는 안을 받아들일 경우는 '중재'를 빼고 '조정'으로 할 수 있음을 제안했다.[57] 결국 이 최후의 사고방식을 잠정적인 결론으로 하여 일본 측은 이 문제를 총리 레벨까지 가져가게 되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총리 레벨까지 가져가는 것은 어디까지나 한국의 국내 정치를 고려한 쇼였으며, 김동조 대사는 이 시안(試案) 그대로 결정해도 어쩔 수 없다는 뜻을 암시했다.[58]

6월 22일 오후 4시 15분부터 사토 수상과 이동원 장관이 최후의 담판을 가졌다. 오후 5시로 예정된 조인식을 불과 45분 남긴 시점이었다. 이때 일본 외무성에서는 만일에 대비하여 조인용 교환공문으로 '양국 간에 발생하는 분쟁'이라는 안과 '양국 간의 분쟁'이라는 안을 준비했다.[59]

회담에서 이동원 장관은, 독도 문제에 언급하여 "이에 대한 일본 측의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한국으로서는 특별한 국내 사정도 있어, 이것은 다이나마이트 같은 것이다. 한국의 야당과 대중들은 일본 야당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위협적이므로, 독도 문제는 정부의 사활이 걸린 문제임을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지금까지 일본 측 제안은 원안과 비교하여 상당히 양보해주었으나, '양국 간에 발생하는 분쟁'처럼, '발생하는'이라는

56) 위의 문서, p. 245.
57) 위의 문서.
58) 위의 문서.
59) 위의 문서, p. 246.

말을 삽입해주었으면 한다. 지금까지 외무성 사무당국과의 교섭에서 이 점만 남기고 타결했으므로, 이 번에 총리의 마지막 결단으로 '발생하는'이라는 문구를 넣어주었으면 한다"고 간청했다.[60]

그러자 사토 수상은 "독도 문제는 일본으로서도 중대 문제이며 지금까지의 일본 측 안(案)조차 자신의 예상을 넘은 양보이므로, 자신으로서는 불만이지만 대국적 견지에서 이를 승인하기로 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의 양보는 불가능하다"[61]고 말했다. 그러자, 이동원 장관은 "그러면 할 수 없다, 일본 측 최종안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한 다음, "한국 측 대표단이 귀국한 후에 본건을 납득하기로는 독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말하는 일이 있더라도, 일본 측이 공식적으로 바로 반론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 우리 운명에 관계된다. 더구나 일본에서 후일 국회에서 독도를 포함한다는 뜻의 답변을 삼가달라고까지 부탁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하여 사토 수상은 알았다고 답변하였다.[62]

이렇게 해서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 공문」은, 한일조약 제 협정 조인식의 25분 전에 확정되었다. 최종적으로는 "양국 정부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국 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며, 이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는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조정에 의해 해결을 도모한다"라고 하는 극히 기계적인 문언으로 낙착을 보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당시 양국 정부는 한일회담의 타결을 우선하여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애매모호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마침내 국교를 정상화하였다. 그러나 이때 남긴 '독도 문제'의 불씨가 지금까지 한일 양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

60) 위의 문서, p. 246-247.
61) 위의 문서, p. 247.
62) 위의 문서, p. 248.

3. '독도 문제'의 문제성

1) 고유영토론의 문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산도가 독도의 옛 이름이며 따라서 독도는 6세기부터 한국 땅이라는 주장은 17세기 중엽 이후부터 형성된 인식이다. 1530년 편찬된『신증 동국여지승람』까지 우산과 울릉이 한 섬일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있었지만,『여지지』(1656) 이후의 기록들에서 부터 울릉 우산 2도설과 우산=마쓰시마, 울릉=다케시마라는 등식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우산도가 독도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과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것은 한국 측의 기록보다 일본 측의 기록에서 보다 명확히 밝혀진다. 일본 측의 기록 즉, 독도에 대한 일본의 최초의 간행기록인『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紀)』(1667)는 일본의 서북의 경계를 오키 섬으로 하고 있고, 에도 막부의「다케시마 도해금지령(竹島渡海禁止令)」(1696)의 제정과정에서 막부(幕府)로부터 돗토리 번(鳥取藩)에 내린 질문에(「御尋の御書付」)에 대해 울릉도와 독도가 돗토리 번에 속한 섬이 아니라고 대답한 돗토리 번의 회답서(「御返答書」),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령이라고 한 외무성 보고서「조선국 교제시말 내탐서(朝鮮国交際始末内探書)」(1870), 그리고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한 태정관 지령(「日本海内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伺」(1877))등에 의해 독도 영유권 문제의 역사적인 근거에서는 한국 측의 영유권 주장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세계사적 관점 및 근대 국제법과 국제정치학 적인 관점에서 영토 문제를 살펴보면 고유영토론은 문제가 많은 개념이다. 실례로 폴란드의 역사를 살펴보자. 1492년경에 한반도의 5배 크기로 유럽 최대의 국가였던 폴란드는 300년 뒤, 프러시아, 러시아, 오스트리아 3국에 합병되면서

지도상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1차대전 후인 1918년 제2공화국으로 독립했으나 1939년에 다시 서부지역은 독일에 동부는 소련에 분할 점령되었다가 1945년 해방되었고, 줄곧 러시아의 영향권 하에 있다 1989년 제3공화국으로 재탄생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정치의 관점에서 영토는 불변한 것이 아니라 가변적이다. '고유영토론'은 신화에 가깝고, 지금 우리의 영토가 영원히 우리의 영토라는 보장도 없다.

2) '독도 문제'가 야기하는 문제

1950년대에 독도를 둘러싸고 한일 양국이 벌인 공방이 독도의 영유권을 다툰 것이라면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특히 1990년대 이후의 한일 양국의 공방은 그와는 차원이 다른 '독도 문제'이다. 즉, 독도를 둘러싸고 한일 간에 벌어지는 갈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을 '독도 문제'로 설정하는 경우 '독도 문제'의 기원은 1982년 UN해양법협약에 있다.

특히 1996년 UN해양법협약 발효 후에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획정문제로 '독도 문제'가 한국사회에 일상화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독도가 자기목적화되어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말았다. 1996년 이후 독도가 부각되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냉철하게 국익을 판단해야할 정치가들은 국민의 반일감정에 편승하여 반사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했고, 기업은 애국심 마케팅에 열을 올렸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우리가 실효 지배하고 있는 영토를 해외에 광고까지 하면서 굵어 부스럼을 만들어 왔다. 매스미디어와 학계 역시 과도한 영토 내셔널리즘에 대한 비판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야기되는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우선 '독도 문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한국사회의 다원성이 저하되는 문제이다. 이는 국가의

품격과도 관계되는 문제로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는 문제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독도를 한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나이토 세이추(内藤正中) 교수가 그간의 학문적 공적을 인정받아 2008년에 서보중수장(瑞宝中綬章)을 서훈(敍勳) 받은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두 번째는 언설공간의 편향성 문제이다. '독도 문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결국 정치적 상상력이 빈곤해지고 장기적으로는 '독도 문제'를 평화적이고 건설적으로 해결하기가 점점 어려워 질 수도 있다.

4. 독도 문제의 해법

1) 인식의 전환

위에서 서술한대로 영토 문제는 본질적으로 그 해결이 용이하지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무작정 손을 놓고 바라볼 수도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글로벌 시대에는 육지나 바다 같은 하드 영토(Hard Territory)보다 문화 영토나 경제 영토와 같은 소프트 영토(Soft Territory)의 확장이 중요한 시대로서 그러한 시대에 걸맞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다음 변경(Frontier)에서 국경(Border)으로의 발전이라는 세계사적 관점, 근대 국가, 근대 국제법 체계에서의 국경(国境)과 영토라는 관점에서 '독도 문제'를 부감(俯瞰)한다면 '고유영토론'과 영토 내셔널리즘에 대한 비판적 사고도 가능해 지고, 한국 측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일본뿐만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더욱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일본사에서 보는 독도 문제의 해법

일본에는 “적(敵)에게 소금을 보낸다”는 말이 있다. 16세기 말엽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천하통일을 꿈꾸던 무장(武將) 다케다 신겐(武田信玄)과 그의 숙적 우에스기 겐신(上杉謙信)의 일화에서 나온 말이다.

먼저 당시의 시대상황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467년 무로마치 막부(室町幕府) 8대 쇼군(將軍) 아시카가 요시마사(足利 義政)의 후계문제로 인하여 “오닌의 란(応仁の乱)”이 발생하였다. 요시마사의 동생 요시미(義視)와 요시마사의 아들 요시히사(義尙)가 9대 쇼군의 계승을 둘러싸고 대립하자 쇼군 다음가는 최고위직인 관령(管領) 호소카와 가쓰모토(細川勝元)와 유력 수호 다이묘(守護大名) 야마나 모치토요(山名持豊)[63] 등 막부의 실력자 들이 양 진영에 가담하여 동군(東軍), 서군(西軍)으로 나뉘어 패권을 다투게 된 것이었다. 1477년 양군의 화의가 성립하였으나 약 11년간에 걸친 내란을 겪으면서 쇼군의 권위가 실추되고 쇼군의 지배영역도 야마시로(山城, 현재의 교토부 남부지역) 한 곳에 불과하게 되었다. “오닌의 란” 이후 막부, 즉 중앙의 지배력이 쇠퇴하게 됨에 따라 각 지방에서는 중앙에서 파견된 수호 다이묘를 축출하는 하극상이 속출하고 군웅이 할거하는 전국시대(戰國時代)로 돌입하였다. 이때부터 16세기 말엽까지 약 110년간 일본에서는 전국 다이묘(戰國大名)라고 불리는 무장들이 약 70개 정도의 영국(領國)을 형성하여 합종연횡하면서 항쟁하였다.

그런데 1543년 일본에 철포(鐵砲)가 전래되면서부터 전쟁의 양상이 달라진다. 칼과 화살에서 총으로 병기가 바뀌고 농업에 종사하던 무사들이 직업군인화하여 상비군으로 편성되면서 전쟁이 점점 치열해졌고, 패전한 다이묘들은 도태되게 되었다. 이리하여 난립하던 소국들이 통합되는 과

63) 야마나 소젠(山名宗全)이라고도 한다.

정을 거치면서 일본은 점차 전국통일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

에치고(越後, 현재의 니가타현)의 영주 우에스기 겐신(1530-78)은 14세 때 첫 전투에 참전한 이래 49세에 병사할 때까지 수백회의 전투를 지휘했으며, 스스로 진두에 서거나 적성(敵城) 공략에 나선 횟수가 70여 차례에 이르러 "에치고의 호랑이"라고 불린 맹장이었다. 불심이 깊어 불교 4천왕 중 북방을 수호하는 비사문천왕(毘沙門天王)을 자처하여 전장에서는 「毘」자를 새긴 군기를 걸고 싸웠고, 약자는 돕고 강자는 꺾는, 의리가 강하고 정의를 중요시한 명장으로 평가 받는다.[64]

한편 우에스기의 숙적으로 "가이(甲斐)의 용(龍)" 또는 "가이의 호랑이"로 불리우던 다케다 신겐(1521-73) 역시 '무적 다케다 기마군단'이라는 말이 상징하듯 전국시대 무장 중에서도 최강으로 꼽혔고, 제1급의 군사전략가요 정치가로 일컬어진다.[65] 21세에 폭정을 일삼던 부친 노부토라(信虎)를 추방하고 스스로 가이(甲斐, 현재의 야마나시 현[山梨縣) 영주가 된 후 시나노(信濃, 현재의 나가노 현[長野縣)를 제압하여 영지를 확대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케다는 시나노의 호족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우에스기와 대립하게 되었고, 결국 양자는 1553년부터 1564년 사이에 시나노 북부의 지배권을 놓고 5차례 용호상박의 격전을 치르게 되었다.

다케다는 남동쪽으로 국경을 접한 사가미(相模, 현재의 가나카와 현[神奈川縣)의 영주 호조 우지야스(北條氏康)에게는 딸을 시집보냈고, 남서쪽으로 이웃한 스루가(駿河, 현재의 시즈오카 현[靜岡縣)의 영주 이마가와 요시모토(今川義元)로 부터는 그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여 가이(甲斐), 사가미(相模), 스루가(駿河)의 삼국동맹, 소위 '고소슨 삼국동맹(甲相駿三国同盟)'을 맺고 있었다. 그런데 이마가와 요시모토가 죽자 다케다는 영토 확대를 꾀해 13년간에 걸친 동맹을 파기하고 1567년 스루가를 침공하였

64) 桑田忠親, 「上杉謙信一孤独に生きた越後の名将」, 百年社編, 『戦国の武将二百七傑: 北条早雲から徳川家康まで戦乱の中の群雄』 (新人物往来社, 1977), pp. 80-85.

65) 染谷光廣, 「武田信玄一第一級の軍略·政治家」, 위의 책, pp. 74-79.

다. 그러자 스루가의 이마가와 우지자네(今川氏眞)는 자신의 장인인 사가미의 호조 우지야스에게 협력을 요청하여 태평양 쪽에서 다케다의 영지로 소금이 반입되는 것을 봉쇄하였다. 다케다의 영지는 내륙에 있어 소금을 채취할 수 없기 때문에 취한 전략이었다. 갑자기 소금의 반입이 끊기자 다케다의 백성들은 곧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이때 다케다에게 소금을 보내 준 것이 동해 바다와 면해있는 에치고의 우에스기였다. 영지의 존립과 천하통일을 위해 서로 사활을 건 전쟁을 치르고는 있지만 상대국 백성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았던 우에스기의 일화에서, 경쟁하는 상대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 약점을 이용하지 않고 오히려 돕는다는 의미로 "적에게 소금을 보낸다"는 말이 나왔다.

일본이 공전절후의 지진피해를 입은 지 약 3주 후인 2011년 3월 30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기술한 중학교 지리교과서와 공민교과서에 대한 검정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미 2008년 7월 문부과학성이 "한국과의 사이에 다케시마(竹島)를 둘러싸고 주장에 서로 다른 점이 있다는 것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여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 영역에 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명시한 '중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을 발표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만들어진 교과서가 독도를 일본영토로 기술하리란 것은 미리 예견된 일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중학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이틀 후 당시 간나오토(菅 直人) 내각은 각의에서 "일한간에는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유권의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다케시마에 관한 일본정부의 입장은 일관하고 있다"고 기술한 외교청서를 승인하였다. 그리고 8월의 첫 각의에서는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채 존재하고 있다"라고 기술한 2011년판 일본의 방위백서를 승인했다. 일본 정부가 독도를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 정부와 국민이 아무리 반발해도 이러한 일들은 매년 되풀이 되며 한일관계를 악화 시킬 것이다.

독도 문제는 1950년대 초반부터 한일양국의 중대한 외교 문제가 되어 왔으며 이미 일본의 외교청서는 1963년부터, 방위백서는 1978년판부터 독도 문제에 대해 언급해 왔다. 1993년부터 일본의 일부 교과서는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기해 왔다. 검정결과 발표 다음날 있었던 특별기자회견[66]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기자의 질문에 대해 밝힌 것처럼 '천지개벽을 두 번해도' 우리의 영토인 독도이지만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주장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본 정부로서도 더 이상 뒤로 물러 설 수도 없고 발을 뺄 수도 없는 입장이다. 그것이 영토에 대한 국가의 논리이며 국제정치의 현실인 것이다.

동일본 대지진 발생이후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피해자 지원의 움직임이 일본 중학교과서 검정발표와 외교청서의 영향으로 반전하여 일본 사회를 비난하는 여론이 증대했다. 그러나 독도 문제와 지진 피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같은 문제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다케다는 천하통일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 교토로 진군하다 도중에 병사하고 말았지만 아들에게 '겐신은 부탁하면 반드시 도와주는 사람이다. 나는 겐신에게 의탁하지 않아 평생 그와 싸우게 되었으나 가이 국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겐신에게 의지하는 것이 좋다'고 유언했다.

위와 같은 예와 같이 한국은 독도 문제로 일본과 싸우더라도 일본이 천재지변 등으로 대재앙에 처했을 때는 이웃 국가로서 인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다.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한국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기억이 궁극적으로는 독도에 대한 한국 측의 주장을 수용하는 여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미칠 것이다.

---

66) 대통령선거의 공약사항이었던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입지 선정 최종 평가결과, 백지화 된데 대한 기자회견.

3) 한일 군사비의 0.1%를 평화인프라 구축비로 전용

최근 동북아의 영토분쟁이 심화되고 각국에 강성 정부가 들어서면서 군비경쟁이 심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통계에 의하면 2011년 세계 각국이 지출한 군사비는 1조 7,380억 달러에 달하며, 그 중 미국이 7,110억 달러로 전체 군사비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다.[67]

다음으로 군사비 지출이 많은 국가는 중국으로 1,429억 달러 (9,230억 위안)로 2011년 국가예산 9조 7,900억 위안의 9.4%, GDP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은 593억 달러 (4조 7,750억 엔)로 국가예산 92조 4,116억 엔의 약 5.2%, GDP의 1.0%를 지출하고 있으며, 한국은 308억 달러 (34조 1,130억 원)로 국가예산 309조 6,000억 원의 약 11%, GDP의 2.7%를 지출했다. 한중일 3국의 2011년 군사비 합계는 2,330억 달러, 한일 양국의 군사비 합계는 901억 달러에 해당한다.

이러한 한일 군사비의 0.1%만이라도 '동아시아 역사화해와 평화를 위한 기금'과 같은 동아시아의 평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면 동아시아는 보다 평화로운 지역이 될 것이다.

67) SIPRI Yearbook, 2012. (http://www.sipri.org/yearbook/2012/2012/files/SIPRIYB12Summary.pdf)

표) 세계 각국의 군사비 지출 현황(2011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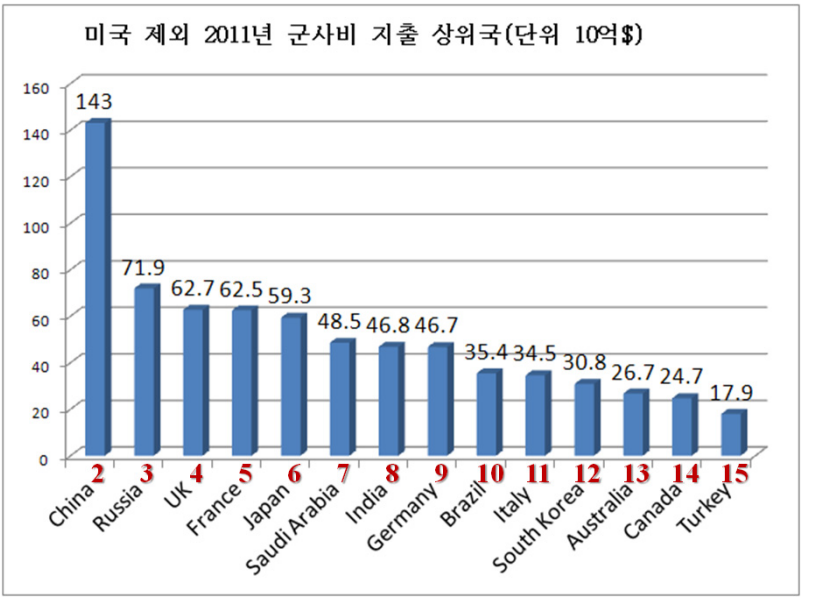

출전: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http://www.sipri.org/databases/milex/>

5. 맺음말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의 논전에서 1905년의 독도 편입조치는 한국 정부의 외교권과 재정권이 박탈되고, 러일전쟁으로 일본군이 조선에 상륙했을 때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다[68]고 거듭 밝혔듯이, 한국에서는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조치를 한반도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정의 일환에서 이루어 진 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강점과 독도영토 편입을 전혀 별개의 사안으로 본다. 독도영토편입 100년을 맞이한

68) 1953년 9월 9일자 한국 측 구상서, 『왕복 외교문서』, pp. 34-36 ; 1954년 9월 25일자 한국 측 구상서, 『왕복 외교문서』, p. 87.

2005년의 시마네 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제정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전후 60년이 지난 지금도 독도 문제를 보는 기본적인 역사인식에서부터 한일 간에는 메꿀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한다.

또한 한일 양국의 일국주의 역사관도 문제를 더욱 해결 곤란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 한일 양국 정부의 약 10년에 걸친 논전에서 보아 왔듯이 한일 양국의 사료해석은 각자에 유리한 사료의 일부분만 편취되어 아전인수적으로 이용되거나, 자국의 사료와 모순될 경우는 무시되는 것이 많다.

이와 같이 독도 문제를 보는 역사인식과 역사관에 한국과 일본이 서로 다른 시점에 서있어, 이러한 아포리아를 해결할 수 있을 단초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현 단계에서 유일한 평화적 해결 시스템인 국제사법재판소는 '제소 없이 소송 없다(ne procedat judex ex officio)'가 원칙이다. '제소'에는 양국 정부의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이에 응할 리가 없으므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한 해결은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국제연합헌장은 안전보장이사회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분쟁 당사자에게 "법률적 분쟁이 국제사법재판소 규정(規定)에 따라 당사자가 원칙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권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권고는 1947년 4월에 한번 행해졌을 뿐, 그 후로는 전혀 기능하지 않고 있다.[69] 이렇게 되면 일본 측으로서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법적인 관점에서는 평화적 해결을 제안한다는 것 외에 적극적으로 유효한 항의를 반복하는"[70] 수밖에 없다. 한일회담 시에 일본 측에서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할 것을 집요하게 제안한 것도 한국의 실효지배에 대해 "저지적 가치를 보유한다"[71]고 생각

69) 영국과 알바니아 사이의 코르푸 해협 사고에서 1947년 4월에 행해진 안보리 결의 22호. (Security Council Resolution of 9 April 1947[S/324])

70) 芹田健太郎, 『日本の領土』, 中公叢書, 2002, p. 162.

71) 皆川洸, "竹島紛争と国際判例", 『前原光雄教授還暦記念—国際法学の諸問題』, 慶応通信, 1963, pp. 347-371.

했기 때문이다. 일본 측에서 보면, 당연한 이런 정책은 한국인으로 하여금 일본 식민지 통치라는 굴욕적인 역사에 대한 기억과 직결되어 반일 감정의 심연을 자극하고 있다. 또한 한국인에게 독도는 단순한 하나의 섬이 아니라 '한국 독립의 상징,' '일본에 대한 한국 주권의 상징'[72] 그 자체이기 때문에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측의 어떠한 발언도 한국인에게는 일종의 침략 행위, 한국의 주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독도는 이미 우리가 확고하게 실효지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의 최선책은 독도 문제가 현 단계의 수준보다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나올 때마다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에서는 실효지배 강화책을 앞 다투어 내놓고 있다. 대부분이 서로의 대응 수위만 높이는 우책이며 쓸데없는 예산 낭비에 불과하다.

영토 문제에 대한 한일 간의 온도 차이는 상당하다. 일본 사회는 독도 문제의 관점으로만 한국 사회를 보지 않는다. 일본 사회에서는 독도 문제를 근린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 대 국가의 외교 문제의 하나로, 또한 법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 일례로 일본에서 독도에 대해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시마네 현은 1989년 경상북도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그러나 2005년 시마네 현이 소위 '다케시마의 날'조례를 제정하자 경상북도는 시마네 현과의 결연을 즉각 파기하였다. 시마네 현은 곧 경상북도와의 자매결연 복교를 요청했으나 경상북도는 지금까지 완강하게 거절하고 있다. 영토를 두고 목숨을 걸고 싸우더라도 때로는 '적에게 소금을 보내는' 일본인들의 의식과 호오(好惡)가 분명한 한국인의 의식의 차이를 엿볼 수 있다. 한국 측에서는 독도 문제로 일본을 전체부정(全體否定)할 것이 아니라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협력할 때는 협력하는 것이 국익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길이기도 할 것이다.

---

72) 1954년 10월 28일자 한국 측 구상서, 『왕복 외교문서』, p. 119.

특히, 한반도를 둘러 싼 국제정치 환경이 불안정한 현재적 상황에 있어서는 영토 문제의 편협한 시각을 벗어나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대국적인 관점에서 '독도 문제'를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대한민국 외무부,『대한민국 외교부 연표- 부 주요 문헌 1948-1961』
외무부,『독도관계 자료집(1) 왕복 외교문서(1952-76)』
일본 외무성 한일회담문서 제5차 공개 문서 (2008년 5월 2일) "XV 竹島問題"

유미림,「일본의 '석도=독도'설 부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해양정책연구』, 제23권 1호, 2008년, pp. 173-197.
이석우,「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독도의 영토 처리 과정에 관한 연구」,『북방사논총』 제7호 2005년, pp. 107-141.
신용하 저, 한성 역, 慎鏞廈著, 韓誠訳,『史的解明 独島(竹島)』, インター出版, 1997년
현대송 편,『한국과 일본의 역사인식』, 나남, 2008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편,『독도대사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1년

池内敏,『大君外交と"武威"』, 名古屋大学出版会, 2006년
桑田忠親,「上杉謙信一孤独に生きた越後の名将」 百年社編,『戦国の武将二百七傑: 北条早雲から徳川家康まで戦乱の中の群雄』, 新人物往来社, 1977년
芹田健太郎,『日本の領土』, 中公叢書, 2002년
皆川洸,「竹島紛争と国際判例」,『前原光雄教授還暦記念—国際法学の諸問題』, 慶応通信, 1963년, pp. 347-371.
内藤正中,『島根県の歴史』, 山川出版社, 1969년
内藤正中 · 朴炳渉,『竹島＝独島論争－歴史資料から考える』, 新幹社, 2007년
日本外務省調査部 編纂,『大日本外交文書 第二巻 第三册』, 日本国際協会, 1938년
塚本孝,『ISSUE BRIEF 竹島領有問題の緯(第3版)』, 日本国立国会図書館, 2011년
『島根県歴史大年表』, 郷土出版社, 2001년

<Abstract>

Over the Territorial Issue:

A Solution of Dokdo Issue from the Viewpoint of Japanese History

Daesong Hyeon

This paper discusses how to solve the Dokdo problem which is gradually increasing the intensity of the conflict between Korea and Japan in a situation of accelerating arms race in Northeast Asia region with the territorial disputes deepened.

In this paper, firstly, several aspects of the sovereignty issue over Dokdo will be reexamined, such as historical and legal bases of claims of both countries and interpretations of legal and political measures which had been taken since World War II and post-war issues.

Secondly, from a self-critical perspective, what effect the Dokdo issue set to another dimension of an emotional confrontation under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have on the societies of both countries will be reviewed.

Finally, this paper argues, in seeking a solution of the Dokdo problem, there will be necessary, not only a new thinking of the territorial issues, but also cooperative attitude, as shown in the anecdote of Takeda Shingen and Uesugi Kenshin who fought in case of inevitable fighting, but helped when the rivalry in need, in Japan 16th century. And makes a suggestion of diverting 0.1% of the military spendings of both countries to establish such as ‘Fund for Historical Reconciliation and Peace in East Asia’ for peacemaking in the region.

Key Words: Dokdo problem, Territorial disputes, Dispute resolution, Solutions, Historical reconciliation

이 논문은	2012년 10월 25일에 투고하여
	2012년 12월 5일까지 심사하여
	2012년 12월 15일 게재 · 결정됨

공통의 토대에서 논의하는 독도/죽도 논쟁

池内 敏*

〈목 차〉

1. 머리말
2. 조문(법령)의 해석에 대해
3. 사료는 주어진 텍스트 안에서 해석하는 것
4. 맺음말

〈국문초록〉

지금까지의 독도/죽도 논쟁은 학문적 성과가 반영되지 않는 국면이 적지 않았다. 어쩌면 독도/죽도 논쟁의 문제점은 죽도 영유권을 둘러싼 의견 대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의견 대립이 학문적 근거가 결여된 채 쟁점화 되는 데에 있다. 학문적 근거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기 때문에, 학문적으로는 성립되지 않는 주장이 재삼재사 되풀이하여 강변되고 똑같은 논의가 끝없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양국의 독도/죽도 논쟁에 대한 해결의 길을 열기 위해서 조문(법령)의 해석과 사료를 둘러싼 해석 방법을 검토하였다. 조문에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겐로쿠 죽도도해금지령'의 해석에서 조문상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의도를 해석하였다. 또한 '우산도', '일본해내 죽도외일도 지적 편찬에 방사(日本海內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伺)'의 해석에서도 사료는 먼저 주어진 텍스트 안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검토하였다.

사실, 독도/죽도 논쟁은 거의 정리되어가고 있는 느낌이 든다.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 끝없이 논의를 지연시키는 일도 가능하다. 만약 향후의 한일 관계를 돈독한 것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 논쟁을 끊어버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자의성을 가능한 한 배제하고, 사료·사실(史實)에 마주볼 수 있는 용기를 낼지 어떨지가 분기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일본 나고야대학교 교수

주제어: 독도/죽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죽도도해금지령, 우산도, 일본해내 죽도외일도 지적편찬 방사, 해석, 텍스트

1. 머리말

되풀이하여 동일한 현상이 생기거나 인위적으로 동일한 현상을 재현할 수 있는 학문적 분야와는 달리 역사학이 대상으로 하는 사실(史實)은 한 번뿐이다. 여기에 역사학의 학문으로서의 특징이 있으며, 사실을 검증하는 것의 곤란함도 또한 거기에서 유래한다. 따라서 제3자에 의한 검증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도 완전히 동일한 사실을 눈앞에 재현해놓은 다음 검증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증적으로 검증한다는 것은 현재까지 확립되어 온 문헌사학의 학문적 수법에 따라 해석하는 한, 누가 분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자의적(恣意的)인 사료의 선택 및 해석이나 학문적인 방법 · 순서에 의존하지 않는 논증에 의해 얻은 결론은 아마도 제3자를 납득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그러한 자의성을 가능한 한 배제하고 사료 · 사실을 마주하는 일이다.

사실 지금까지의 독도/죽도 논쟁은, 심하게 말하면 모든 국면에서 그러한 자의성을 강하게 내포한 상태로 추이해 왔다. 즉 이 논쟁에는 학문적 성과가 반영되지 않는 국면이 적지 않았다. 어쩌면 독도/죽도 논쟁의 문제점은 죽도 영유권을 둘러싼 의견 대립이 존재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의견 대립이 학문적 근거가 결여된 채 쟁점화 되는 데에 있다. 학문적 근거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기 때문에, 학문적으로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한 주장이 재삼재사 되풀이하여 강변되고 똑 같은 논의가 끝없이 계속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사실(史實)로부터 눈을 돌려, 내부

에서는 인정되지만 밖에 나가면 전혀 통용되지 않는 수준의 논의가 반복되어 왔다. 곁눈질로 보기에 기묘하게 비치는 논증도 같은 주장으로 굳어진 친척들 사이에서는 박수갈채를 받기 때문에, 더욱 위세 좋은 발언이 반복되는 한편, 다른 논리에 대해서는 격렬하고 완고한 비판이 반복되어 왔다. 이것으로는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좋은 지혜」는 얻을 수 있을 리도 없다. 이러한 부의 연쇄를 끊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

2. 조문(법령)의 해석에 대해

1)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해석

1946년 1월 29일, 연합국군 총사령부에 의해 「약간의 외곽지역의 일본으로부터의 정치상 및 행정상의 분리에 관한 각서」(SCAPIN 제 677호)가 발포되어 일본 영역인 특정지역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정치상 또는 행정상의 권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행사하고자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지령하였다. 그 특정 지역 안에는 독도/죽도도 포함된다는 취지가 명기되었다. 그 다음 동년 6월 22일, 맥아더 라인의 설정에 관한 「일본의 어업 및 포경업 허가 구역에 관한 각서」(SCAPIN 제 1033호)가 발포되어 독도/죽도는 그러한 조업구역에서 제외되어 일본의 선박 및 국민이 독도/죽도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하,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조인되어 52년 4월 28일에 발효했다. 그 조인과 발효 사이에 해당하는 52년 1월 18일, 이승만 한국 대통령이 해양 주권 선언을 실시하고, 이른바 「평화선」 내에 독도/죽도를 수중에 넣었다. 또한 동년 4월 25일 맥아더라인의 폐지가 지령되었다.

동년 4월 28일에 발효한 샌프란시스코조약 제2조(a)에는,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기재되었다. 여기서 「포기한다」고 된 대상으로 「독도/죽도」는 명기되지 않았었다. 즉 강화조약 발효에 의해서 일본의 영역이 확정·명기되어 독립하는 것에 즈음해, 「포기하는」 도명으로 「독도/죽도」를 거론하는 일은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다.

이 점의 해석을 둘러싸고 일찍이 한일간에 논쟁이 있었다. 독도/죽도를 일본령이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강화 조약의 조문 그 자체에 대한 해석이 제시되었고, 한국령이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강화 조약에 선행하는 SCAPIN 제 677호·SCAPIN 제 1033호와 함께 검토한 조문 해석이 제시되었던 것이다.

지금 이 논쟁의 대립 견해에 대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논쟁 이후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성립과정에 관한 검토 작업이 있었고 강화 조약의 조문 확정 과정이 밝혀진 결과, 앞의 논쟁에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즉, 샌프란시스코조약 제2조(a)에서 독도/죽도의 귀속에 관련되는 표기는, 이하와 같은 변천을 가진다. 1947년 3월부터 49년 11월까지의 다섯 개 초안에서는 독도/죽도가 한국령에 포함되는 것으로 명기되었다. 49년 12월 29일의 초안에서는, 반대로 일본령에 포함되는 것으로 명기되었다. 50년 8월의 초안 이후는 어떤 나라에 속하는가는 명기되지 않게 되었고, 그 방식은 그대로 조인 조문으로 인계되었다. 조약의 문장 상으로는, 독도/죽도가 일본령인지 한국령인지 한눈에 이해할 수 없는 형태로 최종안이 확정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조약 조인 직전에 해당하는 1951년 7월 19일, 한국 대사로부터 미국 국무장관 앞으로 샌프란시스코조약 제2조 (a)항에 일본이 포기하는 도명에 「독도」를 명기하도록 요구하는 요망서가 제출되었으나 요망은 기각되었다(동년 8월 10일자, 러스크 국무 차관보로부터

한국 대사에게 보낸 서간(러스크 서한)).

이렇게 하여 변화하는 초안의 추세를 검토하고, 또한 러스크 서한의 존재가 분명해짐에 의해, 샌프란시스코조약 제2조 (a)에는 명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독도/죽도를 한국령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것이 분명해졌다.[1)]

2) 겐로쿠 죽도도해금지령의 해석

겐로쿠 죽도도해금지령에는 일본인의 「죽도(현재의 울릉도) 도해를 금지」한다는 것이 명기되어 있기는 하지만, 송도(현재의 독도/죽도) 도해를

---

1) 이석우는 「 …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의 해석이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인정한 것으로서 결론 지을 수 있음이 분명한 이상, (SCAPIN 677이 「일본의 특정 외곽지역을 정치적 행정적으로 분리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인용자주) 결코 바람직한 접근방법은 아니다」[이석우, 18p.]라고 기술하였고, 정병준도, SCAPIN 677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만, 구설과 같은 해석을 하고 있지 않다[정병준]. 또한, 「SCAPIN 677호의 경우, 김석현 교수가 지적하듯이 이 문서를 작성한 미국에서조차 이것에 의해 독도의 한국으로의 환원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는 할 수 없다」[김병렬·노영구·이상근, 8p.]라고 하는 연구사 정리도 존재한다.
또한 1951년 8월에 한국 정부의 요망을 기각한 러스크 서한의 설명에는, 사실 인정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러스크 서한에서는 이하와 같이 말한다.

> 독도, 또는 죽도 내지 리앙쿠르암으로 알려진 섬에 관해서는, 보통 무인도인 이 바위섬은, 우리의 정보에 의하면 (a)조선의 일부로서 취급되었던 적이 결코 없고, (b)1905년경부터 일본의 시마네현 오키지청의 관할 하에 있습니다. (c)이 섬은 전혀 조선에 의해서 영토 주장이 이루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밑줄은 이케우치)

이석우는 위에서 인용한 러스크 서한 밑줄(a)의 직전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정보에 의하면」이라는 단서에 주목하고, 「독도를 포함한 한국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미국의 이해의 폭이 좁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1905년 이전에 사실상 독도가 한국령이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을 입증하면, … 평화조약에서 말하는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의 「조선」에 독도가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해진다」[이석우, 202p.]고 전망한다.

금지하는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문장 상으로는 「송도도해금지」가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금지령에 내렸어도 일본인의 송도 도해는 계속되었다고 주장하는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의 해석[2]은 현재도 여전히 살아 있다. 가와카미(川上)에 의하면, 일본인의 죽도(울릉도) 도해가 금지된 후에도 송도(독도/죽도)로의 도해는 금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가와카미는 송도(독도/죽도)가 일본의 판도로 포함된다고까지는 명언하지 않았지만, 그 섬이 일본인의 생업에 관련된 영역으로 근세 일본에게 남아있었다고 이해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법령문의 표면적인 해석은 해당 법령의 성립과정을 자세히 검토해보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

에도 막부 로쥬(老中) 아베 마사타케(阿部正武)는 1695년 12월 24 일 돗토리번(鳥取藩)과 영주의 에도 저택에 대해, 「죽도(울릉도) 외에 이나바(因幡)·호키(伯耆) 양국에 부속되는 섬은 있는가? 또한 그곳에 이나바·호키 양국의 사람이 고기잡이를 나가는 일은 있는가?」라고 문의를 하였다(문의 제7조). 이에 대한 대답 「죽도(울릉도)·송도(독도/죽도)를 비롯하여 이나바·호키 양국에 부속되는 섬은 없습니다」라는 것은 막부를 곤혹시킨 듯하다. 그래서 1696년 1월 23일 막부는 재차 돗토리번(鳥取藩)에 대해 「송도(독도/죽도)란 무엇인가」라며 묻게 되었다.

이때 돗토리번이 작성한 회답 서면은 호키노쿠니(伯耆國)와 조선으로부터 송도(독도/죽도)에 이르는 거리(제4~9조)에 대해 기술함과 동시에, 「송도(독도/죽도)는 이나바·호키 어느 나라에 부속되는 것도 아니다(돗토리번령(鳥取藩領)은 아니다)」(제2조), 「송도(독도/죽도)에는 죽도(울릉도) 도해의 지름길에 해당하므로 도중에 송도(독도/죽도)에 들러 고기잡이를 한다. 돗토리번령 이외의 사람이 송도(독도/죽도)에 고기잡이를 하러 가

2) 죽도로의 도해가 금지된 후에도 송도(현재의 독도/죽도)로의 도해가 금지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은, 겐로쿠(元祿) 9년 정월 28일자의 죽도도해 금지에 관한 봉서(奉書)에 … 송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부터도 알 수 있다[川上健三, pp.190-192].

는 것은 들은 적이 없다. 이즈모노쿠니(出雲國)·오키노쿠니(隱岐國) 사람이 송도(독도/죽도)에 갈 때는 요나고(米子) 사람과 동선하여 간다」(제3조)고 말한다.

이러한 서면이 1696년 1월 23일에 막부로 제출되어 같은 달 26일자로 제출한 마츠에번(松江藩)의 답변서(이즈모(出雲)·오키(隱岐) 사람은 죽도(울릉도) 도해에 대해 적극적인 관계를 갖지 않았음을 대답한다)와 함께 검토한 결과, 같은 달 28일에 죽도도해금지령이 발령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겐로쿠 죽도도해금지령의 작성 과정에서 돗토리번(鳥取藩)·마츠에번(松江藩)의 답변서가 크게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면, 금지령 안에는 「죽도(울릉도)로 도해하는 것은 금지한다」고 되어 있을 뿐 송도(독도/죽도) 도해 금지를 언급한 명문기록은 없다. 하지만, 거기에는 「송도(독도/죽도)는 돗토리번령은 아니다」라고 한 돗토리번 답변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돗토리번 회답서 및 마츠에번 회답서에 따르면, 돗토리번령 백성의 죽도(울릉도) 도해만 단속하면 「죽도(울릉도) 도해금지령」의 성과는 거둘 수 있다고 막부는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겐로쿠 죽도도해금지령은 돗토리번령에 대한 개별 법령으로서 발급된 것으로 전국 법령은 아니었다. 그리고 송도(독도/죽도)에 관련되는 1월 23 일자 돗토리번 답변서 제3조에 따르면, 돗토리번령 백성의 죽도(울릉도) 도해가 금지되면, 마찬가지로 송도(독도/죽도) 도해를 실시하는 사람은 전혀 없다. 문장 상으로 송도 도해 금지의 문구가 없어도, 이 금지령에 의해서 송도 도해자는 끊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상의 1), 2)를 통해 공통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조문이나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 표면에 나타난 문장만을 보면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하고 생겨나 논쟁의 여지가 발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조문(법령)의 성립과정을 자세히 검토함으로써 조문(법령) 상으로는 명확하게 기록되고

있지 않은 의도가 명확해진다고 하는 것이다.

3. 사료는 주어진 텍스트 안에서 해석하는 것

1) 우산도

한국의 문헌이나 고지도상에서 나타나는 「우산도(于山島)」가 현재의 독도/죽도를 가리키고, 「우산도」의 명칭이 조선측의 많은 문헌이나 고지도류에 계속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고래로부터 한국령이라는 것의 증거로 삼는 주장은 뿌리 깊다. 거기서 우선 독도/죽도가 한국령이라는 것을 논증하는 목적으로 편찬된 자료집을 몇 가지 살펴보자. 「우산도」, 「우산」이 처음 나타나는 예로서 인용되는 것은 예외 없이 「삼국사기」 512년 6월조이다[신용하 편, 1998] [송병기 편, 2004] [기획단 편, 2005]. 이어서 한국의 문헌사료에 나타나는 「우산도」 「우산」을 전술한 세 개의 자료집에 수록된 사례 및 선행 연구 중에서 언급되어 온 사례에서 연대순으로 정리하여, 이하에서 간결하게 고찰해 보고자 한다.

우선, 513~1425년에 나타나는 「우산」은 모두 현재의 독도/죽도에는 들어맞지 않고, 모두 울릉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한국의 역사서에서 「우산도」 또는 「우산(섬으로서의 우산)」이라고 하는 지명 및 그것에 관련되는 기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고려사 지리지』(1451) 울진현조이다」[윤유숙, 97p.]라고 말하는 것은 울릉도와는 구별된 섬으로서의 「우산도」가 문헌 사료상으로 보이는 초견(初見) 시기를 지적하는 태도로서는 극히 냉정한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그 다음으로 『세종실록』 지리지(울진현조, 1432년)에는, 사료의 본문에서 「우산 · 무릉 두 섬」라고 명기되어 있어 「우산도」가 울릉도와는 구별되는 섬으로서 문헌상에 나타나는 점이 주목받아 왔다. 『세종실록』 지리

지 본문에서 말하는 「우산 · 무릉 두 섬」이라고 하는 것은, 독도/죽도와 울릉도의 조합으로 적합하다고 간주되어, 사료 중의 「우산도」는 독도/죽도를 가리킨다고 이해되어 왔다.

그 후 1696년 5월 안용복사건이 일어났고, 안용복이 일본인을 향해 송도(독도/죽도)=자산도(우산도)가 조선령이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 발언 자체는 아마 실제로는 없었을 것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지만, 안용복이 독도/죽도를 본 것은 사실이었을 것이다.

오키(隱岐) 무라카미가 문서(村上家文書) 속에서 안용복은 「죽도와 조선 사이가 30리, 죽도와 송도 사이가 50리라고 합니다」 「5월 15일 죽도를 출발, 같은 날 송도에 도착, 동음력 16일 밤 송도를 출발, 18일 아침에 오키섬(隱岐島)의 니시무라(西村) 해안에 도착했다」고 말하고 있다. 거리의 정확함을 일단 제쳐둔다고 해도, 한반도—죽도(울릉도)—송도(독도/죽도)—오키섬이라고 하는 배열 중에 「송도」에 대해 언급하고, 죽도(울릉도)에서 송도까지는 같은 날 중에 이동하고 송도로부터 오키섬까지는 이틀밤을 거쳐 도착했다고 말한다. 동시대 일본의 지지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에서는 이동 방향이 반대로는 되지만, 오키로부터 송도까지 이틀 하룻밤, 송도로부터 죽도(울릉도)까지 하루정도의 거리라고 말한다. 따라서 오키 · 무라카미가 문서(村上家文書)에서 말하는 죽도(울릉도)—송도(독도/죽도)—오키섬의 위치 관계는 대체로 『은주시청합기』와 합치한다고 보아도 좋기 때문에, 안용복이 말하는 송도는 분명히 현재의 독도/죽도이다. 그리고 안용복은 조선 관헌에 대해서 송도를 「자산도(子山島)」라고도 말하기 때문에, 증언에 말하는 「자산도」도 또한 독도/죽도이다. 「자산도」의 「자(子)」는 「우(于)」의 단순한 오기라고 생각하면 좋다.

한편, 1432~1614년에 나타나는 「우산」에는 그것이 울릉도를 가리키는 경우와 울릉도와 구별된 다른 섬을 가리키는 경우가 혼재한다. 「우산」이 독도/죽도라고 간주될 가능성은 그것이 울릉도 근방에 있고 「울릉도와 구별되는 다른 섬」이라고 하는 경우에 한해 생기지만, 우산과 독도/죽도가

송도라는 일본 명칭을 개입시켜 등호로 연결되는 것은 안용복의 경우뿐이다.

그리고 그 후의 문헌 사료를 추적해 가면, 「우산(도)=독도/죽도」라는 인식이 정착한 것도 아니다. 『성호사설(星湖僿說)』 울릉도 중 「우산」을 언급한 기술은, 「울릉도는 동해 가운데 있는데 일명 우산이다(鬱陵島在東海中, 一名于山)」라고 할 뿐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우산」은 울릉도이다. 『춘관지(春官誌)』 울릉도쟁계(1744년)에서도 「우산」은 울릉도와 구별된 다른 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해동역사고(海東繹史考)』(1823년)는 『문헌비고』 『여지승람』 『수도제강(水道提綱)』에서 나타나는 「송도」 「우산도」 「울릉도」에 대해 고찰을 하지만, 『수도제강』에서 나타나는 「천산도(天山島)」 「완릉도(莞陵島)」는 각각 「우산도」 「울릉도」의 오기일 것이라 말하는 것 외에는, 사료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에 머문다. 따라서 「우산도는 왜가 말하는 이른바 송도이다」(『文獻備考』)와 「우산과 울릉은 원래 하나의 섬(一島)이다」(『輿地勝覽』)처럼 서로 모순되는 기술이 아무런 주석도 없이 병기 된다. 또한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울릉도 사실 변증설(1839년)은 「울릉도는 예전의 우산국」이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여지도』에는 「우산도」가 그려지지 않고 대신에 울릉도 위에 「우산」이라고 적거나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안용복발언에 의해 우산도와 현재의 독도/죽도가 송도라는 일본명을 개입시켜 처음으로 등호로 연결되었다(「우산도=송도」설)는 것을 이미 언급하였다. 이 「우산도=송도」설은 『(동국)문헌비고』(1770년)를 거쳐 『증보 문헌비고』(1908년)까지 볼 수 있는 것에 대해, 호리 가즈오(堀和生)는 「이 『증보 문헌비고』가 2백년에 걸친 편찬사업의 산물로 실록을 보완하는 관찬 문헌인 점으로부터, 조선 정부가 우산도에 대해서 영유 의식을 유지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라고 말한다[堀和生, 100p.].

그러나 『(동국)문헌비고』 『증보 문헌비고』에서는 「울릉도=우산국」도 또한 기술되어 있어 『만기요람(萬機要覽)』은 『(동국)문헌비고』를 인용하

면서 「울릉도는 원래 우산국」이라고 말한다. 이들 3서에 계승된 것은 「우산도=송도(=현재의 독도/죽도)」설만이 아니라, 「울릉도=우산국」설도 또 계승되었다. 만일 호리(堀)가 말하듯이 『(동국)문헌비고』로부터 『증보 문헌비고』에 이르는 관찬 문헌에 「우산도」에 관한 유사 기사가 반복하여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조선 정부가 영유 의식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 「우산도」는 반드시 「우산도=송도(=현재의 독도/죽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사를 근거로 하여 『(동국)문헌비고』로부터 『증보 문헌비고』에 이르기까지의 시기에 조선 정부는 「현재의 독도/죽도」에 대한 영유 의식을 유지하고 있던 것만을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런데, 「우산도」를 「소위 송도(松島)」로 설명하는 『여지지(輿地志)』는 그것이 1656년에 편찬된 것은 분명하지만 현존하지 않는다. 따라서 『강계고(疆界考)』와 『(동국)문헌비고』가 각각 인용하는 『여지지』의 문장에는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정확한 해석을 원본(내지는 사본)에 의해 검증할 수 없다. 검증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1656년에 편찬된 『여지지』에 「우산은 즉 왜가 말하는 송도이다」(『문헌비고』에서의 인용문장)라고 적혀 있는 이상, 1656년 시점에서 「우산도=송도(=현재의 독도/죽도)」 인식이 조선 측에 존재했던 것이라고 해석해도 좋을까? 대답은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의 독도/죽도를 송도라고 호칭한 것은 일본열도 산음지방의 일본인 특히 죽도(울릉도) 도해에 관련을 가진 사람들에게 한정되어 있으며, 문헌 사료상 처음 보이는 것은 오타니가 문서(大谷家文書)에 포함된 연도 미상의 12월 5일자 오타니 미치요시(大谷道喜) 앞으로 보낸 이시이 무네요시(石井宗悅)의 서신이다. 연도 미상의 이 서신은, 좁게 보면 1652~54년, 넓게 보면 1640년대~50년대 무렵의 것이라고 추측된다[池内敏 2006, p.258]. 에도시대의 조일 관계는 쓰시마번을 매개로 하여 맺어지고 있었다는 특징이 있으며, 정보의 흐름도 또한 예외는 아니다. 산음지방의 사람

들이 현재의 독도/죽도를 송도라고 호칭하는 관행은 쓰시마번의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고, 쓰시마번측 사료에 현재의 독도/죽도를 송도라고 호칭한 초견 사료는 에도말기의 덴포(天保) 7년(1836)의 것으로 추측되는 쓰시마번 에도 루스이(留守居)의 서신이다. 통상 상정할 수 있는 쓰시마번을 개재시킨 정보전달 경로에 의하는 한, 1656년이라는『여지지』편찬 시점에서, 조선 측이 현재의 독도/죽도를 일본인이 송도라고 부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을 가능성은 전무하다.

또한, 좁게 보면 1652~54년의 것이라고 생각되는 이시이 무네요시 서신의 내용이 돗토리번-오키-울릉도 경로를 거쳐,『여지지』가 편찬된 1656년까지 조선 측에 전해졌다고 상정하는 것도 어렵다. 이 해역에서 일본인과 조선인이 만나는 것은 안용복사건이 생기는 1690년대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시이 무네요시(石井宗悅)의 서신 이외에, 현재의 독도/죽도를 송도라고 호칭하는 것을 아는 문헌 사료로서는『은주시청합기』를 들 수 있지만, 이것조차 간분(寬文) 7년(1667) 완성이므로『여지지』편찬보다 뒤의 일이다.

따라서, 조선 문헌에서의「우산도=송도(=현재의 독도/죽도)」의 도입은,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 빨리 추측해도, 안용복발언을 개입시키는 것 외에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1656년에 편찬된『여지지』에는「우산은 즉 왜가 말하는 송도이다」(『문헌비고』에서의 인용문)라는 기술은 없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우산도=송도(=현재의 독도/죽도)」설이,「『숙종실록』권30으로부터『(동국)문헌비고』를 거쳐『증보 문헌비고』(1908년)까지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이전「조선 정부가 우산도에 대해서 영유 의식을 유지하고 있었다」[堀和生, 100p.]고 하는 주장의 부적절함에 대해서, 다른 관점에서 언급해 두고자 한다.

메이지(明治) 14년(1881) 6월, 조선 정부가 파견한 수토사는 울릉도에 많은 일본인이 침입하여 삼림을 벌채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 조선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도항 금지를 요구하며 항의함과 동시에, 다시금 울릉도의 상세한 실정 조사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검찰사 이규원을 파견했다.

파견 전에 조선 국왕 고종은 1882년 4월, 검찰사 이규원을 불러 대화하고 있다. 국왕은 최근 울릉도에 외국인이 왕래하고 있는 것을 말한 다음, 「송죽도(松竹島)와 우산도(芋山島)는 울릉도의 근처에 있다고 하지만,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또한 산물이 무엇인가를 잘 모른다」라고도 말해 이번 파견에 즈음해서는 그러한 불명한 점도 분명히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 이규원이 「우산도라는 것은 울릉도이다」「송죽도는 하나의 소도이며, 울릉도로부터 20~30리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대답하자, 국왕은 재차 「우산도(芋山島)라고 하거나, 송죽도라고 하는 것은 모두 『동국여지승람』에 실려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송도 · 죽도라고도 하지만, 우산도와 함께 세 섬 모두 합하여 울릉도이다. 그 상황을 검찰하고 오도록 하라」고 명했다.

1882년 4월 30일부터 5월 11일에 이르는 울릉도 현장 답사를 기록한 것이 이규원 「울릉도검찰일기」이며, 부도(附圖)로서 울릉도 내외를 상세하게 그린 2장의 그림 「울릉도내도」「울릉도외도」가 남아 있다. 이 부도에는 현재의 독도/죽도는 기재되지 않았고, 「울릉도검찰일기」를 구석구석까지 읽어보아도 이규원이 독도/죽도에 갔다는 기사도 없으며, 울릉도로부터 독도/죽도를 바라본 기사도 없다. 『울릉도검찰일기』의 후반에 수록되어 있는 「계초본(啓草本)」에는 「맑은 날에 높은 곳에 올라 먼 곳을 바라보고, 천리 앞을 찾아보았지만, 돌 하나도 흙 하나도 안보였다. 즉, 우산을 울릉이라고 하는 것은 탐라를 제주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기술이 있고, 이것이 그대로 국왕에 대한 복명서의 내용이 된 것은 분명하다.

한편, 『울릉도검찰일기』에 의하면, 5월 10일 이규원은 울릉도의 도방청(道方廳)에서 일본인들과 만나, 필담에 의해 일본인이 울릉도를 송도라고 부르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동일 중에 「대일본제국 송도규곡(大日本帝國 松島槻谷)」이라고 기록된 길이 6척 · 폭 1척의 목재 푯말이 장작포

에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고 일본인과의 필담 내용이 사실이었다고 확인했다. 그리고 이 「송도」 풋말에 대해서는 복명시에 고종과 이규원 사이에 화제가 되어 있기도 했다(『고종실록』 1882년 6월 16일).

그렇다면, 여기에 조선 정부 중앙에서 「우산도=송도=울릉도」라는 이해가 성립했다고 봐도 좋다. 울릉도의 외에 우산도라는 섬을 찾아내지 못하고, 또 이 시점에서의 송도는 울릉도를 가리킨다고 하는 것이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그런 이상 적어도 이 시점에서 우산도는 현재의 독도/죽도는 아니다.

2) 「일본해내 죽도외일도 지적편찬 방사」에 대해

메이지시대 전반기 태정관(太政官)에 관련된 공문서를 수록한 『공문록(公文錄)』 가운데, 「일본해내 죽도외일도 지적편찬 방사(日本海內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伺)」라는 사료군이 있다. 이 사료군에 의하면, 메이지 10년(1877), 태정관은 「일본해내 죽도외일도」는 「본방과 관계없다(本邦關係無之)」라고 판단한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판도(版圖)의 취사(取捨)」와 관련하여 「본방과 관계없다」라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이 때 「일본해내 죽도외일도」는 일본령이 아니라고 메이지정부의 중앙이 판단했다는 것이다.

호리 가즈오(堀和生)는 위의 판단에서 일본의 판도 외(版圖外)로 여겨진 「죽도」는 울릉도를 가리켜, 「외일도」는 현재의 독도/죽도를 가리킨다고 말한다. 이 해석에 따르면, 메이지 10년의 일본 정부는, 현재의 독도/죽도를 일본령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고 하는 것이 된다.

한편, 「일본해내 죽도외일도」의 「죽도」가 울릉도를 가리키는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외일도(外一島)」는 현재의 독도/죽도는 아니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 즉 메이지 10년의 일본 정부는 현재의 독도/죽도를 일본령이 아니라고는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스기하라 다카시(杉

原隆)는 「일본해내 죽도외일도 지적편찬 방사」 그 자체의 해석은 상대하지 않고, 『(시마네현) 현치요령(縣治要領)』에 있는 「송도개간원(松島開墾願)」에 대한 내무경(內務卿)의 회답 등의 사료군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죽도외 일도의 건은 본방과 관계없다(竹島外一島之儀本邦關係無之)」라는 태정관지령(太政官指令)은 「죽도라고도 송도라고도 불리고 있었던 섬(울릉도)이 일본과 관계가 없다」라고 읽어야 하며, 따라서 해당 사료에 말하는 「외일도(外一島)」란 현재의 독도/죽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다.

또한, 츠카모토 다카시(塚本孝)는 「문의서(伺)가 제출된 메이지 초기에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울릉도를 송도로 한 서양의 지도 · 해도의 영향에 의해, 「송도」가 울릉도를 가리키는 경우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현으로부터 문의(伺)를 받은 내무성이나 내무성으로부터 문의(伺)를 받은 태정관(太政官)도 또한 「죽도외일도」를 죽도(울릉도) 및 송도(오늘의 독도/죽도)라고 생각하여 울릉도와 함께 현재의 독도/죽도를 본방과 무관계로 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죽도라고도 송도라고도 칭해지는 섬(울릉도)」이라고 인식하여, 해당 대상에 대해 본방 무관계라는 판단을 내린 것일 가능성이 있다」[츠카모토 타카시 2011,57-58페이지]라고 하기 때문에 스기하라(杉原)의 견해에 가깝다.

그런데, 「일본해내 죽도외일도 지적편찬 방사」에 포함되는 11통의 사료군을 시계열에 따라서 정리하면서 경과를 추적해 보자.

메이지 9년(1876) 10월 5일, 내무성(內務省) 지리료(地理寮)의 관리(지리료 12등 출사(出仕) 다지리 겐신(田尻賢信)과 지리대속(地理代屬) 스기야마 에이조(杉山榮藏))가 시마네현 지적편제계에 대해 이하와 같은 지시를 내렸다. 시마네현에 속하는 오키국(隱岐國)의 어떤 방위에 「종래 죽도라고 부르던 고도(孤島)」가 있어, 당시 내무성 지리료가 추진하고 있던 일본 전국의 지적 편성과 관련하여, 위의 고도를 시마네현의 지적에 포함할지 어떨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도, 이와 관련되는 「옛기록, 고지도 등」을 시마

네현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한 다음 내무성에 문의를 하도록 하라는 지시이다.

이것에 대해서 시마네현(島根縣)은 동년 10월 16일, 즉시 조사 결과의 개략을 문서로 하여 도면을 첨부하여 「일본해내 죽도외일도 지적편찬 방사」라고 제목을 붙인 문의서를 현 지사명으로 내무성에 제출했다. 그 문의에 첨부된 것이 「별지 원유지대략(別紙原由之大略)」이라는 도면이다.

그런데, 내무성 지리료의 관리가 시마네현 측에 요구한 것은 「죽도」에 관련되는 「옛기록(舊記), 고지도(古圖) 등」을 조사하여 문의를 하라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마네현의 문의서는 「죽도외일도」에 관련되는 문의로 되어 있다. 그것은, 시마네현이 「죽도」에 관련되는 「옛기록, 고지도 등」을 「죽도」뿐만 아니라 「송도」까지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별지 원유지대략」이란 「죽도」에 관련된 「옛기록」의 대략이었기 때문에, 「송도」에 관련되는 기술은 「다음으로 섬 하나가 있는데, 송도(松嶋)라고 한다. 둘레 30정(町=109.1m) 정도로, 죽도(竹島, 울릉도)와 동일 선로에 있다. 오키(隱岐)에서 80리 정도로 수목과 대나무가 거의 없다. 또한 물고기와 바다짐승(魚獸)이 생산된다」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동시에 이 간략한 기술에서조차 「송도」는 「죽도와 동일 선로에 있는」 섬이라고 하는 지리상의 특징이 지적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송도」가 오늘의 독도/죽도인 것은 명료하다.

시마네현은 내무경 오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 앞으로 보낸 문의서 안에서, 「죽도」는 산음지방 서부에 늘어서 부속하는 섬과 같이 느껴졌기 때문에, 시마네현의 지적에 편입할지 어떤지의 판단을 청한다고 기술하였다(「山陰一帯之西部ニ貫付スヘキ哉ニ相見候ニ付テハ, 本県国図ニ記載シ, 地籍ニ編入スル等之儀ハ如何取計可然哉」). 그렇다면, 이러한 「죽도」로 도해할 때의 동일 항로상에 위치하는 「송도」에 대해서도, 시마네현은 동일한 판단을 청하지 않을 수 없을 수 없다. 첨부된 도면이 「기죽도 약도(磯竹島略圖)」라고 제목이 붙여져, 그 내용으로는 「죽도」 「송도」의 쌍

방을 기재하고, 두 섬간에 「송도(松島)로부터 기죽도(磯竹島)는 서북방향(乾位) 40리 정도」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은 「(송도가) 죽도와 동일 선로에 있음」을 도시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문의서에 첨부된 문서 · 지도 모두에서 시마네현이 「죽도」「송도」를 일괄하는 것으로서 문의서를 제출했던 것이 분명한 이상, 「일본해내 죽도외일도 지적편찬 방사」라는 표제가 붙은 문의서에서 말하는 「죽도외일도」는 「죽도(울릉도)」와 「송도(현재의 독도/죽도)」를 가리키는 것임에는 논의의 여지가 없다.

이들 시마네현의 제출 문서 및 구 막부(舊幕府)로부터 계승한 관련 문서(쓰시마번과 조선 정부와의 교섭 기록에서, 막부의 판단)를 검토한 내무성은, 죽도를 「본방과 관계없다」라고 결론지었다. 그렇지만 「판도의 취사(取捨)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하여, 메이지 10년(1877) 3월 17일, 태정관(太政官)의 최종적인 판단을 기다리는 것으로 했다. 이 문의를 접수한 태정관에서는 3월 20일 「서면 죽도외일도의 건은 본방과 관계없으므로 주의할 것(書面竹島外一嶋之義, 本邦関係無之義ト可相心得事)」이라는 지령안이 작성되어 같은 달 27일에 이르기까지 검토하였다. 검토한 결과, 앞의 입안대로 지령이 승인되어 같은 달 29일에 내무성에 대해 지시하였다. 그 지령의 내용이 시마네현에 전해진 것은 동년 4월 9일의 일이다.

그런데, 에도(江戸)시대 일본에서 죽도로 불렀던 섬은 현재의 울릉도를 가리키고, 송도로 불렀던 섬은 현재의 독도/죽도를 가리키고 있었음은 틀림없다. 그런데, 에도막부 말기와 메이지 유신기에는 울릉도를 죽도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 한편, 울릉도를 송도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다. 이 시기가 되면, 죽도라는 도명과 송도라는 도명이 도대체 어느 섬을 가리키는지를 둘러싸고 혼란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일본해내 죽도외일도 지적편찬 방사」를 엄밀하게 점검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외일도」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는 스스로 분명하고, 거기에 「도명의 혼란」의 영향은 전무하다.

전술한 스기하라 다카시(杉原隆)의 견해는, 「죽도외일도」에 말하는 「죽도」는 울릉도를 가리키며, 「외일도」도 또한 울릉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한다. 「죽도외일도」는 「죽도와 또 하나의 섬」이라고 읽는 것이 솔직할 것이다. 스기하라(杉原)의 견해에 따르면, 「일본해내 죽도외일도 지적편찬 방사」란 「일본해에 있는 울릉도와 울릉도를 (시마네현) 지적에 편찬하는 것에 대한 문의」라고 되지만, 그러한 지루하고 장황하게 문의하는 방법은 메이지기의 행정 문서상에서는 잘 볼 수 있는 일일까?.

이상의 (1) (2)를 통해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료는 먼저 주어진 텍스트 안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후세의 인식을 가지고 전대의 사료를 해석해 보거나, 해당 텍스트를 읽어보지도 않고 주변 사료로부터 자설의 형편에 맞는 해석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은 그릇된 일이다.

4. 맺음말

본론에서 언급한 두 가지 유형의 논의 이외에도, 학문적인 논증이라고는 할 수 없는 주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례를 추가하면, 「독도/죽도에 관한 1953년 9월 첨부 한국 정부의 견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박」(1954년 2월 10일)에서, 1905년의 독도/죽도 시마네현 편입 전후의 시기에, 독도/죽도를 한국령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증거로써 광무 5년(1901) 간행의 『대한지지(大韓地誌)』에는 한국 영토의 동한(東限)을 동경 130도 35분으로 하고 있어 독도/죽도는 포함되지 않음을 들고 있다. 동경 130도 35분이라면 울릉도보다 서쪽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을 동한이라고 한다면 울릉도도 또한 한국령이라고 인식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된다. 그야말로 수많은 문헌상 울릉도는 조선국 영토 · 대한제국 영토로 되어 있었음은 명백하고, 이 경도(經度)의 수치에 의해 그러한 영토 인식이 부정될 수는 없다. 이 「동경 130도 35분」이라고 하는 숫자에 모종의 착오가 있었다고 생

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대한지지(大韓地誌)』의 기술을 가지고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말의 꼬투리 잡기에 가까운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유사한 논쟁은 최근 한국에서 나타나는 「근대 일본에서 제작된 일본 지도에는 독도/죽도가 없는 것이 많다. 그러므로 독도/죽도는 일본령이 아니었다」고 하는 주장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양자의 학문적 수준은 오십보 백보이다.

사실, 독도/죽도 논쟁은 거의 정리되어가고 있는 느낌이 든다.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 끝없이 논의를 지연시키는 일도 가능하다. 만약 향후의 한일 관계를 돈독한 것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 논쟁을 끊어버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자의성을 가능한 한 배제하고, 사료 · 사실(史實)에 마주볼 수 있는 용기를 낼지 어떨지가 분기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池内敏,『大君外交と「武威」』, 名古屋大学出版会, 2006년
_____,「近世日本の西北境界」,『史林』90巻1号, 2007년
川上健三,『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 古今書院, 1996년
塚本孝,「勧告の保護·併合と日韓の領土認識」,『東アジア近代史』14, 2001년
堀和生,「1905年日本の竹島領土編入」,『朝鮮史研究会論文集』24, 1987년
김병·노영구·이상근「독도 연구 60년 평가와 향후의 연구 방향」, 한국 해양 수산 개발원, 2009년.
동북아 평화를 위한 바른역사정립기획단 편,『독도자료집Ⅰ』, 다다미디어, 2005년
송병기 편,「독도 영유권 자료선」한림대학교 출판부, 2004년
신용하 편,「독도영유권 자료의 탐구」제1권, 독도연구보전협회, 1998년
윤유숙,「조선 문헌의「울릉도·우산도」기사 검토 소고」, 윤유숙 외「역사와 지리로 보는 울릉도·독도」, 동북아역사재단, 2011년
이석우,『동아시아의 영토 분쟁과 국제법』, 집문당, 2007년
정병준,「독도 1947」, 돌베개, 2010년

共通の土台にたっての竹島論争

池内　敏*

はじめに

繰り返し同一の現象が生じたり人為的に同一の現象を再現できるような学問的分野とは異なり、歴史学が対象とする史実は一回限りである。ここに歴史学の学問としての特徴があり、史実を検証することの困難さもまたそこに由来する。したがって、第三者による検証が可能だということも、まったく同一の史実を眼前に再現できた上での検証が可能だというわけではない。実証的に検証するとは、こんにちまでに確立されてきた文献史学の学問的手法にしたがって解釈する限りは、誰が分析しても同一の結論に到らざるを得ないということを意味する。それは翻っていえば、恣意的な史料の選択と解釈や学問的な方法・手順によらない論証によって得られた結論はおそらく第三者を納得させることが難しいから、実証的に検討するということはそうした恣意性を極力排除して史料・史実に向き合うということである。

実のところ、これまでの竹島論争は、大げさに言えばあらゆる局面にそうした恣意性を強く孕んだ水準で推移してきた。つまりこの論争には学問的成果が反映されない局面が少なくなかった。おそらくは、竹島論争の問題点は、竹島領有権をめぐる意見対立が存在するところにあるのではなく、それら意見対立が学問的裏づけを欠如させたまま争点化されているところにこそある。学問的裏づけへの配慮を欠いているから、学問的には成り立たないことが明白な主張が再三再四蒸し返して強弁され、堂々めぐりの議論が延々と続くこととなるのである。

こうして日本でも韓国でも、史実から目をそらし、内輪受けはするが外へ出したらまるで通用しない水準の議論が繰り返されてきた。傍目には奇妙に映る論証も、同じ主張

* 日本　名古屋大學　文學研究科　教授

で固まった身内のあいだでは拍手喝采を浴びるから、更に威勢良い発言が繰り返され、その一方で、異論に対しては激烈で頑なな批判が繰り返されてきた。これでは論争に終止符を打つ「良い知恵」など得られるはずもない。こうした負の連鎖を断ち切って、この問題に解決の途を得るためには何が必要だろうか。

1. 条文(法令)の解釈について

(1)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の解釈

1946年1月29日、連合国軍総司令部により「若干の外かく地域の日本からの政治上及び行政上の分離に関する覚書」(SCAPIN第677号)が発せられ、日本領域の特定地域に対して日本政府が政治上または行政上の権力を行使し、または行使しようと企てることを停止するよう指令された。その特定地域のなかには竹島も含まれる旨が明記された。ついで同年6月22日、マッカーサーラインの設定に関する「日本の漁業及び捕鯨業許可区域に関する覚書」(SCAPIN第1033号)が発せられ、竹島はそれら操業区域から除外され、日本船舶および国民が竹島と接触することが禁止された。

1951年9月8日、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以下、サ条約)が調印され、52年4月28日に発効した。その調印と発効のあいだにあたる52年1月18日、李承晩韓国大統領が海洋主権宣言を行い、いわゆる「李承晩ライン」内に竹島を取り込んだ。また同年4月25日、マッカーサーラインの廃止が指令された。

同4月28日に発効したサ条約第二条(a)には、「日本国は、朝鮮の独立を承認して、済州島、巨文島及び欝陵島を含む朝鮮に対するすべての権利、権原及び請求権を放棄する」と記載された。ここで「放棄する」とされた対象として「竹島」は明記されてはいなかった。すなわち講和条約発効によって日本の領域が確定・明記されて独立するにあたり、「放棄する」島名として「竹島」が挙げられることは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ある。

この点の解釈をめぐって、かつて日韓間で論争があった。竹島を日本領とみる立場からは講和条約の条文そのものに即した解釈が提示され、韓国領とみる立場からは講和条約に先行するSCAPIN第677号・SCAPIN第1033号と併せての条文解釈が提示

されたのである。

いま、この論争における対立見解についていちいち具体的に述べる必要性を感じない。なぜならば、こうした論争ののちに、サ条約の成立過程に関する検討作業が現れて講和条約の条文確定過程が明らかとなった結果、先の論争に結論が得られたと考えられるからである。

すなわち、サ条約第二条 (a) における竹島の帰属に関わる表記は、以下のような変遷をたどる。1947年3月から 49年11月までの五つの草案では竹島が韓国領に含まれることが明記された。49年12月29日の草案では、反対に、日本領に含まれることが明記された。50年8月の草案以後は、いずれの国に属するかは明記されなくなり、その方式はそのまま調印条文に引き継がれた。条約の文面上は、竹島が日本領なのか韓国領なのか、一目では分からないかっこうで最終案が確定されたのである。

ところで、サ条約調印の直前にあたる 1951年7月19日、韓国大使からアメリカ国務長官に宛てて、サ条約第２条 (a) 項に日本が放棄する島名として「独島」を明記するよう求める要望書が出され、要望は却下された(同年8月10日付、ラスク国務次官補から韓国大使にあてられた書簡(ラスク書簡))。

こうして、変転する草案の趨勢を検討し、またラスク書簡の存在が明らかとなることによって、サ条約第２条(a)には明記されていないものの、「竹島を韓国領と認めるものではない」ことが明らかとなった(注１)。

(2) 元禄竹島渡海禁令の解釈

元禄竹島渡海禁令には日本人の「竹島(現在の欝陵島) 渡海を禁止」することが明記されはするものの、松島(現在の竹島) 渡海を禁止することは記されない。文面上には「松島渡海禁止」が記されていないから、この禁令によっても日本人の松島渡海は継続されたとする川上健三の解釈(注2) は、現在もまだ生きている。川上によれば、日本人の竹島(欝陵島) 渡海が禁止されたのちも、松島(竹島) への渡海は禁止されなかったというのである。川上は、松島(竹島) が日本の版図に含まれるとまでは明言しないものの、それが日本人の生業に関わる領域として近世日本に残されたと理解していることは明らかである。

しかしながら、こうした法令文の表面的な解釈は、当該法令の成立過程を子細に検

討すれば成り立たないことが明白である。

江戸幕府老中阿部正武は、1695年12月24日付で鳥取藩江戸藩邸に対し、「竹島（欝陵島）のほかに因幡・伯耆両国に付属する島はあるか。またそこへ因幡・伯耆両国の者が漁に出かけることはあるか」と問い合わせを行った(問い合わせの第７条)。これに対する返答「竹島(欝陵島)･松島(竹島）をはじめとして因幡・伯耆両国へ付属する島はございません」は、幕府を困惑させたようである。それで 1696年1月23日、幕府は改めて鳥取藩に対して「松島(竹島）とは何か」を問うこととなった。

このときの鳥取藩による回答書面は、伯耆国・朝鮮から松島(竹島）に至る道のり（第四～九条）について記すとともに、「松島（竹島）は因幡・伯耆いずれの国に付属するものでもない(鳥取藩領ではない)」(第２条)、「松島(竹島）へは竹島(欝陵島）渡海の道筋にあたるので、途中で松島(竹島）に立ち寄って漁をする。鳥取藩領以外の者が松島(竹島）へ漁をしに行くのは聞いたことがない。出雲国・隠岐国が松島(竹島）に行くときは米子の者と同船して行く」(第３条）と述べる。

こうした書面が 1696年1月23日に幕府にあてて提出され、同月26日付で提出された松江藩返答書（出雲・隠岐の者は竹島（欝陵島）渡海に積極的な関わりをもたないことを述べる）とともに併せて検討された結果、同月28日に竹島渡海禁令が発せられたのである。

元禄竹島渡海禁令の作成過程に鳥取藩・松江藩返答書が大きく影響を与えていることを考えれば、禁令中には「竹島(欝陵島）へ渡海することは禁止する」とあるばかりであって松島(竹島）渡海禁止を謳った明文記載は何も無いものの、そこには「松島(竹島）は鳥取藩領ではない」とする鳥取藩返答が踏まえられていると考えねばなるまい。

鳥取藩回答書および松江藩回答書に従えば、鳥取藩領民の竹島(欝陵島）渡海さえ取り締まれば「竹島(欝陵島）渡海禁令」の実は上がると考えられていた。だから、元禄竹島渡海禁令は、鳥取藩領に対する個別法令として発給されたのであって、全国法令ではなかった。そして松島(竹島）に関わる1月23日付鳥取藩返答書第３条にしたがえば、鳥取藩領民の竹島(欝陵島）渡海が禁止されれば、同様に松島(竹島）渡海を行う者は皆無となる。文面上に松島渡海禁止の文言が無くとも、この禁令によって松島渡海者は絶無となったのである。

以上の (1) (2) を通じて共通して言えることは、ある条文なり法令なりを解釈するにあ

たって、表面に現れた文章だけを見るといくつかの解釈が可能で生じて論争の余地が生じる場合であっても、条文(法令) の成立過程を子細に検討することによって、条文(法令) 上は明確に記されていない意図が明確になる、ということである。

2. 史料は与えられたテクストの中で解釈すること

(1) 于山島

韓国の文献や古地図上に見える「于山島」が現在の竹島を指し、「于山島」の名が朝鮮側の多くの文献や古地図類に現れ続けることをもって、古来連綿として韓国領であったことの証左とする主張は根強い。そこでまず、竹島が韓国領であることを論証する目的で編纂された資料集をいくつか試みに眺めてみよう。「于山島」「于山」の初見例として引用されるのは、例外なく『三国史記』513年6月条である [慎鏞廈編1998] [宋炳基編2004] [企画団編2005]。引き続き韓国の文献史料に現れる「于山島」「于山」を、前掲三つの資料集に収録された事例および先行研究中で言及されてきた事例から集め、年代順に整理して、以下、簡潔に考察してみたい。

まず、513～1425年に現れる「于山」はいずれも現在の竹島にはあてはまらず、すべて鬱陵島に該当する。したがって、「韓国の歴史書に『于山島』または『于山(島としての于山)』という地名およびそれに関わる記事が現れ始めるのは『高麗史地理志』(1451) 蔚珍県条である」[尹裕淑、97頁] と述べるのは、鬱陵島とは区別された島としての「于山島」が文献史料上に見える初見時期を指摘する態度としては、きわめて冷静と思われる。

次いで『世宗実録』地理志蔚珍県条、1432年) には、史料の本文で「于山・武陵二島」と明記されており、「于山島」が鬱陵島とは区別された島として文献上に現れる点に注目されてきた。『世宗実録』地理志本文にいう「于山·武陵二島」というのは、竹島と鬱陵島の組み合わせに適合的であると見なされ、史料中の「于山島」は竹島を指すと理解されてきた。

その後、1696年5月、安竜福事件が起こり、安竜福が日本人に向かって松島(竹島)=子山島(于山島) が朝鮮領であると主張したという。この発言自体は恐らく実際に

は無かっただろうことは客観的に証明できるものの、安竜福が竹島を見たことは事実であっただろう。

隠岐・村上家文書のなかで安竜福は「竹嶋と朝鮮之間三十里、竹嶋と松嶋之間五十里在之由申候」「五月十五日竹嶋出船、同日松嶋江着、同十六日松嶋ヲ出、十八日之朝隠岐嶋之内西村之磯へ着」と述べている。距離の正確さをひとまず置くにしても、朝鮮半島―竹島(欝陵島)―松島(竹島)―隠岐諸島という並びの中で「松嶋」に言及し、竹島(欝陵島)から松嶋へは同日中に移動し、松嶋から隠岐諸島へは二晩を経て到着したと述べる。同時代日本の地誌『隠州視聴合記』では、移動方向が逆にはなるものの、隠岐から松島まで二日一夜、松島から竹島まで一日程の距離だと述べる。したがって隠岐・村上家文書にいう竹島(欝陵島)―松島(竹島)―隠岐諸島の位置関係は、概ね『隠州視聴合記』と合致すると見て良いから、安竜福のいう松島は明らかに現在の竹島である。そして安竜福は朝鮮官憲に対して松島を「子山島」とも述べるから、証言に言う「子山島」もまた竹島のことである。「子山島」の「子」は「于」の単純な誤記と考えれば良い。

一方、1432～1614年に見える「于山」には、それが欝陵島を指す場合と欝陵島と区別された別の島を指す場合とが混在する。「于山」が竹島と見なされる可能性は、それが欝陵島近傍にあって「欝陵島と区別された別の島」という限りで生じるに過ぎなかったが、于山と竹島とが松島なる日本名を介して等号で結ばれたのは安竜福の場合のみである。

そして、その後の文献史料を追いかけてゆく限りでは、「于山(島)=竹島」なる認識が定着したわけでもない。『星湖僿説』欝陵島のうち「于山」に触れた記述は、「欝陵島在東海中、一名于山」というだけであり、ここにいう「于山」は欝陵島のことである。『春官志』欝陵島争界(1744年)でも「于山」は欝陵島と区別された別の島を意味するわけではない。

『海東繹史考』(1823年)は『文献備考』『輿地勝覧』『水道提綱』に見える「松島」「于山島」「欝陵島」について考察をするが、『水道提綱』に見える「千山島」「菀陵島」はそれぞれ「于山島」「欝陵島」の誤記であろうと述べるほかは、史料をそのままに引用するに留まる。したがって、「于山島は倭のいわゆる松島だ」(『文献備考』)と「于山と欝陵はもともと一島だ」(『輿地勝覧』)と互いに矛盾する記述が何らの注釈もな

しに併記される。また、『五洲衍文長箋散稿』欝陵島事実弁証説(1839年) は、「欝陵島は古の于山国」と述べ、『輿地図』には「于山島」が描かれることはなく、代わりに欝陵島の上に「于山」と記したりする、と述べる。

ところで、安竜福発言によって、于山島と現在の竹島が、松島なる日本名を介して初めて等号で結ばれた(「于山島=松島」説) ことを述べた。その「于山島=松島」説は、『(東国) 文献備考』(1770年) を経て『増補文献備考』(1908年) まで見出せることについて、堀和生は 「この 『増補文献備考』 が二百年にわたる編纂事業の所産で、実録を補完する官製文献であることから、朝鮮政府が于山島に対して領有意識を維持していたことが明らかである」と述べる [堀和生、100頁] 。

しかしながら、『(東国) 文献備考』『増補文献備考』では「欝陵島=于山国」もまた述べられており、『万機要覧』は『(東国) 文献備考』を引用しつつ「欝陵島はもと于山国」と述べる。これら三書に継承されたのは「于山島=松島(=現在の竹島)」説だけではなく、「欝陵島＝于山国」説もまた継承された。仮に堀が言うように『(東国) 文献備考』から『増補文献備考』に至る官製文献に「于山島」に関する類似記事が繰り返し見出されることをもって「朝鮮政府が領有意識を維持していた」と主張できたとしても、その「于山島」は必ずしも「于山島=松島(=現在の竹島)」に限られるわけではない。したがって、これらの記事を根拠にして、『(東国) 文献備考』から『増補文献備考』に至る時期に朝鮮政府は 「こんにちの竹島」 に対する領有意識を維持していたことだけを強調するのは適切ではない。

ところで、「于山島」を「所謂松島」として説明する『輿地志』は、それが1656年に編纂されたことは明らかながら、こんにち伝来しない。したがって、『疆界考』 と 『(東国) 文献備考』それぞれが引用する『輿地志』の文章には異同があるが、これらの正確な解釈を原本(ないしは写本) に拠って検証することができない。検証ができないながらも、1656年に編纂された『輿地志』に「于山はすなわち倭のいわゆる松島なり」(『文献備考』 における引用文) と書いてある以上は、1656年の時点で 「于山島=松島(=現在の竹島)」 認識が朝鮮側に存在したのだ、と解釈して良いだろうか。答えは否である。

現在の竹島を松島と呼称したのは日本列島山陰地方の日本人とりわけ竹島(欝陵島) 渡海に関わりをもった人々に限られており、文献史料上の初見は大谷家文書に含

まれる年未詳12月5日付の大谷道喜あて石井宗悦書状である。年未詳の当該書状は、狭くとれば1652～54年、広くとれば1640年代～50年代ころのものと推測される［池内敏2006、258頁］。江戸時代の日朝関係は対馬藩を介在させて取り結ばれていたところに特徴があり、情報の流通もまた例外ではない。山陰地方の人々が現在の竹島を松島と呼称する慣行は対馬藩の人々には知られておらず、対馬藩側史料で現在の竹島を松島と呼称した初見史料は、天保7年(1836) のものと推測される対馬藩江戸留守居の書状である。通常想定される対馬藩を介在させた情報伝達経路による限りは、1656年という『輿地志』編纂時点で、朝鮮側が現在の竹島を日本人が松島と呼んでいたことを知りうる可能性は皆無である。

また、狭くとれば 1652～54年の成立と思われる石井宗悦書状の内容が、鳥取藩―隠岐―欝陵島ルートを経て『輿地志』の編纂された 1656年までに朝鮮側に伝わったと想定することも難しい。この海域で日本人と朝鮮人が出会うのは、安竜福事件の生じる1690年代まで待たなければならないからである。さらに、石井宗悦書状のほかに、現在の竹島を松島と呼称することが分かる文献史料としては『隠州視聴合記』を挙げることができるが、これとても寛文７年(1667) 成立だから、『輿地志』 編纂よりのちのことである。

したがって、朝鮮文献における「于山島=松島(=現在の竹島)」の導入は、どれほど早く見積もっても、安竜福発言を介する以外にはありえないのである。したがって、1656年に編纂された『輿地志』には「于山はすなわち倭のいわゆる松島なり」(『文献備考』における引用文) なる記述は無かったとせざるをえない。

さて、「于山島=松島(=現在の竹島)」説が、『粛宗実録』巻３０から『(東国) 文献備考』を経て『増補文献備考』(1908年) まで見出せることをもって、この間「朝鮮政府が于山島に対して領有意識を維持していた」［堀和生、100頁］と述べることの不適切さについて、別の観点から触れておきたい。

明治14年(1881) 6月、朝鮮政府の派遣した捜討使は、欝陵島に多くの日本人が入り込み森林の伐採を行っていることに気づいた。朝鮮政府は日本政府に対して渡航禁止を求めて抗議するとともに、改めて欝陵島の詳細な実情調査を進めるために検察使李奎遠を派遣した。

派遣前に朝鮮国王高宗は、1882年４月、検察使李奎遠を招いて対話を行っている。

国王は、近ごろ欝陵島に他国人が往来していることを述べた上で、「松竹島と芋山島は欝陵島の近くにあるというが、どれほど離れているか、また産物が何かがよく分からない」 とも述べ、今回の派遣に際してはそうした不明も明らかにするよう求めている。これに対して李奎遠が「芋山島とは欝陵島のことである」「松竹島は一小島であって、欝陵島から20～30里ほど離れている」と返答すると、国王は改めて「芋山島といい、松竹島といい、いずれも『東国輿地勝覧』に載っている。場合によっては松島·竹島ともするが、芋山島とともに三島併せて欝陵島のことである。その様子を検察してくるように。」と命じた。

1882年4月30日から5 月11日に至る欝陵島実地踏査を記録したのが李奎遠『欝陵島検察日記』 であり、付図として、欝陵島内外を詳細に描いた二枚の図 「欝陵島内図」「欝陵島外図」が残されている。この付図には現在の竹島は記載されておらず、『欝陵島検察日記』を隅々まで読み込んでみても、李奎遠が竹島へ赴いた記事も無ければ、欝陵島から竹島を遠望した記事も無い。『欝陵島検察日記』の後半に収められた「啓本草」には「晴れた日に高所に登って遠くを眺望し、千里先をも窮めようとしたものの、石のひとつも土のひとつも見えなかった。つまり、于山を欝陵というのは耽羅を済州というのと同じだ」とする記述があり、これがそのまま国王への復命内容となったことは明らかである。

一方、『欝陵島検察日記』によれば、5月10日に李奎遠は欝陵島の道方庁で日本人たちと出会い、筆談により、日本人が欝陵島を松島と呼んでいることを知る。そして同日中に 「大日本帝国松島槻谷」と記された長六尺·幅一尺の木製標柱が長斫浦に建てられているのを目にし、日本人との筆談内容が事実であったと確認した。そして、この「松島」標柱については、復命時に高宗と李奎遠とのあいだで話題になってもいる(『高宗実録』1882年6月16日)。

とすれば、ここに朝鮮政府中央において「于山島＝松島＝欝陵島」なる理解が成立したと見て良い。欝陵島の外に于山島なる島を見出すことができず、またこの時点における松島は欝陵島を指す、ということが明確となったからである。そうである以上は、少なくともこの時点で于山島はこんにちの竹島ではない。

(2)「日本海内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伺」について

明治前半期の太政官に関わる公文書が収められた『公文録』のなかに「日本海内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伺」なる史料群がある。この史料群によると、明治10年(1877)、太政官は「日本海内竹島外一島」は「本邦関係無之」と判断したことがわかる。それは「版図ノ取捨」に関わって「本邦関係無之」と判断されたものである。したがって、このとき「日本海内竹島外一島」は日本領ではないと明治政府中央が判断したということである。

堀和生は、右の判断で日本の版図外とされた「竹島」は欝陵島を指し、「外一島」は現在の竹島を指すと述べる。この解釈に従えば、明治10年の日本政府は、現在の竹島を日本領ではないと公式に認めたということになる。

一方、「日本海内竹島外一島」の「竹島」が欝陵島を指すことには同意しながらも、「外一島」は現在の竹島ではないとする見解もある。つまり明治十年の日本政府は、現在の竹島を日本領ではないとは言ってい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たとえば杉原隆は、「日本海内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伺」それ自体の解釈には向かわずに、『(島根県)県治要領』にある「松島開墾願」への内務卿の回答ほかの史料群を「総合的に判断」したという。そうすると、「竹島外一島之儀本邦関係無之」なる太政官指令は「竹島とも松島とも呼ばれている島(欝陵島)が日本に関係がない」と読まねばならず、したがって当該史料にいう「外一島」とは現在の竹島のことではない、というのである。

また、塚本孝は、「伺が提出された明治の初年には、上述のように欝陵島を松島とした西洋の地図海図の影響により、「松島」が欝陵島を指す場合があった。このため、県から伺いを受けた内務省や、内務省から伺を受けた太政官もまた、「竹島外一島」を竹島(欝陵島)及び松島(今日の竹島)と考え、欝陵島とともに今日の竹島を本邦無関係としたとは即断できない」「竹島とも松島とも称される島(欝陵島)」と認識し、当該対象について本邦無関係との判断を下したものである可能性がある」[塚本孝2011、57－58頁]とするから、杉原見解に近い。

さて、「日本海内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伺」に含まれる11通の史料群を時系列にしたがって整理しつつ経過を追いかけてみよう。

明治９年(1876)10月5日、内務省地理寮の官吏(地理寮12等出仕田尻賢信と地理大属杉山栄蔵)が島根県地籍編製係に対し以下のような指示を出した。島根県に

属する隠岐国の某方角に「従来竹島ト相唱候孤島」があり、当時内務省地理寮が進めていた日本全国の地籍編成に関わって、右の孤島を島根県の地籍に含めるか否かを判断するためにも、右に関わる「旧記古図等」を島根県として調査した上で内務省に伺いを立てるように、という指示である。

これに対して島根県は同年10月16日、当座の調査結果の概略を文書にし、図面を添えて、「日本海内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伺」と題した伺書を県知事名で内務省に提出した。その伺いに添えられたのが「別紙原由之大略」と図面である。

ところで、内務省地理寮の官吏が島根県側に求めたのは「竹島」に関わる「旧記古図等」を取り調べて伺いを立てることであったにも関わらず、島根県の伺書は「竹島外一島」に関わる伺いとなっている。それは、島根県が「竹島」に関わる「旧記古図等」を取り調べてゆくと「竹島」だけでなく「松島」にも言及せざるを得なかったからである。「別紙原由之大略」とは「竹島」に関わる「旧記」の大略であったから、「松島」に関わる記述は「次ニ一島アリ、松嶋ト呼フ、周回三十町許、竹島ト同一線路ニ在リ、隠岐ヲ距ル八拾里許、樹竹稀ナリ、亦魚獣ヲ産ス」とするものに過ぎない。しかし同時にこの簡略な記述にあってすら、「松島」は「竹島ト同一線路ニ在」る島だとする地理上の特徴が指摘されざるを得なかった。この「松島」が今日の竹島であることは明瞭である。

島根県は内務卿大久保利通あての伺書のなかで、「竹島」 は山陰地方西部に連なって附属する島のようにも感じられるから、島根県の地籍に編入するか否かの判断を乞うと述べる(「山陰一帯之西部ニ貫付スヘキ哉ニ相見候ニ付テハ、本県国図ニ記載シ、地籍ニ編入スル等之儀ハ如何取計可然哉」)。とすれば、そのような「竹島」へ渡海する際の同一航路上に位置する「松島」についても、島根県は同様な判断を乞わざるを得まい。添付された図面が「磯竹島略図」と題されながら、その内容としては「竹島」「松島」双方を記載し、両島間に「松嶋ヨリ磯竹島ニ距ル、乾位四十里許」と書き込んでいるのは、「(松島が) 竹島ト同一線路ニ在リ」を図示するものである。

こうして伺書に添付された文書・地図双方から、島根県が「竹島」「松島」を一括するものとして伺書を出したことが明らかである以上は、「日本海内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伺」と題された伺書にいう「竹島外一島」が「竹島(欝陵島)」と「松島(現在の竹

島)」を指すことには議論の余地がない。

それら島根県提出文書および旧幕府から引き継いだ関連文書(対馬藩と朝鮮政府との交渉記録、幕府の判断) を検討した内務省は、竹島を「本邦関係無之」と結論づけた。しかしながら「版図ノ取捨ハ重大之事件」だからとして、明治10年３月17日、太政官の最終的な判断を仰ぐこととした。この伺いをうけた太政官では、3月20日に「書面竹島外一嶋之義、本邦関係無之義ト可相心得事」とする指令案が作成され、同27日にかけて稟議が行われた。稟議の結果、先の立案どおりの指令が承認され、同29日に内務省に対して指示された。その指令内容が島根県に伝わったのは、同年4月9日のことである。

さて、江戸時代日本で竹島と呼ばれた島は現在の欝陵島を指し、松島と呼ばれた島は現在の竹島を指していたことは間違いない。ところが、幕末維新期には、欝陵島を竹島と呼ぶ者がある一方で、欝陵島を松島と呼ぶ者もあった。この時期になると、竹島なる島名と松島なる島名が一体どこの島を指すのかをめぐって混乱が生じていたのは事実である。しかしながら、「日本海内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伺」を丁寧に追えば、ここにいう「外一島」が何を指しているかは自ずと明らかであり、そこに「島名の混乱」の影響は皆無である。

先述の杉原隆見解は、「竹島外一島」にいう「竹島」は欝陵島を指し、「外一島」もまた欝陵島を指すのだという。「竹島外一島」は「竹島ともう一つの島」と読むのが素直だろう。杉原見解に従えば、「日本海内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伺」とは「日本海にある欝陵島と欝陵島を(島根県) 地籍に編纂するにあたっての伺い」ということにならざるを得ないが、そうした風変わりでくどくどしい問い合わせ方は明治期の行政文書上では良く見られるものなのだろうか。

以上の (1) (2) を通じて言えることは、史料は、先ずもって与えられたテクストの中で解釈することが必要だということである。後世の認識をもって前代の史料を解釈してみたり、当該テクストを読み込みもせずに周辺史料から自説に都合の良い解釈を導き出そうというのは邪道なのである。

おわりに

本論で述べた二つのタイプの議論以外にも、学問的な論証とは言えないような主張

が無いわけではない。一例を追加すれば、「竹島に関する1953年9月付韓国政府の見解に対する日本国政府の反駁」(1954年2月10日) において、1905年の竹島島根県編入前後において、竹島を韓国領と考えていなかった証拠として、光武５年(1901) 刊行 『大韓地誌』 には韓国領土の東限を東経130度35分としており、竹島は含まれていないこと、を挙げたりする。東経130度35分といえば欝陵島より西側にあたるから、これが東限だとすると欝陵島もまた韓国領とは認識されていなかったということになる。それこそ数多くの文献上、欝陵島は朝鮮王朝領・大韓帝国領とされていたことは明白であり、この経度によってそうした領土認識が否定されるはずもない。この「東経130度35分」という数字に何らかの錯誤があると考える方が素直であろうと思う。したがって、『大韓地誌』 の記述をもって上述のような主張を行うのは、揚げ足取りに近い物言いとさえ言える。そして類似の物言いは、最近の韓国で見られる 「近代日本で作製された日本地図には竹島の無いものが少なくない、だから竹島は日本領ではなかった」 とする主張に見られ、両者の学問的水準は五十歩百歩である。

実のところ、竹島論争は煮詰まっていると感じている。最終盤を迎えていると言っても良い。しかし一方で、延々と議論を引き延ばすことも可能である。もし今後の日韓関係を良好なものとして発展させるためにこの議論を断ち切ることが必要だと考えるのであれば、 恣意性を極力排除して史料・史実に向き合う勇気が奮えるか否かが分岐点となるだろうと思う。

【注】

(1) 李碩祐は「…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の解釈が日本の独島に対する領有権を認定したものとして結論づけられることが明らかである以上、(SCAPIN677が「日本の特定の外郭地域を政治的行政的に分離した」 ことを強調するのは―引用者注) 決して望ましい接近方法ではない」[李碩祐、18頁]と述べ、鄭秉峻も、SCAPIN677へは言及するものの旧説のような解釈をしていない[鄭秉峻]。また、「SCAPIN677号の場合、김석현教授が指摘するように、この文書を作成したアメリカですら、これによって独島の韓国への還付を認定してはいないので、われわれがこうした主張をすることは苦しくないとはいえない」 [金炳烈노영구・이상근、８頁] とする研究史整理も存在する。

なお、1951年８月に韓国政府の要望を却下したラスク書簡の説明には、事実認定

の点で問題が無いわけではない。ラスク書簡では、以下のように言う。

ドク島、又は竹島ないしリアンクール岩として知られる島に関しては、この通常無人島である岩島は、我々の情報によれば (a)朝鮮の一部として取り扱われたことが決してなく、(b)一九〇五年頃から日本の島根県隠岐支庁の管轄下にあります。(c)この島は、かつて朝鮮によって領土主張がなされたとは思われません。(傍線は池内)

李碩祐は、右に引用したラスク書簡傍線部 (a)の直前に見える「我々の情報によれば」 なる但し書きに注目し、「独島を含む韓国の歴史的事実に対する米国の理解の幅が狭いことを示唆」 していると見る。そして、「1905年以前に事実上独島が韓国領であったと見なさざるを得ないことを立証すれば、…平和条約にいう「朝鮮に対するすべての権利、権原および請求権を放棄する」の「朝鮮」に独島が含まれると主張することが可能となる」[李碩祐、202頁] と展望する。

(2) 竹島への渡海が禁制された後でも松島(こんにちの竹島) への渡海が禁止されたわけではなかったことは、元禄九年正月廿八日付の竹島渡海禁制に関する奉書に…松島については何ら言及されていないことからも知られる[川上健三、190-192頁]。

【참고문헌】

池内敏 [2006]『大君外交と「武威」』、名古屋大学出版会
_____ [2007]「近世日本の西北境界」『史林』90巻1号
川上健三 [1966]『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古今書院
塚本孝 [2011]「勧告の保護・併合と日韓の領土認識」『東アジア近代史』14
堀和生 [1987]「1905年日本の竹島領土編入」、『朝鮮史研究会論文集』24

金柄烈・노영구・이상근 [2009]『独島研究60年　評価と今後の研究方向』、韓国海洋水産開発院
東北アジア平和のための正しい歴史定立企画団編 [2005]『独島資料集』Ⅰ、タダミディオ
宋炳基編 [2004]『独島領有権資料選』翰林大学校出版部
慎鏞廈編 [1998]『独島領有権資料の探求』第一巻、独島研究保全協会
尹裕淑 [2011]「朝鮮文献の『欝陵島・于山島』記事検討小考」、尹裕淑ほか『歴史と地理でみる欝陵島・独島』、東北亜歴史財団
李碩祐 [2007]『東アジアの領土紛争と国際法』集文堂
鄭秉峻 [2010]『独島1947』トルペゲ

이 논문은　2012년 10월 25일에 투고하여
2012년 12월　5일까지 심사하여
2012년 12월 15일 게재・결정됨

안용복사건 이후의 독도 영유권 문제*

박 병 섭**

〈목 차〉

1. 머리말
2. 교호(享保)기의 마쓰시마(독도) 인식
3. 덴포(天保) 다게시마 일건
4. 에도시대 말기「울릉도 개척에 관한 건언서」
5. 일본 외무성의 조사
6. 내무성의 조사『이소타케시마 각서』
7. 관찬 지지『일본 지지 제요』
8. 태정관 '다케시마 외 1도' 지령서
9. 메이지시대의 관찬 지도
10. 조선에 대한 영향
11. 결론

〈국문초록〉

안용복 피랍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겐로쿠 다케시마 일건 (元禄竹島一件)'의 결과, 에도막부(江戸幕府)는 '다케시마(울릉도) 도해 금지령'을 내렸다. 이 금지령에 마쓰시마(松島, 독도)의 이름은 없었지만 금지령을 내린 경위를 생각하면 "다케시마 근처의 마쓰시마"도 도해가 금지된 것이다. 게다가 다케시마 · 마쓰시마가 조선영토임은 1724 (교호 享保9)년에 돗도리번으로부터 에도막부에 제출된「다케시마노 가키쓰케(竹島之書付) 3통」에 부속된 그림지도「다케시마 도(竹島圖)」에서 확인된다. 이 그림지도는 분명히 다케시마 · 마쓰시마의 한 쌍을 조선영토로 그렸다.

그 후 에도막부는 '덴포 다케시마 일건(天保竹島一件)'때에 사건 기록『조선 다케시마

---

* 이 논문은 2012년도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 · 보완한 것이다.

** 일본 竹島=독도문제연구넷

도항 시말기(朝鮮竹島渡航始末記)』를 작성했는데 이에 부속된 그림지도에서 다케시마 · 마쓰시마를 조선영토로 그렸다. 이는 '겐로쿠 다케시마 일건'의 인식을 이어받은 것이다. 이 인식은 에도시대 말기까지 계속됐으며, 에도막부는 쵸슈번(長州藩) 가쓰라 고고로(桂小五郎) 등으로부터 제출된 마쓰시마를 포함한 다케시마 개척 청원서에 대해 다케시마는 덴포기에 조선영토임을 확인했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이런 다케시마 · 마쓰시마를 조선영토로 보는 인식은 메이지(明治)정부에도 이어졌다. 메이지 초년에 조선을 내탐하기 위해 부산의 왜관 등으로 파견된 일본외무성 관료들은 '겐로쿠 다케시마 일건'을 충분히 조사해 다케시마 · 마쓰시마가 조선영토임을 확인했다.

한편, 일본내무성에서는 지지과가 관찬지지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겐로쿠 다케시마 일건'을 조사해, 다케시마 · 마쓰시마가 일본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이소다케시마 각서(磯竹島覺書)』를 편찬했다. 이 직후 지지과는 태정관으로 옮기고 관찬지지 『일본지지제요(日本地誌提要)』를 편찬했으니 이 책에도 다케시마 · 마쓰시마가 일본영토가 아니라는 인식이 이어졌다.

이처럼 내무성 및 태정관은 다케시마 · 마쓰시마가 일본영토가 아니라는 인식을 가졌으니 시마네현에서 「일본해내 다케시마 외 1도 지적 편찬 질문서(日本海內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伺)」가 제출됐을 때 쉽게 다케시마 · 마쓰시마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인식에 근거해 내무성은 다케시마 · 마쓰시마를 일관해 일본영토 밖으로 하는 관찬지도를 작성했다. 특히 지도 책 『대일본국 전도(大日本国全圖)』에서는 1871년부터 1883년까지 일본 각지의 소속의 변천을 지도 12장에 밝혔는데 이 모든 지도에 다케시마 · 마쓰시마는 없으며 일본영토로 취급되지 않았다.

결국, 일본은 역사상 독도를 조선 · 한국 영토로 판단한 일은 몇 번이나 있으나, 독도를 일본영토로 판단한 일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런 독도를 일본은 제국주의적 수법으로 1905년에 일본땅으로 편입한 것이다. 따라서 일본외무성의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주제어: 겐로쿠 다케시마 일건(元祿竹島一件), 교호(享保) 「다케시마 도 (竹島圖)」, 덴포 다케시마 일건(天保竹島一件), 『이소다케시마 각서(磯竹島覺書)』, 『일본 지지 제요(日本地誌提要)』, 『대일본국 전도 (大日本国全図)』

1. 머리말

1693년 울릉도로 출어한 안용복은 일본 돗토리번(鳥取藩)의 상인 오야(大谷) 가문에 의해 피랍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조선과 일본 쓰시마번(對馬藩) 사이에서 울릉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야기됐는데, 이를 조선에서는 울릉도쟁계, 일본에서는 '겐로쿠 다케시마 일건'이라 부른다.

외교 교섭에서 쓰시마번은 에도막부의 명에 따라 조선정부에 조선 어민의 다케시마(울릉도) 도해를 금지하라고 요구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 교섭이 복잡해져 교착 상태에 빠졌다. 쓰시마번에서 보고를 받은 에도막부는 다케시마에 관한 본격적인 조사를 개시해 돗토리번 등에 질문했다. 돗토리번은 다케시마 소속에 관해 이 섬은 돗토리번에 속하지 않는다. 따로 마쓰시마(독도)라는 섬이 있는데 이 섬도 일본의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이 사건을 통해 처음으로 마쓰시마를 알게 된 에도막부는 돗토리번이 말하는 대로 마쓰시마(독도)도 일본 땅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따라서 에도막부가 내린 '다케시마 도해 금지령'에는 당연히 마쓰시마도 포함됐던 것이다.

에도막부의 도해금지령이 조선에 전달되기 전인 1696년 봄에 안용복 등은 이번에는 스스로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는 일본 오키(隱岐) 관아에서 일본의 다케시마는 울릉도, 마쓰시마는 자산도이며 모두 조선 강원도에 속한다고 주장했으며, 오키 대관(代官) 수하가 그들의 주장을 기록하고 막부에 보고했다.[1] 안용복 등은 다음에 돗토리번으로 갔는데, 이 때에 그들이 탄 배에 "조울 양도 감세장 신 안동지 기(朝欝兩島監稅將 臣 安同知騎)"라고 쓴 깃발을 세웠다. 이는 "조울 양도는 울릉도 〈일본에서 이를 다케시마라고 부른다〉, 자산도 〈일본에서는 이를 마쓰시마라고 부른다〉."[2]라고 이해됐다. 한편, 오키 관아에서 안용복 일행이 '다케시마 소

1) 무라카미가문서(村上家文書), 즉『元祿九丙子年 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

2)『이나바시(因幡志)』.

송'[3]으로 돗토리번에 갔다는 연락을 받은 돗토리번은 유학자를 파견해 그들과 필담을 시켰다. 이 결과 등을 돗토리번은 에도막부에 보고하고 대처 방침을 물었다. 에도막부는 방침을 몇 번이나 바꾸었는데 결국은 안용복 일행을 추방했다. 이런 잘 알려진 안용복 사건이 후세의 독도 영유권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다.

2. 교호(享保)기의 마쓰시마(독도) 인식

안용복사건에서 30년 후, 돗토리번과 에도막부는 다케시마·마쓰시마를 조선 영토로 재확인하는 기회가 있었다. 교호기의 '다케시마 밀무역 사건'이다. 1723(교호 8)년, 오사카마치부교[4](大坂町奉行)는 이와미(石見, 시마네현 서부)에 사는 가에(嘉右衛) 등을 7년 전에 다케시마(울릉도)에서 밀무역을 했다는 혐의로 잡았다.[5] 그 다음 해에 에도막부는 사건 처리에 필요했는지 돗토리번에 다케시마에 관한 7개조의 질문을 했다. 이 내용은 1692~93년에 요나고 상인들이 다케시마에서 조선인과 만났을 때의 상황, 다케시마의 산물이나 생물, 토지의 넓이, 다케시마에서 호키국이나 조선까지의 거리 등이었다.[6] 이에 대해 돗토리번은 예전에 다케시마에서 어업을 했던 오야·무라카와 양가로부터 상세한 정보를 얻어 회답했다. 이 기록이 『다케시마노 가키쓰케(竹島之書付)』에 있는 「교호 9년 갑진년 윤4월 16일 막부에 제출된 서류의 사본, 다케시마노 가키쓰케 3통」[7]이다. 이

3) 『御用人日記』元祿9년 6월 22일의 기록에 「隱岐國より申來候は 竹島之儀付て御訴訟參候旨申由之注進」라고 써있다.

4) 오사카 지방을 중심으로 행정, 사법 등을 관할했다.

5) 奧原碧雲, 『竹島及欝陵島』, 報光社, 1907, p.23.

6) 『因府歷年略史』.

7) 「享保九甲辰年閏四月十六日公儀え被遊御差出御書付の控 竹島之書付 三通」, 『竹島之書付』, 鳥取県立博物館 소장; 塚本孝, 「竹島関係旧鳥取藩文書および絵図」, 『レファ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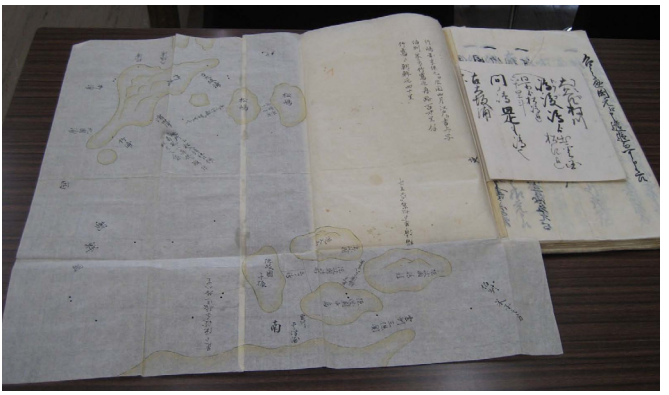

[도판1]
에도막부에 제출된 교호기의「다케시마 도」 다케시마 · 마쓰시마를 일체로 조선 땅으로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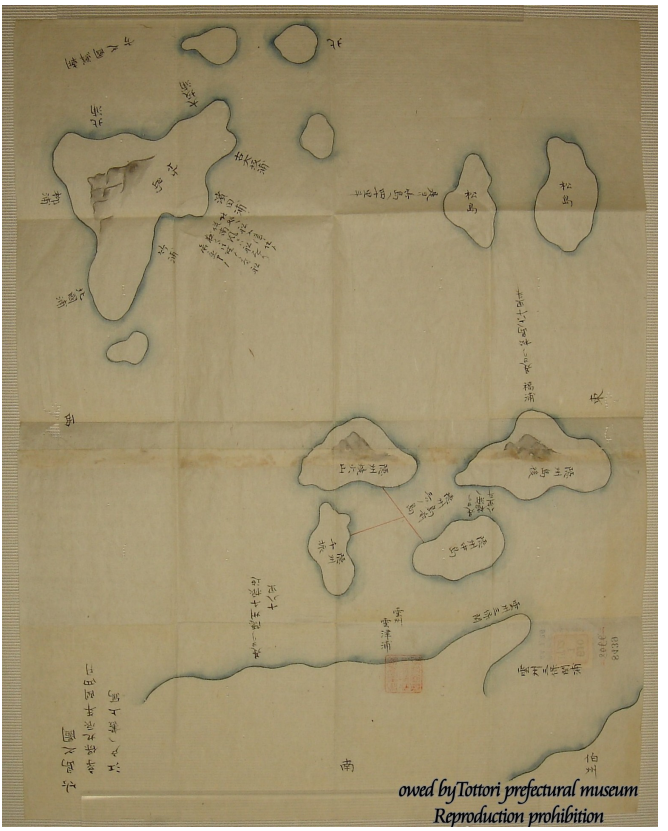

[도판2]
교호「다케시마 도」를 수정하기 전의「다케시마 지도」

ンス』411号, 1985, pp.79-89.

기록에 그림지도 「다케시마 도(竹島圖)」(도판1)가 철해져 있는데, 이 그림지도에서 마쓰시마(독도)는 다케시마와 일체로 표현됐다. 게다가 그 밑에 '조선국'이라고 기입됐으니 이는 분명히 다케시마·마쓰시마가 조선 부속임을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다케시마 도」와 비슷한 그림지도 「다케시마 지도(竹島之圖)」(도판2)가 『다케시마노 가키쓰케』에 묶여 있지 않고 부속 봉투 속에 들어가 있다. 이 그림지도에는 서북 구석에 '조선국 쪽'이라고 기입되고 있다. 또한, 마쓰시마의 위치는 오키와 다케시마로부터 거의 같은 거리에 있다. 이들 그림지도 2장에 "교호 9 갑진 윤 4월 에도에 올린(書上)사본 (享保九甲辰閏四月 江戸江 書上ノ写)"이라고 쓰여 있다. 그러나 그림의 모양이 다른 이들 그림지도 2장이 함께 에도막부에 제출됐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막부에는 『다케시마노 가키쓰케』에 철해져 있는 「다케시마 도」(도판1)만 제출되고, 묶여져 있지 않았던 「다케시마 지도」는 제출되지 않았을 것이다. 「다케시마 지도」는 앞의 봉투 속에 분명히 초안으로 생각되는 다른 그림지도 2장과 함께 들어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청색으로 색칠됐다. 이들과 구별하듯이 「다케시마 도」만 황색으로 색칠되어 앞의 회답서 「사본」에 철해졌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청색으로 색칠된 「다케시마 지도」 등 3장은 막부에 제출되지 않고, 황색으로 색칠된 「다케시마 도」만 막부에 제출됐다고 보아야 한다. 아마 돗토리번은 「다케시마 지도」를 그린 후에 이를 수정한 「다케시마 도」만 제출했다고 생각된다.[8] 또한, 일본정부도 "특히 이케다 가문 구장(舊藏) 「다케시마 도」는 막부의 명령에 따라 조정(調整)해 제출된 것의 복사이며 공적인 성질을 가진 것"[9]이라고 쓰고 「다

8) 「다케시마 지도」에는 다케시마와 마쓰시마 사이의 거리를 40리(160km), 마쓰시마와 오키 사이의 거리를 60리(240km)라고 쓰고 이에 알맞은 위치에 마쓰시마를 그렸지만, 「다케시마 도」에는 다케시마와 마쓰시마 사이의 거리를 40리 라고 썼지만 거리를 무시하듯이 마쓰시마를 다케시마 바로 옆에 그렸다. 이는 마쓰시마가 다케시마와 일체라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9) 1954.2.10.付 「竹島に関する1953年9月9日付大韓民國政府の見解に対する日本國政府

케시마 도」가 막부에 제출됐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공적인 성질을 가진" 「다케시마 도」는 마쓰시마를 다케시마와 일체인 것처럼 그리고 두 섬들을 '조선국' 영토로 표현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에 시마네현은 팸플릿 「다케시마」에 「다케시마 지도」(도판2)를 싣고 "막부에 제출됐다"[10]고 설명했지만, 이는 앞에 쓴 바와 같이 의문이다.

결국 돗토리번이 제출한 공적인 그림지도 「다케시마 도」에 의해 막부도 다케시마·마쓰시마가 조선 영토임을 확인했을 것이다.

3. 덴포(天保) 다케시마 일건

'겐로쿠 다케시마 일건'의 영향은 19세기 중엽에 일어난 '덴포 다케시마 일건'에게도 미쳤다. 이 사건은 이와미 하마다(石見濱田, 시마네현 서부)의 해운업자 이마즈야 하치에몬(今津屋八右衛門)[11]이 다케시마(울릉도)로 밀항한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의 시대적인 배경에는 일본 해운업의 발달이 있었다. 일본에서는 분카·분세이기(文化·文政期, 1804~30)에서 덴포기(1830~44)에 이르러 해운업이 성하게 됐다. 배는 대형화되고 천 석짜리 배 등에 의해 대량의 물자가 운반됐다. 이에 따라 일본 서북부 지역에서는 연안 항로에서 벗어나 외양 항로가 개발되고 다케시마·마쓰시마 근처를 지나가는 배가 점점 늘어났다.[12] 이 결과 다케시마·마쓰시마에 침입하는 자가 나타났다. 이

の見解」.

10) 『竹島』, 島根県発行[PDF版：2006년 2월 22일 발행] http://www.pref.shimane.lg.jp/soumu/web-takeshima/takeshima06/index.data/panf2008.6.5.pdf

11) 별명을 아이즈야(會津屋) 하치에몬이라고 하지만, 이마즈야가 옳다고 한다. (森須和男, 『八右衛門とその時代』, 浜田市教育委員会, 2002.).

12) 하마다번의 나카가와 아키스케(中川顯允) 『이와마 가이키(石見外記)』 부속 지도

것이 일본인의 제2차 울릉도 침입이다.

그런 침입 사건의 대표적인 예가 '덴포 다케시마 일건'이다. 이 사건의 주범인 하치에몬(八右衛門)은 하마다번의 승인을 은밀히 얻어 1833(덴포 天保4)년부터 다케시마(울릉도)로 밀항하고 벌목 등을 했다. 그러나 1836년에 발각돼 오사카마치부교(大阪町奉行)에 의해 체포됐다. 부교가 하치에몬을 조사했더니 사건에는 하마다번이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을 막부의 최고 사법 기관인 평정소(評定所)로 넘기고 6월에 하치에몬을 평정소 산하의 지샤부교(寺社奉行)로 인도했다. 평정소는 일본 각지의 관계자를 조사한 후, 하마다번 전 태수를 칩거시키거나 하치에몬 및 하치에몬과 결탁한 하마다번의 하시모토 산베에(橋本三兵衛) 등을 처형하는 등 관계자를 엄벌에 처했다.

그런데 일찍이 일본정부는 1950년대 한일간 독도 영유권 논쟁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의 근거로 이 사건을 인용했다. 즉 「일본정부견해 3」[13]은 이 사건 판결문에 밀무역을 한 하치에몬이 "가까운 마쓰시마로 도해한다는 명목으로 다케시마로 건너가고"라는 글이 있으니, 이는 마쓰시마로의 도항이 아무 문제가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의 주장을 바탕으로 했는데,[14] 이에 쓰카모토 다카시(塚本孝)가 찬성했다.[15] 그러나 이케우치 사토시(池内敏)는 이에 이의를 제시해 "하치에몬이 처형당한 사실은 하시모토 산베에의 교사(앞의 변명, 주)가 통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가와카미의 가설은 성립되지 않다"[16]고 반론했다. 이런 견해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大御國環海私圖」에 "다카다야 가헤(高田屋嘉兵衛) 상선은 조선해에 나가 에조(蝦夷)땅으로 가는데, 이는 시모노세키(下ノ關)를 출범해 서북 방향으로 8리(32km) 가고 마쓰·다케(松竹) 두 섬 사이를 빠져 동북을 목표로 간다."고 썼다.

13) 1956.9.20.付「竹島に関する1954年9月25日付大韓民國政府の見解に対する日本國政府の見解」.

14) 川上健三,『竹島の歷史地理学的研究』, 古今書院, 1966, p.191. 판결문은 "右最寄松島へ渡海之名目を以て竹島え渡り稼方見極上…"라고 썼다.

15) 塚本孝,「韓國の保護·併合と日韓の領土認識」,『東アジア近代史』第14号, 2011, p.56.

이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조사 기록『다케시마 도해 일건기(竹島渡海一件記)』[17]가 작성됐다. 이는 하치에몬의 진술 조사서인데, 이에「다케시마 방각도(竹島方角圖)」(도판3)가 첨부됐다. 이 지도에 다케시마·마쓰시마는 조선 본토와 같은 붉은 색, 오키·산인(山陰)지방은 노란 색으로 색칠되었으며, 다케시마·마쓰시마가 조선 영토임을 분명히 표시하고 있다. 이 지도 안에 "앞의 글의 진술과 대조하기 위해 시험적으로 지도를 그린다"고 썼으니「다케시마 방각도」는 진술 조사서와 대조하기 위해 하치에몬을 처음에 취조한 오사카마치부교가 만들었다고 생각된다.[18] 오사카마치부교는 다케시마·마쓰시마를 조선 영토로 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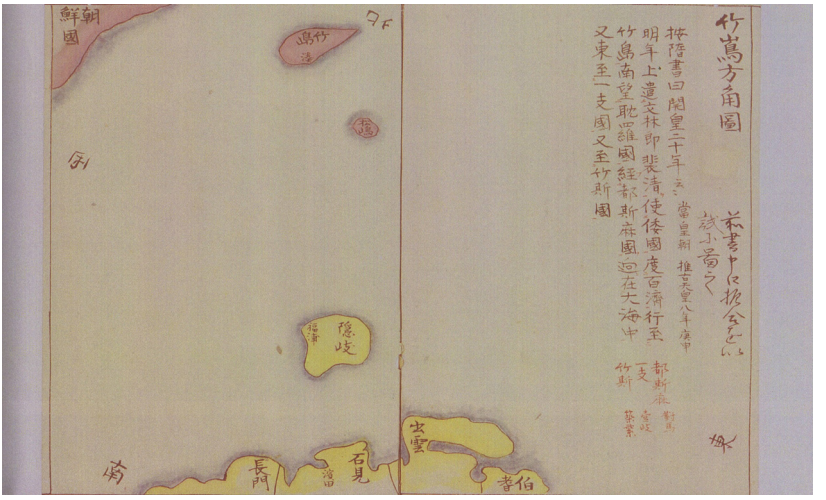

[도판3]『다케시마 도해 일건기』부속지도「다케시마 방각도」
다케시마·마쓰시마 및 조선 본토는 붉은 색, 오키·산인 지방은 노란 색.

16) 池内敏,「近世日本の西北限界」,『史林』90巻 1号, 2007, p.132.

17) 東京大学総合図書館所藏. 翻刻文은 森須和男 전게서, p.3(資料編).

18) 박병섭,「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관점」,『한·일 양국의 관점에서 본 울릉도·독도 심포지움 보고서』, 대구한의대학교, 2011, p.149; 朴炳渉,「江戸時代の竹島＝独島での漁業と領有権問題」,『北東アジア文化研究』35号, 2012, p.28.

하치에몬이 오사카마치부교로부터 지샤부교에 옮겨진 후에 막부는 다케시마·마쓰시마에 관한 조사를 했다. 이훈이 발굴하고,[19] 이케우치 사토시가 재해석을 한[20] 사료 「대마도 종가문서(對馬島宗家文書)」[21]에 따르면 막부는 7월 17일에 쓰시마번의 에도번저(江戶藩邸)를 불러 다케시마·마쓰시마에 관해 질문했다. 막부는 "두 섬은 다 조선의 울릉도이냐 혹은 다케시마는 울릉도이며 마쓰시마라는 것은 조선 밖의 땅이냐" 등 물었다. 이에 대해 쓰시마번은 (1)다케시마는 강원도의 울릉도이며, (2)겐로쿠기에 쓰시마번이 막부의 질문에 대해 "다케시마 근처에 마쓰시마라는 섬이 있으며, 거기에도 건너가고 어업을 했다는 것이 아래 것들의 풍설입니다"고 대답을 한 것, (3)마쓰시마도 "다케시마와 같이 일본인이 건너가고 어업을 한 일에 관해 도해가 정지된 섬이라고 생각되지만, 이를 단정하는 일에 관해서는 대답 못합니다"라고 회답했다. 쓰시마번도 '다케시마 근처의 마쓰시마'도 도해가 금지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게다가 "단정하는 일에 관해서는 대답 못합니다"고 회답한 것은 도해가 금지됐는지 여부의 최종 판단은 당연히 막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쓰시마번의 회답을 감안해 막부가 '다케시마 방각도'를 수정한 것이 『조선다케시마 도항 시말기(朝鮮竹島渡航始末記)』[22]의 부속 지도(도판4) 이다.[23] 이 『시말기』는 로쥬 미즈노 다다쿠니(水野忠邦)가 이 사건의 오카카리(御掛り), 즉 담당으로 된 후의 기록이니 『시말기』는 에도막부의 평정소 혹은 산하의 지샤부교에서 제작됐다고 생각되며, 에도막부의 대외관계 사료집 『통항일람 속집(通航一覽續輯)』에 거의 같은 글이 수록됐다.[24] 단 『통항일람 속집』에서는 이 사건이 '잠상 형벌'에 분류됐으니, 잠

19) 이훈, 「조선 후기의 독도 영속 시비」, 『독도와 대마도』, 지성의샘, 2005, p.43.
20) 池内敏, 『大君外交と「武威」』, 名古屋大学出版会, 2006, p.82.
21) 「대마도 종가문서」,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고문서 목록 #4013.
22) 浜田市立図書館所藏. 翻刻文은 『新修島根県史』 史料編3(近世下), 1967, pp.328-335.
23) 박병섭, 전게 논문,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관점」, p.150; 朴炳涉, 前揭 「江戶時代の竹島＝独島での漁業と領有権問題」, p.29.

상에 관계없는 '다케시마 도해 금지령'이나 하치에몬을 체포한 오사카마치부교의 지략 등은 게재되지 않았다. 또한, 부속 지도도 게재되지 않았다. 부속 지도에서는 도판4과 같이 일본 혼슈(本州), 오키, 쓰시마는 무색이지만 다케시마·마쓰시마는 조선 본토나 부산 부근의 섬과 같은 붉은색으로 채색됐다. 이 지도도 마쓰시마를 조선 영토로 보았으며, 마쓰시마로의 도해는 문제가 없다는 하마다번의 변명을 부정한 것이다. 이들 2장의 막부 기관이 작성한 지도에서 막부가 다케시마·마쓰시마를 조선 영토로 생각한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마쓰시마(독도)로의 도해는 위법이며, 일본정부나 쓰카모토 다카시 등의 마쓰시마로의 도해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덴포기의 '다케시마 도해 일건'을 수습한 에도막부는 전국적인 다케시마 도해 금지령을 내리고 온 포구에 팻말을 세웠다. 팻말은 "(다케시마는, 주) 겐로쿠기에 조선국으로 넘겨준 이래 도해정지를 명하신 곳이다… 도해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여러 나라의 상선 등은 해상에서 다른 나라 배를 만나지 않도록 항로에 조심해야 한다는 예전의 명령을 잘 지키고 이후는 되도록 먼 바다로 나아가지 않도록 항해해야 된다."고 명했다. 이 팻말에 마쓰시마의 이름은 없지만, 이에 대해 나이토 세이츄는 "먼 바다로 가는 배밖에 갈 수 없는 마쓰시마를 도해금지령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다"[25]라고 주장했다. 이는 막부의 마쓰시마에 대한 인식을 생각하면 타당한 견해이다.

---

24) 『通航一覽續輯』 卷之五. 번각은 箭內健次, 『通航一覽續輯』 第1卷, 清文堂出版, 1968, pp.82-90.

25) 內藤正中, 「1905年の竹島問題」, 『北東アジア文化研究』34號, 2010, p.7.

[도판4] 에도막부가 작성한『조선 다케시마 도항 시말기』의 부속지도.
다케시마 · 마쓰시마는 조선 본토와 같은 붉은 색

이 사건의 결과는 독도문제에 중대한 결과를 남겼다. 에도막부가 마쓰시마(독도)를 확실히 조선 땅으로 판단했으니, 외무성의 "일본은 17세기말에 울릉도 도항을 금지했습니다만, 다케시마(독도, 주)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늦어도 17세기 중엽에는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확립했습니다"[26]라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4. 에도시대 말기「울릉도 개척에 관한 건언서」

덴포기에 다케시마(울릉도) 도해금지령을 알리는 팻말에 "다케시마는 겐로쿠기에 조선국에 건네주게 되었다"고 쓴 것이 후세에 영향을 미쳤다. 이 글에는 본래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었다는 뜻이 스며있다. 이 인식이 에도시대 말기 일본인에게 울릉도·독도를 침탈하려는 움직임을 초래했다. 이 인식은 아오키 곤요(青木昆陽)의『초로잡담(草廬雜談)』에 이어지고 마쓰우라 다케시로(松浦武四郎) 등에 영향을 미쳤다. 마쓰우라는 1854년에 고본(稿本)『다케시마 잡지(多気甚麽雜誌)』를 지인에게 배포해, 1871년에는『다케시마 잡지(竹島雜誌)』를 발간했다. 그는 잇따른 외국선의 침입에 위기감을 가지고 있었던데, 그가『다케시마 잡지』를 펴낸 목적은 다케시마 개척을 재촉하고 국방 의식을 강화시키려는 것이었다. 그의 생각은 메이지정부의 기틀이 된 쵸슈 번(長州藩)의 지사(志士)들, 요시다 쇼인(吉田松陰), 가쓰라 고고로(桂小五郎), 무라타 조로쿠(村田蔵六)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27] 이들 중에서 요시다는 외국 밀항을 시도해 체포되어 옥사에서 죽었지만, 가쓰라는 후에 이름을 기도 다카요시(木戸孝允)라고 바꾸고 메이지정부의 요직인 참의(参議)까지 올랐던 인물, 무라타는 후에 이름을 오무라 마수지로(大村益次郎)라고 바꾸고 일본육군의 창설자로

26) 外務省,『竹島問題を理解するための十のポイント』, pp.5－6.
27) 岸本覚,「幕末海防論と「境界」意識」,『江戸の思想』9, ぺりかん社, 1998.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다. 이들이 개간을 주장하는 다케시마에는 다음과 같이 마쓰시마(독도)도 들어가 있었다.

> 다케시마, 오사카지마(大坂島), 마쓰시마를 합쳐서 다케시마라고 한다. 25리(100km)에 흩어져 있다. 다케시마 만으로 18리 있다. 3섬 모두 사람은 없다. 오사카지마에 대신궁(大神宮)의 작은 사당이 있다. 이즈모(出雲)에서 해로 120리 (480ｋｍ) 정도다. 산물, 뱀, 물고기, 좋은 목재 등이 많이 있다. 개간하면 기름진 밭이 되고 좋은 땅으로 된다.[28]

이 글 중에 오사카지마는 오야 가문 등이 오사카우라(大坂浦)라고 이름을 지은 곳 근처에 있는 섬, 즉 죽도(죽서)를 말한 것 같다. 이 섬 및 마쓰시마를 포함한 다케시마 개간을 위해 가쓰라와 무라타는 「울릉도 개척에 관한 건언서」를 에도막부에게 1860년에 제출했다. 그들은 다케시마가 울릉도임을 알고 있었으며, 건언서에 "다케시마는 조선에 넘겨진 섬이라는 설도 있지만 만국지도에는 '다케에이 라라도'라고 써 있으니 분명히 일본 땅"[29]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외국이 다케시마를 식민지로 만들기 전에 개간을 쵸슈번에 인정해 주기를 바란다고 신청했다. 여기에 '다케에이 라라도'는 '다케 아이랜드'즉 '다케시마'의 잘못인 것 같다.

이 건언에 대해 에도막부는 덴포기에 다케시마는 조선 부속의 섬이라고 언도했기 때문에 개간을 허용치 않겠다고 전했다.[30] 막부는 겐로쿠기의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을 이어받은 덴포기의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을 간직한 것이다. 이로서 쵸슈번의 다케시마 개척 계획은 무산됐다.

---

28) 吉田松陰より桂小五郎宛手紙、1858.7.11, 『吉田松陰全集』 第9巻, 大和書房, 1974, p.61；小美濃清明, 『坂本龍馬と竹島開拓』, 新人物往來社, 2009, p.43.

29) 『木戸孝允文書』 8, 日本史籍協会, 1931, p.8.

30) 小美濃清明, 전게서, p.72.

5. 일본 외무성의 조사

안용복사건의 영향은 메이지시대 외무성의 다케시마(울릉도), 마쓰시마(독도) 조사에도 볼 수 있다. 1870년에 조선을 내탐한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 사다 하쿠보(佐田白茅), 사이토 사카에(斉藤栄) 등 3명은 「다케시마 마쓰시마가 조선의 부속이 된 시말」을 일본외무성 및 태정관에 보고했다. 태정관이란 국가의 최고기관, 즉 메이지정부 수뇌부라고 볼 수 있다. 모리야마 등의 보고서에 대해 나이토 세이츄(内藤正中)는 "다케시마, 마쓰시마는 모두 조선영토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31]고 썼으며, 시마네현도 "다케시마(현재의 울릉도)뿐만 아니라 마쓰시마(현재의 다케시마)도 조선땅으로 됐다는 것이다"[32]고 평가했다. 한편, 호리 가즈오(堀和生)는 "이것도 겐로쿠기의 '다케시마일건'에서 마쓰시마=독도가 조선에 넘어간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이는 단순한 보고였다"[33]고 폄하했으며, 쓰카모토 다카시(塚本孝)는 "다케시마 마쓰시마가 조선의 부속이 된 시말은 쓰지 않았다"[34]고 오해했다. 이케우치 사토시(池内敏)는 이를 무시했는지 아무 언급이 없다. 시모죠 마사오(下條正男)는 어느 때는 "사다 하쿠보의 마쓰시마가 현재의 다케시마(당시 리양코도)를 가리키고 있다고 하면 이는 사실 오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35]고 썼으나, 5개월 후에는 "다케시마(현재의 울릉도)뿐만 아니라, 마쓰시마(현재의 다케시마)도 조선령이 됐다는 놀라운 표제였다"[36]고 말하는 등 여전히 변설이 심하다.

---

31) 内藤正中 · 朴炳涉, 『竹島＝独島論争』, 新幹社, 2007, p.19.

32) 島根縣 팸플릿, 『竹島』 pdf版, 2006년 2월 22일 발행. http://www.pref.shimane.lg.jp/soumu/web-takeshima/takeshima06/index.data/panf2008.6.5.pdf

33) 堀和生, 「一九〇五年日本の竹島領土編入」, 『朝鮮史研究会論文集』, 24호, 1987, p.104.

34) 塚本孝, 「竹島領有権問題の経緯(第3版)」, 『調査と情報』 701호, 2012, p.4.

35) 下條正男, 『「竹島」その歴史と領土問題』, 竹島 · 北方領土返還要求運動島根県民会議, 2005, p.61.

36) 「発信竹島－真の日韓親善に向けて－: 第２部 「勅令vs閣議決定」－明治時代－(2)残っ

이들 연구자들은 「다케시마 마쓰시마가 조선의 부속이 된 시말」을 『일본외교문서』 3권에서 인용했기 때문에 보고서 원문에는 있는 "다케시마의 건에 관해서는 겐로쿠기의 왕복서간, 절차 서류의 사본이 있다"라는 글을 간과한 것 같다.[37] 이 글에서 알 수 있듯이 모리야마 등은 '겐로쿠 다케시마 일건'의 경위를 잘 조사한 것이며, 이 결과를 부록 별책 『다이슈(對州) 조선 교제 취조서』(『취조서』라고 약칭) 안에 「다케시마 일건」이라는 대목으로 상세히 썼다. 「다케시마 일건」은 숙종기에 조선과 쓰시마번 사이에 왕복된 울릉도 영유권 논쟁에 관한 중요한 서간 6통을 분석하고, 다케시마·마쓰시마가 조선의 부속이 됐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38]

그런데 『취조서』 안의 「다케시마 일건」에는 다케시마가 조선 부속으로

た火種」, 『山陰新聞』, 2005.8.24.
http://www.sanin-chuo.co.jp/tokushu/modules/news/article.php?storyid=105059145

37) 『公文別錄 朝鮮事件 明治元年~明治四年』第一卷(國立公文書館所藏)은 다음과 같이 썼다.
「다케시마 마쓰시마가 조선 부속이 된 시말」
이 건의 마쓰시마는 다케시마의 이웃에 있는 섬으로 마쓰시마에 관해서는 이제까지 게재된 서류가 없다. 다케시마의 건에 관해서는 겐로쿠 때의 왕복서간, 절차 서류의 사본이 있다. 겐로쿠 이후는 잠시 동안 거류를 위해 사람을 보냈으나 지금은 이전과 같이 사람이 없어졌다. 대나무 또는 대나무보다 큰 갈대가 자라며, 인삼 등이 자연히 자란다. 그 외에 수산물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들었다.

38) 박병섭, 「근대기 독도의 영유권 문제」, 『독도연구』 12호, 2012, p.164.
서간 6통은 다음과 같다. 단 괄호 안의 연월은 『다케시마 기사』 강문(綱文) 날짜이다.
1. 다케시마를 침범한 조선어민을 송환하고 조선어민의 출어 금지를 요구하는 쓰시마번의 1693년 9월 일자 서간 (1693년 10월)
2. 일본의 처치에 감사하고 울릉도 도해 금지를 알리는 조선의 1693년 12월 일자 서간 (1694년 1월)
3. 조선의 서간에서 글자 '울릉'의 삭제를 요구하는 1694년 2월 일자 쓰시마번의 서간 (1694년 3월)
4. 다케시마는 울릉도이며, 조선어민의 구속을 항의하는 조선의 1694년 9월 일자 서간 (1694년 9월 12일)
5. 최종적으로 울릉도가 조선영토임을 확인하는 조선의 1698년 3월 일자 서간 (1698년 4월)
6. 다케시마일건의 해결을 축하하는 쓰시마번의 1699년 1월 일자 서간(1699년 1월)

된 시말은 잘 기록되고 있으나, 마쓰시마에 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다. 모리야마 등은『내탐서』에 "마쓰시마에 관해서는 이제까지 게재된 서류가 없다."고 썼는데, 역시 마쓰시마에 관한 서류는 쓰시마번 자료에는 아주 적다. 앞에 쓴 바와 같이 간신히 쓰시마번이 에도막부에 "다케시마 근처에 마쓰시마"도 도해가 정지된 섬이라고 생각된다고 회답한 기록이 있다. 모리야마 등 조사단은 이런 기록 등을 보고 다케시마 근처에 있는 마쓰시마도 도해가 금지됐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결국 조사단 전원이 마쓰시마에 관한 서류가 없어도 "다케시마 이웃에 있는 섬"에 관한 쓰시마번의 인식, 혹은 '겐로쿠 다케시마 일건' 및 '덴포 다케시마 일건'에 관한 간단한 기록 등을 중시해 마쓰시마, 즉 독도를 조선영토로 판단한 것이다.

6. 내무성의 조사『이소타케시마 각서』

근대 국가에 있어서는 자기 나라 영역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영역을 결정하고 각 지역의 소속을 확정하는 기관은 내무성이 맡았다. 내무성은 이 과정에서 다케시마·마쓰시마의 소속도 조사했다. 내무성 지리료(地理寮) 지지과는 '겐로쿠 다케시마 일건'에 관한 쓰시마번의 자료『다케시마 기사(竹島紀事)』등 관련 자료를 수집해, 나카무라 겐키(中邨(村) 元起)가 1875년 8월에『이소타케시마 각서 완(磯竹島覺書 完)』을 편찬했다.[39] 이소타케시마는 다케시마, 즉 울릉도를 가리킨다. 이 책이야말로 일본국가의 다케시마·마쓰시마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39) 일본 국립공문서관이 소장하는『磯竹島覺書 完』은 끝에 "明治八年八月八日校正 中邨元起"라고 쓰고 '元起'도장이 찍어 있으니, 이는 원본이다. 이 외에 일본 국립공문서관에『磯竹島覺書 地理局』도 있지만, 지리국은 1877년에 지리료를 개편한 부처이니, 이 책은 그 이후의 필사본이다. 또한, 쓰쿠바(筑波)대학이 소장하는『磯竹島事略』乾·坤 2권은 內題가『磯竹島覺書』이며,『磯竹島覺書 完』의 필사본이라고 생각된다.

이 책에서 마쓰시마(독도)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1695년 8월 12일 돗토리번이 에도막부의 최고 직함인 로쥬(老中)에게 보낸 보고서이다. 이에 따르면 이 해 3월에 오야·무라가와 양가의 배가 다케시마(울릉도)로 갔더니, 이 해도 섬에 조선인이 많이 와 있었기 때문에 양가는 어렵을 포기하고 "뱃길 도중에 있는 마쓰시마라는 작은 섬이 보이니, 들러서 전복을 조금 따고 돌아왔다"[40]고 한다. 이 직후에 쓰시마번은 교착 상태에 빠진 조선과의 교섭을 에도막부와 상의하기 위해, 소 요시자네(宗義真) 등이 에도로 갔다. 이 무렵부터 막부는 다케시마에 관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이소타케시마 각서』에 따르면 로쥬는 돗토리번에게 다케시마 소속에 관한 질문을 했는데, 그 7개조에 "다케시마 외에 양국에 속한 섬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돗토리번은 "다케시마·마쓰시마 기타 양국에 부속된 섬은 없습니다"[41]고 12월 25일에 대답했다. 여기에 등장한 마쓰시마에 관심을 가진 막부는 곧 "마쓰시마라는 섬은 이나바국(因幡國) 호키국에 부속하느냐?"고 물었더니, 돗토리번은 "마쓰시마는 양국에 부속되지 않습니다. 다케시마로의 도해 도중에 있는 섬입니다"[42]고 대답했다. 에도막부는 다케시마 일건이 일어나서 처음으로 마쓰시마의 이름을 알게 됐는데, 돗토리번 회답을 통해서 마쓰시마가 이나바·호키 양국, 즉 돗토리번의 영지가 아님을 확인한 것이다. 또한, 막부는 다케시마 도해사업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마쓰에(松江)번도 조사하고, 마쓰에번에 사는 선원들이 요나고 상인들에 고용되어 다케시마로 도해했음을 알았으며, 마쓰에번 자체는 다케시마 도해 사업과 상관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다음 해 1696년 1월 12일에 막부는 쓰시마번에 조사 결과를 알리고 다케시마 도해 금지의 뜻을 전했다. 『이소타케시마 각서』에 따르면, 그 이

40) 『礒竹島覺書 完』, "船路に松島と申小島相見 立寄蛸少々取候而歸帆仕候".

41) 『礒竹島覺書 完』, "竹嶋之外兩國江付屬之嶋有之候哉", "竹島松島其外兩國江付屬之島無御座候事".

42) 『礒竹島覺書 完』, "松島与申島 因幡國伯耆國江付屬之島に候哉", "松島兩國江付屬に而は無御座候 竹島江渡海之筋に在之島に而御座候".

유는 (1)돗토리번 어민이 다케시마로 어렵을 하고 싶다는 청을 허가했을 뿐, 조선의 섬을 빼앗긴 것도 아닌 듯하다, (2)섬까지의 거리는 조선에서 약 40리, 호키국에서 약 160리이며, 조선에 가까우니 조선의 울릉도인 것 같다, (3)일본이 섬을 가진 증거가 있거나 혹은 일본인이 거주했다면 조선에 넘겨주기 어렵지만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 직후, 에도막부는 신중히 돗토리번에 대해 이즈모 등 타국으로부터의 출어의 유무와 마쓰시마의 상황을 다시 질문했다. 돗토리번은 오야·무라카와 양가가 타국의 자를 고용해 같은 배로 도해한 일은 있지만 타국의 어민들 스스로가 도해한 일은 없다는 것이나, 마쓰시마는 다케시마에 도해할 때 도중에 있기 때문에 들러서 사냥을 했으며 일본의 어느 나라에도 소속되지 않는다는 것 등을 회답했다.[43]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에도막부는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을 쓰시마번과 돗토리번에 내렸다. 『이소타케

43) 「각서」 마쓰다이라 호키노카미 (『磯竹島覺書 完』)
一 호키국 요나고 백성 오야 규에몬·무라카와 이치베의 선원들 외에 영지 사람들이 다케시마로 도해한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다른 영지의 자들이 도해하는 것은 더욱 있을 수 없습니다. 오야 규에몬·무라카와 이치베가 선년부터 다케시마로 도해한 것은 허가를 받아서 건너갔으니, 다른 곳에서 갈 일은 결코 없습니다. 앞의 선원들이 다케시마로 건너갔을 때에 이즈모국·오키국의 사냥꾼들을 고용해 요나고의 선원들과 같은 배로 건너갔습니다. 인원수는 해에 따라 다릅니다. 이즈모국에서 가지 않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대체로 이즈모국에서 2, 3명, 오키국에서 8, 9명 정도 고용되어 건너갔다고 합니다.
一 마쓰시마는 어느 나라에 부속되는 섬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一 마쓰시마에 사냥하러 간 것은 다케시마에 도해할 때의 도중에 있기 때문에 들러서 사냥을 했습니다. 타령으로부터 사냥하러 간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합니다. 단, 이즈모국(出雲國), 오키국(隱岐國) 사람들은 요나고 사람들과 같은 배로 갔습니다.
一 호키국 요나고에서 이즈모 구모즈까지 도정이 10리 정도
一 이즈모국 구모즈에서 오키국 다쿠히산까지 도정이 23리 정도
一 오키국 다쿠히산에서 동국 후쿠우라까지 7리 정도
一 후쿠우라(福浦)로부터 마쓰시마까지 80리 정도
一 마쓰시마로부터 다케시마까지 40리 정도
一 마쓰시마까지 호키국으로부터 해로 약120리 정도입니다.
一 마쓰시마로부터 조선에는 80~90리 정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 정월 23일

시마 각서』는 이런 역사를 통해 다케시마·마쓰시마는 일본영토가 아님을 확인한 것이다.

7. 관찬 지지『일본 지지 제요』

1875년 8월에『이소타케시마 각서』의 편찬을 마친 내무성 지지과는9월에 태정관 수사국 지지괘(修史局地誌掛)에 옮겼다. 이에 따라『이소타케시마 각서』를 편찬한 나카무라 겐키도 지지괘로 옮기고 관찬 지지의 편찬에 참여했다.[44] 따라서 다케시마·마쓰시마는 일본영토가 아니라는 내무성 지지과의 인식은 그대로 태정관에 계승됐다. 이는 태정관 지지괘가 편찬한 관찬지지『일본 지지 제요』에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 이 책은 전 8책이 1875년부터 1879년까지 순차적으로 발간됐는데 이 중에서 다케시마·마쓰시마는 권50「오키」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제5책은 지지괘가 폐지된[45] 직후인 1878년 1월에 발간됐다.[46] 이 안에「오키」는 다케시마·마쓰시마를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 ○혼슈(本州)의 속도. 치부리군 (知夫郡) 45. 아마군 (海士郡) 16. 수키군 (周吉郡) 75. 오치군 (穩地郡) 43. 합계 179. 이를 총칭해 오키노 코지마(隱岐の小島)라고 한다.

---

44)『日本地誌提要』(국립공문서관 소장) 머리말. 영인은『「日本地誌提要」全一册』, 臨川書店, 1982.

45) 지지괘는 1877년 1월에 축소되고 태정관 수사관(修史館) 제3국 을과(乙科)로 됐으며, 동년 12월에 폐지되고 지지 사무는 내무성 지리국이 맡게 됐다. 1878년 1월에 내무성은 지리국에 지지과를 설치했다. 출처는 佐藤佻,「內務省地理局地誌課の事蹟」,『古地図研究』305号, 1999, pp.7-9.

46) 제5책 표지에 "元正院地誌課編纂 第五册 日本地誌提要 紀元二千五百三十八年 明治十一年一月刊行"이라고 쓰고 있다.

> ○또한 서북 방향에 마쓰시마 · 다케시마 두 섬이 있다. 토속이 전하고 말한다. 오치군의 후쿠우라항 (福浦港)으로부터 마쓰시마에 이른다. 해로 약 69리 35정. 다케시마에 이른다. 해로 약 100리 4정 남짓. 조선에 이르는 해로 약136리 30정. (1리는 4km, 1정은 110m, 주)

『일본 지지 제요』는 인슈(隱州)의 속도를 179개 섬으로 보고, 이 안에 다케시마 · 마쓰시마 두 섬을 넣지 않았으며, 두 섬을 별도로 기술했다. 이는 다케시마 · 마쓰시마 두 섬이 인슈에 속하지 않으며, 물론 다른 지방에 소속된 것도 아니다. 즉 일본영토로 간주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메이지 시대의 지리학자 다나카 아카마로(田中阿歌麻呂)도 그렇게 보았다. 다나카는 한 때 다케시마(울릉도)와 독도를 혼동했지만, 그는 『일본 지지 제요』가 다케시마 · 마쓰시마를 함께 일본영토 밖으로 다루었다고 하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었다.[47] 이처럼 태정관이 작성한 관찬 지지가 독도를 일본영토 밖으로 판단한 것이다.

8. 태정관 '다케시마 외 1도' 지령서

안용복사건의 영향은 다케시마 · 마쓰시마를 일본영토 밖으로 판단한 1877년 태정관 지령서에도 볼 수 있다. 1876년 10월에 내무성은 시마네현으로부터 다케시마 · 마쓰시마의 소속에 관한 '일본해내 다케시마 외 일도의 지적 편찬 질의서'를 접수했다. 다케시마는 울릉도이며 '외 일도'는 마쓰시마, 즉 독도임이 시마네현 질의서의 부속 문서에서 명백하다. 이에 대해 내무성은 일찍이 지리료 지지과가 『이소타케시마 각서』를 편찬했으니 내무성은 쉽게 결론을 내렸을 것이다. 내무성은 다케시마 · 마쓰시마를

47) 박병섭, 「시모죠 마사오(下條正男)의 논설을 분석한다(2)」, 『독도연구』 7호, 2009, pp.136-139.

일본영토 밖으로 판단하고, 이 근거로 다음 4가지 자료를 들었다.

제1호: 구 정부 평의의 취지
로쥬가 쓰시마번에 다케시마 도해 금지를 명했을 때의 기록이며, 이는『다케시마 기사』1696년 1월 28일 조를 인용한 것이다. 도해를 금지한 이유는 앞의『이소다케시마 각서』에 기록된 내용과 거의 같다.

제2호: 조선 역관에 보낸 각서
쓰시마번이 에도막부의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을 조선 역관에 알린 각서이며, 이는『다케시마 기사』1696년 10월 조를 인용한 것이다.

제3호: 조선국에서 온 서간
조선 예조 참의가 울릉도의 영유권이 조선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울릉도쟁계의 해결을 축하하는 내용으로 쓰시마번에게 보낸 1698년 3월 일자 서간이며, 이는『다케시마 기사』1698년 4월 혹은『이소다케시마 각서』의 인용이다. 또한, 이 서간은 앞의 외무성『취조서』의「다케시마 일건」에 있는 서간 제5통과도 같다.

제4호: 쓰시마번의 마지막 서간
쓰시마번이 조선 예조에 보낸 다케시마일건의 해결을 축하하는 서간과 다케시마일건을 쓰시마번 입장에서 본 경과를 쓴 1699년 1월 일자 구상서이며, 이들은『다케시마 기사』1699년 1월의 인용이다. 또한, 서간의 사본은『이소다케시마 각서』및 앞의 외무성『취조서』의「다케시마 일건」에 있는 서간 제6통에도 있다.

이처럼 내무성은 '겐로쿠 다케시마 일건'을 잘 조사해 다케시마 · 마쓰시마가 일본영토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그러나 영토의 취사를 국가의 중대사로 인식한 내무성은 신중을 기해, 시마네현의 질의서와 같은 대목의 '일본해내 다케시마 외 일도 지적 편찬 질의서'를 1877년 3월 17일에 태정관에 제출했다. 태정관에는『일본 지지 제요』를 편찬한 지지괘가 이름을 수사관(修史館) 제3국 을과(乙科)라고 바꾸고 건재했으니, 내

무성의 중대한 질의서를 쉽게 심사할 수 있었을 것이다. 태정관은 내무성 질의서를 국가의 중대사에도 불구하고 불과 3일 후에는 "다케시마 외 1도의 건은 본방(本邦)과 관계없다고 명심할 것"이라는 지령 안을 작성했으며, 곧 정부 고관들의 승인·날인을 받아 우대신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가 3월 29일에 지령 안대로 내무성에 지령했다. 이처럼 신속한 처리가 가능한 것은 다케시마·마쓰시마가 일본영토가 아니라는 인식이 '겐로쿠 다케시마 일건'의 연구 결과를 통해 내무성 및 태정관에 정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9. 메이지시대의 관찬 지도

독도를 그린 지도는 한국, 일본 등에 많이 있지만, 영유권과 관련해 논의하려면 국가의 영토를 관할하는 당국이 작성한 지도를 보아야 한다. 일본의 경우 이 가관은 내무성이며, 내무성은 일본 각지의 소속을 정하고 영토의 취사를 판단했다. 따라서 내무성이 작성한 지도는 일본정부의 영토에 관한 공식 견해를 반영한 것이다. 내무성의 지도에 독도가 없으면, 이는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내무성의 지도를 살펴본다. 내무성 지리국은 에도시대의 관찬 지도인 이노 다다타카(伊能忠敬) 「대일본 연해 여지 전도(大日本沿海輿地全圖)」를 바탕으로 「대일본 부현 관할도(大日本府県管轄圖)」(1879), 「대일본국 전도(大日本國全圖)」(1880), 『대일본 부현 분할도(大日本府県分轄圖)』(1881) 등을 작성했다. 이 관찬지도 등은 다케시마·마쓰시마를 그리지 않거나, 그려도 일본 영토로 다루지 않았다.[48] 게다가 내무성은 「대일본국 전도」를 바탕으로 각 지방의 소속 변천을 밝힌 지도 책 『대일본국

48) 박병섭, 전게 논문 「근대기 독도의 영유권 문제」, p.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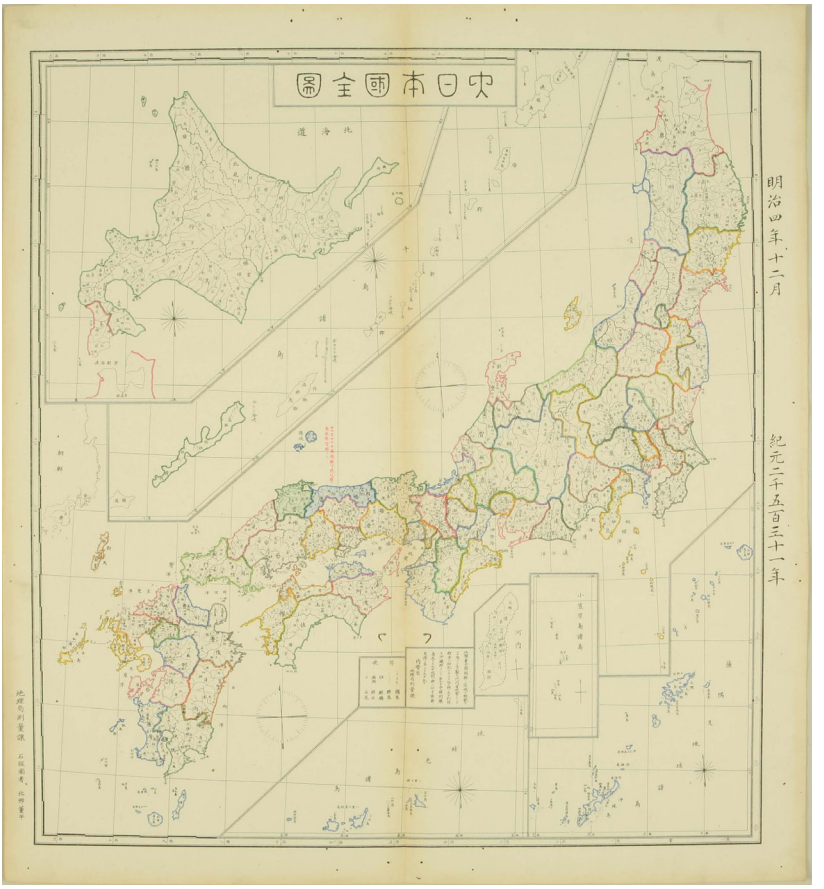

[도판5] 내무성 지도 책『대일본국 전도(大日本國全圖)』의 일부
1871-83년에 독도는 일본영토가 아니었다.

전도(大日本國全圖)』를 1883년경에 발간했는데, 이 안의 지도 12장 모두에 독도는 없다. 이 지도 책은 1883년을 기준으로 해, 폐번치현(廢藩置縣)을 실시한 1871년부터 매년 같이 섬을 포함한 각지의 소속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밝힌 것이다. 예를 들면 그릴(치시마 千島)열도 북부는 일본영토가 된 1875년 5월 이전의 지도에는 일본영토로 간주되지 않았으나, 그 후의 지도에는 일본영토로 표시됐다. 이 지도 책에 독도가 없다는 것은 내

무성은 적어도 1871년부터 1883년까지 독도를 일본영토로 간주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인식은 그 후도 계속됐으며, 1904년에 어부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가 "리양코도(독도) 영토 편입 및 임대 청원서"를 내무성으로 신청했을 때 내무성은 리양코도는 한국 영지로 의심된다고 강력히 반대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결국, 일본은 역사상 독도를 조선·한국 영토로 판단한 일은 몇 번이나 있었으나, 독도를 일본 영토로 판단한 일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런 독도를 일본은 1905년에 일본 영토로 편입한 것이다.

10. 조선에 대한 영향

안용복사건 당시에 울릉도·우산도는 조선정부가 "300년 동안 비워서 내버려둔 땅"이었다.[49] 또한, 이수광『지봉유설』도 "근자에 들으니 왜적이 의죽도(울릉도)를 점거했다"고 기록했다. 이 자료를 근거로 일본 쓰시마번도 울릉도쟁계 때에 "예전에 울릉도는 조선의 지배하에 있었으나, 임진왜란 이후는 일본에 속하고, 다케시마는 즉 울릉도라고 듣고 있다."[50]고 조선정부에 주장했다. 이처럼 울릉도는 거의 일본 땅과 다름이 없었다.

그러나 안용복사건을 계기로 한일간에 울릉도 영유권을 둘러싼 논쟁 '울릉도쟁계'가 시작되고, 앞에 쓴 바와 같이 울릉도가 조선 땅으로 확정됐다. 게다가 안용복·이인성 등이 1696년에 자산도(독도)를 실제로 확인한 후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들은 일본에서 자산도는 일본인이 말하는 마쓰시마이며, 그 위치는 울릉도에서 50리(200km)에 있다고 주장했다.[51] 이 결과, 조선의 관찬서『동국문헌비고』등에 "울릉과 우산(독도)은 모두 우

49)『숙종실록』숙종 19년 11월 18일.

50)『竹島紀事』, 元祿6(1693)年12月10日, '正官口上'

51) 무라카미가문서, 즉『元祿九丙子年 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

산국의 땅인데, 우산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松島)"라고 기록됐다. 그 후도 이 인식이 관찬서 『만기요람』(1808), 『증보문헌비고』(1908) 등에 이어졌다.

11. 결론

1693년의 안용복사건은 독도 영유권 문제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이를 계기로 한일간에 울릉도 영유권 논쟁 '울릉도쟁계(다케시마 일건)'가 시작되고, 이 결과 일본은 울릉도가 조선 땅임을 인정했다. 이 논쟁에서 독도는 등장하지 않았으나, 에도막부는 다케시마(울릉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마쓰시마(독도)의 존재를 알게 되고 다케시마와 더불어 조선 땅으로 인식했다. 이는 교호기의 다케시마 밀무역 사건 때에 재확인됐다. 즉 돗토리번이 에도막부에 제출한 「교호 9(1724)년 갑진년 윤4월 16일 막부에 제출된 서류의 사본, 다케시마노 가키쓰케 3통」에 그림지도 「다케시마 도」(도판1)가 첨부됐는데, 여기에 마쓰시마는 다케시마 바로 옆에 그려졌다. 게다가 그 밑에 '조선국'이라고 기입됐으니 이는 분명히 다케시마·마쓰시마가 일체로 조선 부속임을 표현한 것이었다. 더군다나 에도막부는 덴포기에는 스스로 다케시마·마쓰시마가 조선영토임을 드러내는 그림지도까지 그렸다. 즉 에도막부는 '덴포 다케시마 일건'때에 사건의 기록 『조선 다케시마 도항 시말기』를 작성하고 그림지도(도판4)를 첨부했는데, 이 그림지도에서 다케시마·마쓰시마는 조선 본토와 같은 붉은 색으로 그리고 두 섬이 조선영토임을 표현했다. 에도막부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가까운 마쓰시마로 도해한다는 명목으로 다케시마로 건너간" 하치에몬 등 범죄자들을 처형한 것이다. 즉 다케시마 뿐만 아니라 마쓰시마로의 도해도 처벌의 대상으로 했다. 에도막부의 이런 인식은 에도시대 말기에도 변함이 없었다. 1860년에 가쓰라 고고로(기도 다카요시) 등은 에도막

부에 마쓰시마(독도)를 포함한 다케시마(울릉도) 개척에 관한 건언서를 제출했는데, 에도막부는 그 섬이 조선영토라는 이유로 건언서를 각하했다.

이런 인식은 메이지 신 정부에 계승됐다. 1870년에 메이지정부는 조선을 내탐하기 위해 모리야마 시게루 등을 쓰시마번과 부산의 왜관으로 파견했는데, 그들은 '겐로쿠 다케시마 일건'을 잘 조사해 보고서 『조선국 교제 시말 내탐서』 안에 「다케시마 · 마쓰시마가 조선 부속으로 된 시말」이라는 대목의 글을 썼다. 단, 다케시마(울릉도)가 조선영토로 확정된 기록은 별책 『다이슈 조선 교제 취조서』 안에 「다케시마 일건」이라는 대목으로 잘 설명되고 있으나, 마쓰시마(독도)에 관한 기록은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기록의 유무보다 "마쓰시마는 다케시마 이웃에 있는 섬"이라는 쓰시마번의 인식 등을 중시해 마쓰시마도 조선 부속이 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만큼 마쓰시마는 다케시마에 부속된 섬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것이다.

외무성의 보고서는 태정관에 제출됐지만 이는 일본정부의 공식 견해는 아니다. 공식 견해는 보통 국경이나 국토를 다스리는 내무성이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독도 영유권문제에 있어서는 내무성이 적성한 관찬지지 및 관찬지도 등이 아주 중요하다. 내무성의 조사인데, 지리료 지지과가 일본의 국토를 확정시키기 위해 특별히 다케시마 · 마쓰시마의 소속을 조사해 1875년에 『이소다케시마 각서』를 편찬했다. 지지과는 이 책에서 '겐로쿠 다케시마 일건' 결과 다케시마 · 마쓰시마가 일본영토 밖으로 됐다고 이해했다.

이 직후에 내무성 지지과는 태정관 수사국 지지괘로 옮겨 관찬 지지 『일본지지제요』를 편찬했다. 이 때 『이소다케시마 각서』를 편찬한 나카무라 겐키도 관찬지지 편찬에 참여했으며 다케시마 · 마쓰시마에 관한 인식은 계승됐다. 이 결과 두 섬은 『일본지지제요』 권50 「오키」에서 오키국의 부속 섬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물론 다른 지방에도 속하지 않는다. 이는 다케시마 · 마쓰시마가 일본영토 밖으로 간주된 것을 의미한다. 또한, 메이

지시대의 지리학자 다나카 아카마로도 그렇게 이해했다. 이런 인식이 1877년에 태정관에 의한 '다케시마 외 1도'는 일본영토와 관계없다라는 지령에 이어졌다.

한편, 내무성 지리국은 1880년에 완성시킨 「대일본국 전도」를 바탕으로 일본 각지의 소속의 변천을 밝힌 지도 책 『대일본국 전도』(도판5)를 1883년경에 발간했다. 이 안의 지도 12장에 독도는 없다. 이는 일본의 관찬 지도가 독도를 일본영토 밖으로 본 것을 드러낸 것이다.

이처럼 에도막부 및 메이지정부는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식한 일이 몇 번이나 있었으나, 일본영토로 인식한 일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런 독도를 일본은 1905년에 일본 영토로 편입한 것이다. 따라서 일본외무성의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은 결코 성립되지 않는다.

【참고문헌】

박병섭,「시모죠 마사오(下條正男)의 논설을 분석한다(2)」,『독도연구』7호, 2009.
박병섭,「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관점」,『한·일 양국의 관점에서 본 울릉도·독도 심포지움 보고서』, 대구한의대학교, 2011
『숙종실록』
이훈,「조선 후기의 독도 영속 시비」,『독도와 대마도』, 지성의샘, 2005.
이수광,『지봉유설』.
朴炳涉,「江戸時代の竹島＝独島での漁業と領有権問題」,『北東アジア文化研究』35号, 2012.
池内敏,「近世日本の西北限界」,『史林』90巻 1号, 2007.
池内敏,『大君外交と「武威」』, 名古屋大学出版会, 2006.
奥原碧雲,『竹島及欝陵島』, 報光社, 1907.
川上健三,『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 古今書院, 1966.
外務省,『竹島問題を理解するための十のポイント』.
岸本覚,「幕末海防論と「境界」意識」,『江戸の思想』9, ぺりかん社, 1998.
小美濃清明,『坂本龍馬と竹島開拓』, 新人物往來社, 2009.
『木戸孝允文書』8, 日本史籍協会, 1931.
佐藤佻,「内務省地理局地誌課の事蹟」,『古地図研究』305号, 1999.
下條正男,『「竹島」 その歴史と領土問題』, 竹島·北方領土返還要求運動島根県民会議, 2005.
島根縣 팸플릿,『竹島』pdf版, 2006.
塚本孝,「竹島関係旧鳥取藩文書および絵図」,『レファレンス』411号, 1985.
塚本孝,「韓國の保護·併合と日韓の領土認識」,『東アジア近代史』第14号, 2011.
塚本孝,「竹島領有権問題の経緯(第3版)」,『調査と情報』701호, 2012.
内藤正中,「1905年の竹島問題」,『北東アジア文化研究』34號, 2010.
内藤正中·朴炳涉,『竹島＝独島論争』, 新幹社, 2007.
堀和生,「1905年日本の竹島領土編入」,『朝鮮史研究会論文集』, 24호, 1987.
森須和男,『八右衛門とその時代』, 浜田市教育委員会, 2002.
箭内健次,『通航一覽續輯』第1卷, 清文堂出版, 1968.
『山陰新聞』
『因幡志』
『石見外記』

『因府歷年略史』
『磯竹島事略』
『礒竹島覺書 完』
『元祿九丙子年 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
『公文別錄 朝鮮事件 明治元年~明治四年』 第一卷(國立公文書館所藏)
『御用人日記』
『新修島根県史』 史料編3(近世下), 1967.
『宗家文書』,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竹島紀事』
『竹島之書付』(鳥取県立博物館 所藏)
『竹島渡海一件記』 東京大学総合図書館所藏.
『朝鮮竹島渡航始末記』 浜田市立図書館所藏.
『通航一覽續輯』 卷之五.
『「日本地誌提要」 全一册』, 臨川書店, 1982.
『吉田松陰全集』 第9卷, 大和書房, 1974.

<日本語要約>

安龍福事件以後の竹島領有権問題

朴炳渉

安竜福拉致事件を機に始まった元禄竹島一件の結果、江戸幕府は竹島渡海禁止令をくだした。この禁止令に松島の名はなかったが、禁止令を発した経緯から考えると「竹島近所の松島」へも渡海も禁止されたのである。さらに、竹島・松島が朝鮮領であることは1724年(享保9) に鳥取藩から幕府へ提出された「竹島之書付三通」付属の絵図「竹島図」でも確認される。同図は明らかに竹島・松島の一対を朝鮮領に描いた。

その後、幕府は天保竹島一件の時に事件記録『朝鮮竹島渡航始末記』を作成したが、それに付属する絵図にて竹島・松島を朝鮮領として描いた。これは元禄竹島一件の認識を引きついだのである。この認識は幕末に至っても引きつがれ、幕府は長州藩の桂小五郎らから提出された松島を含む竹島開拓願に対し、竹島は天保期に朝鮮領であると確認したという理由で却下した。

このような竹島・松島を朝鮮領とする認識は明治政府にも引きつがれた。明治初年、朝鮮を内探するために釜山の倭館などに派遣された外務省の官僚は元禄竹島一件の記録を充分調査して竹島・松島が朝鮮領であることを確認した。

一方、内務省では地誌課が官撰地誌を編纂する過程で元禄竹島一件を調査し、竹島・松島が日本のどの国にも属さないことを確認した『礒竹島覚書』を編纂した。その直後、地誌課は太政官へ移って官撰地誌『日本地誌提要』を編纂したが、同書でも竹島・松島が日本領外であるとの認識は受け継がれた。

このように内務省・太政官は竹島・松島が日本領でないという認識をもっていたので、島根県から「日本海内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伺」が提出された時、容易に竹島・松島は日本と関係ないとの結論を出した。これにもとづいて内務省は一貫して竹島・松島を日本領外とする官撰地図を作成した。特に地図帳『大日本国全図』では1871

年から1883年まで日本各地の所属の変遷を12枚の地図に示したが、そのすべての地図に竹島・松島はなく、日本領として扱われなかった。

結局、日本は歴史上、独島を朝鮮·韓国領と判断したことは何度かあったが、独島を日本領と判断したことは一度もなかった。そのような独島を日本は帝国主義的な手法で1905年に日本領へ編入したのである。したがって、日本外務省の独島は日本固有の領土であるという主張は成り立たない。

キーワード: 元禄竹島一件、享保「竹島図」、天保竹島一件、『礒竹島覚書』、『日本地誌提要』、『大日本国全図』

이 논문은	2012년 10월 25일에 투고하여
	2012년 12월 5일까지 심사하여
	2012년 12월 15일 게재 · 결정됨

쿠릴열도를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간의 영토분쟁

Bella B. Pak*

〈목 차〉

1. 머리말
2. 역사
3. “영토적 분쟁”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국문초록〉

현재의 러·일 국경은 확실한 국제적 법적 기반을 가진 역사적 사실이다. 남부 쿠릴열도는 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러시아에 귀속되었고, 그 법적 기반은 연합국간 협정(1946년 2월 11일의 얄타협정, 1945년 7월 26일의 포츠담선언)이다. 얄타회담의 결정에 따르면, 모든 쿠릴열도의 섬들과 사할린 섬들은 ‘영원히’ 소련으로 귀속된다. 영국과 중국이 서명하고, (소련이 나중에 가입한), 미국의 포츠담 선언은 이와 같은 내용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따라서 러·일 관계는 2차 대전의 결과의 확고함이라는 중요한 원칙에 기초해야만 한다. 2차 대전의 결과의 불가침성(principle of the inviolability)이라는 원칙은 전후 국제관계의 기초로서 여전히 남아있다.

결론적으로 러시아는 아시아의 현상유지를 위해 중국, 남한을 포함한 2차대전의 결과를 번복하지 않으려는 국가들과 동맹을 맺고 있다. 일본에 의해 영유권이 주장되는 타케시마로 불리는 ‘독도’는 한국과 일본간의 긴장관계의 원인이 되었다. 독도는 “한국의 남 쿠릴열도(Korean Southern Kuril islands)”로 불릴 수 있다. 일본의 여러 영토적 주장들, 예를 들면 독도(한국), 쿠릴열도(러시아), 팽호도(Penhuledao)(중국), 파라셀군도(베트남) 등은 일본의 국제법적 의무와 직접적으로 상충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2조를 간접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제어: 러일 국경, 쿠릴열도, 포츠담 선언, 얄타회담, 불가침성, 샌프란시스코 조약, 독도

* 러시아과학원 동양학연구소

1. 머리말

러시아와 일본간의 영토분쟁의 본질은 일본이 러시아 관할권하의 몇몇 섬들(이투루프·쿠나쉬르·쉬코탄·하보마이 4개 도서)에 대한 영토권 주장이다. 지리적으로 쿠릴열도(Kuriles)라 불리는 이들 섬들은 캄차트카에서 홋카이도에 이르는 열도를 대표한다. 일반적으로 남 쿠릴열도(Southern Kuriles)는 큰 쿠릴열도(Big Kuril ridge)의 두 개 섬, 이투루프와 쿠나쉬르를 의미하고, 작은 쿠릴열도(Small Kuril ridge)는 이들 섬과 평행하게 위치해 있고, 쉬코탄과 하보마이 섬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본은 쿠릴제도(Kuril archipelago, Chisima retto)가 우루프 섬(Urup)에서 끝난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일반적으로 러시아가 남 쿠릴열도라 부르는 것은 쿠릴열도에 속하지 않고 북방영토(northern territories)를 형성하고 있다. 일본은 북방영토의 개념에 4개의 섬, 즉 이투루프·쿠나쉬르·쉬코탄·하보마이(4번째 섬 주변의 섬 그룹)를 포함시킨다. 따라서 북방영토를 일본으로 돌려달라는 일본의 주장은 4개의 섬 모두를 돌려달라는 말이다.

2. 역사

러시아에서 쿠릴열도(the Kuriles)에 대한 최초의 자료는 17세기에 나타난다. 18~19세기 러시아의 많은 탐험에서 쿠릴열도가 개방되고, 묘사하며 조사하는 과정이 잘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러시아의 산업가와 식민개척자들은 이들 섬들의 초기 개발에 착수했다. 1649년 탐험에 참가했던 데즈네프(Simeon Dezhnev), 알렉세예프(Fedot Alekseev (Popov))는 쿠릴열도를 방문했다. 쿠릴열도를 본 또 다른 러시아의 탐험가는 1698년 아틀라소프(Vladimir Atlasov)였다. 1700년 뛰어난 지리학자이자 역사가인 레메조프

(Semyon Remezov)는 자신의 시베리아 지도에 쿠릴열도를 표시했다. 1705년 코사크 분견대인 라마예프(Lamaev)는 첫 번째 쿠릴열도의 주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했다. 1711년 코사크 대위 코지렙스키(Ivan Kozyrevsky) 와 코사크 대장 안치페로프(Danilo Antsiferov)는 코사크족 및 산업가들과 더불어 슘슈(Shumshu)와 파라무쉬르(Paramushir)의 북쪽 섬들을 조사하고 지도를 만들었다.

1711~1712년 코지렙스키는 또 다시 이들 섬으로 가서 이투루프와 쿠나쉬르 및 22번째 섬인 홋카이도(또는 당시 러시아인과 유럽인들이 'Matsmai'라고 이름 붙인; 19세기에 붙여진 일본명은 'Edzo')를 포함한 대부분의 쿠릴열도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다. 그는 또한 쿠릴열도의 원주민인 아이누(ainu)와 소통하고, 곧바로 베링(Vitus Bering)에게 이투루프와 우루프의 주민은 [일본의] 신민이 아니며, 일본인들이 이들 섬들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1)]

사실, 일본(18세기 말까지 일본의 고립과 정착민들이 일본을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형 위협을 명시한 1639년 토쿠카와(德川) 법에 의해 지배되던)은 바다로 나가는 배들이 일본해역 내, 즉 쿠릴열도와 사할린은 말할 필요도 없이 에조(홋카이도)의 중부 및 북부지역의 남쪽으로만 제한된 여행을 하도록 하였다.

1721년, 피터 대제의 포고령에 의해 지도 제작자인 예브레이노프(Ivan Evreinov)와 루진(Feodor Luzhin)은 쿠릴열도를 방문하여 모든 쿠릴열도에 대한 최초의 지도를 제작했고, 6개 북방 섬들의 원주민을 러시아의 신민으로 만들었다.[2)] 1730년, 쿠릴열도는 최초로 러시아의 공식문서, 즉 1730

---

1) L.N.Kutakov. Foreign policy and Diplomacy of Japan. Moscow, 1964. P.302; Russian Pacific epic. Khabarovsk, 1979. P.452/Л.Н.Кутаков.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и дипломатия Японии. М., 1964, С.302; Русская Тихоокеанская эпопея.Хабаровск., 1979.С.453.

2) A.O.Efimov. From the history of the great Russian geographical discoveries. Moscow, 1971.P.200/А.О Ефимов. Из истории великих русских географических открыти

년 7월 1일자 오호츠크 사령관인 피사레프에 보내는 안나 여제가 서명한 칙령에 언급되었다. 이 칙령서는 쿠릴열도를 러시아 황제의 법적 권한이 미치는 영역 내에 포함시켰고, 피사레프에게 쿠릴의 원주민 아이누들로부터 세금을 거두라고 명령했다.

1732년 12월 23일, 안나 여제는 베링에게 칙령을 보내 슈판베르그(Martin P. Shpanberg)를 캄차트카의 로파트카 곶(cape Lopatka)과 일본 사이에 있는 섬들로 보내라고 명령했다. 1738년 슈판베르그의 탐험은 이투루프에 이르렀고, 왈튼(Walton) 중위는 에조 섬의 위도에까지 내려갔다. 거의 모든 쿠릴 섬들이 지도상에 표시되었고, 새로운 러시아 이름을 받았다. 따라서 우루프는 'Company's Land', 이투루프는 'Island of States'로 불렸다. 1739년 6월 탐험대가 에조 섬의 동쪽 해안을 방문했고, 남 쿠릴열도의 탐험을 시작했다. 지역주민들과의 대화에 기초하여, 탐험자들은 마츠마이 섬(홋카이도)를 제외하고, 쿠릴열도는 일본의 복속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3] 이 탐험의 참가자들은 에조와 사할린을 방문한 최초의 유럽인들이었다.

1745년, 러시아 제국의 전체 지도가 쿠릴열도를 포함한 채 발행되었다. 1750년 세금 징수관 스토로제프(Nikolay Storozhev)는 시무쉬레(Simushire)를 방문했고, 1755년 쿠나쉬르 섬들을 방문했다. 같은 해 쿠릴열도의 남쪽에 사는 대부분의 아이누들은 러시아의 신민이 되었고, 세금납부에 동의했다. 1766년 선임하사관 취킨(Nikita Tchikin)과 코사크 중위 체르니(Ivan Cherny)는 시베리아 총독 소이모노프(F.I. Soimonov)의 명령으로 남부 쿠릴로 파견되었다. 취킨은 사망했고, 체르니는 1767년 겨울을 우루프와 이투루프의 동쪽해안에 있는 시무쉬르의 러시아 겨울 오두막에서 보냈다. 일본인 역사가 요시(Kuno Yosi)는 이런 사실을 증명했다: 《1766년, 러시아

й. M., 1971. C. 200.

3) L.N.Kutakov. Foreign policy and Diplomacy of Japan. Moscow, 1964. P.305/Л.Н Кутаков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и дипломатия Японии. С.305.

가 쿠릴열도 중 가장 큰 이투루프 섬까지 권력을 확장했다.》[4]

1772년 이르쿠츠크 총독 브릴(A.I. Bril)은 캄차트카 최고 사령관 벰(M.K. Bem)에게 쿠릴열도를 자신의 소유권으로 복속시키고, 지역의 비러시아 주민을 러시아의 신민으로 만들라고 명령했다.[5] 안티핀(Ivan Antipin)과 샤발린(D. Shabalin)이 이끄는 새로운 탐험대가 남 쿠릴열도에 산업을 일으키는 권한을 위임 받았다. 1777년 겨울을 우루프에서 보낸 탐험자들은 어업과 심지어 농업에도 종사했다. 1778-1779년 그들은 이투루프, 쿠나쉬르, 쉬코탄(Shpanberg's island)과 홋카이도도 두 번이나 방문했다.

그 결과, 쿠릴열도와 홋카이도의 지도가 제작되었고, 19·20·21세기 이들 섬들의 원주민 리스트가 작성되었고, 남부 4개 섬의 원주민들은 러시아의 신민이 되었다. 이런 결과와 더불어, 쿠릴열도에 대한 러시아의 권리가 확인되었다. 쿠릴열도의 러시아 시민 총 수가 1,500명에 이르렀다. 1779년 4월 30일 예카체리나 2세는《어떤 세금도 내지 않는 러시아의 신민이 된 쿠릴열도 주민》에 대한 포고령을 발표했다.[6] 1782년까지 우루프에는 50명 이상의 탐험참가자들이 머물렀다.

1786년 개척자들의 권리와 새로운 국유재산의 보호를 위해 쿠릴열도의 섬들을 포함하여 태평양에서 새로 개방된 섬들에 대한 러시아의 권리를 선언하기 위해 물로브스키(G.I. Mulovsky)의 지휘아래 군 파견대를 극동으로 보내자는 제안이 있었다. 1787년 4월 해군성 이사회가 러시아 최초 전세계일주 탐험대장인 물로프스키에게 보낸 명령서에 의해, 물로프스키는 "일본으로부터 북쪽 로파트카 곶까지 그리고 마츠마이(에조)로부터 로파트카까지 크고 작은 모든 쿠릴 섬들을 묘사하고, 적절한 장소에 러시아어와 라틴어로 쓰여진 러시아 국가문장과 판금 메달을 설치함으로써 그

4) E.Ya.Fainberg.Russo-Japanese relations in 1697-1875.Moscow, 1960.P.35 /Э.Я.Файнберг. Русско-японские отношения в 1697-1875 гг. М., 1960.С.35.

5) Ibid.P.37.

6) Ibid. P.38-39.

들을 러시아의 공식 소유물에 더하라"는 권한을 위임 받았다.[7]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러·터 전쟁의 발발로 이 탐험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1789~1792년 쿠릴열도는 15번째 섬까지 사리체프(Sarychev)의 탐험대에 의해 조사되었다. 1792년 일본으로 파견된 락스만(K.G. Laksman)의 임무는 아주 가치가 있다. 그는 우루프·이투루프·쿠나쉬르·쉬코탄·에조 사이의 만들을 통해 경로를 잡았다. 도중에 하보마이라 불리는 일단의 섬들도 조사되었다.[8]

러시아-아메리카 회사(Russian-American company)는 1795년 우루프 섬에 즈베즈도체토프(Vasily Zvezdochetov 1807년까지 존재)가 이끄는 40명으로 구성된 "알렉산드라(Alexandra)" 식민지를 설립했다. 1799년 모든 쿠릴열도의 섬들이 이 회사 소속으로 이전되었다. 1799년 7월 8일자 러시아－아메리카 회사에 대한 파벨 1세의 공식 포고령에는 "쿠릴열도가 신천지 개척의 권리에 의해(by the right of opening) 러시아에 속한다"고 되어 있고, 그 개발은 이 회사의 배타적 경영에 속하게 되었다.

일본은 아직까지 쿠릴열도에 대한 유사한 자료들을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쿠릴열도의 발견(opening)과 개발(development)에서 개척자들이었다. 18세기 중반 러시아인들은 슘슈·파라무쉬르·시무쉬레·우루프에 정착촌을 설치했고, 가축과 씨앗을 보내, 지역 주민의 가축사육과 손수레 농업(truck farming)을 도왔다. 1749년 코사크 쉐르긴(Shergin)은 슘슈에 최초의 학교를 개설했고, 지역 어린이들에게 러시아 글자를 가르쳤다. 1780년대 초 이미 이 섬의 모든 원주민들은 러시아정교도로 인식되었고, 1840년 정교회는 특별교구를 설치하여, 캄차트카-쿠릴-

---

7) Russian expeditions on exploration of Northern part of Pacific in the 2nd half of XVIII Century Collection of documents. Moscow, "Nauka", 1989. P.289/Русскиеэкспедициипоизучениюсевернойчасти

8) V.V.Nevsky. The Russian First round world trip. Moscow, Geografizdat, 1951.P.19./ В.В. Невский. Первое путешествие россиян вокруг света. Географиздат, 1951. С.19.

얄류산 주교가 이끌도록 했다.

1785년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일본정부의 관리가 쿠나쉬르와 이투루프에 등장한다. 실질적으로 그들은 쿠릴 섬들을 개발한 안티핀-샤발린 탐험대의 러시아 코사크족들이 취한 조치들에 반응했던 것이다.

쿠릴 섬들을 개방한 러시아의 노력은 많은 일본인 학자들(R. Okamoto, E. Kuno, S. Nakamura, N. Muroga, T. Matsunagi, G. Sarasina, etc.)에 의해 인정받았다는 사실은 언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예를 들면, 일본인 역사가 마츠나기 Teken Matsunagi는 자신의 책『사할린과 캄차트카Sakhalin and Kamchatka』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 1643년 (寬永 20년) 러시아인들이 캄차트카로 와 치시마 Chishima 섬들을 개방하고, 그 이름을 "쿠릴 Kuriles"이라 지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알래스카를 점령하고, 점차 한걸음 한 걸음 남쪽으로 이동하여 21번째 섬을 점령했다.[9]

즉, 홋카이도로 불려진 22번째 섬을 제외하고 모든 쿠릴 섬들이 러시아에 의해 점령당했다. (주의: 20번째 섬은 이투루프, 21번째 쿠나쉬르, 22번째가 홋카이도). 또 다른 일본인 학자 사라시나(G. Sarasina)에 의하면, '1750년, 마츠마에 부족(일본의 공국)은 쿠나쉬르 섬에 무역선을 파견하기 시작했고, 그때까지 쿠릴을 가로질러 남쪽으로 전진했던 러시아인들이 북쪽지역에 위치한 많은 섬들의 이름을 이미 다시 지었고, 지역주민들의 종교도 개종시키고, 성인 남자 1명당 여우가죽 1개씩의 연간 세금을 거두기 시작했다'

1880~90년대, 마츠마에 공국(Matsumae princedom)과 중앙정부(bakufu)는 남부 쿠릴로부터 러시아인을 축출하는 정책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일본 관리, 어민, 상인들은 십자가와 기념비 및 러시아인들이 이들 섬에 머

9) L.N.Kutakov. Foreign policy and Diplomacy of Japan. P.299/ Л.Н.Кутаков.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и дипломатия Японии. С.299.

물렀다는 흔적을 파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일본 탐험대는 러시아인들에 대해 공공연하게 공격적인 행태를 취했고, 쿠나쉬르를 탈환하여 아이누들을 노예화시켰다. 1789년 쿠나쉬르의 아이누족들은 반란을 일으켜 몇몇 일본인들을 살해하기도 했다.

18세기 말 남부 쿠릴에 대한 일본의 식민화는 쿠나쉬르에 국한되었고, 순환적 특성(남부 사할린과 같이)을 띠었다. 1799~1800년, 일본 당국은 남부 쿠릴에 대한 그들의 팽창을 강화했다. 일본인 관리들이 쿠나쉬르와 이투루프에 파견되어 러시아인을 축출하고 아이누들에게 세금을 거두라는 지시를 받았다. 지역 주민들은 러시아인과 무역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쿠나쉬르에 이어 이투로프도 강탈당했고, 오이토만에 생선 무역을 위한 건물이 축조되었다. 러시아 제국이 이투루프를 소유했다는 표식인 십자가와 원주가 파괴되었다. 러시아의 표식들을 없앤 그 자리에 '이투루프, 대일본제국 소유'라 새겨진 원주들이 세워졌다. 1801년, 일본관리들은 우루프도 일본의 소유라고 선언하려 했다.

1803년 7월 26일 크루젠슈테른(I.F. Kruzenshtern)이 이끄는 러시아 최초 세계일주 탐험 호 '호프(Hope)'가 크론슈타트를 출발했다. 이 배에는 전권대사 레자노프(N.P. Rezanov)가 이끄는 사절이 타고 있었다. 1804년 10월 '호프(Hope)'는 나가사키에 도착했다. 레자노프는 난파당한 많은 일본인들을 일본으로 데려다 주었다. 쇼군에게 보내는 알렉산드르 1세의 편지는 우호관계를 수립하자는 제안이 들어 있었다. 비록 레자노프의 임무가 성공적이지 못했지만, 일본이 최초로 남부 쿠릴에 대한 러시아의 공식적 권리주장을 듣게 되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레자노프는 일본당국(bakufu)에 일본은 남 쿠릴이 러시아 제국에 속해있기 때문에 마츠마예 북쪽으로 진출해선 안 되며, 사할린의 섬들도 점령해선 안 된다고 선언했다.[10] 레자노프는 일본인들이 막 정착을 시작한 사할린과 쿠릴열도에 무역사무소

10) E.Ya.Fainberg.Russo-Japanese relations in 1697-1875.P.155/ Э.Я.Файнберг. Русско-японские отношения в 1697 - 1875 гг. С.155.

와 농업 콜로니를 설립할 권리를 위임 받았다. 알렉산드르 1세 정부는 이들 지역을 식민화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했다. 1805년 5월 귀항하던 길에 '호프(Hope)'는 사할린을 방문했다. 여기서 러시아 국기가 게양되었다. 남부 쿠릴과 사할린의 상황, 즉 쿠나쉬르, 이투루프, 남부 사할린에서의 일본인의 불법 활동들은 러시아 정부와 러시아－아메리카회사의 전권 장관인 레자노프로 하여금 러시아 소유지로부터 일본인들을 축출하고 그들의 무역사무소를 파괴하도록 결정하게 했다. 1806년 그는 군 장교인 흐보스토프(A.N. Hvostov)와 다비도프(G.I. Davydov)에게 남부 쿠릴과 사할린에 있는 일본 무역사무소를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남부 사할린의 아니바만에 상륙한 러시아인들은 일본 주둔군을 무장해제시켰다. 1807년 탐험대가 이투루프로 이동했다. 일본 수비대는 탈출했고, 러시아인들은 아이누들에게 일본인들이 섬에서 축출되었고, 이투루프는 러시아 소유라고 선언했다. 같은 활동들이 쿠나쉬르와 에조 북서쪽 해안에서도 반복되었다. 그러나 러시아인들이 떠나자마자, 일본 관리들과 군인들이 사할린과 쿠나쉬르와 이투루프로 되돌아왔다. 이번에 그들은 장래에 있을 군사적 공격에 대비하여 섬들을 요새화 했다.

1811년, 러시아 어민 골로브닌(V.M. Golovnin)의 지휘하에 범선 '다이아나(Diana)'가 쿠릴열도와 샨타르스크 제도에 대한 추가적 조사와 지도 작성 및 탐험을 위해 쿠릴에 도착했다. 쿠나쉬르에서 골로브닌과 동료들은 일본에 의해 포로로 잡혔다. 에조 총독은 러시아 정부가 흐보스토프와 다비도프의 공격과 무관하다는 러시아 정부의 보증을 받은 후에야, 러시아 선원들을 석방했다. 골로브닌의 탐험은 남부 쿠릴에 대한 조사연구와 지도제작에서 아주 중요했다. 그의 탐험은 최초로 세계지도에서 쿠릴열도의 위치를 정확하게 정의했다

1814년과 1815년 이투루프에 대한 두 차례의 실패한 탐험 이후, 시베리아 총독 페스텔(Pestel)은 남부 쿠릴 지역의 항해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당분간 어떤 탐험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1853~56년 러시아는 영국 · 프

랑스 · 사르디니아 왕국(이태리)과 동맹을 맺은 터키와 크리미아 전쟁을 벌이고 있었고, 이 전쟁은 쿠릴에 영향을 미쳤다. 1855년 9월의 중립조약에도 불구하고, 두 척의 영 · 불 프리키트 군함이 우루프 섬의 러시아-아메리카회사의 무역 사무소를 파괴했다.

1850년대는 미국과 러시아에 의한 일본의 '개항' 시기이다. 일본에 나타난 페리 함대의 소식은 일본과의 관계를 새롭게 수립하려는 니콜라이 1세 정부의 결정을 가속화시켰다. 1852년 이런 목적으로 러시아 해군 부제독 푸트야틴(E.V. Putjatin)이 이끄는 탐험대가 꾸려졌다. 탐험대의 기수호인 프리키트함 '팔라다(Pallada)'가 1853년 8월 나가사키 항에 도착했다. 푸트야틴은 어떤 협상과정에서도 현 국제정세의 복잡성이 러시아와 일본간의 우호(좋은 이웃) 관계 수립을 특히 긴요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지시 받았다. 그와 같은 환경은 명확한 러 · 일 국경 확립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국경획정자는 라 페루즈 해협(La Perouse straits)을 가로지르는 선을 구상하고 있었다. 1853년 11월 6일 일본 최고회의(Supreme Council)에 보낸 편지에서, 푸트야틴은 이투루프는 일본인들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에 러시아 산업가들에 의해 지배되었기 때문에 러시아에 속한다고 지적하면서 이투루프와 사할린에 대한 러시아의 역사적 권리를 주장했다.[11]

러 · 일 협상은 극단적으로 러시아에 불리한 조건하에 진행되었다. 프리키트 함 '다이아나(Diana)'를 상실한 푸트야틴의 임무는 영국과 프랑스 군함의 끊임없는 위협하에 있었고, 양보를 강요당했다. 그 결과 1855년 2월 7일 시모다에서 러 · 일 통상 및 국경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 제2항에 따르면, 이투루프와 쿠나쉬르는 일본에 양보되었다. 국경선은 우루프와 이투루프 사이에 그어졌다. 사할린은 분할되지 않은 채 남겨졌

11) Yu.V.Klyuchnikov, A.VSabanin. The international policy of contemporary history in treatise, notes and in declarations. Part I. Moscow, 1925. P.168-169/ Ю.В.Ключников, А.В.Сабанин. Международная политика новейшего времени в договорах, нотах и декларацияз. Часть I M., 1925.C.168-169.

고, 양국에 의해 공동 점령되었다. 그 후 90년 동안, 즉 1855년부터 1945년까지 남부 쿠릴은 공식적으로 일본의 소유였다.[12)]

나중에, 일본은 계속해서 러시아에 압력을 가해 사할린의 분할을 주장했다. 이런 환경에서, 발칸에서 터키와의 전쟁 위협을 받던 러시아는 1875년 5월 7일 페테르부르그에서 러·일 조약, 소위 말하는 남부 사할린과 쿠릴열도를 맞바꾸는 페테르부르그 조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04년 2월 8일, 일본은 선전포고도 없이 뤼순(Port Arthur)의 러시아 해군기지를 공격했다. 러일전쟁 기간 중 쿠릴열도는 일본의 통치하에 있었고, 이웃하는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기 위한 도약대로 이용되었다. 캄차트카와 코멘더섬에 대한 무장 상륙은 북 쿠릴 섬인 슘슈로부터 착수되었다. 태평양으로부터 오호츠크 해를 보호해주는 쿠릴열도의 가치는 명백했다. 러일전쟁은 포츠머드 강화조약의 체결로 끝이 났다. 이 조약으로, 러시아는 쿠릴열도와 남부 사할린의 모든 섬들을 일본에 양보했다. 이것은 러시아 외교의 커다란 패배였다.[13)]

러시아 측 견해에 의하면, 선전포고도 없이 러시아를 공격함으로써 상호관계를 파괴하고, 따라서 1855년과 1875년 러시아와의 조약을 어긴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일본이었다. 이것은 일본인들에 의해 비테 (S.Yu. Witte;1905년 포츠머드 협상 중 남부 사할린을 확보하기 위해 1875년 조약을 언급한)에게 암시된 것처럼, 미래에 이들 조약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일본의 권리를 심각한 의심에 빠트렸다. "국제법에 따르면, 국가간 전쟁의 조건은 그들간 모든 조약의 효과를 상실하게 한다. international law says: the condition of war between the states terminates the effect of all treaties between them."[14)]

---

12) Ibid.P.311.

13) L.N.Kutakov.Portsmouth treaty. Moscow, 1961. P.73/ Л.Н.Кутаков Портсмусткий мирный договор. М., 1961.С.73.

14) N.A.Narochnitskaya.Kuriles–problems created by Russian lack of will. Gubernskie vedomosti. 17-24.07.2001/ Н.А.Нарочницкая.Курилские острова- проблема, создан

다음의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가 그것에 근거해 남부 쿠릴을 일본에 넘겨준 통상 및 무역에 관한 조약(1855)의 파기 사실은 1905년 러시아와 일본간에 체결된 포츠머드 평화 조약 부속조항 appendix N 10에 명시되어 있다. 이것에 따르면, 전쟁의 결과로,《일본과 러시아 간 모든 통상 조약은 취소되었다.》또한 포츠머드 조약의 조건에 따라, 러시아는 사할린 남부(북위 50도 이남)를 일본에 양보했다. 이것은 그것에 따라 러시아가 일본에 쿠릴열도의 중부와 북부 지역을 양보하고 남부 사할린을 획득한 1875년 조약 효과의 무효를 의미했다.

일본은 포츠머드 조약을 부분적으로 위반했다. (1918~1925년 바이칼 지역과 북부 사할린을 점령하여, 러시아의 연해주 지역으로부터 분리하려고 시도) 마찬가지로 1925년 1월 20일 상호관계의 핵심 원칙에 대한 협약도 위반했다. (명백한 위반의 예는 러시아 극동연해주 지역의 한카 호수 지역에 대한 공격) 러시아 측 주장에 의하면, 이 모든 것은 일본의 도덕적 법적 권리와 특히 쿠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875년과 1905년 조약을 언급하려는 근거 등을 심각한 의심에 빠지게 했다.

1930년대, 쿠릴열도와 홋카이도에서 대규모 요새화된 지역의 건설이 시작되었다. 2차 대전의 발발 때까지, 쿠릴열도는 소련과 미국에 대항한 강력한 해군기지를 대표했다. 1941년 일본은 여기 심해 카사트카만에서 함대를 출항시켜, 1941년 11월 26일 진주만 공격에 내보냈던 것이다.[15]

남 쿠릴열도의 현 상태와 운명은 2차 대전의 결과에 의해 결정되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독일, 이태리와 더불어 공격적인 파시스트 블록에 가담했을 때,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로서 소련은 주축국들의 패배에 결정적 기여를 한 국가였다. 동맹국들은 1943년 11월 카이로 미·영·중 3개국 수뇌회담에서 일본에 의해 점령된 영토들의 운명에 대한 논

ная российским безволием. Губернские ведомости.17-24.07.2001

15) L.N.Kutakov. Foreign policy and Diplomacy of Japan. P.315/Л.Н.Кутаков.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и дипломатия Японии.С.315.

의를 시작했다. 일본에 의해 점령된 모든 지역을 일본으로부터 박탈할 필요성이 선언되었다. 1943년 11~12월 테헤란에서 같은 문제가 미·영 수뇌의 대화에서 제기되었다. 카이로 선언과 관련하여, 스탈린은 소비에트 극동까지 이르는 만(bays)들의 문제를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그것이 소련의 통제 하로 이전되는 것에 합의했다. 남부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소련으로의 귀속이 이루어졌다.

이 문제에 대한 동맹국들의 공식적 결정은 1945년 2월 얄타에서 이루어진 크리미아 회의에서였다. 거기서 남부 사할린과 쿠릴열도에 대한 러시아의 권리를 회복시켜 준 극동에 관한 3국 협정이 있었다. 크리미아 협정은 (유럽에서의 전쟁이 끝난 후 2~3개월 후) 소련의 영토적 주장의 만족: '1904년 일본의 배신적 공격에 의해 침해된 러시아의 권리의 회복, 즉 사할린 남부와 거기에 속하는 모든 섬들의 소련 반환'의 조건하에 소련이 일본에 대항한 전쟁에 돌입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다.[16)]

1945년 봄, 소련은 일본과의 중립 조약을 파기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반응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동맹국들에 의해 요구된 무조건 항복에 대한 포츠담 선언(1945년 7월 26일)의 요구 조건도 수용하지 못했다. 8월 9일 소련군이 일본에 대항한 연합군의 일부로서 일본이 점령한 만주국경을 넘었다. 1945년 러·일 전쟁은 짧게 끝났다. 이 짧은 전쟁기간 중 크반툰군(Kvantun army)은 패배했다. 남부 사할린과 쿠릴열도는 해방되었다.

1945년 9월 2일, 토쿄 만에 정착한 미 전함 미주리호 선상에서, 일본은 연합국에 대한 무조건 항복의 조건에 서명했다. 바로 이 행위로 일본은 남부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소련으로의 반환을 수용했던 것이다. 일본은

16) Teheran, Yalta, Potsdam. Moscow, 1971/Collection of materials of US State Department on the conferences on Malta and Yalta. Vol.4. Moscow, 1955. P.428-429; Crimean conference of the leaders of allied Powers. Moscow, 1984.P.129/Тегеран, Ялта, Потсдам. М., 1971; Сборник материалов Госдепартамента США о конференциях на Мальте и в Ялте. Т.4. М., 1955.С.428-429; Крым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руководителей союзных держав. М., Изд.Политиче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1984,С.129.

또한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큐슈, 시코쿠에 국한된다'고 결정한 포츠담 선언의 모든 조건을 수용했다. 포츠담 선언은 크리미아 협정의 한 조건, 즉 남부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소련으로의 귀속에 대한 인정으로도 생각될 수 있다. 역사적 정의의 회복과 소련의 통합된 일부로서 남부 사할린과 쿠릴열도에 대한 인정은 내부적 입법에 의해서도 확정되었다. 1946년 2월 2일 소련 최고회의 간부회의 포고령에 의해 남부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영토 내에 있는 광물자원을 포함한 모든 영토와 바다는 소련의 국가소유임이 선포되었다.

2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요약하는 중요한 한 단계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1951)이다. 그러나 소련과 반히틀러 연합전선을 형성한 많은 국가들이 몇 가지 이유로 이 조약에 서명하기를 거부했다. 따라서 이 조약은 미국과 일본간의 독립적인 강화조약이다. 당시 이 조약은 쿠릴열도에 대한 일본의 권리포기를 확정했고, 다시 한 번 회복된 영토에 대한 소련의 권리를 확인시켜주었다.

특히, 조약 제 2항의 원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쿠릴열도에 대한 모든 권리, 이유, 주장을 포기하고, 사할린 섬의 일부와 인접 섬에 관해서는 1905년 포츠머드 조약 하에 일본이 획득한 지역에 대한 주권을 포기한다' 일본은 어떤 망설임도 없이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했다.

소련의 샌프란시스코 조약 서명 거부는 심각한 결과를 야기했다. 지금까지 소련과 일본간에 어떤 합법적인 평화조약도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양국협정에 의해 새로운 국경도 획정되지 않았다. (비록 국경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서나 국제법에 의해 승인되긴 했지만) 일본의 관점에서 보면, 영토의 지위는 최종적인 것으로 생각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은 일본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거의 50년 동안 마치 양국간에 영토적 분쟁이 있는 양 영토분쟁에 대한 대화를 계속해 올 수 있도록 해주었다. 1955~1956년 런던에서 소련과 일본간의 쌍무협상이 대사급 수준에서 전후 정착문제에

대해 시작되었다. 일본 대표단은 쿠릴열도와 남부 사할린의 반환 요구를 포함한 사전 조건을 제시했다. 이때까지 소련과 미국은 냉전에 함몰되어 있었다. 소련 정부는 작은 쿠릴열도의 섬들인 하보마이와 쉬코탄의 일본 반환에 대한 조항을 평화조약의 프로젝트 안에 포함시키는 것에 동의했다. 이 반환으로 양국간의 국경분쟁이 최종적으로 해결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양보는 일본에 의해 평가 받지 못했다. 1955년 8월 2일자 특별 메모랜덤에서, 일본 대표단은 새로운 요구조건, 즉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서명하면서 일본이 포기했던, 그러나 이들 섬들도 "쿠릴열도에 포함되지 않는" 작은 쿠릴열도의 섬들이기 때문에, 쿠나쉬르와 이투루프도 반환하라는 새로운 요구조건을 제시했다. 1956년 10월 모스크바에서의 최종 협상 결과에 의해, 소·일 공동선언이 서명되었다. 이것으로 양국간 전쟁 상태가 종식되었고, '세계적 우호관계와 좋은 이웃의 우호관계'가 회복되었다. 이것은 다음 10년 동안 평화조약의 역할을 수행했다. 소련은 평화조약의 체결 이후 섬들의 실질적인 일본반환이라는 조건하에 하보마이와 쉬코탄의 일본반환에 동의했다.

후르시초프(N.S. Khrushchev)의 즉흥적인 계획에 의하면 소·일 공동선언의 서명은 일본의 미-일 군사협력 조약의 체결을 막았어야 했다. 그러나, 1960년 1월 19일 미-일간 군사협력 조약이 체결되었고, 이 조약에 따라 일본영토에 미군이 영구 주둔하게 되었다. 소련 외무부는 이 사건에 직면하여 일본 정부에 노트를 보냈다. 이 노트는 소련에 의해 자발적으로 취해진 일본에 대한 작은 쿠릴열도의 섬들의 반환의무는 폐기되었다고 밝혔다. 1960년 1월 27일 메모랜덤에서, 소련정부는 조건변화를 선언하고,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 일본 영토로부터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와 소·일간 평화조약의 체결 조건 하에서만, 하보마이와 쉬코탄의 일본 반환이 이루어질 것이다.[17]

17) L. N. Kutakov. History of Soviet-Japanese diplomatic relations. Moscow, 1962.P.490/JI.

이 메모와 뒤 이은 몇몇 메모에서, 일본이 미국과 조약을 체결했고, 기저환경을 완전하게 변화시켰기 때문에 일본에게 책임이 있다고 선언했다. 다음 10년 동안 소련은 강경노선을 취하며, 국경선의 개정에 대한 일본의 모든 제안을 무시했다. 핵심 본질은 양국간 영토적 분쟁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으로 변질되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그리고 1991년 4월 소련 대통령 고르바초프의 일본 방문 직전 한편으로, 일본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힘이 성장했고, 다른 한편으로 소련의 해체가 시작되고, 게다가 특히 많은 소비에트의 정치인들이 이 문제에 대한 양보에 호의적으로 말하자, '문명화된 방법으로 "북방영토" 문제의 해결'에 대한 일본의 희망이 커졌다. 일본정부는 남부 쿠릴의 양보에 대해 일본으로부터의 경제적 원조에 특히 관심을 가진 고르바초프에 의지했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고르바초프의 긴 협상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아무런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일본은 또한 옐친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도 많은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1992년 옐친의 방문은 연기되었고, 1993년 10월에서야 이루어졌다. 이 방문기간 동안 이루어진 토쿄 선언에서 러시아는 소련의 계승자로 인정받았다. (토쿄선언은 일본에서 하보마이와 쉬코탄의 일본 반환 약속을 포함하여, 1956년 소·일 공동선언의 효과를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일본의 압력(pressure)하에 러시아측은 토쿄선언 속에서 쉬코탄과 하보마이 뿐만 아니라 남 쿠릴열도 전체를 계속적인 협상의 주제로 인정했다. 협상은 1997년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옐친과 일본 수상 하토야마의 비공식적 회담에서도 계속되었고, 평화조약의 체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회담기간 중 양측은 토쿄선언에 기초하여 2000년에 평화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합의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1998년 4월, 비공식 정상회담이 일본의 카반에서 개최되었다. 일본측은 당분간 남 쿠릴에 대

Н.Кутаков. История советско-японских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М., 1962. С.490.

한 러시아의 관리권(administrative control)을 인정하면서, 이투루프 북쪽으로 경계선을 긋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러시아측은 이 제의를 수락하지 않았다.

러 · 일 접촉은 계속되었고, 러시아의 새로운 대통령 푸틴 하에서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푸틴이 영토적 양보를 고려할 것이라는 일본측의 희망은 정당화될 수 없었다. 소위 말하는 '일본과의 평화조약 문제'가 2000년 1월 28일 대통령에 의해 승인된 러시아 연방의 외교정책 개념에 언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의미했다. 또한 양국간 존재하는 국경 재획정 문제에 대해 러시아측의 어떤 의무도 존재하지 않았다. 2005년 11월 푸틴의 일본방문은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국경획정'에 대한 어떤 변화도 없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러시아측은 양측이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북방 섬 문제를 분리하고, 개별적인 문서의 수용을 연기하며, 우호협력조약의 체결에 대한 희망을 재확인했다. 분쟁 도서 지역에서 러 · 일 협력관계의 발전에 아주 중요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양측은 이들 지역들에서 공동 경제활동 발전을 위해 러 · 일 협력 프로그램을 수립했다. 러시아측은 상호 수용 가능한 국경획정 문제의 해결책이 러시아의 주권과 영토적 통합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사고에 기초하여 토쿄와 협상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 통치 초기,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이 상승했고,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부강해졌다. 러시아의 지도부는 남 쿠릴열도를 러시아 영토의 일부로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게다가 이들 섬들과 해안지역 주변의 거대한 어장에 더해 채굴 가능한 비철금속, 수은, 천연가스, 석유 등의 매장량이 탐험되었다. 쿠드리아비 화산 근처의 이투루프 섬에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알려진 레늄 광이 있다. 또한 쿠릴열도는 주권과 독립과 국가안보를 보장하고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하다. 당시, 영토문제에 대해 '독창적이고 비전통적인 접근법'을 찾아보자고 한 메드베데프의 제안 속에서, 일본인들로 하여금, 소위 말하는, 체면을 구기지 않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권리로서 러시아에

속한 것'을 포기하지도 않을 어떤 선택안을 발견하고자 한 러시아 지도부의 희망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2009년 일본은 그것에 따라 북방 섬들이 일본의 '전통적 영토'라 불린, 법률을 채택함으로써 영토문제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켰다.

2010년 중반, 크레믈린은 러시아의 새로운 외교정책 독트린을 비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것은 대강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서로 기울이고, 남을 중립화시키고, 동으로 이동한다(lean to the West, neutralize the South and move to the East)' 이 독트린 하에서 그리고 2010년 10월 미국과의 관계 재설정을 배경으로 러시아의 대통령은 남 쿠릴열도를 방문했다. 뒤이어 국방장관도 이들 지역에 추가적인 무기를 배치할 계획을 갖고 남 쿠릴을 방문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쿠나쉬르 방문 이후, 일본과의 관계는 더 경직되었다. 그 때 이래로, 러시아 정부의 대표들이 정기적으로 쿠릴열도를 방문하고, 일본측은 해상과 공중으로부터 이들 섬들에 대한 '감시(inspection)'로서 이에 대응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그런 감시는 2012년 1월 14일 일본의 외상 겜바(Koichiro Gemba)에 의해 해안경비정의 선상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모스크바는 토쿄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쿠릴열도에서의 자신의 존재감을 더 확장할 생각이다. 최근 러시아는 남 쿠릴열도의 생활수준 향상과 근대적 인프라 구축의 희망을 발표했다.

2012년 7월 3일 러시아연방 총리 메드베데프는 쿠릴의 한 섬인 쿠나쉬르를 방문했다. 여기서 그는 지역 생선가공공장과 병원을 시찰하고, 정교사원 건축 현장을 방문했으며,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또한 관세 및 국경보호청과 병원이 들어설 건설 중인 해양기지를 점검했다. 그는 쿠릴열도의 수송 접근성 문제와 극동지역으로의 인력유입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러시아 총리는 쿠릴열도를 일본에 양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러시아의 정치 지도부는 어떤 부드러운 선언을 하거나 일본에게

어떤 희망을 줄 여유도 없다. 남 쿠릴열도에 대한 주권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쿠릴열도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은 최근의 전술을 그대로 따른다. 요약하면 이렇다: 이전 정권에 의해 약속된 것은 크게 부정하지 않는다. 1956년 선언에, 즉 하보마이와 쉬코탄은 인정하되, 1990년대 중반 협상과정에서 일본의 압력에 의해 등장한 쿠나쉬르와 이투루프는 배제된, 1956년 선언에 충실할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견해와 엄격하게 맞지 않는 그런 형태로 선언의 충성심("loyalty" of the Declaration)이란 단어를 동반한다. 러시아가 일본의 공격에도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러시아가 결코 정당한 권리로서 자신에게 속한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제안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제 영토적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일본인들은 국내정치적 이유로 그들의 영토주장을 포기할 수 없다. 러시아의 어떤 정치 엘리트나 정당도 오늘날 자신이 이들 섬들을 일본에 반환하는 데 찬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것은 정치적 자살행위인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이 문제가 해결 불가능하다는 이유가 다른 어떤 관계의 발전도 불가능하다는 핑계거리로 되어선 안 된다. "쿠릴문제 (Kuril issue)"에 대한 의견불일치가 러-일간 경제적 문화적 유대관계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된다. 모스크바와 토쿄간 통일된 법적 입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2012년 1월 28일 라브로프의 일본방문기간 중, 그는 친척들의 묘지를 방문하려는 일본인들이 쿠릴열도를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발급 절차 간소화 및 신속처리 협정(agreement on visa facilitation)에 서명했다. 이런 것은 신뢰를 쌓고, 평화협정 체결과 같은 다른 쟁점의 해결에도 도움이 되는 분위기를 창출한다.

양국간 협상과정에서 러시아는 쿠릴열도의 정체성 문제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일본의 기술적 경제적 투자 잠재력의 통합에도 초점을 맞추자고 제안했다. 러시아의 지도자들은 일본과 더불어 남 쿠릴열도의 경제개발

과 사회발전에 대한 공동 프로젝트를 환영할 것이다. 유망한 영역 중에는 생선과 가공 공장, 지열 에너지, 농업, 관광 등이 있다. 러시아의 법률은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제공할 것이다.

일본과의 협력은 국경지역에서도 발전하고 있다. 몇 년 전, 러시아의 태평양 지역관리 사령부가 일본의 해상보안청과 협력해야만 했다. 그 결과 일본 순시선에게 일본인 어민 및 러시아 어민의 국경 위반사실을 통보하는 메카니즘이 탄생했다.

인도주의적 문화적 상호교환의 확대는 러 · 일간 지정학적 문제해결에 아주 중요하다. 최근, 일본의 기득권층에서 쿠릴열도에서의 공동 경제활동을 포함하여 '러시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촉진하기 위해' 확고한 상호관계 계획을 수립하자는 생각이 무르익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 외상 겜바는 만약 양국간의 논의가 일본의 법적 지위에 어떤 해도 끼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근까지 일본이 남 쿠릴열도의 관할권(jurisdiction)이 일본에 이전된 이후에라야 만 공동 투자 계획 문제를 의논하겠다고 주장한 사실을 고려하면, 그런 프로젝트를 논의하겠다는 일본의 의지는 확실히 긍정적인 조치이다. 따라서 쿠릴열도에 대한 러 · 일간 협력 제안은 타협안이 될 수 있다.

오늘날 일본의 산업계는 1990년대 초보다 훨씬 더 러시아와의 관계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그들은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 러시아 국내와 사할린 광구의 개발 덕택에 러시아의 에너지가 일본 에너지 수요의 22%를 충족한다. (다른 추정치는 40%까지 본다) 그러나 일본은 그런 에너지 공급을 늘리고자 한다. 특히, 일본은 사할린-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톡 파이프라인이 완공되면 일본으로의 가스공급을 늘리고자 한다.

러시아와 일본은 이르쿠츠크 지역에서 석유 및 가스 생산에 대한 공동 프로젝트를 발족했고, 가까운 장래에 하이드로카본의 상업적 생산이 시작될 예정이다. 시베리아 개발분야에서 신참인 일본의 입장에선 이것은

최초의 중요한 성공이다. 일본은 무역확대를 필요로 하고, 산업계는 양국간 긴장관계가 그리 달가울 리 없다. 일본 경총(Japan Association of Corporate Executives)의 기자회견에서, 일본 대기업들은 일본정부에게 러시아와의 경제적 관계가 손상되지 않는 방식으로 일본의 입장을 방어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게다가 일본의 경제통상산업부(METI)와 이토추(Itochu Corp) 그리고 일본석유개발사(Japan Petroleum Exploration)는 2009년 5월 '가즈프롬(Gazprom)'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블라디보스톡에 액화천연가스 생산공장의 건설 가능성이 타진되고 있다. 그러나 또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존재한다. 일본은 북한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가능성과 운반수단은 공통의 관심사가 되었다. 러시아와 일본은 공통의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들은 공동의 통제하에 쿠릴열도 지역의 해양 바이오 자원의 운용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해양자원을 함께 개발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중요하다. 러시아와 일본은 공동의적, 즉 쿠릴열도 지역의 해양 바이오 자원에 대한 야만적 파괴가 그것이다. 러시아와 일본 시민들 모두 관련되어 있다. 러시아와 일본은 밀렵 감시대를 만들고, 국경의 태평양 순찰대에 현대적 기술을 제공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동북아, 즉 중 · 러 · 일 · 남북한 · 몽골의 상호조화 과정(process of harmonization)을 시작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 프로젝트는 두만강유역개발사업(Tumen program)에 대한 UN협약에 기초를 두고 있고, 상하이협력기구 회원국들과 일본 및 한국의 시장을 해양 철도페리(Maritime rail ferry)로 연결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해양철도페리: 중국(훈춘) – 러시아령으로 70마일 통과(트리니티 만, 자루비노) – 속초 항(한국) – 니이가타 항(일본) – 코르사코프(사할린). 철도 표준괘와 년간 천만 톤 화물 베이스는 모든 참가국에게 이익이 되는 프로젝트가 된다.

러시아 외무성 자료에서 평화조약 및 러-일 국경문제와 관련된 러시아

의 공식입장의 핵심요소들이 나타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3. "영토적 분쟁"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1) 현재의 러 · 일 국경은 확실한 국제적 법적 기반을 가진 역사적 사실이다. 남부 쿠릴열도는 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러시아에 귀속되었고, 그 법적 기반은 연합국간 협정(1946년 2월 11일의 얄타협정, 1945년 7월 26일의 포츠담선언)이다.

(2) 통일 독일처럼 일본은 전쟁 이전 국가의 주관성의 계승자(successor of subjectivity of a pre-war state)가 아니기 때문에, 영토문제와 관련하여 계속성을 가지지 않는다. 일본은 국제관계와 국제법의 새로운 주체이다. 이전 국가로부터의 계승은 책임을 가진 4강의 결정에 의해 제한되었다. 이것은 전후 정착과정에 내재된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항복 원칙의 법적 해석으로부터 추론되었다.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항복은 국제관계의 주체 소멸, 정치적 제도로서 이전 국가의 해체, 주권의 상실, 그들 스스로 평화의 조건과 전후 정착의 조건을 결정하는 전승국으로 이전되는 모든 권력 등을 의미한다. 새로운 국가는 연합국에 의해 새로운 국경, 헌법, 국가권력기구를 가진 국가로 탄생한다. 일본의 입장은, 참가국이 아니기 때문에 얄타협정에 의해 구속될 수 없지만, 비판을 받고 있다. 오늘날의 일본은 전후 국가이다. 그리고 정착은 전후-국제화된 법적 기초로부터만 가능하고, 특히 이런 기초가 법적으로 효력을 가져야 가능하다.

(3) 그것이 러시아의 전략적 입지에 야기할 위험한 영향은 제외하더라도, 쿠릴열도의 양보는 현재 독일의 러시아(칼리닌그라드)와 폴란드(실레지아)와 체코(수데테스)에 대한 영토적 주장이 따르고 있는 전 세계의 영토적 현상유지에 극단적인 선례가 될 수 있다. 일본의 섬 반환요구를 만

족시켜주는 것은 2차 세계대전의 결과의 확정성(firmness of the results of World War II)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 된다.

(4) 쿠릴열도 문제에 대한 현재 접근법의 기초가 되어야만 하는 유일하게 작동하고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국제적 서류들에는 얄타와 포츠담에서의 연합국들의 결정과 1951년 미국에 의해 지도된 51개국이 일본과 함께 서명한 샌프란시스코 조약 하에서의 결정이 있다. 얄타회담의 결정에 따르면, 모든 쿠릴열도의 섬들과 사할린 섬들은 "영원(forever)" 소련으로 귀속된다. 영국과 중국이 서명하고, (소련이 나중에 가입한), 미국의 포츠담 선언은 이와 같은 내용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5) 소련은 일본과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서명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서명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이 조약은 소련으로 이전될 영토와 관련된 조항이 없다. 그러나 이 조약은 확고한 사실을 변화시키지 않았다. 즉, 조약 제2항에서 일본은 '쿠릴열도와 1905년 9월 5일부터 포츠머드 조약 하에 일본이 주권을 획득한 사할린 남부의 섬 및 인접 섬들에 대한 모든 권리, 법적 이유, 주권주장을 포기한다(refuses all rights, legal reasons and claims for Kuril islands and that part of Sakhalin island and islands adjoining to it, the sovereignty over which Japan acquired under the Portsmouth treaty from September, 5-th, 1905).'

(6)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언급된 내용의 수정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후 아시아에서 전개된 현상유지를 훼손하고, 아시아의 영토적 안정성을 해칠 것이다. (중국의 국경이기도 한 외몽고의 지위, 한국의 독립, 많은 섬들과 기타 지역의 지위)

(7) 쿠릴열도는 분리될 수 없는 지리적 개념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쿠릴열도는 그런 분류의 모든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8) 1956년 10월 19일의 소-일 공동선언으로 전쟁상태가 종결되고, 평화조약이 체결되면 하보마이와 쉬코탄을 일본에 반환하려는 소련의 의지가 확실하게 되었다. 이 선언의 제9조항은 다른 영역의 특정 의무에 의해 요

구되는 목표에 대한 프로토콜이다.

(9) 러 · 일 관계에 대한 접근법을 변화시키고, 관계발전을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도 않은 평화조약의 체결로 귀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 국제법은 양국간 평화조약이 없더라도, (과거 전쟁을 치렀던 두 국가가) 성공적인 협력을 이루는 많은 경우를 알고 있다.

(10) 러 · 일 관계는 2차 대전의 결과의 확고함이라는 중요한 원칙에 기초해야만 한다. 2차 대전의 결과의 불가침성(principle of the inviolability)이라는 원칙은 전후 국제관계의 기초로서 여전히 남아있다.

결론적으로 러시아는 아시아의 현상유지를 위해 중국, 남한을 포함하여 2차대전의 결과를 번복하지 않으려는 국가들을 동맹으로 삼고 있다. 일본에 의해 영유권이 주장되는 타케시마로 불리는 '독도'는 한국과 일본간의 긴장관계의 원인이 되었다. 독도는 "한국의 남 쿠릴열도(Korean Southern Kuril islands)"로 불릴 수 있다.

일본의 여러 영토적 주장들, 예를 들면 독도(한국), 쿠릴열도(러시아), 팽호도(Penhuledao)(중국), 파라셀군도(베트남) 등은 일본의 국제법적 의무와 직접적으로 상충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2조를 간접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일본은 2차 대전 이후 수립된 이웃하는 국가들의 영토에 대한 주권 주장을 하며 2차대전의 법적 정치적 결과들을 무시하고 있다.

모든 국가들은 이웃이자 지역 파트너들이며, 우호관계의 강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모든 국가들에게 영토문제는 민감한 문제이다. 따라서 이웃하는 국가와의 갈등해결은 '영토획정 문제의 수용 가능한 해결은 소속국의 주권과 영토적 통합성을 해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Kutakov, L.N., Foreign policy and Diplomacy of Japan. Moscow, 1964.

Russian Pacific epic. Khabarovsk, 1979.

Кутаков, Л.Н.,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и дипломатия Японии. М., 1964.

Русская Тихоокеанская эпопея, Хабаровск., 1979.

Efimov, A.O., From the history of the great Russian geographical discoveries. Moscow, 1971.

Ефимов, А.О., Из истории великих русских географических открытий. М., 1971

Kutakov, L.N., Foreign policy and Diplomacy of Japan. Moscow, 1964.

Кутаков, Л.Н.,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и дипломатия Японии.

Fainberg, E.Ya., Russo-Japanese relations in 1697-1875, Moscow, 1960.

Файнберг, Э.Я., Русско-японские отношения в 1697 - 1875 гг. М., 1960.

Russian expeditions on exploration of Northern part of Pacific in the 2nd half of XVIII Century Collection of documents.Moscow, “Nauka”, 1989.

Русскиеэкспедициипоизучениюсевернойчасти Тихогоокеанавовторойполовине XVIII в. Сборникдокументов. М.,《Наука》, 1989.

Nevsky, V.V., The Russian First round world trip, Moscow, Geografizdat, 1951.

Невский, В.В., Первое путешествие россиян вокруг света. Географиздат, 1951.

Kutakov, L. N., Foreign policy and Diplomacy of Japan.

Кутаков, Л.Н.,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и дипломатия Японии..

Fainberg, E.Ya., Russo-Japanese relations in 1697-1875.

Файнберг, Э.Я., Русско-японские отношения в 1697 - 1875 гг.

Klyuchnikov, Yu.V. and A.V. Sabanin, The international policy of contemporary history in treatise, notes and in declarations. Part I. Moscow, 1925.

Ключников, Ю.В. and А.В. Сабанин, Международная политика новейшего времени в договорах, нотах и декларацияз. Часть I М., 1925.

Kutakov, L.N., Portsmouth treaty. Moscow, 1961.

Кутаков, Л.Н., Портсмусткий мирный договор. М., 1961.

Narochnitskaya, N.A., Kuriles – problems created by Russian lack of will. Gubernskie vedomosti. 17-24.07.2001

Нарочницкая, Н.А., Курилские острова- проблема, созданная российским безволием. Губернские ведомости. 17-24.07. 2001

Kutakov, L.N., Foreign policy and Diplomacy of Japan. P.315/Л.Н.Кутаков.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и дипломатия Японии.

Teheran, Yalta, Potsdam.Moscow, 1971

Collection of materials of US State Department on the conferences on Malta and Yalta. Vol.4. Moscow, 1955.

Crimean conference of the leaders of allied Powers. Moscow, 1984.

Тегеран, Ялта, Потсдам. М., 1971

Сборник материалов Госдепартамента США о конференциях на Мальте и в Ялте. Т.4. М., 1955.

Крым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руководителей союзных держав. М., Изд. Политическая лит ература., 1984.

Kutakov, L.N., History of Soviet-Japanese diplomatic relations.Moscow, 1962.

Кутаков, Л.Н., История советско-японских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М., 1962.

Territorial Dispute between Russia and Japan over the Kurile Issue

Bella B. Pak*

Introduction

The essence of the territorial problem between Russia and Japan is Japan's claim to a number of islands under Russian jurisdiction. Geographically, these islands, called the Kuriles, represent an island ridge from Kamchatka up to Hokkaido. Speaking of the Southern Kuriles generally means the two islands of the Big Kuril ridge - Iturup and Kunashir - and the Small Kuril ridge located in parallel to these islands, consisting of Shikotan island and groups of the Habomai islands. Japan considers that the Kuril archipelago (or Chisima retto) comes to an end with the island of Urup and what Russia calls the Southern Kuriles, in general, does not enter into the Kuriles, forming instead the《northern territories》. Into the concept of the《northern territories》Japan includes《4 islands》, i.e. Kunashir, Iturup, Shikotan and Habomai, meaning, in the latter case, a group of islands under the fourth island. Hence, it follows that the Japanese request for the transfer of the "northern territories" to Japan sounds as though they are requesting the return of《4 islands》.

*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Russian Academy of Sciences

History

In Russia, the first data on the Kuriles appears in the XVII century. Numerous Russian expeditions of the XVIII-XIX Centuries reveal a priority for opening, describing and researching the Kuriles. During this period, Russian industrialists and colonists worked on the initial development of these islands. In 1649 a participant of the expedition of Simeon Dezhnev, Fedot Alekseev (Popov), visited the Kuriles. Another Russian explorer who saw the Kuriles was Vladimir Atlasov in 1698. In 1700, Semyon Remezov, an outstanding geographer and historian, plotted the Kuriles on his map of Siberia. In 1705, a detachment of Cossack Lamaev imposed a tax on the inhabitants of the first Kuril islands. In 1711, Cossack Captain Ivan Kozyrevsky and Cossack ataman Danilo Antsiferov surveyed and mapped the northern islands of Shumshu and Paramushir with a group of Cossacks and industrialists.

In 1711-1712 Ivan Kozyrevsky again went to these islands and collected data on the majority of the Kuriles, including Iturup, Kunashir, and also 22nd island (Hokkaido, or as it was named then by the Russians and Europeans - Matsmai; its Japanese name up to XIX-Edzo), communicated with indigenous population of Kurile's《ainu》and reported subsequently to Vitus Bering that the《inhabitants of Iturup and Urup are not [Japanese] subjects》and that the Japanese have not visited these islands.[18)]

In fact, Japan (up to the end of XVIII century, operated under Tokugawa laws of 1639 that established the isolation of Japan, forbidding settlers, under the threat of a death penalty, from leaving the country) demanded that

---

18) L.N.Kutakov. Foreign policy and Diplomacy of Japan. Moscow, 1964. P.302; Russian Pacific epic. Khabarovsk, 1979. P.452/Л.Н.Кутаков.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и дипломатия Японии. М., 1964, С.302; Русская Тихоокеанская эпопея.Хабаровск., 1979.С.453.

seagoing ships make only limited trips within Japanese waters but not as far north even as the central and northern areas of Edzo (Hokkaido), not to mention the Kuriles and Sakhalin.

In 1721, under Peter's I decree, cartologists Ivan Evreinov and Feodor Luzhin visited the Kuriles and made the first map of all the islands and made Russian subject inhabitants of 6 northern islands.[19] In 1730, the Kurilislands, for the first time, were mentionedinan official Russian document-an instruction from July 1, 1730, signed by Empress Anna Ioannovna, to chief of Okhotsk G. Pisarev. The instruction included Kurilesinthesphereofhiscompetenceand ordered him to collect duties from the Kurilainu people.

On December 23, 1732, Empress Anna Ioannovna wrote instructions to V.Bering to send Martin P. Shpanberg to the islands located between Kamchatka's cape Lopatka and Japan. In1738, M.Shpanberg's expedition reached Iturup and Lieutenant Walton went up to the latitude of Edzo island. Almost all the Kuriles had been drawn on a map and had received new Russian names. Thus Urup was called the Company's Land and Iturup -the Island of States. The June 1739 expedition visited the east coast of Edzo island and started an exploration of the Southern Kuriles. Based on conversations with local inhabitants, the expeditionary participants found that the Kuriles, except for Matsmai island (Hokkaido), were not subject to Japan.[20] The participants of this expedition were the first Europeans who visited Edzoand Sakhalin.

In 1745, the general map of the Russian empire was issued with most of the Kuriles included. In 1750, the duty collector, Nikolay Storozhev, visited

---

19) A.O.Efimov. From the history of the great Russian geographical discoveries. Moscow, 1971.P.200/A.O Ефимов. Из истории великих русских географических о ткрытий. M., 1971. C. 200.

20) L.N.Kutakov. Foreign policy and Diplomacy of Japan. Moscow, 1964. P.305/Л.Н Ку таков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и дипломатия Японии. C.305.

Simushire and, in 1755, the Kunashir islands. The same year, most ainu living in the south of the Kuril ridge became Russian subjects and agreed to pay duties.In 1766, the Sergeant-mayor Nikita Tchikin and sotnik (lieutenant of cossacks) Ivan Cherny, by instruction of the Siberian Governor, F. I. Soimonov, were sent to the Southern Kuriles. The first died and the latter spent the winter of 1767 on Simushire in a Russian winter hut on the east coast of Urup and Iturup. Japanese historian, Kuno Yosi, testifies to these facts: 《In 1766, Russia extended its power to Iturup - the biggest of Kuriles》.[21)]

In 1772, Irkutsk Governor A. I .Bril gave instructions to the Main Commander of Kamchatka, M. K. Bem, to take Kuriles into his possession and to make local, non-Russian inhabitants Russian subjects.[22)] A new expedition led by Ivan Antipinand D. Shabalin, was entrusted to establish industry on the South-Kurilis lands. Having spent the winter of 1777 on Urup island, the members of the expedition were engaged in fishery and evenagri culture. During 1778-1779 they twice visited Iturup, Kunashir and SHikotan(Shpanberg' sisland), and also Hokkaido.

As a result, the map of the Kuriles and Hokkaido was plotted, and a list of inhabitants of 19th, 20th, and 21st islands was made and the native population of four southern islands became Russian subjects. With these efforts, the rights of Russia to the Kuriles was confirmed. The general number of Russian citizens on the Kuriles reached fifteen hundred. On April 30th, 1779, Catherine II issued the decree about 《non-levying any tributes from Kuril people, who were made Russian subjects》[23)] More than 50 participant softheexpeditionstayedon Urupisland up to1782.

---

21) E.Ya.Fainberg.Russo-Japanese relations in 1697-1875. Moscow, 1960.P.35 /Э.Я.Файнберг. Русско-японские отношения в 1697-1875 гг. М., 1960.С.35.

22) Ibid. P.37.

23) Ibid. P.38-39.

In 1786, it was proposed that a military squadron under G. I. Mulovsky's command be sent to the Far East with the purpose of proclaiming Russia's rights to the newly opened lands in the Pacific ocean, including the islands of the Kuril ridge by the right of the country-pioneer and for protection of new state possessions. By instruction of Admiralties-board to the chief of the first Russian round-the-world expedition Captain Mulovsky, in April, 1787, the latter was entrusted《to describe all small and the greater Kuriles from Japan up to Kamchatka's Lopatka. And from Matsmai (i.e. Edzo) up to Lopatka, to add them formally to the possessions of the Russian state, establishing State emblems and buring medals in decent places with an inscription in both the Russian and latin languages》.[24] However, the Russian government was forced to cancel the expedition in view of the outbreak of the Russo-Turkish war. In 1789-1792 the Kuriles were surveyed by Sarychev's expedition up to 15 this land. Of great value was K. G. Laks man's mission which was directed to Japan in 1792. His passage proceeded through the bays between the islands of Urup, Iturup, Kunashir, SHikotan and Edzo. On the way, the group of islands called Habomai were also examined.[25]

The Russian-American company has founded in 1795 the "Alexandra" colony on Urup island, which consisted of 40 persons led by Vasily Zvezdochetov (existed up to 1807). In 1799 all the Kuriles were transferred to the command of this company. In the nominal decree of emperor Paul I about the Russian-American company from July 8, 1799 it was said about the

---

24) Russian expeditions on exploration of Northern part of Pacific in the 2nd half of XVIII Century Collection of documents. Moscow, "Nauka", 1989. P.289/РусскиеэкспедициипоизучениюсевернойчастиТихогоокеанавовторойполовинеXVIIIв.Сборникдокументов. М., 《Наука》, 1989, С.236.

25) V.V.Nevsky. The Russian First round world trip. Moscow, Geografizdat, 1951. P.19./ В.В. Невский. Первое путешествие россиян вокруг света. Географиздат, 1951. С.19.

《Kuriles》《belonging to Russia by the right of opening》, whose development was transferred to the exclusive management of this company.

Japan has not found similar official documents on the Kuriles as of yet. Thus, Russians were the pioneers in the opening and development of the Kuriles. In the second half XVIII century they established settlements on SHumshu, Paramushire, Simushire and Urup, delivered cattle and seeds to the islands helped the local residents with cattle breeding and truck farming. In 1749, Cossack Shergin opened the first school on Shumshu and began to teach local children in Russian letters. As early as 1780s, all the population of the islands was considered orthodox and, in 1840, the Synod founded a special eparchy, the head of which carried the title of Bishop of Kamchatka, Kuril and Aleutian.

Only in 1785, for the first time, do Japanese government officials appear on Kunashir and the Iturup islands. Substantially, they were replying to the measures by the Russian Cossacks of Antipin-Shabalin's expedition to develop the Kuriles.

It should be noted that the efforts of Russia in opening the Kuriles are acknowledged by many Japanese scientists (R. Okamoto, E. Kuno, S. Nakamura, N. Muroga, T. Matsunagi, G. Sarasina, etc.). So, for example, Japanese historian Teken Matsunagi in the book《Sakhalin and Kamchatka》writes the following:《In 1643 (20-th year Kan'ei) Russians came to Kamchatka and opened the Chishima islands to which they gave the name "Kuriles" Then they occupied Alaska and gradually, step by step, moved to the South and occupied the 21st island》,[26] i.e. all Kuriles except for 22-ndisland had named Hokkaido(NB: 20 this land designated Iturup, 21st-Kunashir and by 22nd considered Hokkaido). According to another

---

26) L. N. Kutakov. Foreign policy and Diplomacy of Japan. P.299/ Л.Н.Кутаков.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и дипломатия Японии. С.299.

Japanese scientist, G. Sarasina, 《in 1750, when the Matsumae clan(the Japanese princedom) started to direct trading vessels to Kunashir island, the Russians, who, by then, had advanced across the Kuriles to the south, already had renamed many of them that located to northern part, have converted in to their belief local residents and began to collect annual tributes from the man's population-one fox skin.》

In the 1880-90s, the authorities of the Matsumae princedom and the central government (bakufu) started to pursue a policy of displacement of Russians from the Southern Kuriles. Japanese officials, fishermen and merchants were ordered to destroy crosses, memorable columns and others signs of Russians' stay on the islands. Japanese expeditions became openly aggressive against the Russians and proceeded to capture Kunashir and to enslave the ainu population. In 1789 the ainu on Kunashir rebelled and killed some Japanese.

The Japanese colonization of Southern Kuriles at the end of the XVIII century was limited to Kunashir and was of a seasonal character (same in Southern Sakhalin). In 1799-1800, Japanese authorities intensified their expansion on the Southern Kuriles. Japanese officials were directed to Kunashir and Iturup to expel the Russians and to impose taxes upon the ainu. It was forbidden for local residents to trade with Russians. After Kunashir Iturup has also been seized and the house for fishery-trade constructed in Oito bay. Crosses and the columns, signifying to possession of Iturup by the Russian empire, were destroyed. In their place, columns were erected with an inscription《Iturup, possession of great Japan》In 1801, Japanese officials tried also to declare Urup to be their possession.

The first Russian round-the-world expedition on the "Hope" (headed by I. F. Kruzenshtern) was sent from Kronstadt on July 26, 1803. On board of the "Hope" was an embassy led by plenipotentiary minister N. P. Rezanov. In October, 1804《Hope》arrived in Nagasaki. Rezanov delivered to Japan many

Japanese who had been ship-wrecked. Alexander 1st letter to the Shogun offerred to establish friendly relations. Though Rezanov's mission was unsuccessful, it was important that Japan, for the first time, listened to official Russian claims concerning the Southern Kuriles. Rezanov declared to bakufu, that Japan should not expand to the north from Matsumae, as well as occupy the lands on Sakhalin, as they belong to the Russian emperor.[27] Rezanov was entrusted to found trading stations and agricultural colonies on Sakhalin and Kuriles, where the Japanese had started to settle down. Alexander I's government continued a policy of colonizing these territories. On there turn voyage in May, 1805, the《HOPE》visited Sakhalin. Here the Russian flag was raised. The situation in the south of the Kuriles and on Sakhalin-the illegalactions of the Japanese on Kunashir, Iturup and Southern Sakhalin-compelled Rezanov, as the plenipotentiary commissioner of the government and the Russian-American company, to decide to expel the Japanese from the Russian possessions and to destroy their trading stations. In 1806, he gave instruction to Officers A. N. Hvostov and G. I. Davydov to liquidate the Japanese trading stations on the south of Kuriles and Sakhalin.

Having landed in Aniva bay on Southern Sakhalin, the Russians disarmed the Japanese garrison. In 1807 the expedition moved to Iturup. The Japanese garrison escaped, Russians announced to ainus that Japanese are expelled and that Iturup is a Russian possession. The same actions were undertaken on Kunashir and the northwest coast of Edzo. However, as soon as the Russians left, Japanese officials and soldiers returned to Sakhalin, Kunashir and Iturup. This time they fortified the islands in case of a future military attack.

In 1811, the sloop《Diana》under the command of Russian seamen, V.M.Golovnin, arrived to the Kuriles to further survey, map and explore the

---

27) E. Ya. Fainberg. Russo-Japanese relations in 1697-1875.P.155/ Э.Я.Файнберг. Русск о-японские отношения в 1697-1875 гг. С.155.

Kuril and Shantarsk islands. On Kunashir, Golovnin and a group of his companions were taken prisoner by the Japanese. Only after receiving the assurance of Russian authorities that the government was not involved in Hvostov and Davidov's raid, did the governor of Edzo release the Russian seamen. Golovnin's expedition was of great significance for research and the cartographical description of Southern Kuriles. His expedition, for the first time, defined with certainty their position on world maps.

After two unsuccessful expeditions to Iturup in 1814 and 1815, the Siberian General-governor, Pestel, referring to the dangers of navigating in the areas of the Southern Kuriles, decided to halt any expeditions for a while. The Crimean war of 1853-56, in which Russia fought with Turkey, then allied England, France and Sardinian kingdom (Italy), has affected Kuriles. Despite the agreement on a neutrality in September, 1855, two military frigates of an Anglo-French squadron destroyed a trading station of the Russian-American company on the island of Urup.

The 1850s is the period of "opening" of Japan by Americans and Russians. News about Perry's squadron in Japan speeded up the decision by the government of Nicholas I to renew attempts to establish relations with Japan. In 1852, for this purpose, an expedition led by vice-admiral E.V.Putjatin was equipped. The flagman ship of expedition - the frigate《Pallada》- arrived in Nagasaki harbor in August, 1853. Putjatin's instructions ordered him to keep in mind during any negotiations that the complexity of the current international situation made it especially urgent to establishment a good-neighbour relationship between Russia and Japan. The same circumstances dictated the necessity to establish a clear Russo-Japanese frontier. The boundary-liner was supposed to be draw through La Perouse straits. In a letter to the Japanese Supreme Council on November 6, 1853, Putjatin insisted on the historical rights of Russia to Iturup and Sakhalin, pointing that Iturup belongs to Russia

because it was mastered by Russian industrialists long before the Japanese.[28)]

The Russo-Japanese negotiations took place under extremely unfavorable conditions for Russia. Putjatin's mission, which lost the frigate《Diana》, was under constant threat of English and French military ships and was forced to concede. As a result, on February 7,1855, in Simoda was concluded the Russo-Japanese treaty on trade and borders according to clause 2 of which, Iturup and Kunashir were conceded to Japan. The boundary-line was drawn between the Urup and Iturup islands. Sakhalin remained undivided - jointly occupied by both countries. For the next 90 years, from 1855 up to 1945, Southern Kuriles were official possessions of Japan.[29)]

Later on, Japan continued to exert strong pressure on Russia, insisting on the division of Sakhalin. In these circumstances, Russia being under the threat of war with Turkey on the Balkans, was forced to sign the Russo-Japanese treaty on May, 7th, 1875 in Petersburg, the so-called Petersburg treatise about an exchange of Kuriles for Southern Sakhalin.

On February 8, 1904, Japan, without a declaration of war, attacked the Russian naval base at Port Arthur. During the Russo-Japanese war, the Kuriles were under the dominion of Japan and were used as a springboard for attacking neighbouring Russian lands. The armed landings to Kamchatka and Commander islands were undertaken from the North-Kuril island of Shumshu. The strategic value of the Kuril ridge, which shielded the Sea of Okhotsk from the Pacific Ocean, became clear. The Russo-Japanese war ended with the signing of the Portsmouth peace treaty. By the this treaty, Russia conceded

---

28) Yu. V. Klyuchnikov, A. VSabanin. The international policy of contemporary history in treatise, notes and in declarations. Part I. Moscow, 1925. P.168-169/ Ю.В.Ключн иков, А.В.Сабанин. Международная политика новейшего времени в договорах, нотах и декларацияз. Часть I М., 1925.С.168-169.

29) Ibid. P.311.

to Japan all of the Kuriles and Southern Sakhalin. This was considered a big defeat for Russian diplomacy.[30]

In the opinion of the Russian side, it was Japan that unilaterally broke relations by having attacked Russia without a declaration of war and thus broke the treatises signed with Russia in 1855 and 1875. This put under serious doubt her right to refer to those treaties in the future for, as it has been indicated by the Japanese to S. Yu. Witte (who had tried during the Portsmouth negotiations in 1905 to secure Southern Sakhalin by referring to the treaty of 1875), 《*international law says: the condition of war between the states terminates the effect of all treaties between them*》.[31]

It is also necessary to remind that the fact of the termination of the Treatise about trade and borders (1855), by which Russia conceded to Japan the Southern Kuriles, is fixed in the appendix N 10 to the Portsmouth peace treaty concluded between Russia and Japan in 1905 which said, that, as a result of war 《all trade treaties between Japan and Russia were cancelled》. Also, according to the conditions of the Portsmouth peace treaty, Russia conceded to Japan a southern part of Sakhalin (on 50-th parallel), that means annulment of the effects of the treaty of 1875, according to which, Russia conceded to Japan the central and northern parts of the Kuriles in exchange for Southern Sakhalin.

The Portsmouth treaty was partially violated by Japan (the occupation of and the attempt to tear away from the Russian Primorsk district the Baikal region and Northern Sakhalin in 1918-1925), as was the Convention on the

---

30) L. N. Kutakov. Portsmouth treaty. Moscow, 1961. P.73/ Л.Н.Кутаков Портсмусткий мирный договор. М., 1961.С.73.

31) N. A. Narochnitskaya. Kuriles–problems created by Russian lack of will. Gubernskie vedomosti. 17-24.07.2001/ Н.А.Нарочницкая.Курилские острова- проблема, создан ная российским безволием. Губернские ведомости.17-24.07.2001

main principles of mutual relations on January 20, 1925 (a clear example - aggression in lake Khanka area). All this, in Russia's opinion, placed Japan's moral and legal rights and grounds to refer to the treaties of 1875 and 1905, in particular, the solving of the Kuril problem, in serious doubt.

In the 1930's, on the Kuriles and Hokkaido, construction of large fortified areas began. Up to the beginning of the World War II, Kuriles represented a powerful naval base, aimed against the USSR and the USA. Here, in the deep-water Kasatka Bay, Japan, in 1941, staged its naval fleet and on November 26, 1941, sent it to attack Pearl-Harbor.[32)]

The present fate and status of the Southern Kuriles was determined by the results of World War II, in which Japan acted on the side of the aggressive fascist block together with Germany and Italy, while the USSR, an important participant of the Allied coalition, was a country that made a desicive contribution to the defeat of the Axis powers. Allied powers started discussions on the fate of territories captured by Japan in Cairo at a meeting of the heads of three countries (the USA, the Great Britain, China) in November, 1943. The necessity to deprive Japan of all her territories she had occupied by her was declared. In Teheran (November-December, 1943), the question again was raised in conversations between the heads of the USA and Great Britain. I.W. Stalin, in connection with the Cairo declaration, discussed the problem of the bays leading to Soviet Far East. Participants of the conference agreed that it should be transferred under the control of the Soviet Union. The return of Southern Sakhalin and the Kuriles followed.

The official decision of the Allied powers on this problem was made at the Crimean Conference which had took place in February, 1945 at Yalta. There the Agreement of the three powers concerning the Far East》, which

---

32) L. N. Kutakov. Foreign policy and Diplomacy of Japan. P.315/Л.Н.Кутаков.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и дипломатия Японии.С.315.

restored the right of Russia to the Kuriles and Southern Sakhalin. The Crimean agreement provided the impetus for the USSR to enter the war against Japan (2-3 months after the termination of the war in Europe) under the condition of the satisfaction of its territorial claims: 《restoration of the Russia's rights violated by treacherous attack of Japan in 1904, namely: return to the Soviet Union the southern part of Sakhalin and all islands belonging to it》. The third point of the agreement defined the 《transfer of the Kuriles to the USSR》.[33]

In the spring of 1945, the USSR denounced the treaty with Japan about neutrality. The Japanese government did not reacted to this, nor did it accept the requirement of the Potsdam declaration by the Allied powers about the requirement for unconditional capitulation - declared on July 26, 1945. On August, 9 the Soviet army, as part of the Allied advance on Japan, crossed the borders of Manchuria which was occupied by the Japanese. A short Russo-Japanese war of 1945 ensued. During this short war the Kvantun army was defeated. Southern Sakhalin and the Kuriles were released.

On September 2, 1945, on board the American battleship 《Missouri》 in Tokyo Bay, Japan signed the terms of unconditional surrender to the Allied forces. By this act, Japan accepted the transfer of Southern Sakhalin and Kuriles to the USSR. Japan also accepted all conditions of the Potsdam declaration which defined, that 《Japanese sovereignty is limited to the islands of Honshus, Hokkaido, Kyushu, Shikoku》. This statement may be considered an acknowledgement of a condition of the Crimean agreement on the returning

---

33) Teheran, Yalta, Potsdam. Moscow, 1971/ Collection of materials of US State Department on the conferences on Malta and Yalta. Vol.4. Moscow, 1955. P.428-429; Crimean conference of the leaders of allied Powers. Moscow, 1984. P.129/Тегеран, Ялта, Потсдам. М., 1971; Сборник материалов Госдепартамента США о конференциях на Мальте и в Ялте. Т.4. М., 1955. С.428-429; Крым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руководителей союзных держав. М., Изд.Политическая литератур a., 1984, С.129.

to the USSR the southern part of Sakhalin and the Kuriles. Restoration of historical justice and the recognition of Southern Sakhalin and Kuriles as an integral part of the USSR were fixed by its internal legislation. The decree of Presidium of the Supreme Council of the USSR from February, 2nd, 1946 all land with its mineral resources and waters on the territory of Southern Sakhalin and Kuriles being announced a state ownership by the USSR.

The important stage in summarizing of results of the World War II became the San-Francisco peace treaty 1951, which USSR and a number of other countries-participants of an antihitlerite coalition for some reasons had refused to sign. Therefore the given treaty represents the US separate peace treaty with Japan. At the same time it has fixed renunciation of Japan's rights on Kuriles and confirmed once again the rights of the USSR to returned lands.

The text of clause 2 of the treaty, in particular, said:《Japan relinquishes all rights, reasons and claims for Kuriles and for that part of Sakhalin island and islands adjoining it, the sovereignty over which Japan acquired under the Portsmouth treaty 1905》. Japan signed and ratified the San-Francisco peace treaty in1951 without any stipulation.

Refusal of the USSR to sign the San-Francisco treaty had a serious consequence. There is no peace treaty de jure between Russia and Japan and up until now, new borders are not fixed, thus, by bilateral agreements (though they are approved by the most important documents and international law). From the Japanese point of view, the status of the territories cannot be considered as final. This circumstance allows Japan, now for more than 50 years, to continue talking about a territorial dispute that supposedly exists between two countries. In 1955-1956, bilateral Soviet-Japanese negotiations began in London at the ambassadorial level on questions of post-war settlement. The Japanese delegation suggested preliminary conditions that included the requirement to return the Kuriles and Southern Sakhalin. By this

time, the USSR and its former ally USA were engulfed in the《cold war". The Soviet government agreed to include in the project of the peace treaty a clause about the transfer of the islands of the small Kuril ridge, Habomai and SHikotan, to Japan. By this transfer, the border dispute between the two states would finally be removed. However, this concession was not estimated by Japan. In the special memorandum from August 2, 1955, the Japanese delegation advanced a new requirement -for transfer of Kunashir and Iturup islands, since islands of the Small Kuril ridge "are not included into Kuriles", rights on those Japan renounced signing San-Francisco treaty. By the results of the final negotiations in October, 1956, in Moscow, a Joint declaration of the USSR and Japan was signed. It put an end to a state of war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restored《the world and good-neighbourhood friendship》and played the role of peace treaty in the next decades. The USSR agreed on the transfer to Japan of the islands of Habomai and SHikotan on the condition that the actual transfer of the islands to Japan will be made after the conclusion of the peace treaty.

The signing of the Soviet - Japanese declaration, on N.S.Khrushchev's precipitate plan, should have kept Japan from the concluding of a treaty of military cooperation with USA. However, such a treaty followed on January 19, 1960, and on it was established the permanent stationing of US military forces on Japanese territor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USSR directed on this occasion a note to the Japanese government in which it denounced the obligation voluntarily taken by the Soviet Union about transfer to Japan of islands of the Small Kuril ridge. In the memorandum on January 27, 1960, the Soviet government declared a change of circumstances and warned, that《only under condition of a withdrawal of all foreign troops from the territory of Japan and the signing of a peace treaty between the USSR and Japan, the Habomai and Shikotan islands will be transferred to Japan》.

In that and several subsequent memorandums it was declared that Japan is responsible as she has concluded the treaty with the USA and has completely changed the underlying circumstances. During the next decades the USSR followed a rigid course, sweeping aside all Japanese offers on the revision of borders. Its essence was reduced to denying the existence of territorial dispute between the two countries.[34)]

From the middle of the 1980's and before the visit of the president of the USSR to Japan (April, 1991) the hopes of Tokyo on《the resolution to the problem of "northern territories" in a civilized way》in view of the growth of the political, economic and military power of Japan, on the one hand, and the beginning of disintegration of the USSR, on the other, especially as the number of Soviet politicians speaking in favor of the compromise on this issue, have increased. The Japanese government counted on M. S. Gorbachev being especially interested in receiving of economic aid from Japan in exchange for a concession of Southern Kuriles. However, as a result of Gorbachev's long negotiations in Japan, the sides did not came to resolution. Japan also had great hopes on the visit to Japan by president B.N.Yeltsin. However, Yeltsin's visit in 1992 was postponed and took place only in October, 1993 (During the visit《the Tokyo declaration》, in which the Russian Federation was recognized as the legal successor to the USSR. (The Tokyo Declaration was regarded in Japan as a recognition of effectiveness of the joint declaration of 1956, including the promise to transfer to Japan the Habomai and SHikotan islands. The Russian side, under Japanese《pressure》, recognized in Tokyo declaration as a subject of subsequent negotiations, not only SHikotan and Habomai, but South Kuriles as a whole). The negotiations continued in 1997 in Krasnoyarsk

34) L. N. Kutakov. History of Soviet-Japanese diplomatic relations. Moscow, 1962. P.490/ Л.Н.Кутаков.История советско-японских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М., 1962.С.490.

during Yeltsin's informal meeting with Prime Minister R.Hasimoto about the conclusion of the peace treaty. During the meeting, both sides reached an agreement to exert all efforts for the conclusion, in 2000, of a peace treaty on the basis of the Tokyo declaration (remained non-realized). In April, 1998, an informal summit took place in Cavan, Japan. The Japanese party offered the suggestion to draw the border to the north from Iturup but to keep administrative control by Russia over the Southern Kuriles for some time. However, the Russian party did not accept the offer.

The Russian-Japanese contacts have proceeded and were conducted under the new president of Russia, V. V. Putin. However, the hopes of the Japanese side that he will consider territorial concessions are not justified. It is indicative that the so-called《problems of the peace treaty with Japan》was not mentioned in the Concept of foreign policy of the Russian Federation approved by the president on July 28, 2000. Neither is there any obligation for Russia to revise the border that exists between the two states. Putin's visit to Japan in November, 2005 passed successfully, but no moves in《boundary delimitation》occurred. The Russian side, as before, confirmed the desire to conclude a treaty of friendship and cooperation, separating an island problem and having postponed acceptance of the separate document till the moment when the parties will manage to find an acceptable solution. The important steps in the development of Russo-Japanese cooperation in the area of islands have been made. The parties had the Program of Russian-Japanese cooperation in the development of joint economic activities in these territories. The Russian side negotiated with Tokyo based on the idea that the mutually acceptable decision of the problem of boundary delimitation should not damage the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of Russia.

At the beginning of Dmitry Medvedev's Presidential rule Russia's international prestige has grown and the country economically strengthened.

The Russian leadership become aware of the importance of keeping the South Kuril Islands as part of Russia. In addition to the huge sea fisheriesin the islands and in the coastal zone there coverable reserves of non-ferrousmetals, mercury, natural gas and oil has been explored. There is the only known in the world them ineral deposit of rheniumon the IturupIsland, near the volcano Kudryavy. Also, the KurilIslands are of strategic importance interms of maintaining the defense, preservation the guarantee soft he sovereignty, independence and security of the country. Then, in Medvedev's proposal about finding the《original, unconventional approach》to the issue one could feel the desire of the Russian leadership to find some options, allowing the Japanese, as they say, keep the face,which,nevertheless,didnotimply the renunciation of《what belongs to Russia by right》.

However, in 2009, Japan has focused its attention on the territorial issue by adopting a law according to which the islands were called《traditional territories》of Japan.

In mid-2010, the Kremlin informally announced a new foreign policy doctrine of Russia, which can be roughly summarized as《lean to the West, neutralize the South and move to the East.》Under this doctrine, and against the background of the《reset》of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in October 2010 Russian President visited the South Kuril Islands, followed by a visit to the Southern Kurils defense minister with the plans to deploy additional arms in the islands.

After a visit of Kunashir by Russian President Dmitry Medvedev relations with Japan have become more strained. Since then, representatives of the Russian government travel regularly to the Kuril Islands, and the Japanese side is responding to this by《inspection"》of the islands from the air or from the sea. The last such inspection on board the Coast Guard cutter was made in January 14, 2012 by Japanese Foreign Minister Koichiro Gemba.

Moscow however intends to expand its presence in the Kuril Islands, despite the anger of Tokyo. Russia has recently identified the desire to raise the standard of living in the South Kuriles and creating a modern infrastructure.

July 3, 2012 Chairman of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Dmitry Medvedev visited the Kuril island of Kunashir, where he inspected the local fish processing plant, a hospital, visited the construction site of the temple, and talked with the residents. Also the head of the Government examined the marine station building under construction, which will house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a medical center. He was interested in the issues of transport accessibility of the island and attraction of staff to the Far East. The Russian Prime Minister has promised that he will not concede Kurile Islands the Japanese.

Today, the Russian political leadership can not afford to do any soft declarations, and give any hope to Japan - sovereignty over the Southern Kurils is not discussed.

Up to date, Russia's position on the issue of the Kuril Islands - continued tactics of recent years. It is this: not to deny roughly the promised by previous authorities, to speak only of loyalty to Declaration of 1956, that is only about Habomai and Shikotan, eliminating the problems of Kunashir and Iturup, which appeared under the pressure of Japan in the negotiations in the mid 90's and, finally, to accompany the words of the "loyalty" of the Declaration with such formulations, which are not strictly coincide with the views of Japan. Not paying attention to the attacks of Japan quietly made it clear that Russia will never give up on what rightfully belongs to her, but all the while offering joint projects. It has come to the realization that the territorial problem can not be solved now. The Japanese can not give up their claims for domestic political reasons, and Russian political elite, no party can today say that it is in favor of returning of the islands to Japan - it would be their political suicide.

Therefore, since this problem is insoluble now, this is not an excuse not to develop any other relationship. Disagreements over “Kuril issue” does not hinder the active development of economic and cultural t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Despite the lack of unified legal position between Moscow and Tokyo, during Lavrov’s visit to Japan in January 28, 2012 he has signed an agreement on visa facilitation, which allows Japanese citizens visa-free travel to the island to visit the graves of their relatives. This builds confidence and creates an atmosphere conducive to the resolution of other issues, including the topic of a peace treaty.

In the negotiation process between the two countries, Russia has proposed to focus not on the identity of Kuriles, but on the unification of technological, economic and investment potentials of Russia and Japan. Russian leaders would welcome joint projects on economic recovery and social development of southern Kuril Islands with Japan. Among the promising areas are fish production and its processing power, geothermal energy, agriculture, tourism. Russian law provides all the necessary capabilities.

Cooperation with Japan is developing in the border area. Several years ago, the command of the Pacific regional management was to cooperate with the Administration of security of the sea of Japan. A mechanism of informing the Japanese inspection ships of the facts of a violations of the border by the Japanese and Russian fishermen.

The expansion of humanitarian and cultural exchanges has great importance for the solution of geopolitical relations between Russia and Japan.

Recently, in the Japanese establishment has ripen the idea of creating a concrete plan of relationships《to promote the strategic partnership with Russi a》including the joint economic activities on the Kuril Islands. For example, the head of Japanese Foreign Minister Koichiro Gemba said that this will be possible, if the consultations of the parties will not cause harm to Japan’s legal

position. Considering the fact that until recently the Japanese were going to address the issue of joint investment projects only after the transition of the jurisdiction over the South Kuril Islands to Japan, the Japanese willingness to discuss such a project is certainly a positive step. Thus, a proposal for cooperation between Russia Japan and the Kuril Islands is a compromise.

The Japanese business today is much more interested in the development of relations with Russia than it did in the early 1990s. For example, they are very interested in supplies of Russian energy: now they satisfy their need for them by 22% (other estimates-up to 40%) due to their development in Russia and Sakhalin shelf. But Japan would increase such deliveries. In particular, Japan hopes to expand the supply of gas to the country after the construction of the pipeline Sakhalin - Khabarovsk - Vladivostok.

Russia and Japan have launched a joint project on oil and gas production in the Irkutsk region and in the near future the commercial production of the hydrocarbons is about to begin. For the Japanese, who are new to the field in the development in Siberia, it is the first major success. Japan needs in the growing trade more and businesses are unlikely to be happy to strained relations between the countries. The Japanese big business on the press conference of “Japan Association of Corporate Executives” has urged the government to defend the position of Japan in such a way as not to harm economic relations with Russia.

In addition, th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of Japan and Itochu Corp and Japan Petroleum Exploration in May 2009 signed an agreement with《Gazprom》, which set out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building a plant for the production of liquefied gas in Vladivostok. But there is a political interest as well. Japan is afraid of North Korea. And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even delivery means is a common concern. Russia and Japan have to solve a lot of common problems. They need

to think about how under the common control to normalize operation bioresources of the seas of this region. It is important to learn together to exploit them. They have a common enemy - the barbaric destruction of biological resources of the region. Both the Japanese and Russian citizens are involved. Russia and Japan must establish their combat poachers, equip Pacific patrol of the border with modern technology.

In this situation, it seems urgent to initiate a process of harmonization of the North-East Asia: China, Russia, Japan, the two Koreas and Mongolia. This project is based on an agreement on the UN on the Tumen program and aims to link the markets of the countries of the SCO, Japan and Korea Maritime rail ferry: China (Hunchun) - 70-mile transit through the territory of Russia (Trinity Bay, § Zarubino) - port Sakcho (RK) - the port of Niigata (Japan) - Korsakov (Sakhalin). Uniform width of track and cargo base in 10 million tons a year doing a project for all participants profitable.

In materials of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Russian Federation appear main elements of official Russian positions regarding peace treaty and Russo-Japanese border. They could be formulated as follows:

Modern Russian position in the "territorial" dispute:

1) The present Russo-Japanese border is historic fact, which have a certain international and legal basis. Southern Kuriles were returned to our country by results of World War II on the legal basis, according to agreements between allied powers (the Yalta agreement from February, 11th, 1946, the Potsdam declaration from July, 26th, 1945).

2) Japan, like the united Germany is not the successor of subjectivity of a pre-war state, it does not have the continuity in relation to them. It is a new subject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international law. Her succession to the former state limited by decisions of powers with quadrilateral

responsibility. This follows from the legal interpretation of the principle of full and unconditional capitulation inherent in the post-war settlement. Full and unconditional capitulation means the demise of the subject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 dismantling of the former state as a political institution, the loss of their sovereignty, and all powers that go to the victorious powers, which themselves determine the conditions of peace and post-war settlement. The new states were created under the allies with the new borders, new constitutions, new organs of state power. The position of Japan, that it can not be bound by the Yalta agreements, as it was not their participant, is be beneath criticism. Today's Japan is the post-war state, and a settlement can only come from postwar-internationalized legal basis, especially as soon as only this basis has legal effect.

3) The concession of Kuriles, besides the dangerous impact it might have on the strategic positions of Russia, would become an extreme precedent for the territorial status quo of the world, which territorial claims of Germany to Russia (Kaliningrad), to Poland (Silesia), to Czechia (Sudetes), etc. can follow. Satisfaction of the Japanese claims for《returning》the islands would undermine the principle of firmness of the results of World War II.

4) The only working and legally binding international documents (which should be a basis of the present approach to a problem of the Kuril ridge) are decisions of the Allied Powers in Yalta, Potsdam and under the San-Francisco peace treaty with Japan, signed in 1951 by 51 states led by the United States. According to the decisions of the Yalta conference, all the Kuriles and Sakhalin islands "forever" come back to the Soviet Union. The Potsdam Declaration of the USA, signed by Great Britain and China (which the USSR later joined), confirmed the same .

5) The USSR did not (and has not) signed the San-Francisco peace treaty with Japan. As a result, this treaty does not contain the clause that considered

the territories are transferring to the USSR. But it does not change the unbiased fact, that, in clause 2 of this treaty, Japan《*refuses all rights, legal reasons and claims for Kuril islands and that part of Sakhalin island and islands adjoining to it, the sovereignty over which Japan acquired under the Portsmouth treaty from September, 5-th, 1905*》.

6) A revision of statements in the San-Francisco treaty is not possible, as it will undermine the status quo developed after the war in Asia and the territorial stability of Asia (the status of External Mongolia, that is borders of China too; independence of Korea, the status of many islands and another).

7) Kuriles should be considered as an indivisible geographical concept as the Kuril ridge has all attributes of such a classification.

8) The Soviet-Japanese declaration of October 19th, 1956 by which the state of war is brought to an end, and fixed the readiness of the USSR to transfer to Japan the Habomai and Sikotan islands - but only after the conclusion of the peace treaty. Clause 9 of the Declaration is a protocol of intentions, stipulated by certain obligations in other areas.

9)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approach to the Russian-Japanese relations, to stop to tie up development of relations to the conclusion of the peace treaty which is not absolutely necessary. International law knows many cases when an absence of a peace treaty between two countries (which were earlier at war) does not deter their successful cooperation.

10) Russo-Japanese relations should be based on the important principle of the firmness of the results of World War II. The principle of the inviolability of the results of World War II - the foundation of the postwar international relations remains fundamental.

In conclusion I would like to say that in her aspiration for preservation of the status quo in Asia Russia has allies, among them - China, South Korea, who are also not interested in the revision of results of the World War II.

Tokto islands, which also claimed by Japan, who calls them Takeshima, and became the reason of sharpening of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could be called《Korean Southern Kuril islands》. The Japanese claims on Tokto, as well as on Kuril islands, Penhuledao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Paracel islands (Vietnam) are in direct conflict with international obligations of Japan since they mean indirect denouncement of 2nd clause of the San-Francisco peace treaty. Except for that Japan by her claims for territories of neighbouring states, established after the World War II, ignores its legal and political results. All countries are neighbours and regional partners and interested in strengthening of friendship relations. For all countries territorial questions are very sensitive and they aspire to settle all disputable issues with neighbouring states proceeding from the idea that acceptable solving of a problem of boundary demarcation should not cause damage to the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of the country.

이 논문은 2012년 10월 25일에 투고하여
2012년 12월 5일까지 심사하여
2012년 12월 15일 게재 · 결정됨

일본의 댜오위다오 '국유화'에 대한 중국의 인식 및 대응

尹虎*

〈목 차〉

1. 머리말
2. 일본의 댜오위다오 '국유화'와 중국의 비난
3. 댜오위다오 '국유화' 배경에 대한 중국의 인식
4. 댜오위다오 '국유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
5. 댜오위다오 '국유화'에 대한 중국의 대응
6. 맺음말

〈국문초록〉

일본 정부가 2012년9 월 10일 댜오위다오 '국유화'를 선포하자 중국은 '영토 문제 보류'라는 암묵적 합의를 어긴 도발이라고 인식하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댜오위다오 국유화는 중일관계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고, 중일간의 영토 갈등은 동북아시아에 일촉즉발의 먹구름을 드리우게 하였다. 앞으로의 중일관계의 발전방향을 전망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려면, 우선 양국의 영토정책과 정부입장, 대응수단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본의 댜오위다오 국유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 및 대응수단을 분석하였다. 중국의 댜오위다오 정책의 방향과 이념을 파악하여 앞으로 중국의 영토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주제어: 댜오위다오, 국유화, 동북아국제질서, 민족주의, 영토문제, 역사적 합의

* 중국 청화대학교 연구원

1. 머리말

2012년 9월 29일 중국과 일본의 수교 40주년이 되는 날이다. 40년 전 중일 양국 지도자들은 “의견 충돌이 있는 문제는 보류하고 이후에 해결하자”는 이해와 인식을 함께 한 뒤 중일국교를 정상화했다. 중일수교 40주년은 중일관계의 새로운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한해였다. 그러나 현재 중일관계는 일본의 댜오위다오 국유화로 인해 무력충돌의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

중일관계를 악화시킨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 정부가 과거 중일 양국 지도자들이 합의한 양해와 공통인식을 무시하고 일부 우익세력에 휘둘려 ‘국유화 코미디’를 벌인데 있다. 지금까지 중국은 일본의 댜오위다오 실효지배라는 현상을 묵인하고 유지해 주었으나, 이번에는 전례 없는 강경한 자세로 일본의 댜오위다오 국유화에 대응하였다. 일본 정부도 영유권 문제에서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앞으로도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중국은 2020년까지 이른바 ‘소강사회(기본적 생활이 보장되고 다소 여유 있는 사회) 건설’이라는 사회 · 경제 목표를 설정하고 경제 건설을 국책의 중심에 놓고 있다. 이를 위해선 외부 환경이 안정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만일 일본과의 영토분쟁을 완전히 힘의 원리로만 해결한다면 주변국가들은 중국의 부상을 우려할 것이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중국 ‘포위전략’은 더욱 강화될 게 뻔하다. 그렇다고 예전처럼 일본과 적절한 타협을 하기도 어렵다. 댜오위다오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국민들의 불만을 사게 되어 정부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순을 안고 중국 정부는 일본의 댜오위다오 국유화에 대응하게 된다.

중일간의 영토분쟁이 중 · 일 양국 국민의 민족주의 감정을 유발시켜 동북아의 취약한 안보 · 평화 구조를 불안정하게 하면, 언제 심각한 사태로 번질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중일관계의 금후 발전방향을 파악

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국의 영토정책과 정부입장, 대응수단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본의 댜오위다오 국유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 및 대응수단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중국의 댜오위다오 정책의 방향과 및 이념을 파악하여 금후 중국의 영토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일본의 댜오위다오 '국유화'와 중국의 비난

1) 일본의 댜오위다오 '국유화'

일본 정부는 2012년 9월 10일 오후 노다 요시히코 총리와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 아즈미 준 재무상이 참석한 각료회의에서 댜오위다오제도의 5개 무인도 중 3개 섬[1]을 개인 소유자로부터 20억 5천만엔(약300억원)에 매입하는 국유화를 공식 결정하였다. 또 9월 11일, 노다 내각은 댜오위다오 매입을 위한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였고, 섬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댜오위다오 '국유화'는 발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12년 4월에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 지사가 댜오위다오 매입 방침을 밝히자 일본 정부는 7월에 댜오위다오 국유화 방침을 언론에 흘린 뒤 바로 섬 소유자와 교섭에 나섰고, 노다 총리의 주도 하에 신속히 실행되었다. 노다 총리는 댜오위다오를 "평온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유화"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지방자치단체인 도쿄도가 댜오위다오를 사들여 공무원의 상륙과 현장조사, 대피항 설치 등을 강행할 경우 중국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노다 총리는 댜오위다오를 '국유화'하는 대신 당분

1) 釣魚島, 南小島, 北小島

간 상륙과 조사, 개발 등의 실효지배를 강화하지 않겠다고 밝혀 중국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얼렁뚱땅 댜오위다오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읽은 중국은 "영토 문제 보류"라는 암묵적인 합의를 어긴 도발이라고 인식하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댜오위다오 국유화는 중일관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중일간의 영토 갈등은 동북아시아에 일촉즉발의 위기를 가져왔다.

2) 댜오위다오 "국유화"에 대한 중국의 비난

일본의 댜오위다오 국유화에 대해 중국 정부는 강력한 항의를 표하는 동시에 노다 정부 정책의 무책임과 편협성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하였다. 댜오위다오 국유화 정책의 '실책'에 대한 중국정부의 인식은 이하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역사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에 따라 중국은 일본이 침략했던 타이완과 펑후(澎湖)열도 및 댜오위다오를 되돌려 받았다. 일본이 댜오위다오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파시스트 전쟁에서 승리한 뒤 얻은 전과를 부정하는 것이며 역사를 반성하지 않는 것이다.

(2) 중국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중국은 평화발전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누구를 설득한다든지, 누구를 회유한다든지,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중국은 역사와 현실에서 출발해 댜오위다오에 대해 "주권은 중국에 있지만, 영토 분쟁을 보류하고, 공동개발한다"는 원칙에 따라 중국인은 자제하고 있다. 이런 자제를 중국의 의지력이 약하다고 보는 것은 엄청난 오판이다.

(3) 일본 스스로를 잘못보고 있다. 일본은 1990년 이후 잃어버린 20년을 겪고 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지난해 발생한 대지진 및 쓰나미, 원자력발전소 붕괴에 따른 방사능 유출이라는 타격을 받고 있다.

일본 경제가 회복하기 위해선 중국시장 의존도가 매우 높다. 일본 정부당국자 및 노다 총리는 국가이익과 지역안정을 중시해 분쟁을 야기할 일을 피했어야 했다. 일본은 국제환경과 경제관계에 대한 전면적인 인식이 부족하였고 영토문제를 기타 사안들과 분리시켜 처리하려 하였으나 궁극적으로는 주변국들과의 불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4) 미국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미국은 댜오위다오 문제에 있어서 어느 쪽 편도 들지 않는 불명확한 태도를 보일 것이다. 일단 유사시에 미국은 과연 일본의 희망대로 적극적으로 일본 편을 들 것인가를 일본은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3) 댜오위다오 '국유화'에 대한 중국 국민의 반발

댜오위다오 '국유화' 정책은 중국 국민의 감정을 크게 해쳤다. 중국 국민은 일본의 댜오위다오 정책을 도발이자 침범으로 인식하고 자국 정부에 강경한 대응을 요구하는 동시에 일본상품의 불매운동과 반일시위를 전개했다.

『환구시보(环球时报)』가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약66%가 "(국유화 이후) 전 보다 더욱 일본을 싫어하게 되었다" 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2] 또 약 83%는 "일본 정부가 과거 침략 전쟁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답하였고, 약 90%는 "중국 정부는 한층 더 많은 대항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였다. 그 외 약 30%는 "댜오위다오 문제는 무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일수교 40주년 기념일(29일)을 맞아 『환구시보』가 9월 28일에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중일 관계가 향후 어떤 관계로 발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약70%가 "적대 국가", "경쟁상대(14.3%)", "일반적인 거래 상대

2) 14일부터 16일까지 북경 상하이 광저우등 일곱 도시의 18세 이상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총 1509건의 유효 답변을 얻었다.

(10.4%)"로 답했으며, "긴밀한 전략적 동반자(2.9%)"라고 답한 사람은 소수였다. 댜오위다오 국유화 정책은 중국의 민족주의를 자극하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과거사 문제를 깨끗이 정리하지 못하고 영토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일본 정치권의 역사의식 부재와 얄팍한 태도가 사태를 더욱 악화 시켰고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침체가 맞물리면서 과거 일본에 당한 치욕을 씻으려는 분위기가 일부 중국 국민 사이에 확산되어 중일 관계의 금후 발전에 우려를 더하고 있다.

3. 댜오위다오 '국유화' 배경에 대한 중국의 인식

7월 7일 노다 총리의 댜오위다오 국유화 방침의 확정으로 부터 9월 11일 댜오위다오 국유화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약 2개월이 걸렸다. 이 동안 중국은 일본의 댜오위다오 국유화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고, 대응책의 실시를 위하여 이론 기초를 마련하였다. 댜오위다오 국유화 배경에 대한 분석은 중국 정부와 학계, 언론계가 가장 중시하였던 내용이다. 일본이 중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댜오위다오 국유화를 추진한 데에는 아래와 같은 5가지 배경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1) 미국의 동북아 전략

댜오위다오 분쟁의 배경에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아시아 회귀 전략이 존재한다.[3] 구소련 붕괴이후 미국 독주시대에서 중국의 급성장으로 미국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중국이 경제, 군사적으로 강해지자 미국은 일본, 동남아 국가들을 내세워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고 있다. 일본은 이런 기회를 이용해 정치, 군사대국화를 통한 독자적인 주권 확보를

3) 周永生,「日本悍然」购买「钓鱼岛的六大原因」,『中国经济周刊』, 2012(9).

꾀하고 있는 것이다. 댜오위다오 국유화는 일본이 미국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2) 중국의 경제, 영토정책에 관한 잘못된 이해

개혁개방 이래 중국은 평화발전의 중요성을 강조 하여왔다. 중국은 경제발전을 위하여 평화로운 환경이 필요했고, 평화로운 환경을 위해서는 주변 국가 간의 물리적 충돌을 피해야만 했다. 경제건설을 국가전략의 중심에 놓고 있는 중국은 남중국해 도서를 강점하고 유전을 개발하고 있는 필리핀, 베트남 등 나라들에 대하여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였다. "양보"와 "인내"라는 중국정부의 영토정책이 일본의 댜오위다오 국유화에 대한 자신감을 부추겨 댜오위다오를 국유화하여도 중국은 무력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였다. 아베 신조 전 수상은 9월6일에 있은 한 TV방송에서 중국은 경제발전을 우선순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댜오위다오 국유화를 추진하여도 "무력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다고 확신을 갖고 말하였다. 중국의 경제, 영토정책이 일본에게 잘못된 메시시를 전달하였고 일본이 댜오위다오 국유화를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였던 것이다.

3) 일본 정치판의 우경화와 민족주의 대두

장기간의 경제침체와 재정 악화, 후쿠시마 대지진은 일본의 국가발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한편 중국경제의 빠른 발전과 2010년 GDP의 일본 초과는 일본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더해주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일본 국내에는 민족주의 사조가 대두하였고 일본 정치권의 우경화도 점점 선명해지고 있다.

또한 "댜오위다오문제는 금후 미국과 중국의 대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것이다"라는 이시하라 도쿄도 지사의 발언에서 댜오위다오

국유화는 일본 우익세력의 장기적인 전략으로서 치밀하게 계획된 작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 그릇된 역사인식과 대국 전략의 추진

일본은 태평양전쟁을 일으켜 한국과 중국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줬다. 그럼에도 일본은 군 위안부 동원이나 난징 대학살 같은 과거사에 대해 반성을 하기는 커녕 전쟁범죄를 부인하거나 영토 야욕을 드러내 중국과 한국의 국민을 분노케 했었다. 일본이 패전국에서 일반국가로 변신하기 위해서는 전후 일본에 대한 처리를 부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대국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패전국 일본은 불법 점유 또는 강탈한 영토의 반환을 규정한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을 직접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댜오위다오 국유화를 통해 전후처리를 부정하려고 하였다.

5) 일본 국내 정치상의 수요

노다내각은 집권이후 내정, 외교 등의 영역에서 효율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국내 지지율이 급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11월 총선을 앞두고 노다 내각은 민감한 영토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전략을 취하였다. 노다 내각의 댜오위다오 국유화등 영토문제에 대한 강경한 태도는 일본 국내의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 하였고, 따라서 지지율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였다.

이시하라 도쿄도 지사, 하시모토 토오루 오사카부 지사, 가와무라 카타유키 나고야시 시장 등 지방세력의 강화는 노다 내각의 정책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정권기반을 위협하는 요소로 부각되었다. 지방정치세력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정치적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에서 노다 내각은 댜오위다오 국유화를 실시한 한 것이다.

4. 댜오위다오 국유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

댜오위다오 국유화 조치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중국정부는 다음과 같은 8개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1) 역사적으로, 법리적으로 중국은 댜오위다오에 대한 주권을 갖고 있다

9월 11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는 성명을 발표하여 "중국 영토인 댜오위다오에 대한 어떤 조치도 불법이고 무효이며 일본 정부의 댜오위다오 국유화는 철두철미한 강도행위이다"고 선언 하였다.[4] 리커창 중국 상무부총리는 파푸아뉴기니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 도서는 예로부터 중국의 고유 영토로 쟁론할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갖고 있다"[5]고 하면서 일본의 댜오위다오 국유화 조치에 대해 "중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9일 9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에이펙(APEC) 정상회의에서 노다 총리에게 "일본이 취할 어떤 방식의 섬 매입도 위법이고 무효이며,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 일본은 불장난을 중단하라

인민해방군 기관지인『해방군보』는 "일본은 댜오위다오 문제를 포함해 '침략'행위로 말미암아 조성되는 결과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6] 시진핑 국가 부주석은 "일본은 반드시 낭떠러지 직전에서 말고삐를 잡는 쉬앤야러마(懸岸勒馬)를[7] 시행해 중국의 영토 주

4)『辽宁日报』2012.9.12. 引用新华社 2012年9月11日电.
5)『中国青年报』2012.9.12.
6)『解放军报』2012.9.11.
7) 중국 외교에서 이 단어는 군사행동 직전의 최후통첩과 같은 의미다. 공산당 기

권을 해치는 착오적 언행을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경고하였다. 양제츠 외교부 부장은 "지금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일본에 있다"고 하면서 "일본은 현실을 직시하고 환상에서 깨어나 잘못을 고쳐야 하며 그래야만 양국 관계가 다시 건강하고 안정적인 궤도로 들어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3) 오늘의 중국은 더는 가난하고 약하고 늙은 중국이 아니다.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어떤 국가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8)]

『해방군보』는 아울러 "현재 중국은 과거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당하던 시절의 중국이 아니다. 주권문제에서 중국은 반발자국도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인민일보』는 "중국은 댜오위다오를 수호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으며 앞으로도 댜오위다오 주권을 수호하는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것"[9)]이라고 밝혔다. 원자바오 총리도 9월 11일의 성명에서 댜오위다오는 중국 영토의 일부이고 중국은 통치권과 영토 보전에서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10)]

4) 전후 질서에 대한 도전이다.

시진핑 부주석은 "일본의 이 같은(댜오위다오 국유화) 행동은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의 국제법적 효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제2차세계대전 이후 수립된 전후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난하면서, "국제사회는 반파시즘 전쟁 승리의 성과를 부정하려는 이런 일본의 기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 부총리도 "중국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일

관지 인민일보는1950년 한국전 참전, 1962년 인도와 국경전쟁을 벌이기 직전 사설에서 미국과 인도를 향해 이 단어를 사용한 바 있다.

8) 『解放军报』 2012.9.12.

9) 『人民日报』 2012.9.18.

10) 『京华时报』 2012.9.11.

본 제국주의로부터 침략당한 피해국"이라면서 일본의 댜오위다오에 대한 일련의 조치는 전범국을 단죄한 국제협약을 부정하는 것이자 국제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화일보』는 포츠담선언에 규정된 불법 강탈한 영토의 반환 규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견해를 실었다.[11]

5) 군국주의 부활이다.

『해방군보』는 일본의 댜오위다오 국유화 조치를 "일본군국주의의 부활"이라고 규정하면서 "일본은 아시아 국가들이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역사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신화통신은 9월 25일 "일본이 댜오위다오 국유화를 계기로 군국주의 망령을 되살리려 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근래 들어 이런저런 구실로 군비를 확충하면서 빈번하게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는 일본을 아시아 각국과 국제사회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2]

6) 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

9월 18일, 『인민일보』는 '종성(鐘聲)' 칼럼에서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을 반성하고 그릇된 역사관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일본의 댜오위다오 국유화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13]시진핑 부주석도 9월 19일 일본의 댜오위다오 국유화 조치와 관련하여, "일본 국내 일부 정치세력이 이웃 나라와 아·태 지역 국가에 남긴 전쟁의 상처에 대해 반성은 커녕, 한술 더 떠 댜오위다오 국유화라는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본은 아시아 국가들이 과거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를 분명하게 기억하

11) 『星岛环球报』 2012.9.27.
12) 『京华时报』 2012.9.25. 引用新华社 2012年9月25日电.
13) 『人民日报』 2012.9.18.

고 있다는 점을 잘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14]

7) 미국 언행에 신중하기 바란다

9월19일, 시진핑 부주석은 파네타 장관에게 "미국이 지역평화와 안정이라는 원칙에 따라 말을 삼가고 행동을 조심해(謹言愼行), 댜오위다오 주권 분쟁에 개입하지 말고, 모순을 격화시키거나 상황을 복잡하게 하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일본을 지지하고 있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였다.[15] 군 최고 지휘부인 중앙군사위원회의 쉬차이허우 부주석은 9월 18일 파네타 미국 국방 장관과의 회담에서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 범위에 댜오위다오가 포함되는 것에 적극 반대한다"며 "미국의 불개입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구했다.[16]

8) 중일간의 영토 분쟁은 담판으로 해결할 것이다

량광례 국방부장은 9월 18일 "영토주권을 지키기 위해 한발 더 나가는 행동을 할 권리가 있지만 유보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희망한다"고 밝혔다[17] 시진핑 부주석은 9월 21일 난닝(南寧)에서 열린 중국 · 아세안 엑스포(CAEXPO) 비즈니스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이웃 나라와의 영토 · 영해 · 해양 권익 분쟁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말하였고 홍레이 외교부 대변인도 9월 21일 기자회견에서 댜오위다오 문제는 담판을 통하여 풀어나갈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18] 중국의 강경한 대일 정책은 일본과의 외교 담판에서 우세를

14) 『北京晨报』 2012.9.20.
15) 『北京晨报』 2012.9.20.
16) 『北方日报』 2012.9.19.
17) 『北方周末』 2012.9.18.

확보하려는 중국정부의 전략임을 말해주고 있다.

국유화 조치에 대한 중국의 입장 표명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 첫째, 영토 문제와 역사문제를 연결시켰다는 점이다. 중국정부는 댜오위다오 문제가 단순한 영토문제가 아니라 일본 군국주의가 중국 대륙을 침략했던 시대의 산물이라는 것을 내세워 정치적으로 일본을 압박했다. '전후처리' 등 역사문제와 댜오위다오 영토문제의 연관을 강조한 것은 패전국인 일본뿐만 아니라 전후처리를 주도해온 미국에게도 역사적 책임을 묻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정부입장 표명에 있어 차기 중국 지도자의 활약이 돋보였다는 점이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9월 9일 러시아에서 열린 에이펙(APEC) 정상회의에서 노다 총리에게 댜오위다오를 국유화하지 말라는 최후통첩을 했으나 이튿날 일본이 국유화 결과를 발표한 것을 계기로 시진핑 리커창 등 중국 차기의 지도자들이 앞 다퉈 중요한 외교무대에서 정부 입장을 표명하였다.

5. 댜오위다오 '국유화'에 대한 중국의 대응

영토 및 주권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식의 타협도 없다는 게 중국 외교정책의 원칙이다. 과거 중국은 지금과 같은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일본에 대해 정치적 "구두 협박"에 그치고, 경제적으로는 서로의 실리를 강화하는 정책을 취했다. 2010년 "댜오위다오 선박충돌 사건"을 계기로 한 대일 경제조치도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일본의 댜오위다오 국유화 결정으로 촉발된 이번 갈등은 예전과는 사뭇 다르게 전개되었다. 중국은 과거의 현상유지 전략 대신 정치, 외교, 경제, 군사, 문화 등 분야의 국력을 동원해 전방위적으로 일본을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

18) 『江门日报』 2012.9.22.

1) 내정면에서의 대응

중국정부는 일본이 댜오위다오 국유화를 결정한 9월 10일에 즉각 영해기선 설정을 선포하고[19] 댜오위다오를 매입한 9월 11일에는 댜오위다오의 12해리 수역에 해양감시선을 파견하였다. 또 어선 1000여척을 댜오위다오 해역에 진입시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댜오위다오가 중국의 관할임을 보여주었다

이어서 중국정부는 댜오위다오 및 주변도서의 산, 계곡 등에 중국 이름을 정하고, 댜오위다오 해역에 과한 지리좌표 지도를 공표하고, 댜오위다오 해역의 일기예보를 방송하는 등 댜오위다오가 중국 영토라는 점을 주장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였다.

한편 중국 정부는 댜오위다오의 국유화에 반발하여 발생한 국민들의 반일시위를 용인하는 태도를 보였다.[20] 정부의 용인 하에 반일시위는 일본 제국주의의 중국 침략이 본격화한 만주사변 발발일인 9월 18일 최고조에 달하여 전국 120여개 도시로 확산되었다.

댜오위다오 국유화는 중국 각 지역 반일활동의 연대를 촉진하였다. 중국정부는 관영 언론매체를 통하여 중국 · 홍콩 · 대만 합동으로 구성된 민간 활동가들이 실시한 댜오위다오 상륙 활동을[21] 높이 평가하고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 그리고 대만과 함께 댜오위다오 주권 선포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었다. 현재 댜오위다오 문제에 있어 대만과 협력할 가능성도 중국정부는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19) 중국은 댜오위다오를 자국 영토로 선언하면서도 96년 영해기선 발표 때에는 이를 제외한 바 있다.

20) 외교부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9월17일 브리핑에서 "국민에게 이성적, 합법적으로 요구를 전달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해 평화적 시위의 경우 용인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1) 郁志荣(中国海洋发展研究中心研究员), 解说「两岸三地谋划同时登岛 日方强势拦截」, 湖北卫视『长江新闻号』, 2012年8月13日.

2) 외교면에서의 대응

중국정부는 일본에 강경 대응하고, 미국이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도록 하며, 러시아와 한국의 지지를 얻어 중국의 주장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외교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대일외교에서 중국정부는 국교 정상화 40주년(9월 29일)을 앞두고 27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릴 예정이던 기념식을 연기하였고, 일본에서 열린 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 당초 예정됐던 재정부장과 중앙은행장의 참석을 취소하는 등 양국 간 교류를 제한하는 조취를 취했다.[22] 또 유엔 총회에서 일본의 댜오위다오 국유화를 비난하는 등 여론 공세를 취했다. 인민일보는 역사와 국제법을 무시하는 일본 같은 국가는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중국정부는 미국에 대해서도 중국의 군사력 강화를 우려하지 말고, 영토 분쟁에서 일본 편을 들지 말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차이잉팅 인민해방군 제1부총참모장은 8월 20일 미국을 방문하여 댜오위다오에 미일 상호방위조약을 적용시키지 말 것을 희망하였고,[23] 중국을 방문한 리언파네타 미 국방장관 일행의 일정을 1박 2일에서 3박 4일로 연장토록 하고 북해함대사령부를 처음으로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 교섭을 전개했다.

주변국 외교에서 중국정부는 러시아와 한국의 지지를 확보하는 전략을 보였다.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물론이고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의 북방영토 방문에 대해 "중국은 영토문제로 한국과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하고, 공동으로 일본에 대처"할 것을[24] 중국정부에 촉구했다. 이러한 관점은 일본의 댜오위다오 국유화 이후 더욱 주

22) 『环球时报』 2012.10.10.
23) 『东方早报』 2012.8.21.
24) 『环球时报』 2012.10.17

목을 받게 되었으며, 양제츠 외교부장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유엔 본부에서 회담을 가진 뒤 '영토분쟁은 역사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등 일본을 상대로 한중간의 공동보조 가능성을 비쳤다.[25]

중국은 국제홍보에도 힘썼다. 중국은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WP)와 뉴욕 타임스(NYT)에 "댜오위다오는 중국 땅"이라는 대형 광고를 실었다.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는 28일자 WP 국제면(10~11면) 광고에서 댜오위다오의 컬러 사진과 함께 기사 형식으로 이 섬이 중국 영토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3) 군사면에서의 대응

댜오위다오 국유화이후 중국은 대일 군사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중국은 댜오위다오 인근에 한 때 군함 2척을 파견 하였고 5개 군구(軍區)에 3급 전투대비 태세를 발령하였다. 중국정부는 난징(南京), 광저우(廣州), 청두(成都), 지난(濟南) 등 4대 군구의 육 · 해 · 공군을 동원하여 3군 합동작전으로 도서 탈환 훈련도 벌였다. 댜오위다오 방면을 맡고 있는 썬양군구의 동해함대도 동중국해에서 전투함정, 잠수함, 전투기, 헬리콥터, 지상지원 부대 등을 대거 동원한 모의 전투 훈련을 벌였다.[26] 중국은 댜오위다오 해역에서 무력 시위를 통해 일본에 대한 힘의 우위를 확보하고 동중국해의 해양 지배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추구하였던 것이다.

한편 군지도자들의 발언도 언론에 보도되어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중앙군사위원회의 쉬차이허우 부주석은 최근 산시(山西)성의 한 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가 주권과 영토 수호를 위해 조금이라도 긴장을 늦추는 일 없이 '군사투쟁'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 하였고[27], 조영부 중장을 비롯한10명의 장군들도 댜오위다오 문제에 있어 군사투쟁에 관한

25) 『环球时报』 2012.10.10.
26) 『香港明报』 2012.9.11.
27) 新华社 2012年9月13日电.

준비를 요구하였다.[28] 또한 인줘(尹卓) 해군 소장은 "일본 자위대가 댜오위다오에 진입하면 대응조치를 해야 한다"며 군사력 사용 가능성도 시사했다.[29] 외교 정치문제에 관한 군지도자들의 발언권 강화 문제, 영토 문제에서 군 지도자들의 역할과 작용문제에 관하여는 금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4) 경제면에서의 대응

9월 17일, 『인민일보』는 "중국이 경제 방아쇠를 당기면 일본을 20년 후퇴시킬 수 있다"는 강경한 어조의 사설을 실었다. 신문은 "문제가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면 일본을 다방면에서 정조준 할 수 있는 강력한 경제전을 준비해야 한다"며, "중국이 경제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방아쇠를 언제 당길 것인가는 일본에 달려 있는데, 일본은 과연 그럴 준비가 돼 있느냐"라고 경고했다.

댜오위다오 국유화 결과가 보도되자 민간에서는 광범위 한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이 일어났고 중국중철(中國中鐵) 등 국영기업도 일본산 제품의 구매를 중단하는 등의 조취를 취하면서 불매운동에 참여하였다. 국민들의 분노는 불매운동만으로 가라앉지 않았으며 잇달아 대규모 반일시위도 발생하였다, 중국에 진출한 도요타와 혼다, 닛산자동차, 파나소닉 전자그룹 등 대표적 일본계 기업들은 적대적인 반일사위를 우려해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하거나 영업점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중국정부도 일본에 경제적 타격을 가하는 전략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국가관광총국은 전국 여행사들에게 국경절 연휴 때 일본 관광상품을 취소하라고 지시하였고, 세관총국은 복수의 일본계 기업에 대해 전자제품, 화학제품, 원재료 등의 수입과 수출에 관련한 검사 비율을 강화하여 통관

28) 『环球时报』 2012.9.13.
29) 『温州日报』 2012.8.9.

이 지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중국 외교부는 댜오위다오 문제의 악화가 일본이 가장 원하고 있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교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기할 것은 일본에 대한 경제적 타격은 중국 경제에도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실시되었다는 점이다. 『인민일보』는 "경제적 무기는 양날을 가진 검과 같은 것"이라고 묘사하면서, "적군을 1000명 죽이고 아군 피해는 800명으로 줄이는(살적일천(殺敵一千) 자손팔백(自損八百)" 의 각오로 임할 것이라 했다.[30] 일본의 댜오위다오 국유화는 정상적인 중일 경제무역 발전을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국의 손해를 초래하였다. 쿄도통신은 댜오위다오 국유화로 인하여 "일본 기업의 피해 금액은 총 100억 엔(약 1430억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지적하였다.

5) 문화면에서의 대응

신화통신사는 9월 24일 댜오위다오가 옛날부터 중국의 고유한 영토임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신간 『댜오위다오는 중국 땅(원제: 釣魚島是中國的)』을 출간하였고,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댜오위다오, 중국의 고유 영토』라는 제목의 백서를 반포하였다.

일본에 대한 대항 조치로 중국정부는 21일에 일본 관련 서적의 출판금지 조치를 내렸고, 상하이에서 열린 일본 화학업체 도레이의 협찬으로 열린 레이컵 국제마라톤대회가 중단되는 등 중일간의 문화교류를 제한하였다. 중국 중앙(CC)TV는 주요 채널에서 일본 상품 광고를 중단하였다.

한편 일본의 댜오위다오 국유화는 학술분야에서 국제법적 고찰과 영유권 분쟁에 대한 대비책의 추진을 가속화하였다. 특히 '류큐 회복' 또는 '류큐 독립'을 주장하는 이른바 '류큐공정'에 관련한 논문이나 저술, 발표 등 주로 학계 일각에서 제기되던 류큐에 대한 언급이 댜오위다오 국유화 이

30) 『人民日报』 2012.10.7.

후에는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지난 7월 12~25일, 3회 게재) 등 중앙 관방 매체에까지 공개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은 지금까지는 해묵은 문헌에서 찾아낸 근거에 기반해 주장을 펼쳐왔지만, 이번에는 달라진 국제 위상에 걸맞게 류큐를 대상으로 강력한 주장을 펼치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은 일본의 도발적인 움직임만 없다면 일본의 댜오위다오 실효지배라는 현상을 묵인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면 대항으로 현상 타파를 시도하고 나섰다. 중국은 정치, 외교, 경제, 군사, 문화 등의 국력을 동원하여 댜오위다오 문제를 장기전으로 가져가 일본의 실효지배를 무력화하고 국제사회에 중국의 입장을 강조하는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지금 중국이 구사하고 있는 해법은 지혜보다는 힘의 논리에 치우쳐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국'의 모습으로선 아쉬운 감이 있다.

실제로 일본은 댜오위다오 국유화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이 정도로 강경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9월 19일, 아사히TV에 출연한 노다 총리는 댜오위다오 국유화에 대한 중국의 반발이 예상을 넘어서고 있다고 밝히면서, 중국에 특사를 파견하려는 의도를 표시하였다.[31] 뒤틀린 양국 관계를 '관리'하겠다는 움직임은 중국 측에서도 나왔다. 중국 정부는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 40주년을 기념해 하토야마 유키오, 다나카 마키코 등 총 15명의 인사들을 중국에 초청하였다.[32] 중일 간 분쟁은 그 역사적 뿌리가 깊기 때문에 민족주의를 앞세워선 영토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점을 양국 정부도 알고 있는 것이다.

---

31) 『北京晨报』 2012.9.21.

32) 何亮亮. "日本商界高层若组团访华 中日关系或有转机". 《凤凰时事开讲》 2012.9.26.

6. 맺음말

댜오위다오 국유화로 인해 격화되고 있는 중·일간의 분쟁뿐 아니라 중국과 필리핀·베트남 사이에도 도서 영유권 및 해상 경계 획정을 두고 긴장이 감돌고 있다. 냉전만 끝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듯했지만 이념의 종말은 오히려 그동안 닫혀있던 전통적 갈등의 판도라 상자를 열어젖힌 셈이 되었다. 특히 유럽과 달리 역사의 앙금이 가시지 않은 동아시아에서 민족주의, 국수주의가 함께 맞물리면서 민감한 국면을 만들어내고 있다.

전투함이 아니라 해상감시선끼리 대치하는 정도에서 중·일 간 갈등이 끝날 것 같아 다행스럽다. 특사 파견을 포함해 양국 정부가 다양한 대화 채널을 가동시키고 "우호적 담판"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곧 중일 영토 분쟁의 종료를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향후 더 많은 분쟁이 생길 수 있음을 알리는 전령일 가능성이 크다. 불안정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중국은 어떠한 영토분쟁 해결책을 구사하여야 하는가? 일본의 댜오위다오 국유화로 인한 일련의 사건은 아래와 같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1) 중국은 '평화 굴기'의 원칙을 견지하고 '품위'와 '책임감' 있는 대국으로 자신을 개혁해 나간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국력은 급부상하였다. 1994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5592억 달러로 일본(4조7604억 달러)의 11.7%에 불과했다. 당시 일본의 GDP는 세계 1위 미국(7조175억 달러)의 3분의 2에 해당했다. 하지만 2010년 중국의 GDP는 일본을 따라잡은 데 이어 지난해엔 6조 9885억 달러로 일본(5조8554억 달러)의 1.2배에 달했다. 17년 새 일본의 GDP는 23% 증가한 데 그쳤지만 중국은 1150%나 는 것이다.[33] 급속한 경제 발전은 중국으로 하여금 일본에 경제제재를 할 수 있

33) 翟新 "民主党政权应对钓鱼岛问题的异常性问题". 『国际问题研究』. 2011(3). P.62

는 능력을 갖게 하였고, 경제력을 배경으로 한 중국의 군사력 특히 해군력은 일본에 무력시위를 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 중국은 실력이 부족하여 예전에 확보할 수 없었던 자국의 이익을 지킬 능력을 갖게 된 것이다. 근래 중일 간의 갈등은 '중국의 굴기'와 일본, 미국의 영향력 감소를 배경으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일본 및 미국 내의 우익 정치세력의 도발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중국의 굴기가 동북아 역내 정치역학의 변화를 가져오고, 중국을 분쟁에 휘말리게 하고 있다. 중국이 지금 겪고 있는 주변 국가들과의 갈등은 중화민족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시련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힘을 과시하는 전략보다 여전히 지금의 도광양회(韜光養晦 · 빛을 감추고 힘을 기른다)전략을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자긍심을 한껏 키운 13억5000만 명의 중화민족이 '감히 누구한테 덤벼'라는 자세가 팽배해지면, 주변국으로부터 패권을 추구한다는 경계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또한 중국이 폭력시위와 수위를 넘는 무력시위를 방치하면 경제력과 군사력을 무기로 중국을 포위하려는 미국 및 주변국의 전략을 강화시켜 중국에 유리할 것도 없다.

중국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심과, 국제사회가 신뢰 할 수 있는 '품위'와 '책임감'을 갖추어 나가는 변화이다. 쉽게 도발해 올 수 없을 정도까지 경제건설에 더욱 힘을 키워나가고 지금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정치, 사회변화(부패, 사회복지, 법제건설 등 문제를 해결)를 착실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이익과 관련되는 문제에서 자국의 이익을 좀 더 세련되고 품위 있게 주장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일본국내의 민족주의 대두를 고려하여, 중국의 이러한 자세를 일본사회에 인식시켜 국의 '굴기'를 이해하고 우익의 움직임을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

(2) 내정 불간섭의 원칙 아래, 일본의 올바른 역사인식의 수립을 위한 환경과 조건의 형성에 협력하여야 한다. 동북아에서 진행되는 지각변동

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현명한 해법은 올바른 역사 인식이다. 전근대, 근대, 탈근대의 문제가 공존하는 동북아 국제관계의 특징이 두드러질 수록 이 지역을 관통하고 있는 역사의식의 정립이 요구된다. 중국은 일본 국내에 정확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진보세력의 존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9월 29일, 오에 겐자부로(1994년 노벨 문학상 수상) 등 일본의 지식인과 시민단체가 "영토 문제를 논함에 있어 일본이 먼저 역사를 반성해야 한다"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약 1300명이 서명한 호소문에는 모토시마 히토시 전 나가사키 시장, 오다가와 고 와세다대 교수, 평화운동가 이케다 가요코 등이 서명했다. 이들은. "두 가지(독도와 댜오위다오) 문제는 영토를 둘러싼 갈등처럼 보이지만 모두 일본의 아시아 침략이란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며 "일본은 스스로 역사를 인식하고 반성, 그것을 성실하게 (대내외에)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34] 중국은 일본 진보세력과의 교류를 통해 중일 양국 국민들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여야 한다. 한편 중국 국민의 무절제한 반일 활동이 일본 국내 진보세력의 활동 공간을 좁히게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성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표현할 필요가 있다.

(3) 일본과의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도쿄도의 댜오위다오 매입 정책은 일본 외교정책에 영향을 주었고, 결국에는 중일간의 대립을 초래하였다. 이는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외교도 중요하지만, 대일 외교에 있어 중국은 외교대상의 범위를 더욱 넓힐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도 "중일 양국 간의 외교 및 다양한 층위의 접촉 라인 부족"이 양국 간의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35] 일본 정치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중국은 외무성과 자민, 민주등 당 외교의 루트에만 의지해서는 일본의 반응을 정확하게 읽을

34) 『日本产经新闻』 2012.9.29.
35) 『日本产经新闻』 2012.9.21.

수 없게 되었다. 중일관계의 순조로운 발전을 위하여, 중국은 일본의 당, 지방, 지역, 자위대를 포함한 다양한 대중 라인과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건립하여야 한다.

⑷ 새로운 동북아 국제질서 이론의 창출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의 국제관계 이론으로는 역사문제와 현실문제, 영토문제가 섞여 있는 댜오위다오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것 같다. 동북아 지역에 근대 주권 개념이 보편적인 규준으로 수용된 것은 수십 년에 불과하다. 수백 년 동안 주권 개념에 근거해 국제관계를 경험한 서구 국가들의 세계화 논리를 우리는 너무 쉽게 수용했다. 이 지역 국가들의 실제 상황에 부합되는 이론은 없는가? 중·일양국은 자국 관점에서 정의된 이익과 동북아 관점에서 정의된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면서 올바른 역사인식에 근거한 새로운 동북아 국제질서 이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물론 여기에 이 지역 국가들도 공동으로 참여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새로운 동북아 국제질서 이론의 창출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국제정치의 역학 변동에 대하여 정치, 문화, 경제 등 분야의 치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동북아국제정치의 역학변동으로 인해 부각되고 있는 영토 갈등이 이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도출하는 보다 깊고 꾸준한 중장기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1. 자료

『中国经济周刊』,『辽宁日报』,『中国青年报』,『环球时报』,
『解放军报』,『人民日报』,『京华时报』,『星岛环球报』,『北京晨报』
『北方日报』,『北方周末』,『江门日报』,『日本产经新闻』,『长江新闻』

2. 논문 및 단행본

何亮亮,「日本商界高层若组团访华 中日关系或有转机」,『凤凰时事开讲』, 2012.9.26.
翟新,「民主党政权应对钓鱼岛问题的异常性问题」,『国际问题研究』, 2011(3).

<Abstract>

Chinese Thinking and Response to the 'Nationalization' of Diaoyudao by Japan

Hu Yin

On 10th of September 2012, the Japanese government proclaimed the nationalization of Senkaku(尖閣列島). Against this action, Chinese government protested strongly, insisting that Japan broke the tacit agreement between the two counties of 'pending the territorial issues'. The nationalization of Senkaku by Japan caused quite a sti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Japan. These Sino-Japanese territorial conflicts would strike a spark of crisis in Northeast Asia. In order to avoid conflict, keep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and prospect the future of Sino-Japanese relations, it is necessary to examine closely the territorial policies, government positions, and countermeasures of both countries. Therefore, in this thesis, Chinese thinking and response to the 'nationalization' of Senkaku by Japan will be analyzed.

In conclusion, Chinese positions are as follows: Firstly, China adheres to the principle of 'peaceful rising' and continues her own reforms as a regional power with dignity and responsibility. Secondly, under the principle of nonintervention, China would help to make conditions for the correct understanding of history in Japan. Thirdly, there is a need to build a wide range of human networks with Japan. Fourthly, to explore a new theory of international order in Northeast Asia and keep peace and stability in this region facing dynamic changes, including emerging territorial conflicts, the mid-and

long-term studies are needed.

Key Words: China, Response, nationalization, Diaoyudao(Senkaku), Japan, territorial issues, relationship, Northeast Asia, correct understanding of history.

이 논문은	2012년 10월 25일에 투고하여 2012년 12월 5일까지 심사하여 2012년 12월 15일 게재 · 결정됨

일반논문

우리나라 2011년도 언론분야 독도 주제 연구의 '현황과 과제'

김 신 호*

〈목 차〉

1. 머리말
2. 연구방법
3. 각 언론들의 2011년 독도관련 보도 현황
4. 2011년 월간지, 주간지들의 보도 현황
5. 2011년도 독도관련 언론분야의 과제
6. 맺음말

〈국문초록〉

본 연구는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요 언론에서 다룬 독도에 관한 기사들을 바탕으로 언론분야에 있어서 독도문제의 보도현황을 분석하고 앞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할 과제들을 이끌어 내고자 시도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주요 언론기관들의 독도관련 기사들을 보도 분야별, 보도유형별, 프레임 유형별로 현황을 파악한 후, 언론이 정책행위자인 정부와 정책평가자인 독자들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

독도관련주제에 관한 보도들은 처음의 제한적인 상황에서, 국민정서에 편승하는 방향으로 선회되었다가, 오히려 오늘날에는 국민정서를 부추기어 정치적 인기를 만회하려는 선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언론은 정권이 영토문제를 실정을 가리는데 활용하고 싶은 유혹으로부터, 국민이 독도문제로 인하여 군중심리에 묻여버리고 싶은 유혹으로부터 과감히 돌아설 수 있도록 종용해야 하며, 문제의 본질을 짚어주고, 때마다 발생하는 사건 · 사고에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장기적 안목과 포용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어야 한다. 언론은 각 정권이 독도문제를 정치적 이용보다 국가 장래에 도움이 되도록 정책으로 반영하고, 국민들

*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이 독도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각자의 일상에 매진하도록 배려하는데 시금석이 되어 주어야 하겠다.

주제어: 독도기사, 언론, 영토문제, 보도 현황, 애국주의, 국민정서

1. 머리말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독도방문으로 인하여 일본총리의 유감발표가 있었고 이후 일본에서는 공공연히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문제를 제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런던올림픽에서의 좋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박종우 선수의 독도피켙 사진은 독도에 관한 언론기사가 정치, 사회, 문화, 국제 등의 분야 뿐 만 아니라, 독도와 상관이 적은 경제 분야에까지 걸쳐 주요한 주제로 다루어 졌다. 더구나 우리와의 독도분쟁을 넘어 일본은 중국과의 국경분쟁 대상인 조어도를 국유화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심한 군사적 갈등 뿐 만 아니고 경제적 갈등까지 확대되어 일본의 경제인들과 일반 국민들이 매우 심란한 상황까지 나아가고 일본을 여행하려던 많은 중국인들의 여행취소가 가시적인 상호손실로 표출되었다. 이를 통해 독도문제는 국경의 문제일 뿐 만 아니라, 언제든지 사회 · 문화 · 경제 분야에까지 확대될 수 있는 문제로서 언론분야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지는 과제임을 알 수 있다.

언론분야에서는 우리사회와 주변국들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주제들에 대하여 각 언론기관마다의 색깔을 가지고 다양하게 접근하여 기사들을 전개하고 때로는 독자들을 설득하려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독도문제에 대하여 만큼은 비교적 모든 언론기관이 국가적 이해라는 것을 전제로 넘지 않을 선의 한계를 가지고 보도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요 언론에서 다룬 독도에 관한 기사들을 바탕으로 언론학분야에 있어서 독도문제의 연구현황 및 주요

언론사들의 독도주제 보도현황을 분석하여, 언론분야에 있어서 앞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할 과제들을 이끌어 내고자 시도한 것이다. 본 연구는 구체적인 입장에서 독도문제에 관한 언론학분야의 과거 연구 현황과 우리나라 주요언론기관들의 독도관련 기사들을 보도분야별, 보도유형별, 프레임 유형별로 현황을 파악한 후, 각 현황에 대한 분석과정에서 무엇이 독도에 관한 주된 기사이며, 우리의 언론이 정책행위자인 정부와 정책평가자인 독자들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더불어 우리의 언론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보수·진보의 전통 속에서 얼마마한 기사논리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각 언론기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과 어떠한 상호작용이 반영되어 있는지 등에 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암묵적인 국가적 이해라고 하는 의미도 거시적·미시적 입장에서 조망하고자 하였다. 각 언론들이 언론기관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상호작용 차원을 넘어서, 정책행위자와 일반 국민을 대신한 독자와의 사이에서 소통 역할을 과제로 삼아 발전시키고 있는지 학문적인 제언을 이행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1) 선행연구

연구방법에 들어가기 전에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독도에 관한 주제는 역사, 정치, 국제법 등에서 빈번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언론에서도 매우 심도있고 빈번하게 다루어지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언론분야에서는 독도관련 학술적 연구 거의 없는 편이다. 학문적인 연구는 단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박선영(2011)에 의해 〈일본연구논총〉에 발표된 박정희 정권 한일회담기(1961-65)에 한국 언론이 독도문제 다룬

것을 분석한 논문으로 1960년 지식인 논단을 대표하는 〈사상계〉와 일본 외교문서에 나오는 〈동아일보〉, 〈조선일보〉를 분석하였으며, 한일회담 및 독도문제에 대한 논조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동아일보 기사 36개와 조선일보 기사 56개의 기사 제목과 보도유형을 분석한 것으로 5년 동안의 보도된 기사들에 대한 분석으로서는 수 적으로 매우 제한적이고, 일본외교문서의 관점으로 발췌된 왜곡의 소지가 많은 분석이었다. 언론의 발달사에도 관련이 있겠으나, 양적으로 제한 기사를 보도 유형별로 분석하다보니, 동아일보의 경우 유형의 4분의 3이 스트레이트 기사, 나머지 기획기사와 사설이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선일보의 경우 56개의 기사 분석 중 49개는 스트레이트 기사이고 7개만 그 외 기사들이어 유형의 분류라는 의미가 무색할 정도라는 분석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독도관련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는 주로 역사학적, 국제 법학적, 정치학적 관점에서 독도의 영유권을 둘러 싼 한국과 일본의 주장들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사료 및 2차 자료를 토대로 독도 영유권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독도 주제에 관하여는 각 언론사에서 많은 기사를 배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우 오래 전부터 다루어 오던 주제였다. 각 언론들은 독도 주제에 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치, 사회, 문화면에서 광범위하게 다룰 뿐만 아니라 역사와 관련하여서는 가끔씩 많은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전문적 수준까지 다루는 경우들도 있게 된다. 그러나 독도관련 주제에 대하여 언론분야에서 전개해 왔던 기사들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일부 학위논문들과 박선영(2011)의 논문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형편이다.

연구방법론에 관하여는 다른 주제의 기사들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이 있어 그 분석 방식을 활용하였다. 먼저, 강철수·윤석년(2010)은 5·18 30주년 관련보도의 유형을 기사유형별로 나누어 다섯 개 언론사의 보도들을 기획, 사설, 해설(종합), 스트레이트, 인터뷰, 사진, 칼럼/오피니언, 스케치 기사, 문화-기타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주요 프레임을 심층 분석하

되 그 내용들을 정신계승, 인권, 추모, 기념행사, 역사적 사실/회고, 진상규명, 기타 등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많은 연구자들이 보도에 관한 연구를 형식프레임과 내용프레임 유형에 다라 분석하였는데, 김원용 · 이동훈(2005)은 국내 원자력 관련 보도를, 김지윤 · 성미정(2010)은 식품안전 관련 보도에 관한 연구를 이행하였다. 이들은 형식프레임 유형을 일화 중심적 프레임과 주제 중심적 프레임별로 연구하였는바, 일화 중심적 프레임은 단순사건전달기사와 반응전달기사로 구분되며, 주제 중심적 프레임은 원인규명기사, 대책논의기사, 사건의 영향에 관한 기사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있다. 김원용 · 이동훈(2005)은 연구 대상 기사들을 연대별로 분류하고, 1차 프레임을 책임규명, 갈등대치, 폭력난동, 환경안전, 경제효용, 민주합의, 대체개발, 기술진보, 정책의지 등으로 분류하고, 2차 프레임은 상황귀속, 생존가치, 체제개선 등으로 재분류하여 분석하는 방식도 병행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김성해 · 김동윤(2009)은 금융위기에 관한 보도양상과 프레임 연구에서 보도지역별, 언론사 국적별, 보도주제, 의제화 비중별, 미래 전망별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강철수 · 윤석년(2010)의 보도유형별 분석과 김원용 · 이동훈(2005) 및 김지윤 · 성미정(2010)의 형식 프레임 분석방식을 적용하였다. 본 주제의 연구 내용은 먼저 연구대상 언론의 독도관련 모든 기사를 나열하여 양적인 측면에서 각 보도의 분야별, 유형별, 프레임별로 기사의 빈도수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질적인 측면에 대한 분석은 전술한 양적인 분석의 틀 안에서 제한적으로 다루었다. 질적인 면의 분석은 얼마나 민감한 주제를 다루었느냐는 것과 어떤 수준의 사실을 보도하고 주관적인 주장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는 것 등으로 분석하려고 노력하였다. 본 연구는 일간신문으로서는 보수언론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그리고 진보언론인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을 월간지로서는 '월간조선'과 '월간중앙' '뉴스메이커'를 분석하고, 주간지로서는 '한겨레21'과 '주간동아'를 분석하였다. 월간지는 보수언론이 월등하여, 진보언론의 대표성이 매우 축소되었다.

2) 연구 분석의 절차 및 분석 유목의 도출

(1) 연구 분석의 절차와 범위

연구 분석의 절차는 먼저 해당 언론의 2011년 독도와 관련된 모든 기사를 총 수집하는데 가급적 독도라는 단어가 들어간 모든 기사를 포함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일정량의 기사들은 다른 주제의 기사에 독도가 따라 나와 덤으로 언급된 것인데, 이 더미(dummy)기사의 양이 언급되겠지만, 더미기사와 실제기사의 경계가 매우 애매한 기사들도 일정량 있지만, 본 연구의 취지에는 영향이 미비하다고 판단하였다. 어찌하던 간에 각 언론사마다 매우 많은 양의 기사들이 조사되었음을 지적하는 바이다.

(2) 보도 분야 및 유형별 분석

보도 분야별 분석은 각 언론사에서 분류한 명칭으로 근거로 하였다. 각 언론사는 자사의 고객취향 및 새로운 고객의 유치를 위한 상업적 목적으로 보도 유형 및 분야를 각자에 맞게 분류하였는데, 조선일보의 경우는 기고, 사설, 지역(광역자치단체), 플라자, Why, 칼럼, 단독, 오늘의 세상, 특집, 편집자에게 등으로 보도 유형을 분류하고, 보도 분야는 사회, 문화, 정치, 사설 · 컬럼, 국제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겨레신문은 분야와 유형의 구분 없이, 경제일반, 대학뉴스, 사회일반, 일본, 청와대, 사설, 교육, 국제일반, 엔지오, 외교, 지역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신문사들이 각자 취향에 따른 분류 용어에 다소의 차이가 발생하여 보도 분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지역 등의 부문으로 재분류하였고[1], 또 보도의 유형별 분석은 기사유형을 기획, 사설, 해설, 스트레이트, 인터뷰,

---

1) 각 언론사가 세분한 외교, 국방, 청와대 등은 정치부문으로, 기업은 경제부문, 교육과 엔지오는 사회부문, 방송, 연예, 스포츠, 홍보, 책 등은 문화부문 등으로 통합하였으며, 국제부문은 외국에서 발생한 사건들 중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두를 포함하였다. 독도에 관한 기사의 분류인 관계로 대부분은 일본에서 발생한 보도이나 일부 미국, 중국, 영국에서의 기사들이 국제부문에 속하게 된다.

오피니언, 스케치기사, 기타 등으로 분류하는 방식인데, 여기서 칼럼은 사설에 포함시키고, 종합은 해설에 포함하였다.

(3) 보도 프레임 분석

다음 단계는 보다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보도의 프레임 분석을 시도하였는바, 프레임 분석은 형식 프레임 분석과 내용 프레임 분석으로 더 세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작적 정의에 따른 분류가 요망되는 내용 프레임 분석까지는 시도하지 못하고 형식 프레임 분석까지만 시도하였다. 보도의 틀을 일화 중심적과 주제 중심적으로 나누고, 일화 중심적 보도는 단순사건전달과 반응전달로 분류하였으며, 주제 중심적 보도는 보도 내용의 원인 규명, 대책 논의, 사건의 영향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3. 각 언론들의 2011년 독도관련 보도 현황

우리나라의 언론보도가 다른 나라들의 경우와 달리 유별나게 보수와 진보라는 냉전시대 양상을 띠고 있어, 수많은 국가, 사회, 개인적인 주제들에 대해서까지도 뚜렷하게 한쪽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 평균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수많은 일반 독자들은 이 두 가지 언론을 모두 접해야 뭔가 균형 잡힌 감각을 가질 수 있다는 불편한 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독도관련 보도에 있어서는 그나마 다른 주제들에 비해 상기 양극적인 요소가 비교적 적다고 사료됨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 현황에 관한 연구를 위해 주요 일간지를 보수신문과 진보신문으로 나누어 두 가지씩을 선택하였다. 이렇게 선택한 이유는 보수신문과 진보신문을 비교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대표성을 의식한 것이며, 독자가 많은 순으로 선택할 수도 있지만, 연구 대상 일간지를 많이 잡을 수 없고,

독자의 성향이 뚜렷하게 나누어진 상황에서 연구결과에 부분적으로는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차이점도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다.

1) 주요 일간지들의 보도 분야별 현황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등 4개 일간지 보도들의 분야별 유형을 각 언론사에서 분류한 것에 의존하여 아래의 〈표 1〉과 같이 구성하였다.

〈표 1〉 2011년도 4대 중앙 일간지 독도관련 보도 분야별 현황

구분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합계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
정치	94	33.6	119	55.3	79	28.8	70	38.3	362	38.0
경제	2	0.7	14	6.5	13	4.7	2	1.1	31	3.3
사회	92	32.9	41	19.1	64	23.3	42	30.0	239	25.1
문화	34	12.1	36	16.7	42	15.3	34	18.6	146	15.3
국제	33	11.8	4	1.9	68	24.8	22	12.0	127	13.3
지역	25	8.9	1	0.4	8	2.9	13	7.1	47	4.9

상기 〈표 1〉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2011년도 독도관련 일간지 보도 현황은 첫째, 우리가 알게 모르게 독도관련뉴스는 거의 모든 일간지에서 상당히 빈번하게 다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일부 독도관련보도는 주로 다른 주제를 기사거리로 삼다가 지나가는 예로 포함된 경우들이 각 일간지마다 다소 있으며, 독도관련보도라고 분류할 수 없는 극히 일부 보도들도 조선일보 280건 중 7건, 중앙일보 215건 중 5건, 한겨레신문 274건 중 8건, 경향신문 183건 중 6건 등이 있다. 상기 우리나라 주요 일간지들은 독도주제를 비교적 민감하게 또한 빈번하게 2011년 일 년 동안 200-300건 정도 다루었다. 2012년에는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일본천황의

사과요구 발언 등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및 한 · 일간 경제 및 군사 분야 협력부문까지 파장을 초래하여, 2011년보다 월등히 빈번하고 비중 있는 기사들이 보도되었다고 예상할 수 있다.

둘째는 상기 4대 일간지들은 독도관련보도를 정치 분야에서 가장 많은 빈도로 다루고 있으며, 그 다음이 사회 분야, 문화 분야, 국제 분야, 지역 보도, 그리고 경제 분야 순으로 다루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국제 분야는 다시 구분에 혼란을 초래하는 면이 작용한다. 즉 우리나라 이외의 국가들에서 보도된 기사들이지만, 그 중 3/4정도는 정치와 관련된 기사 이며, 그 밖에도 문화, 사회 등의 분야 기사들로 나누어진다. 독도관련보도는 당연히 일본으로부터의 보도와 일본만을 대상으로 한 보도들이 4/5정도를 차지하며, 다음은 미국으로부터의 보도와 영국으로부터의 보도 순이다. 2011년의 보도상황에서는 중국으로부터의 보도가 우리나라 일간지에서 비교적 매우 드물게 기사화하고 있는 점이 다소 특이한 상황이다. 중국이 우리나라와 바다의 경계를 공유하고 있고,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유사한 고민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중국관련 보도가 적게 다루어져 다소 의아스럽지만, 여기에는 미국과 영국의 보도가 우리나라 밖에서의 독도문제를 바라보는 보다 객관적인 관점일 것이라고 바라보는 보도자들의 시각이 반영된 것이라 여겨지고 있고, 중국의 보도까지 우리나라 독자들에게 알릴 필요까지 있겠는가 하는 시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독도관련보도의 현황을 보도 분야의 구분을 중심으로 세 번째 분석할 것은 독도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어떤 분야의 사회적 이슈이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3천 여 개의 섬들이 있으며, 그 중에는 사람이 많이 사는 섬들도 매우 많다. 그러나 독도가 우리 사회에 주요한 관심을 끄는 것은 독도가 우리나라 동쪽 가장 끝에 있는 섬이고, 일본이 영토분쟁을 야기하는 즉 국제정치상의 국가적 이익 뿐 만 아니라,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전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는 대상이라는 점이다. 그 외 신문독자들에게

사회면, 문화면, 경제면으로 어필하고 있는 장소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정치와 국제 분야 면에서 가장 빈번하게 또한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보도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상기 보도현황을 분석해 보면, 사회와 문화면에서 정치면, 국제면 못지않게 매우 빈번하게 보도가 발생하며, 지역 분야 보도의 대다수도 사회와 문화면을 다루고 있다. 이것은 우리사회에 있어 독도가 정치와 국제관계 만의 주제 이상의 대상, 즉 국민들의 사회·문화적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매우 관심 끄는 대상임을 보여주고 있다.

보도 분야에 관한 현황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나 정부가 언론의 분야별 보도 빈도나 사회적 가치비중만큼 관심을 가지거나 정책 혹은 인적·물적·재정적 배분을 이행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물론 국방정책에 있어 독도수호를 위해 자원을 배분하고 있으며, 독도주변에 관한 과학적 탐사연구에 혹은 각종 연구소지원이나 행사지원 등을 통하여 자원을 배분하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으나, 언론이 다루고 있는 다양한 분야만큼 사회, 문화, 경제 분야에서는 정책적 배려와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더구나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월에 독도를 방문한 이후 일본에서는 공공연히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이 다루고 있는 다양한 분야들만큼 우리 국민들이 가지는 독도에 대한 다양한 관심이 정책적 자원배분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역사학, 국제정치, 국제법 이외의 사회, 문화, 경제, 정책의 학문분야에서도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주요 일간지들의 보도유형별 현황

보도유형에 따른 분류는 기획, 사설, 해설(종합), 스트레이트, 인터뷰, 오피니언, 스케치기사, 기타[2]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강철수 외, 2010:

[2] 책 소개 등 기존 분류에 포함하기 어려운 기사

16). 여기서 사설은 고정 운영위원, 컬럼니스트, 혹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이루어진 경우이며, 오피니언은 전문가이든 경험자이든 독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형태의 글이어야 하겠으나, 각 언론사마다 컬럼이라는 제목용어를 사설에 붙였다가, 오피니언에 붙였다가 하며 혼란스럽게 사용할 뿐만 아니라, 오피니언을 고정 컬럼니스트가 쓴 글을 보도하여 구분의 의미가 축소되고 일관성을 상실하여, 함께 묶는 방식을 취하였다.

스트레이트(straight)기사는 특정 사건이나 사고의 개요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이른바 육하원칙(5W1H)에 의해 기술하는 형식이며, 스케치(sketch, 혹은 르포)기사는 사건, 사고, 행사 현장에서 기자가 직접 보고 느낀 것을 스케치하듯 실감 있게 기술하여 주변상황과 참가자 등의 의견까지도 포함하는 등 현장감을 중시하는 기사 형식이다(김병철, 2004: 38 & 164). 따라서 스트레이트 기사는 객관적 성격이 강조되며, 스케치기사는 현장의 분위기와 움직임, 참석자들의 반응, 감정과 행동 등의 현장성을 묘사한 목격자의 보도라고 할 수 있다.

〈표 2〉 2011년도 4대 중앙 일간지 보도유형별 현황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합계	
기사유형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기획	2	0.7	1	0.5	0	0	1	0.5	4	0.4
사설(칼럼)	74	26.4	8	3.7	49	17.9	31	16.9	162	17.0
해설(종합)	38	13.6	36	16.7	25	9.1	14	7.6	113	11.9
스트레이트	54	19.3	84	39.1	71	25.9	76	41.5	285	29.9
인터뷰	5	1.8	3	1.4	8	2.9	0	0	16	1.7
스케치기사	101	36.1	78	36.3	117	42.7	56	30.6	352	37.0
기타	6	2.1	5	2.3	4	1.5	5	2.7	20	2.1
합계	280		215		274		183		952	100.0

상기 〈표 2〉는 우리나라의 주요 일간지들이 2011년 동안에 전개되었던 다양한 사건과 행사 등에 관련하여 '독도'라고 하는 주제를 어떻게 다양한

유형으로 보도해 왔는가를 보여주는 표이다. 먼저 스케치기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한겨레신문과 조선일보에서는 각각 42.7%와 36.1%를 활용하여 가장 많은 유형의 보도방식이 되고 있다. 그러나 경향신문과 중앙일보는 스트레이트기사를 가장 많이 활용해 각각 41.5%와 39.1%의 보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각 언론사의 정규적인 칼럼니스트들이나 외부의 전문가들에 의한 사설과 오피니언은 조선일보가 26.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이 비슷한 수준으로 각각 17.9%와 16.9%를 보도건수로 할애하고 있으며, 중앙일보가 불과 8건 3.7%만을 할애하고 있다. 종합보도라고도 하는 해설보도는 중앙일보가 16.7%로 가장 많은 비율을 할애하고 있으며, 조선일보가 13.6%,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이 각각 9.1%와 7.6%를 할애하고 있다. 독도관련 책 소개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타보도와 인터뷰, 기획보도는 모든 일간지들이 매우 제한적으로 활용하여 평균 2.1%, 1.7%, 0.4%만 차지하고 있다.

스케치기사와 스트레이트기사의 유형이 가장 많은 빈도수와 비중을 차지하였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독도와 관련된 사건 · 사고 · 행사가 심심치 않게 발생되었다는 점에서 유래한다. 과거와 같이 독도관련 사건 · 사고가 발생하였어도 정부차원에서 일부러 여론화하지 않으려고 언론사에 압력을 가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사건발생과 사실보도 빈도는 비례하기 마련이다. 2011년에 다양하고 중대한 사건들이 있었다. 어선과 관공선의 영해침범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사건들이었고, 한 · 일 군사교류협력 시도로 독도문제가 따라 논의될 수밖에 없었고, 가수 김장훈의 끊임없는 독도관련 행사 기사들이 있었으며, 일본의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사건은 쓰나미 피해를 돕던 한국민의 정서에 정면 배치되어 많은 보도들을 양산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 및 방파제의 건설은 일본의 전방위 외교공세 및 대한항공 이용금지를 촉발하였고, 이재오장관을 비롯한 정치가들의 독도방문과 설전, 일본 자민당의원들의 김포공항입국과

독도방문시도, 국사의 고교 및 공무원시험 필수과목 포함 논의, 노다 일본총리 방한 등이 기사거리를 발생시킨 사건들이었다. 우리 국민들이나 특히 일본의 일반 국민들의 생활실체와는 상당한 지리적 · 공간적 괴리가 있을 법한 독도문제는 언론을 통과하고 나면, 양 국민들의 자존심과 일상생활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사건으로까지 파급되어, 이른바 언론학에서 자주 활용되는 탄환효과(bullet effect)[3]를 일으키고 있다. 다만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이 스트레이트기사보다 스케치기사에 더 비중을 둔 것은 사건 · 사고 · 행사가 발생할 때마다, 단순히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것보다는 현장의 분위기와 주변인들의 반응과 행동, 현장의 박진감을 더 전달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욱 반영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사설(컬럼)과 해설(종합) 보도들은 아무래도 사건 · 사고 · 행사에 직각적인 반응보도보다는 한 순간 여유를 가지고 과거의 사건 · 사고 · 행사들과 기타 연관된 정책 및 논의들도 함께 고민하면서 자사 일간지 독자들의 취향도 고려하면서 쓰여 진 기사들이라 할 수 있다. 간혹 다소 반대의견 독자들의 비판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충성고객들의 단결과 고취를 위해 미묘한 색깔을 반영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때로는 충실하게 본질적인 문제원인을 추궁하면서 쓰여 진 기사들도 종종 있어, 야비한 기사 혹은 명 기사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이 사설(컬럼)과 해설(종합)보도들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국내의 기사에는 당연히 야비한 기사가 명 기사보다 훨씬 많고, 글쓴이들은 치열하게 단어 하나하나를 엄선하고 이 입장 저 독자 등을 고려하면서 땀을 흘리지만, 독도관련 보도에 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한 컬럼니스트는 "사실 한 · 일관계의 민감한 문제는 우리 언론에는 참

3) 매스커뮤니케이션 효과에 관한 이론으로서, 매스미디어는 수용자 대중에게 직접적이고 즉각적이며 강력한 효과를 주어 그 직접결과가 마치 발사된 탄환에 의한 결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는 이론이다.

편하고 쉬운 소재 가운데 하나다. 독도는 둘째치고라도 과거사를 건드리는 일만 생기면 그 경중과 맥락을 무시하고 반일감정에 호소하면 만사형통이다. 국내 사안을 보도할 때처럼 이해관계자의 항의도 없고, 이념과 여야를 불문하고 기사는 잘 읽히며 때로는 분노 섞인 공감을 널리 불러일으킨다. 한마디로 장사가 된다"라고 기술하였다(엄주웅, 2011). 그러나 언론인의 보도행위가 얼마나 고달픈 일인가라는 언론인 실존의 문제로 인하여 쉽고 달콤한 유혹에 편승하면 안 된다. 이 탄환효과를 가진 독도 논의도 다른 보도의 주제들과 마찬가지로 본질적인 문제가 감추어져 있어, 일반 독자들은 파악하기 매우 곤란하다. 각자의 직업에 매진하다가 머리 식힐 생각으로 기사를 읽는 일반 독자들은 복선을 깔고, 이 집단, 저 기관 눈치 보면서 작성되는 기사에서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기 어렵고, 파악하려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 대부분의 독자들에게는 그저 지나가는 일상일 뿐이다. Roger Cobb & Elder 정책의제설정론(김형렬, 2002: 133 재인용)의 일반 공중 혹은 주의 공중에 해당되는 대다수의 독자들을 위해 보도 전문인들은 이 사실을 정리해 주어야 한다. 어떤 때에는 직접적인 사설(컬럼)이나 해설(종합)기사로, 또 다른 때에는 지식의 경중에 따라 단계적인 기획기사로, 문제의 본질은 어디서 출발한 무엇이고 지금은 어디로 진행을 전개하고 있는지, 값 비싼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우리는 2011년 7월 말에 일본의 자민당 의원 3명이 울릉도에서 "독도는 일본 땅"을 외치겠다고 김포공항에 왔을 때, 거의 모든 국민이 황당해 하며, "일본 정치가들이 저런 면도 있구나" 하고 의아해 하였다. 한 언론인은 "패전 후 몸을 사리던 일본 극우들은 1950년대와 80년대에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했었다. 그러나 고도성장을 누리던 시절이어서 사람들이 별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일본 경제가 주저앉을 기세를 보이기 시작한 1990년대부터는 극우 정치인과 지식인들이 '국가주의'에 불을 지피자 젊은 층들이 호응하기 시작했다. …버블경제 붕괴는 일본 극우가 되살아나는 밑거름이 됐다"라고 분석하였다. 한국의 독자들 중에 얼마마한 사람들

이 심각하게 받아들였을까? 의문이 들지만 본질에 접근하려는 고민의 노력이 엿보인다. 그렇다면, 왜 남 얘기만 하는 것인가? 우리 정치권의 대응 과정과 결과들에 대해서도 같은 고민의 흔적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우리 정치권도 애국주의 정서를 흔들어 실정을 감추고자 하는 의도로 독도 같은 주제를 이용할 수 있고, 이용했다면, 어떻게 얼마만큼 이용했다는 것을 짚어 주어야 한다.

기타기사는 대부분 독도에 관한 책 소개이다. 4개의 일간지들이 기사의 양이나 질에서 대동소이하게 다루고 있다. 인터뷰기사는 '정보의 수집이나 제공, 기사 작성 등 사전에 계획된 특별한 목적을 위해 회견자와 응답자 사이에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며 이루어지는 특화된 형태'(김병철, 2004: 147)의 보도방식이다. 따라서 기사의 방향과 목표가 뚜렷한 전문화된 기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엄격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여 골라도 일간지 수준에서의 인터뷰기사 빈도는 매우 제한적이다.

3) 주요 일간지들의 보도형식 프레임 유목 분석

보도 프레임 유목은 형식 프레임 연구와 내용 프레임 연구로 나눌 수 있는데, 본 연구는 프레임 분석 유목의 조작적 정의가 사용되어져야 하는 내용 프레임 연구는 수행하지 못하였고, 형식 프레임 연구까지만 진행하였다. 형식 프레임은 일화 중심적 보도와 주제 중심적 보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화 중심적 보도는 단순 사고 전달 보도와 반응 전달 보도를 포괄하고 있으며, 주제 중심적 보도는 원인 규명 보도, 대책 논의 보도, 사건의 영향 보도를 포괄한다.

〈표 3〉 2011년도 4대 중앙 일간지 형식 프레임 유형별 현황

	형식프레임	조선일보 건수(%)	중앙일보 건수(%)	한겨레신문 건수(%)	경향신문 건수(%)	합계 건수(%)
일화 중심적	단순사고 전달	79 (28.2)	90 (41.9)	82 (29.9)	81 (44.3)	332 (34.9)
	반응전달	91 (32.5)	76 (35.3)	100 (36.5)	63 (34.4)	330 (34.7)
주제 중심적	원인규명	6 (2.1)	8 (3.7)	4 (1.5)	2 (1.1)	20 (2.1)
	대책논의	54 (19.3)	21 (9.8)	26 (9.5)	16 (8.7)	117 (12.3)
	사건의 영향	50 (17.9)	20 (9.3)	62 (22.6)	21 (11.5)	153 (16.1)
합계		280 (100.0)	215 (100.0)	274 (100.0)	183 (100.0)	952 (100.0)

독도에 관한 보도의 형식 프레임은 주제 중심적 보도보다는 일화 중심적 보도가 월등히 많아서 전체 보도의 70%에 육박하고 있으며, 주제 중심적 보도는 30% 정도만 차지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39.3%로 주제 중심적 보도가 가장 많은 편이며, 다음이 한겨레신문으로 32.1%, 경향신문은 20.2%, 중앙일보가 19.1%만 주제 중심적인 기사들을 독자들에게 보도 하고 있다. 일화 중심적 보도는 독도관련 사건 · 사고 · 행사에 대하여 비교적 간단하게, 가볍게 다루고자하는 성향을 많이 반영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단순사고전달보도는 반응전달보다도 더 기계적이고 외형으로 보이는 것만 보도하고자 하는 성향을 많이 보이게 된다. 경향신문과 중앙일보가 단순사고전달 보도를 각각 44.3%와 41.9%의 비율로 다루고 있어, 이 두 언론사들이 상대적으로 독도관련 사건 · 사고 · 행사를 가볍게 다루려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반응전달보도에 있어서는 상기 4개의 중앙 일간지들이 모두 35% 내외의 유사한 보도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주제 중심적 보도는 일화 중심적 보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독도관련 사건 · 사고 · 행사를 신중하고 깊게 다루고자 하는 성향을 나타낸 것으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하나의 사건을 그냥 사실보도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내용논의 시도와 보도의도성 표출 혹은 내용 개입의도가 반영되고 있다. 대개의 경우는 각 언론사의 전문기자, 사건 참여자, 혹은 사건관련 전문인들의 논의를 전달하는 형식을 띠고 있는 것이 많지만, 간혹은 언론사의 의도 하에 계획된 내용개입을 시도하는 경우들도 있게 된다.

주제 중심적 보도의 비율은 단연 조선일보가 앞서 있다. 조선일보는 39.3%의 기사를 주제 중심적 보도의 치중하고 있으며, 독도관련 주제에 대한 대책논의(19.3%)나 사건의 영향(17.9%) 등이 비교적 약한 중앙일보 보도비율의 2배를 상회하고 있다. 한겨레신문 역시 주제 중심적 보도에 상대적으로 비중을 많이 두었으며, 특히 사건의 영향(22.6%)에 보도 비중을 많이 두어 경향신문(11.5%)와 중앙일보(9.3%)의 2배에 달하는 비율로 독자에게 보도하였다.

4. 2011년 월간지, 주간지들의 보도 현황

시사분야에서 비교적 전문성을 유지하고 있는 월간지를 3개 선정하되 가급적 일간지와의 연속성 상에서 골라 '월간조선' '월간중앙' '뉴스메이커'를 선정하였으며, 주간지는 '한겨레21'과 '주간동아' 2개를 선정하여 모두 5개 언론을 조사 · 분석하였다.

1) 주요 전문시사 월간지와 주간지들의 독도관련 보도 분야별 현황

월간지나 주간지들의 보도 분야도 주요 일간지들에 대한 분석 기준을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월간지나 주간지들의 기사들 중에도 일간지 못지 않게 짧은 기사들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보다 심층 깊은 보도와 전문지식까지도 일부 포함한 충분히 이해할 만한 보도를 원하는 월간지 · 주간지

독자들의 수요가 전제되어 있는 관계로,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독자들에게 보도하고 있다. 따라서 보도기사의 수효가 일간지들에 비하여 매우 적고, 발행빈도도 1/30 혹은1/7 등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보도의 양은 현저히 적다고 할 수 있다.

〈표 4〉 2011년도 5대 중앙 월 · 주간지 독도관련 보도 분야별 현황

	월간조선		월간중앙		뉴스메이커		한겨레21		주간동아		합계	
구분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정치	5	29.4	4	44.4	4	57.1	5	41.7	6	35.3	24	38.7
경제	0	0	0	0	0	0	0	0	1	5.9	1	1.6
사회	5	29.4	0	0	0	0	1	8.3	2	11.8	8	12.9
문화	2	11.8	3	33.3	3	42.9	4	33.3	8	47.1	20	32.3
국제	5	29.4	1	11.1	0	0	2	16.7	0	0	8	12.9
지역	0	0	1	11.1	0	0	0	0	0	0	1	1.6
합계	17	100	9	100	7	100	12	100	17	100	62	100

우리나라의 시사 전문 월간지 혹은 주간지들의 독도관련 보도는 계량화하면 위기 〈표 4〉와 같지만, 내용으로 들어가면 각 언론사마다 많은 차이가 있게 된다. 먼저 월간조선의 '신용하 특별기획'은 별책부록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그 안에 17개의 장(章)과 머리말, 추가정보까지 합하여 19개의 독립된 기사라고도 할 수 있다. 각 장은 독도관련보도의 평균 양과 질보다도 더 많고 풍부하다. 이 방대한 보도기사의 분야는 정치, 유형은 기획으로 분류되었다. 주간동아 역시 특집을 다루었다. '독도레이서가 간다'는 특집 보도는 2011년에만 14번으로 나누어서 보도되었다. 6명으로 구성된 공연단이 독도홍보를 위해 180일 동안 19개국을 방문하면서 84회에 걸쳐 공연한 내용과 현장의 에피소드들을 기사화하였는데, 보도기사의 분야는 역시 문화, 유형은 기획으로 분류되었다. 또 하나 보도의 양으로 표현될 수 없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보도기사 중에 독도가 언급되어 있으나, 원래 주제는 다른 것이고 독도에 관한 것은 지나가는 단어로 언

급되기만 하였거나, 핵심적인 주제만 짧게 다루고 지나가는 경우가 일간지 보도에 비해 그 보도비중이 현저히 크다는 점이다. 전체 62개의 독도 관련 보도기사 중에 23개의 기사, 즉 37.1%의 보도는 실질적으로는 독도 관련보도라고 간주하기 어렵다는 점이 일간지 보도에 대한 분석하고 현저한 차이를 갖는다.

상기 5대 월·주간지들에서도 독도관련 보도는 정치 분야가 38.7%의 보도 비율을 나타내, 일간지의 38%와 매우 유사한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정치 분야는 일간지들이나 월·주간지들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룬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언론에서는 일단 독도관련 보도는 정치적인 주제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문화 분야의 보도로서 32.3%를 나타내, 일간지의 15.3%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간지에서는 사회 분야가 25.1%로 두 번째 큰 비중을 나타내었는데, 월·주간지에서는 12.9%로 비교적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일간지 보도들이 많이 다루는 사건·사고·행사 등에 관한 기사가 전문성이 가미된 월·주간지의 보도기사에서는 많이 다루어지지 않으며, 다루어지더라도, 정치나 문화면의 의미가 더 크게 부각되면서 깊이 있게 다루어져 사회면의 요소가 희석되어진다.

상기 5대 월·주간지들에서 국제 분야 보도는 12.9%이며, 경제와 지역 보도는 각각 1.6%로서 한 개씩의 보도만이 기사화 되었다. 일간지들에서도 국제 분야 보도는 13.3%, 경제와 지역 보도는 3.3%와 4.9%로서 주요 일간지들이 다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다. 월간지와 주간지 사이에 보도 분야별 유의미한 차이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2) 주요 월·주간지들의 보도유형별 현황

주요 월·주간지들의 보도유형별 현황도 주요 일간지들의 보도유형 분

석과 달리 다양하게 나타나지는 않으나, 일부 월·주간지 보도들은 일간지처럼 매우 짧은 기사들도 보도하고 있다.

〈표 5〉 2011년도 5대 중앙 월주간지 독도관련 보도유형별 현황

기사유형	월간조선		월간중앙		뉴스메이커		한겨레21		주간동아		합계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기획	1	5.9	1	11.1	0	0	1	8.3	3	17.6	6	9.5
사설(칼럼)	4	23.5	1	11.1	3	37.5	3	12.0	2	11.8	13	20.6
해설(종합)	4	23.5	3	33.3	2	25.0	5	41.7	4	23.5	18	28.6
스트레이트	0	0	0	0	0	0	2	16.7	3	17.6	5	7.9
인터뷰	7	41.2	4	44.4	2	25.0	0	0	2	11.8	15	23.8
스케치기사	1	5.9	0	0	1	12.5	1	8.3	3	17.6	6	9.5
합계	17	100.0	9	100.0	8	100.0	12	100.0	17	100.0	63	100.0

보도유형별로 보아서 독도관련 주제를 종합·정리하는 해설(종합) 기사유형이 가장 많아, 거의 모든 월간 주간지 언론사들이 골고루 채택하였다. 다음은 인터뷰 유형이 많았는데, 일간지들의 인터뷰 형태에서는 사건·사고·행사에 관한 관련인·참가자들에 대한 비교적 간단하고 현장감을 높여주기 위한 인터뷰인데 반하여(상대적으로 여러 사람을 인터뷰하는 형태), 월주간지에서의 인터뷰는 전문가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인터뷰하면서 내용적으로는 해설(종합)적인 면과 오피니언이 첨가된 칼럼 형태까지도 포괄한 인터뷰들이 많이 활용되었다.

월·주간지의 인터뷰기사는 일본의 정치가와 재일교포 역사가 등을 깊이 있게 다루면서 일본이 어떤 배경 하에서 독도문제를 거론하고, 그들 주장의 본질은 무엇이며, 일본 내에서는 어떠한 반향을 이룩하는가 등을 파헤치는 면에서 일간지보다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일본 정치가들은 "독도보다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센카쿠열도 문제에 훨씬 민감하다"라고 하고 있으며, "일본 내 독도 문제 부각은 국내 정치용이니, 한국은 흥분할 필요 없다"고도 우리 언론에 주장하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지만, 한국의 시사전문지 입장에서 이 내용을 한 꺼풀 벗겨 보면 그들의 속내에 다케시마 주장은 일본 정치인들의 '면피 탈출구'라는 것과 그럼에도 그들은 다케시마를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 하고 있다. 다른 시사전문지에서는 이 문제를 컬럼으로 다루면서 '적대적 공생 사이의 독도'라고 표현하였으나, 다른 정치문제와 함께 언급하느라 독자들을 본질로 안내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월 · 주간지에서의 사설(칼럼)은 일간지의 그것과 유사한 형태였으며, 그 글의 내용에 있어서도 분량이나 주장이나 논증형태가 대체로 비슷하다. 기획보도는 다양하지는 못하지만, 월간조선과 주간동아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비중있게 다루었다. 스트레이트와 스케치보도 형태는 월간지 3곳보다는 주간지 2곳에서 비교적 더 활발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독도의 문화주제화가 혹시 외교적 역사적 접근보다 호소력이 있을 수도 있다. 가족뮤지컬로 시도 중인 〈강치대왕과 쿠키상자〉등의 부각과 흥행성공이 따른다면 독도를 더 확실한 '한국인의 삶의 일부'라는 포트폴리오로 남길 수 있다는 발상 등을 언론이 부각시킬 수 있다. 짤막한 스트레이트 기사로는 부족감을 느끼게 된다.

월 · 주간지들은 일간지들에 비하여 사건 · 사고 · 행사들에 대한 기사가 월등히 적은 관계로 스트레이트기사나 스케치기사가 적을 뿐만 아니라, 상황에 대한 직접적이고 다양한 현장감이 반영된 보도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것을 추궁하는 성향을 보여 해설과 인터뷰기사 혹은 언론사의 의지를 반영하는 기획기사를 비교적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문제는 주요 월 · 주간지들도 언론사의 영리를 눈치 보아야 하는 입장에서 일간지들에서 다루지 못한 독도관련 사건 · 사고 · 행사와 상황의 전체적인 본질을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시사전문지로서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매우 적은 편이다.

5. 2011년도 독도관련 언론분야의 과제

보도기사는 구상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무엇을 쓰겠다고 하는 다짐과 쓰는 목적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기위해서는 마지못해 의무감에 기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기사에 대한 진지함과 열정이 있어야 한다. 사실 자체만을 무미건조하게 전달하는 기사는 거의 없다. 기사는 소재들 속에서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야 한다(박석흥, 2009: 134).

독도보도는 다른 보도들과 달리 보수언론과 진보언론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심각한 괴리현상을 갖고 있지는 않다. 90% 이상의 보도들이 같은 방향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전술한 보도 분야별, 보도 유형별, 프레임 유형 등에서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 다만 과거사와 연관된 상황에 대한 기사는 10% 이내에서 역시 전혀 다른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오히려 보수·진보 모두에서 국익과 애국주의의 커다란 틀만을 견지하여, 당일의 사건·사고·행사 혹은 상황이 너무 애국주의에 빠져 장기적 안목을 상실하고 있는 것을 질타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어느 언론사 하나라도 해 주어야한다고 '토'를 달 수 있다.

1) 독도보도의 주제 입장에서 본 언론분야의 과제

독도관련주제는 과거에 비해 점점 더 빈번하게 언론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적게 다루어지다가 오늘날 더욱 빈번하게 다루어지는 데에는 오늘날의 국제관계적인 요인들도 작용하였겠지만, 국내적으로는 무엇보다도 박정희 정권 시절 일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 한일협정을 맺으면서부터 정부입장의 강압 정책이 있어 언론에 회자되는 것을 정부의 의도 하에 제한한 때문이다. 군사정권과 IMF의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면서 이제는 일본의 경제 간섭에서 많이 자유로워졌다라고 하는

정치가들의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독도관련 주제의 보도를 비교적 자유롭게 기사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독도관련주제에 관한 언론들의 보도는 처음의 제한적인 상황에서, 국민정서에 편승하는 방향으로 선회되었다가, 오히려 오늘날에는 국민정서를 부추기어 정치적 인기를 만회하려는 선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다.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많은 사건 · 사고 · 행사 및 경향들은 특정집단은 좋아하고 다른 집단은 싫어하며, 한 특정집단은 이해관계가 깊고, 다른 집단 이해관계가 없어 무관심할 수 있다. 그러나 독도관련주제는 비교적 전 국민이 관심도 많고, 각자가 개인적 · 집단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며, 더 나아가 이 주제에 편승함으로써 소속감을 느끼고 위로받기 원하는 대상이 되는 주제이다. 쉽게 애국주의에 호소가 가능하며, 감성을 조금만 자극하면, 이성적 논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될 수 있는 그런 주제인 것이다. 유럽의 세계 제 1차 대전과 2차 대전 전의 민족주의, 애국주의, 영토문제를 회상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 주제이다. 약소국인 시절에는 부추기기 어려운 주제이다.

우리 국민은 오랫동안 영토문제에 대하여 억눌려 지내온 민족이다. 일본은 독도문제를 오래 전부터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었다. 일본의 정치구조 내부의 사정은 독도문제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월간조선이 인터뷰한 전(前) 일본 방위성 정무관이자 현 중의원 아키히사 의원은 "독도는 한국 땅, 다케시마는 일본 땅. 우리는 절대 다케시마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독도를 주장하는 한국의 정치를 인정한다. 다케시마라는 주제도 일본 정치에서 써 먹을 가치가 있으며, 앞으로 점점 그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와의 인터뷰는 독자로 하여금 기분 나쁘게 만든다. 그러나 곱씹어 볼수록 논제의 핵심 주변에서 경종을 울리고 있다. 좀 더 친절했으면 이 기사를 한국 국민의 입장에서 재해석하고 핵심을 꼭 집어줄 인터뷰나 해설(종합)기사가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든다.

2) 독자와의 상호작용을 위한 언론분야의 과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2011년 7월에 일본의 중의원 3명이 '독도는 일본 땅'을 울릉도에서 외치겠다고 김해공항에 발을 디뎌 매우 의아했으며, 예의없고 불쾌하다는 것보다 무언가 쌩뚱맞다는 느낌을 가졌다고 생각된다. 기관의 보호를 받으며 점잖어야 할 외국의 정치가들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와서 일본 정치가라고 외치면서 천박한 주장과 행동을 하고 돌아간 것이다. 일본 정치가들이 한국을 외교적으로 훨씬 덜 중요하게 취급하던 1900년대 후반에도 그런 행동들을 하지는 않았다. 더구나 우리를 불쾌하게 만드는 이유는 또 있다. 국민의 대다수가 그 해 3월에 벌어진 일본의 쓰나미 피해를 안타까워했고, 일부 성금도 하였다. 아마 역사적으로 일본에 대한 최다의 성금이었을텐데, 그 해 4월에 일본 교과서 검인정 사건과 연이어 발생한 사건치고는 매우 엉뚱하다. 신의에 대한 어긋남을 경험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본질은 일본의 내부 정치가 그만큼 심각하였다는 것이다. 쓰나미는 정치적 책임이 덜 하지만, 원전사고는 정치적 책임이 심각했던 것이고, 탈출구는 국내에 없었으며, 외국 중 사고가 가장 적게 날 나라와 사건은 그들의 다케시마였던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시킨 보도는 매우 드물었다.

한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독도에 관한 문제는 실효적 지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묵묵하게 진행하면 된다. 시끄럽게 보도할 필요도 없다. 일본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사건을 크게 확대할 때마다 실효적 지배방안을 현실화하면 되는 것이다.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 및 방파제 건설, 독도주변 해양조사, 〈강치대왕과 쿠키상자〉 가족뮤지컬 같은 독도주제의 문화화 운동, 아마도 장래의 해저자원조사 및 발굴 등의 실효지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된다. 정권말기 실정을 숨기려는 애국주의 정서 자극 사건들을 대서특필하면서 독도문제의 본질을 강조하지 않는 것은 언론사의 상업주의요, 정치편승이다. 국민의 미래적 이익과 상반되

는 행위라 할 수 있다.

국민들은 각자 생업에 바쁘다. 날마다의 직장 일과 가정 일이 중대하다. 그래서 국민들은 가끔 벗어나기 위해, 때로는 일에도 연관되므로 언론을 접하고, 깊이 생각 않고 보도를 믿고 싶어 한다. 그들에게 진실을 보도해야 한다. 눈에 띄는 제목으로 유혹하여 빙빙 돌려 보도하면 독자들의 본질파악은 저 멀리 가게 된다. 핵심을 간결하게 전달해야 한다.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 과거를 되풀이하는 운명을 피할 수 없다"라고 언론에 주장하였다. 언론이 국민들의 스피커가 되어 줄 독자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할 메시지이다.

6. 맺음말

독도는 이미 한국 땅이다. 빼앗기지만 않으면 된다. 독도(?) 흥분할 필요 전혀 없다. 독도가 아니라도 우리가 태만하고 기득권에 빠져 있었을 때에는 전 국토를 빼앗겼다. 오히려 독도는 우리가 태만했던 과거를, 그 잊기 잘하는 기득권에 빠진 나태했던 역사를, 기억나게 만들고 반성하게 만드는 효자 같은 막내둥이, 아프기 쉬운 새끼발가락이다. 우리나라 국민에게 있어서 영토의 문제는, 인구밀도 면에서나 지난 역사 면에서도 심금을 울리는 대상이다. 우리는 국토에 대한 아쉬움이 많은 민족이다. 그런데 독도문제를 일본이 건드려 줌으로써 오히려 우리에게 자극이 되고 있으며, 날마다의 이기적인 삶에 허덕이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역사의 오류를 되새기게 하여 준다.

우리의 언론들은 독도문제를 넓은 안목으로 보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방향으로 기사를 정리해야 한다. 물론 직접적인 정책은 해당 정권 외교정책의 결과이지만, 국민의 반향과 여론에 영향 받는 정권의 정책은 언론의 영향력 범위 내에 형성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사작성에 갈등

도 없이 애국주의 편향으로 써 내려가고, 적당히 국민들의 정서를 자극하는 식으로 보도를 남발하면, 국민들은 방향을 잃고 또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본에 대한 편견을 가져 경제 · 사회적인 면 뿐 아니라 직접적인 생활에도 제약을 받게 된다.

독도문제를 덮어두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일본은 정말 기회가 되면, 독도 약탈을 시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정치적으로 손해볼 것 하나 없으니까. 미친 척 시도하다 백의 하나 성공하면, 해당 정권의 대박 행운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 정부와 국민과 언론이 문제의 본질을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 언론은 정권이 영토문제를 실정을 가리는데 활용하고 싶은 유혹으로부터, 국민이 독도문제로 인하여 군중심리에 묻여버리고 싶은 유혹으로부터 과감히 돌아설 수 있도록 종용해야 하며, 문제의 본질을 짚어주고, 때마다 발생하는 사건 · 사고에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장기적 안목과 포용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어야 한다. 언론은 각 정권이 독도문제를 정치적 이용보다 국가 장래에 도움이 되도록 정책으로 반영하고, 국민들이 독도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각자의 일상에 매진하도록 배려하는데 시금석이 되어 주어야 한다. 독도가 정권의 인기회복 수단으로 사용되고, 언론사들의 장사 수단으로 활용되고 난 결과는 매우 쓸 수 있다.

【참고문헌】

1. 자료

『뉴스메이커』(January 2011 - December 2011).

『월간조선』(2011년 1월호 - 2011년 12월호).

『월간중앙』(2011년 1월호 - 2011년 12월호).

『한겨레21』(2011. 1. 7. 843호 - 2011. 12. 31. 892호).

『한겨레신문』(2011. 1. 1 - 2011. 12. 31).

『경향신문』(2011. 1. 1 - 2011. 12. 31).

『조선일보』(2011. 1. 1 - 2011. 12. 31).

『주간동아』(2011. 1. 3. 769호 - 2011. 12. 26. 818호).

『중앙일보』(2011. 1. 1 - 2011. 12. 31).

2. 단행본 및 논문

강준만, 『대중매체 이론과 사상』, (서울: 도서출판 개마고원), 2002년.

강철수·윤석년, 「5·18 30주년 언론보도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10/4, 2010년.

김동준, 「한미 FTA 관련 언론보도분석」, 『한국언론정보학회 학술대회』, 2007/4, 2007년.

김병철, 『미디어 글읽기와 글쓰기』,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4년.

김성해·김동윤, 「금융위기와 언론」, 『언론과학연구』. 9/4, 2009년.

김옥조, 『미디어 윤리』, (서울: 케뮤니케이션북스), 2004년.

김원용·이동훈, 「언론보도의 프레임 유형화 연구」, 『한국언론학보』, 49/6, 2005년.

김지윤·성민정, 「위기 이력이 언론의 위기보도에 미치는 영향」, 『광고학연구』. 21/6, 2010년.

김형렬, 『정책학』, (서울: 법문사), 2002년.

김형진, 『현장 취재보도론』, (부산: 금샘 미디어), 2000년.

박병식 외, 『신문, 콘텐츠 제국』, (서울: ㈜나남), 2009년.

박선영, 「한일회담기 한국 언론과 독도 문제」, 『일본연구논총』 제 33호, 2011년

박석흥, 『신뢰와 존경을 받는 언론 -취재 보도의 이론과 실재-』,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9년.

박지동, 『신문학 연구』, (서울: 도서출판 아침), 2000년.

엄주웅, 『경향신문』 2011.08.07.[움부즈만], 2011년.

이종수 외,『정보사회와 매스컴』, (서울: 이진출판사), 1997년.
최서영, 한국의 저널리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2년.
최형민 · 정연수 · 서지훈,『정치권력 언론권력』, (서울: 도서출판 새천년), 2000년.
타카자와 토모미,「한국과 일본신문사의 "독도" 관련 뉴스 프레임 비교 연구」,『한양대학교대학원』, 신문방송학과, 2001년.

< Abstract >

Review and Task of Dokdo Studies in the Field of Journalism in Korea 2011

Sinho Kim

Dokdo is a small island, but a subject of lot more concerns from the Korean people, government, and mass-media than any other island in Korea. During the 2011, lot of news concerning the island has been released from mass-media. Most of the researches were done in areas of history, international politics, and international law, but few was done in journalism area. This study deals with four major daily newspapers, and 3 monthly magazines and 2 weekly magazines. Articles of the mass-media have been analyzed by the issue area, by the report type, and by the report frame. Even though Dokdo is the subject of the international politics, it has been reported in social, cultural areas frequently. Sketch type and straight type of the report were the most frequent types of articles on Dokdo. Mass-media deal with Dokdo issues more frequently than before. But Dokdo issues should not been used as political scape goats to distract people's concern in both of the countries, Korea and Japan. Mass-media need to reveal the core of the Dokdo issue to the people whenever it becomes the national issue rather than to stimulate emotions of the people.

Key Words: a Tok-do article, speech, a territorial problem,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news, national emotion, nationalism

이 논문은 2012년 10월 25일에 투고하여
2012년 12월 5일까지 심사하여
2012년 12월 15일 게재 · 결정됨

SCAPIN 제677호에 관한 한국정부의 견해 검토

김 명 기*

〈목 차〉

1. 머리말
2. SCAPIN 제677호에 관한 한국정부의 견해
3. 영토주권불가양의 원칙 일반
4. SCAPIN 제677호의 내용과 성격
5. SCAPIN 제677호의 효력승인
6. SCAPIN 제677호에 관한 한국정부의 견해 검토
7. 맺음말

〈국문초록〉

1952년 2월 12일자 한국정부의 일본정부에 대한 구술서는 "한국정부는 SCAP이 1946년 1월 29일자 "SCAPIN 제677호"에 의해 독도를 일본의 영유권으로부터 명백히 배제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바이다"라고 진술했다. 1952년 4월 25일자 일본정부의 한국정부에 대한 답변 구술서에서 "위에서 언급된 SCAPIN 제1항에 의하여 일본정부는 리앙끄르도(다케시마)에 대한 정치적 또는 행정적 권한의 행사 또는 행사의 의도를 중지할 것을 지시받았을 뿐이다. SCAP이 일본영토로부터 이 소도의 배제를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교전점령법의 원칙은 점령은 주권을 배제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다. 점령자는 점령 영토에 대해 군사적 권한을 행사할 권한이 부여된다. 그러나 교전자는 평화조약에 의해 그에게 할양되지 아니하는 한 그 때까지 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다. 이 원칙은 학설, 국제판례 그리고 관행에 의해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있다.

SCAP은 "SCAPIN 제677호"에 의해 일본정부에게 리앙끄르도에 대해 정치적 행정적 권한의 행사를 중지시켰을 뿐이다. 따라서 일본영토로부터 리앙끄르도의 *imperium*만이 분리된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정부의 견해는 점령에 관한 국제관습법과 "SCAPIN 제677

*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호"의 규정에 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대일평화조약" 제19조(d)항은 "점령기간 동안 점령당국이 행한 작위와 부작위의 효과를 승인하고, 지령의 결과를 승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의 "지령"에 "SCAPIN 제677호"가 포함됨은 물론이다. 따라서 독도는 "SCAPIN 제677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대일평화조약" 제19조(d)항의 규정에 따라 일본으로부터 분리된 것이다. 그리고 이 법적 효과는 동 조약 제2조(a)항 전단의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의 규정에 따라 한국정부의 수립일인 1948년 8월 15일까지 소급되게 된다. 그러므로 "SCAPIN 제677호"에 의해 분리된 독도의 *imperium*은 "대일평화조약"에 의해 분리된 *dominium*과 일치되게 된다. 독도의 *dominium*은 "SCAPIN 제677호"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일평화조약" 제19조(d)항의 규정에 따라 SCAPIN에 의해 분리된 *imperium*이 동 조약 제2조(a)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소급적인 *dominium*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독도 *dominium*의 분리의 직접적인 근거는 "대일평화조약"이고 간접적인 근거는 "SCAPIN 제677호"라 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독도의 분리근거를 "SCAPIN 제677호"라는 주장에서 "대일평화조약 제19조(d)항"이라는 주장으로 정책 전환을 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SCAPIN 제677호, 대일평화조약, 교전점령, 독도, 영유권, 영역권

1. 머리말

512년 신라의 우산국 정복에 의해 한국은 독도영유권의 역사적 권원을 취득했다. 1900년 10월 25일의 "대한제국칙령 제41호"에 의해 독도영유권의 역사적 권원은 현대 국제법상 권원으로 대체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대체된 새로운 권원은 1910년 "한일합방조약"에 의해 사실상 중단되고 말았다. 다행히 연합국의 일련의 조치로 독도를 포함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분리되게 되었다.

1943년 12월 1일의 "카이로선언"(Cairo Declaration), 이를 수용 확인한 1945년 2월 26일 의 "포츠담선언"(Potsdam Declaration), 이를 수용한 1945년 9월 2일의 "항복문서"(Instrument of Surrender), 1951년 9월 8일의 "대일평화조약"(Treaty of Peace with Japan)의 과정을 거쳐 한국은 연합국에 의

해 일본으로부터 분리되게 되었다.

한국의 분리의 근거와 그 시기에 관해 "항복문서설", "SCAPIN 제677호설", "대일평화조약설" 등으로 학설이 나누어져 있다. 이들 학설은 각기 장단점이 있으나 이 연구는 그 중 "SCAPIN 제677호설"에 관해서만 "대일평화조약설"의 입장에서 검토해 보려는 것이다.

이 연구는 "SCAPIN 제677호"에 의해 독도를 포함한 한국이 분리되었다는 "SCAPIN 제677호설"을 전적으로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SCAPIN 제677호"에 의해 영역권(*imperium*)만이 분리되고 "대일평화조약"에 의해 영유권(*dominium*)이 1948년 8월 15일에 소급적으로 분리되게 되었다는 입장에서 "SCAPIN 제677호설"을 검토해 보려는 것이다.

이 연구는 법실증주의의 입장에 입각한 것이며, 법해석논의 방법론을 따른 것이라는 것을, 즉 *lex lata*적 접근이라는 것을 여기 밝혀 두기로 한다.

이하 "SCAPIN 제677호에 관한 한국정부의 견해", "영토주권불가양의 원칙 일반", "SCAPIN 제677호의 내용과 성격", "SCAPIN 제677호의 효력 승인", "SCAPIN 제677호에 관한 한국정부의 견해 검토" 순으로 논하고, "결론"에서 대 정부당국에 대해 정책대안을 제의하기로 한다.

2. SCAPIN 제677호에 관한 한국정부의 견해

1) 한국정부의 주장

1952년 1월 18일 한국정부가 국무원고시 제14호로 "인접해양에 관한 주권선언"을 통해 독도의 외측에 평화선을 선언 하자 일본정부는 1952년 1월 28일 한국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해왔다.

> 더 나아가 한국은 동 선언에서 다케시마로 알려진(또는 Liancourt Rocks로 알려진) 일본해 내의 소도에 대하여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일본정부는 의문의 여지없이 일본의 영토인 이들 한국정부의 그와 같은 가정 또는 주장을 승인하지 아니한다.[1)]

이와 같은 일본정부의 주장에 대한 한국정부는 1952년 2월 12일 일본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항의를 했다. 이로서 한일간에 독도영유권에 관한 구술서를 통한 외교전이 시작되게 되었다.

> 한국정부는 본 각서에서 수세기동안 한국에서 "독도"로 알려진 리앙끄르 암의 영유권에 관하여 논쟁을 할 의사가 없다. 다만 일본정부에 대하여 SCAP이 1946년 1월 29일 SCAPIN 제677호에 의하여 소도를 일본의 영유권으로부터 명시적으로 배제되었으며 또한 동 소도는 다시 맥아더라인 외측에 놓여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바이다(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does not feel inclined to enter into fill argument, here in this note, over the ownership of Liancourt Rocks, Known an "Dokdo" in Korea through Centuries, and merely wishes to remind the Japanese Government that SCAP, by SCAPIN No.677 dated January 29. 1946. explicitly excluded the islets from the territorial possessions of Japan and that again the same islets have been left outside of the MacArthur Line).[2)]

이것이 한국정부가 최초로 독도영유권이 한국에 귀속된다는 근거로 "SCAPIN 제677호"를 인용한 것이었다. 중요한 것은 위 항의에서 독도는 "SCAPIN 제677호"에 의해 일본의 "영유권으로부터(from the territorial possessions)"배제되었다고 주장한 점이다. 즉 영역권(*imperium*)이 아니라 영유권(*dominium*)이 배제되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

1) The Japanese Government, Note Verbale, January 28, 1952, *para.* 4.

2) The Korea Government, Note Verbale, the Replying note of the Korea Government to The Japanese Government, Feburary 12, 1952, *para.* 4.

3. 영토주권불가양의 원칙 일반

1) 영토주권불가양의 원칙의 의미

점령국은 점령지역의 관할권을 가질 뿐 영토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며 영토주권의 귀속은 평화조약으로 규정되게 된다는 원칙, 즉 전쟁 중 점령영토의 병합은 국제법상 금지된다. 이 점령법(law of belligerent occupation) 상의 원칙을 "영토주권불가양의 원칙"(principle of inalienability of sovereignty)이라 한다.[3)]

2) 영토주권불가양의 원칙의 승인

(1) 학설

① L. Oppenheim

Oppenheim은 점령은 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점령지역은 사실상 점유를 취득하나 법상 권원은 유보된다고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점령은 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점령된 주권은 점령영토의 사실상 점유를 상실하나 법적인 권원은 유보된다. 점령국의 권한에 있어서 주권의 요소는 부존재 한다(the occupation does not effect sovereignty, the displaced sovereign lose possession of the occupied territory *de facto* but it retains title *de jure*. There is not an atom of sovereignty in the authority or the occupying power).[4)]

---

3) Eyal Benvenist, The International Law of Occupation(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p.77.

4) L. Oppenheim, "The Legal Relations between Occupying Powers and the inhabitants" *LQR,* Vol.33, 1977, p.363.

② Gerald von Glahn

Glahn은 군사점령은 점령된 영토의 주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법의 원칙이라고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전쟁의 작전으로부터 귀결되는 군사점령은 점령영토에 대한 주권의 이전을 의미할 수 없고, 따라서 어느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이 영토의 처분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수락된 국가의 현대권리의 원칙이다(It is universally admitted principle of modern right of nations that… a military occupation results from the operation of war may not imply a transfer of sovereignty over the territory occupied and consequently does not involve any right of disposing of this territory to the profit of any one).[5]

③ Hans kelsen

Kelsen은 점령된 영토는 점령국의 영토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며, 이는 일반국제법상의 한 규칙이라고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전쟁의 과정에서 적영토의 단순한 점령에 의해 정복된 영토가 점령교전자의 영토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일반국제법의 한 규칙이다(it is a rule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that by mere occupation of enemy territory in the course of war. The occupied territory does not become territory of the occupying belligerent).[6]

④ George G. Wilson

Wilson은 점령된 영토의 주권은 점령한 국가로 이전하는 것은 아니라고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5) Glahn, *supra* n., pp.31-32.

6) Han Kelsen,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2nd ed.(New York : Holt, 1967), p.193.

점령된 영토의 주권은 점령한 국가에 이전하는 것은 아니다. 전쟁의 안전과 작전을 위해 권한을 행사할 권리뿐인 것이다(The sovereignty of the territory does not pass to the occupying state, but only the right to exercise the authority and operations of war).[7]

⑤ Georg Schwarzenberger and E. D. Brown

Schwarzenberger와 Brown은 점령은 전쟁이 존재하는 기간 동안 일시적인 것이며 영토의 현상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교전점령의 경우 전투의 규칙은 그러한 변화는 전쟁이 존재하고 있을 기간 동안 단순한 일시적인 것으로 취급된다. 그리고 영토적 현상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in case of belligerent occupation, the rules of warfare provide that, such changes are treated as merely temporary while the war exist, and do not affect the territorial *status quo*).[8]

교전점령의 법의 기초규칙은 전시에 있어서 점령된 적의 영토 병합의 금지이다(basic rules of the law of belligerent occupation are the prohibition of war time annexation of occpied enemy territory).[9]

⑥ Michael Bothe

Bothe는 정복자에 의한 정복영토의 병합은 비합법적인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교전점령은 충돌의 최종적 결과가 올 때까지 외국 영토를 지배하는 것이다. 정복된 당사자의 영토를 정복한 당사자가 병합하는 것은 비합법적인 것이다(belligerent occupation of foreign territory. until the final

---

7) G. G. Wilson, International Law, 9th ed.(New York : Silver, 1935), p.276.

8) Georg Schwarzenberger and E.D.Brown, *A Manual of International Law*, 6th ed.(Milton : Professional Books, 1976), p.69.

9) *Ibid.*, p.156.

outcome of a conflict. the annexation of one party's territory conquered by the other party is unlawful).[10]

⑦ Eyal Benvenisti

Benvenist는 평화적 해결이 도달될 때까지 점령은 일시적으로 타국의 영토를 관리할 권한을 갖는데 불과한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타국의 영토주권 내에서 실효적 지배를 행하고 있는 국가는 평화적 해결이 도달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일시적인 관리권만을 갖는다. 그 한정된 기간동안 점령자는 주권을 대신하여 영토를 관리한다(the power exercising effective control within another sovereign's territory has only temporary managerial powers, for the period until a peaceful solution is reached. During that limited period, the occupant administers the territory on behalf of the sovereign).[11]

⑧ David H.Ott

Ott는 점령자는 점령영토의 주권자가 될 수 없고 그 지역을 관리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점령자가 점령지역에 주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껏해야 신탁통치자와 같은 능력으로 그 지역을 행정하는 것이 허용될 뿐이다(it is clear the occupier does not become the sovereign of the occupied territory not is at most only permitted to administer the area in a capacity some what like that of a trustee).[12]

---

10) Micheal Bothe, "Occupation, Belligerent" *EPIL*, Vol. 4, 1982, p.62.

11) Bonvenist, *supra* n.11, p.6.

12) David H. Ott, *Public International Law in the Modern Warld*(London : Pitman, 1987), p.113.

⑨ A. D. McNair

McNair는 교전점령은 영토를 처분하거나 이전 하는 것이 아니며 점령지역을 군사당국이 통제할 뿐이라는 것은 중요한 법의 원칙이라고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교전점령에 따르는 대단히 중요한 법의 원칙은 점령은 주권을 배제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다. 점령자는 점령영토에 대해 군사적 권한을 행사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평화조약에 의해 주권이 점령자에게 양도 되지 아니하는 한 그리고 양도될 때까지 점령자는 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다(The most important principle of law incident to belligerent occupation is that occupation does not displace or transfer sovereignty unless and until it is ceded to him by a treaty of peace).[13]

⑩ H. Lauterpacht

Lauterpacht는 점령자는 점령영토에 대해 일시적인 행정권을 취득하나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점령영토를 병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점령영토불가양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 점령자는 점령영토와 그 영토의 주민에 대해 일시적인 행정권을 취득하나, … 그러나 점령영토에 있어서 점령자의 권리는 단순한 행정권이고 점령자는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점령영토를 병합할 수 없다(the occupant acquires a temporary right of administration over the territory and its inhabitants, … right of an occupant in occupied territory is merely a right of administration, he may not annex it, while the war continues).[14]

교전 점령자는 점령지역에 대해 군사적 관할권을 행사할 뿐 점령지역

---

13) A.D.McNair, "Municipal Effect of Belligerent Occupation", *L Q Rev.* vol.57, 1941, p.35.

14) H. Lauterpacht (ed.), *Oppenheim's International Law*, 7th ed., Vol. 2, (London : Longmans, 1952), pp. 436-37.

의 영토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하며 영토주권의 귀속은 평화조약으로 정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Isagani A. Cvuz,[15] Myres S. Mcdougal and Florention D. Feliciano,[16] Yoram Dinstein[17] 등에 의해서도 지지되고 있다.

(2) 관행

① US, Department of The Army, Law of Land Warfare(1956)

미육군성(The Department of the Army)이 간행한 육군 야전교범(Field Manual)인 육전법(the Law of Land warfare, 1956)은 점령된 영토의 주권이 점령국에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타국과의 전쟁에서 적의 영토의 점유에 기초한 교정점령은 필연적으로 점령된 영토의 주권이 점령국에게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점령은 본질적으로 잠정적인 것이다(belligerent occupation in a foreign war, being base upon the possession of enemy territory necessarily implies that the sovereignty of the occupied territory is not vested in the occupying power. Occupation is essentially provisional).[18]

그리고 동 육전법은 점령국에게 주권의 이전을 의미하지 아니한다고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전쟁의 한 우연한 사건인 군사점령은 침범국에게 점령기간중에 통치권을 행사할 수단을 부여한다. 이는 점령자에게 주권의 이전을 의미하

---

15) Isagani A. Cruz, International Law in the Modern World(London : Pitman, 1987), p.113.

16) Myres S. McDougal and Florention D. Feliciano, *The International Law of War* (New Haven : New Haven Press, 1994), p.744.

17) Yoram Dinstein, The Inernational Law of Belligerent Occupation(Cambridge : CUP, 2009), pp.51-52.

18) US, Department of the Army, *The Law of Land Warfare*, FM 27-10(Washington, D.C: USGPO, 1956), *para*.353.

는 것이 아니며, 주권적 권리의 일부를 행사할 권한과 권력을 의미한다(Being on inclidemt of war, military occupation counter upon the invading force the means of exercising control for the period of occupation. It does not transfer the sovereignty to the occupant, but simple the authority or power to exercise some of the right of sovereignty).[19]

② British War Office, Law of war on Land(1958)

영국 전쟁국(war office)이 간행한 군법교범(Manual of Military Law) 제3부인 육전법(Law of war on Land)는 전쟁기간 중에 점령영토에 대한 병합은 위법한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전쟁기간 중 적의 영토의 점령은 영토의 병합을 통한 정복과 완전히 구별된다. 적에 의한 점령기간 중 합법적인 정부의 주권은 완전히 구별된다. 적에 의한 점령기간 중 합법적인 정부의 주권을 일시적으로 잠복된 것이고 행사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권의 존재가 계속되는 것이고 점령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전쟁이 계속되는 한 점령자가 점령영토를 병합하는 것은 비합법적인 것이다(the occupation of enemy territory during war a condition entirely different from subjugation through annexation of the territory. During the occupation by the enemy the sovereignty of the legitimate Government of the territory is temporarily latent and is not exercised, but it continues to exist and in no way passes to the occupant. It is unlawful for him to annex the occupied territory so long as the war confines).[20]

(3) 판례

① Thirty Hogsheads of Sugar v. Boyle (1815)

Thirty Hogsheads of Sugar v. Boyle (1815)에서 미대법원은 평화조약이 체결될 때 까지 전쟁 중에 취득된 것은 영구적인 것으로 생각되지 아니한

19) *Ibid*., *para*. 358.

20) British War Office, *Law of War on Land* (London ; HMSO, 1958), paras. 510 ; 512

다고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

> 전쟁 중에 이루어 진 취득은 조약에 의해 확인될 때까지 …적의 영토는 점령자의 영토의 한 부분을 형성하지 아니한다(acquisitions made during war are not considered as permanent until confirmed by treaty.… enemy territory does not form part of the territory of the occupant).[21]

② Ottman Debt Arbitration(1925)

Ottman Debt Arbitration (1925)에서 중재관 Borel을 Ottman 왕국이 패망한 이후 Ottman 공채의 분배에 관해 영토의 점령은 주권양도의 효과를 가져 오지 아니한다고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

> 평화의 재수립 이전의 영토의 점령의 효과가 무엇이든 그러한 점령은 그 자체만으로 주권의 이전을 가져 올 수 없다. 주권의 이전은 이를 규정한 조약의 발효에 의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으로 고려될 수 있다(whatever may be effects of the occupation of a territory by an adversary before the re-establishment of peace, it is certain that such occupation alone cannot operate judicially to transfer sovereignty. The transfer of sovereignty can only considered as judicially effective by the entry into force of the Treaty which provides for it).[22]

③ *Aboitiz & Co. v. Price* (1951)

Aboitiz & Co. v. Price (1951)에서 미국연방지방법원(Federal District Court)은 일본점령당국이 마닐라와 그 주변영토의 점령에 관해 점령은 주권을 이양하지 아니하며 주권의 이양을 위해 평화조약이 요구된다고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

---

21) Quoted in Glahan, *supra* n.13, pp.32-33.

22) UN, *RIAA*, Vol, 1948, pp.554-55.

> 19세기 말 이래 점령은 주권을 이양하지 아니한다. 주권의 이양을 위해서는 평화조약에 의한 할양이 요구된다(since the close of the 19th century, occupation does not transfer sovereignty. To do so regires cession by treaty of peace).[23]

④ *Fubini Claim*(1959)

Fubini Claim(1959)에서 이태리－미국중재위원회(Italian-United States Conciliation)는 전시점령은 점령된 국가의 주권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다음과 같이 결정한 바 있다.

> 전시점령은 확립된 국제법의 한 제도이다. 이는 점령된 국가의 주권의 소멸을 수반하지 아니한다. 점령된 국가의 주권은 적군이 그의 영토의 일부분에 실제로 존재하는 시간동안 오직 미결 상태에 있는 것이다. 점령국은 점령된 국가의 정부를 위해 점령된 국가가 소유한 주권을 대체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wartime occupation is well-defined institution of international law. It does not entail the disappearance of the sovereignty of the occupied state. The sovereignty of the occupied state is only held in suspense during the time when enemy forces are actually present in parts of its territory. occupying power dues not have the right to substitute its own sovereignty for that of the Government of occupied state).[24]

이상의 판정·판결과 동일한 취지의 판정·판결이 *Lighthouse* Case(1934)에 대한 상설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25] *Holio Craims*(1925)에 대한 중재재판소의 판정,[26] *Forest of Central Rhodope*(1933)에 대한 단독 중재관 Uden의 판정,[27] *Lighthouse* Case(1956)에 대한 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28] *Ralli*

---

23) Aboitiz and Price, 99 F Supp 608-610(D.Utah, Cent. Div 1951): M.M.Whiteman, *Digest of International Law*, Vol. 1 (Washington, D.C :USGPO) p.948.

24) UN, *RIAA*, vol.14, 1967, p.420; Schwarzenberger, supra, n.14, p.169.

25) *PCIJ*, Series AB, No.62, 1934, p.25; Schwarzenberger, supra n.14, p.170.

26) UN, *RIAA*, Vol. 6, 1955, p.158.

Brothers v. Germany(1923)에 대한 영·독 중재재판소의 판정[29] 등에서 선고되었다.

4. SCAPIN 제677호의 내용과 성격

1) SCAPIN 제677호의 내용

SCAPIN 제677호는 관할권·행정권, 즉 *imperium*의 분리에 관한 규정이고 *dominium*에 관한 규정이 아님은 그 제목과 각항의 내용으로 보아 명백하다.

(1) SCAPIN 제677호의 제목

"SCAPIN 제677호"의 제목은 "일본으로부터 특정 주변지역의 정치적 행정적 분리(Governmental and Administrative Separation of Certain Outlying Area from Japan)이다.

(가) 이 제목은 일본으로부터 특정 주변지역의 "정치적·행정적" (Governmental and Administrative)인 것으로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치적·행정적"분리란 관할권(jurisdiction)의 분리, 즉 *imperium*의 분리를 의미하며, 영토(territory), 주권(sovereignty) 또는 영토주권(territorial sovereignty) 즉 *dominium*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전쟁 중 교전 점령자는 점령영토의 영토주권(territorial sovereignty)을 취득하지 아니한다는 교전점령법상의 원칙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나) 이 제목은 일본으로부터 분리되는 객체를 지역(area)으로 규정하고

---

27) UN, *RIAA,* Vol. 3, 1949, p.1428.
28) UN, *RIAA*, Vol.12, 1963, p.161.
29) *MAT*, Vol.4, p.45.

있다. 지역은 관할 영역(control sphere), 즉 *imperium* 을 의미하며 영토, 주권 또는 영토주권 즉 *dominium*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이로 전쟁중 교전자는 점령영토의 영토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다는 교전점령법상의 원칙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SCAPIN 제677호"의 제목으로 보아 독도의 *dominium*의 분리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인 것이다.

(2) SCAPIN 제677호 제1항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일본정부는 일본 이외의 어떠한 지역 또는 그 지역의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도 정치적 또는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사를 기도함을 종료할 것을 지령한다(the Imperial Japanese Government is directed to cease exercising or attempting to exeecisie governmental or administrative authority over any area outside of Japan, or any government officials and employees or any other persons within such area).

(가) 동 항은 일본정부가 종료해야 할 대상을 "정치적 행정적 권한"(governmental or administrative authority)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치적 또는 행정적 권한"이란 관할권, 즉 *imperium*을 의미하며 영토, 주권 또는 영토주권, 즉 *dominium*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30] 이는 전쟁중 교전점령자는 점령영토의 영토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다는 교전점령법상의 원칙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나) 동 항은 일본정부가 종료해야 할 대상의 공간적 범위를 "지역"(area)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역은 관할영역(control sphere) 즉 *imperium*을 의미하며 영토, 주권 또는 영토주권, 즉 *dominium*을 뜻하지 아니한다. 이도 전쟁중 교전점령자는 점령영토는 영토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다는 교전점령

30) See *supra* n.3.

법상의 원칙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동 제1항의 규정으로 보아 동 지령에 의해 독도의 *dominium*의 분리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 아니할 수 없다.

(3) SCAPIN 제677호 제2항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이 본부에 의해 인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일본 제국정부는 인가된 일상의 운영인 항행, 통신과 기상 서비스는 이 외의 어떠한 다른 목적으로 일본 외부의 정부공무원 고용인 또는 기타 인원과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아니한다(expt as authorized by this Headquarters, the Imperial Japanese Government will not communicate with government officials and employees or with any other persons outside of Japan for any purpose other than the routine operation of authorized shipping, communication and weather services).

동 항은 일본정부의 일본 외부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제한 것으로 일본의 영토의 *imperium* 및 *dominium*과는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것이다.

(4) SCAPIN 제677호 제3항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이 지령에서 일본이라 함은 일본 4대도(북해도, 본주, 구주 및 사국) 및 약 1,000의 인접 제 소도를 포함한다고 정의된다. 상기 인접 제 소도는 대마도 및 북위 30도 이북의 유구(남서)제도(구지도 제외)를 포함하나 다음 제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a)울릉도, 리앙크르 암(죽도), 제주도 (b) …and (c) …(for the purpose of this directive, Japan is defined to include the main islands of Japan (Hockkaido, Honshu, Kyushu and Shikoku) and the approximately 1,000 smaller adjacent islands, including

the Tsushima Island and the Ryukyu(Nansei) Islands north of 30° North Latitude(excluding Kuchinoshima Island); and excluding (a)Utsyo(ullung) Island, Liancourt Rocks(Take Island and Quelpart(Saishin or Cheju Island, (b)… and (c)…)."

(가) 동 항은 정의의 대상을 "일본"(Japan)으로 규정하고, 일본의 영토(territory of Japan), 일본의 주권(sovereignty of Japan) 또는 일본의 영토주권(territorial sovereignty of Japan)으로 즉 일본의 *dominium*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여기 "일본"은 일본의 *imperium*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동 항은 "정의된다"(is defined)라고 규정하고, 영토(territory), 주권(sovereignty) 또는 영토주권(territorial sovereignty)으로 구성된다라고, 즉 영유권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요컨대, 동 제3항의 규정으로 보아 동 지령에 의해 독도의 *dominium*이 분리되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인 것이다.

(5) SCAPIN 제677호 제4항

제4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국주의 일본정부의 정치적 · 행정적 관할권으로부터 특별히 제외되는 그 이상의 지역은 아래와 같다.: (a) 1941년 세계대전의 개시 이래 일본에 의한 위임통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해 탈취되거나 점령된 태평양 제도, (b) 만주, 대만 그리고 페스카르도, (c) 한국, 그리고 (d) 카라프도 (Further areas specially excluded from the governmental and administrative jurisdiction of the Imperial Japanese Government are the following : (a) all pacific islands seized or occupied under mandate or otherwise by Japan since the beginning of the World War in 1964, (b) Manchuria, Formasa and Pescadores, (c) Korea, and (d) Karafuto).

(가) 동 항은 일본정부로부터 제외되는 사항을 "정치적·행정적 관할권"(governmental and administrative jurisdiction)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31] 따라서 주권 또는 영토주권, 즉 *dominium*이 아니라 *imperium*인 것이 명백하다.

(나) 동 항은 일본의 관할권으로부터 제외 되는 관할 영역(control sphere)을 "지역"(areas)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외되는 관할영역은 *imperium*인 것이며, 주권, 영토 또는 영토주권 즉 dominium이 아닌 것이다.

요컨대 동 제4항의 규정으로 보아 동 지령에 의해 독도의 *dominium*이 분리되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인 것이다.

(6) SCAPIN 제677호 제5항

제5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이 지령에 포함된 일본의 정의는 그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지령이 없는 한 또한 본 연합군최고사령부에서 말하는 모든 장차의 지령·각서·명령에 적용된다(nothing in this directive shall be construed as an indication of Allied policy relating to the ultimate determination of the minor islands referred to in Article 8 of the Potsdam Declaration).

(가) 동 규정이 "일본의 정의"(definition of japan)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관해서는 제3항에서 기술한(전술 Ⅱ.4) "일본은 정의된다"의 (가)와 (나)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나) 동 항은 장차 이 "연합군최고사령부"(this Headquarters)로 규정하고 있다. "연합국"(allied powers)이라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연합군최고사령부"라고 규정하는 것은 연합국의 일본점령이 군사점령(military occupation),

---

31) See *supra* n.3

즉 교전점령(belligerent occupation)임을 표시한 것이다. 이는 전쟁 중 교전점령하는 점령지역의 영토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교전점령법상의 원칙의 간접적 표현이라고, 즉 연합군최고사령부가 일본의 영토에 의하여 *imperium*을 행사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본다. 요컨대 동 제5항의 규정으로 보아 동 지령에 의해 독도의 *dominium*이 분리되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인 것이다.

(7) SCAPIN 제677호 제6항

제6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이 지령의 어떠한 것은 포츠담선언 제8항에서 언급된 제 소도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nothing in this directive shall be construed as an indication of Allied policy relating to the ultimate determination of the minor islands referred to in Article 8 of the Postdam Declaration).

(가) 동 항은 이 지령의 어떠한 것도 연합국의 "최종적 결정"(ultimate determination)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최종적 결정은 연합국의 평화조약으로 정해지게 된다고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 지령의 결정은 잠정적인 결정이며 *imperium*에 관한 결정이고, *dominium*은 연합국의 평화조약으로 정해지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는 전쟁 중 교전점령자는 점령영토의 영토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영토주권의 귀속은 평화조약으로 규정되게 된다는 교전점령법상의 준칙을 SCAP은 따른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나) 동 항은 "연합국"의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최종적 결정은 연합국이 정하며, SCAP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인 것이다. 즉 최종적 결정은 SCAP이 다시 정한다는 의미로 보기 어렵다.

(다) 어떠한 조약 · 법률 · 명령 등의 규정도 이를 개정할 수 있다는 특

별규정을 두지 아니해도 그의 제정권자가 개정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므로 이들 규정의 절차상 개정곤란성을 부여하려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한 "개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최종적 결정"을 동 지령의 제정권자인 SCAP의 추후의 결정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요컨대, 동 제6항의 규정으로 보아 동 지령에 의해 독도의 *dominium*이 분리되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인 것이다.

(8) SCAPIN 제677호 제7항

제7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제국주의 일본 정부는 이 지령에 정의된 지역 외의 공술에 관련된 기능을 하는 일본의 모든 정부기관의 보고서를 준비하고 이 본부에 제출한다. 그러한 보고서를 관계 각 기관의 기능, 조직 그리고 인원의 공술을 포함한다(the Imperial Japanese Government will prepare and submit to this Headquarters a report of all governmental agencies in Japan the function of which pertain to area outside a statement as defined in this directive. Such report will include a statement of the functions, organization and personnel of each agencies concerned).

(가) 동 항은 일본정부의 대외적 기능을 통제한 것으로 일본영토의 *iniperium* 또는 *dominium*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규정이다.

(나) 동 항은 이 지령에 의해 정의된 "영역의"(area outside)라고 규정하고 있다. "영역"에 관해서는 제목에서 기술한 (2-1))(나)및 제1항에서 기술한 (2-2))(나)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SCAPIN 제677호의 성격

이상 "SCAPIN 제677호"의 내용에서 고찰해 본 바와 같이 "SCAPIN 제677

호"는 일본의 영토를 점령한 점령국의 군사령관의 전쟁종료전 즉 평화조약 체결전의 점령영토의 행정에 관한 지령이다. 그것은 점령영토의 *dominium*에 관한 지령이 아니라 *imperium*에 관한 지령이다. 이는 "SCAPIN 제677호"의 어느 항에도 점령 영토를 지역(area)으로 표시하고 영토(territory), 주권(sovereignty) 또는 영토주권(territorial sovereignty)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명백하다.

요컨대, "SCAPIN 제677호"는 "영토불가양의 원칙"을 적용한 *imperium*에 관한 지령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5. SCAPIN 제677호의 효력 승인

1) 대일평화조약에 의한 SCAPIN 제677호의 효력 승인

(1) 대일평화조약 제19호 (d)항의 규정

"대일평화조약" 제19조(d)항은 일본은 점령기간 중 점령당국의 지령의 효과를 승인한다고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일본은 점령기간 중에 점령당국의 지령에 의거하거나 또는 그 결과로써 행하여 진 또는 당시의 일본의 법률에 의하여 허가된 모든 작위 또는 부작위로부터 발생한 민사 또는 형사책임은 과하는 여하한 행동은 취하지 아니한다(Japan recognizes the validity of all omissions done durity the period of occupation under or in consequence of directives of the occupation authorities or authorized Japanese law at that time and will take no action subjecting Allied nationals the civil or criminal liabitty out of such dots or omissions).

2) *Uti Possidetis*의 원칙에 의한 SCAPIN 제677호의 효력 승인

(1) *Uti Possidetis*의 원칙의 의의

평화조약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평화조약 체결당시에 있는 현상(*status quo*)대로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은 학설과 국제판례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다. 이 원칙을 "*Uti Possidetis*의 원칙(현상유보의 원칙)"이라 한다.[32]

(2) *Uti Possidetis*의 원칙의 적용

현상유보의 원칙에 의거 1951년 9월 8일 "대일평화조약"이 체결될 당시 1946년 1월 29일 "SCAPIN 제677호"에 의해 독도의 영역권이 분리된 상태대로 독도영유권이 한국에 귀속되게 된다.

"SCAPIN 제677호"에 의해 분리된 것은 독도의 *imperium* 이였으나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이후 한국은 독도의 *dominium*을 취득한 상태이므로 그 상태 그대로 1951년 9월 8일 "*Uti Possidetis*의 원칙"에 의해 한국은 독도의 영유권을 취득한 것이다. 동 원칙은 그곳에 남아 있는 권리(be entitled to remain there)이기[33] 때문이다.

요컨대, "SCAPIN 제677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직접 독도의 일본으로부터 분리된 것이 아니라 "*Uti Possidetis*의 원칙"에 의거 분리되게 된 것이다. "SCAPIN 제677호"는 "*Uti Possidentis*의 원칙"의 적용전제로써의 의미를 갖는다.[34]

---

32) Frank Wooldege, "Uti Possidetis Doctrine," EDIL, Vol.10, 1987, p.519.

33) G. G. Fitzmaurice, "The Judicial Clauses of the Peace Treaties", Recucil des Cours, Vol.73, 1948, p.279; J.G.Starke,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9th ed.(London: Butterworth, 1984), p.545.

34) 이를 "SCAPIN 제677호"의 간접적 효력이라 부른다(이동원, "토론문" 한국독도연구원, 국회독도지킴이, 「한국의 독도 어떻게 지킬 것인가?」, 2011.11.4. 국회도서관)

6. SCAPIN 제677호에 관한 한국정부의 견해 검토

1) 영토불가양의 원칙에 관한 검토

전술한 (Ⅱ)와 같이 한국정부의 1952년 2월 12일자 일본정부에 대한 항의 구술서에서 "SCAPIN이 1946년 1월 29일 SCAPIN 제 677호에 의하여 소도(독도 필자)를 일본의 영유권으로부터(from the territorial possession of Japan) 명시적으로 배제되었으며"라고 주장했다. 즉, *imperium*이 아니라 *dominium*이 일본으로부터 배제되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이는 학설·관행·판례에 의해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있는 영토불가양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2) SCAPIN 제677호의 성격에 의한 검토

전술한 바와 같이 "SCAPIN 제 677호"는 그 제목으로 보나 각 항의 내용으로 보나 *imperium*에 관한 규정이고 *dominium*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SCAPIN 제677호" 제 3항은 *dominium*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imperium*에 관한 규정이므로 일본의 영유권으로부터(from the territorial possession of Japan)라고 주장하는 것은 "SCAPIN 제677호"의 일반적 성격에 반한다.

7. 결론

1) 요약

상술한 바를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하기로 한다.

(1) 점령(occupation)과 교전 점령(belligerent occupation)은 구별된다. 전

자는 영토취득의 한 원인이나, 후자는 영토취득이 한 원인이 아니다.

(2) 전쟁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 교전점령지는 점령지의 영토주권을 취득하지 못하며, 점령지의 귀속은 평화조약으로 정한다는 점령법상의 "영토주권불가양의 원칙"은 학설·판례에 의해 일반적으로 승인되어있다.

(3) 점령자는 점령지의 *imperium*만을 취득하며, *dominium*은 평화조약으로 정하게 된다는 점령법상 원칙은 일반 국제관습법인 것이다.

(4) 따라서 SCAP이 "SCAPIN 제677호"에 의해 일본으로부터 분리한 것은 *imperium*이며 *dominium*이 아니다. 그러므로 "SCAPIN 제677호"에 의해 독도의 영유권이 분리되었다는 주장은 점령법상 원칙에 반하는 것, 즉 국제관습법에 반하는 것이다.

(5) "SCAPIN 제677호"에 어떠한 조항도 정치적 행정적 관할권의 분리에 관한 규정이며, 영토주권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그러므로 "SCAPIN 제677호"에 의해 독도의 영유권이 분리되었다는 주장은 "SCAPIN 제677호"의 규정에 근거가 없는 주장인 것이다

(6) "대일평화조약" 제19조(d)항은 일본은 점령당국이 발한 지령과 그 지령의 결과인 효과를 승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해 "SCAPIN 제677호"의 규정에 의해 분리된 독도의 영역권은 동 조약 제2조(a)항의 "일본은 한국과 독립을 승인하며"라는 규정에 의해 독도의 영유권은 한국에 있는 것으로 되었다. 독도영유권의 직접적인 권원은 "대일평화조약"이며, "SCAPIN 제677호"는 간접적 권원인 것이다.

(7) "*Uti Possidentis*의 원칙"에 따라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의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독도 영유권으로 소급적으로 효력이 인정된다.

2) 정책건의

독도 관계 정책 당국에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제의하기로 한다.

(1) 독도연구학자에게 독도영유권의 권원 연구를 "SCAPIN 제677호"에서 "대일평화조약"으로 전환하도록 적극적 주도적으로 유도한다.

(2) 위 (1)의 연구를 학제연구 콘소시엄을 구성하며 행정적·재정으로 적극 지원한다.

(3) 일본에 대해 독도영유권의 권원이 "SCAPIN 제677호"에 있다는 주장을 "대일평화조약"에 있다는 주장으로 정책전환을 한다.

【참고문헌】

Benvenist, Eyal, *The International Law of Occupation*,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Bothe, Micheal, "Occupation, Belligerent", *EPIL*, Vol.4, 1982.

Cruz, Isagan : *International Law*, Quezon : Phonex Press, 1985.

Glahn, Gerhard, *The Occupation of Enemy Territory* Minneapolis :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57.

Kelsen, Hans,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2nd ed., New York : Holt, 1967.

McDoulgal, Myres S. and Florentino D.Feliciano, *International Law of war*, New Haven, New Haven Press, 1994.

McNair, A.D., "Municipal Effect of Belligerent Occupation", *L.Q.Rev*. Vol.57, 1941.

Ott, David H., *Public International Law in the Modern world*, London : Pitman, 1987.

Schwarzenher, Georg and E.D.Brown, *A Manual of International Law*, 6th ed., Milton : Professional Books, 1976.

Schwarzenher, Georg, *International Law*, Vol.2., London : Stevens, 1968.

UN, RIAA, Vol.1, 1948.

___, RIAA, Vol.2, 1949.

Wright, Q., "The Value of International Law; n Occupied Territory", *AIIL*, Vol.39, 1945.

Yeram, Dinstein, *The International Law of Belligerent Ocuupation*, Cambridge : CUP, 2009.

< Abstract >

An Examination on The Korean Government's Opinion Concerning SCAPIN No.677

Myongkee Kim

The Note Verbals of the Korean Government to Japanese Government dated February 12, 1952, stated that the Korea Government merely wishes that SCAP, by SCAPIN No.677 dated January 29, 1946, explicitly excluded the islets from the territorial possessions of Japan.

The replying Note Verbals of the Japanese Government to the Korea Government dated April 25, 1952, stated that it is hope to be understood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was, by paragraph I of the said SCAPIN, only directed to cease exercising or attempting to exercise governmental or administrative authority over the Liancourt Rocks.

The SCAPIN did not direct the exclusion of the islets from the Japanese territorial possessions. The principle of law to belligerent occupation is that occupation does not displace or transfer sovereignty. The occupation is entitled to exercise military authority over the territory occupied, but he does not acquire sovereignty unless and until it is ceded to him by a treaty of peace. This principle is generally recognized by precedents and scholars views.

SCAPIN No.677, by SCAP only directed to the Japanese Government to cease exercising governmental and administrative authority over Liacourt Rocks. Therefore only *imperium* over Liacourt Rocks was separated from Japanese territory. Therefore it may be said that the Korean Government's

opinion concerning SCAPIN No.677 violated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nd SCAPIN No.677.

However, Article 19(d)of the Peace Treaty with Japan stipulates that Japan recognizes the validity of all acts and omissions done during the period of occupation under or in consequence of directives of the occupation authorities. It is obvious that SCAPIN No.677 is included in the stipulation of "directives" mentioned above Article. Therefore Dokdo was separated from Japanese territory as stipulated in SCAPIN No.677 by the consequence of provisions of the Article 19(d) of the Peace Treaty. And the legal effect of the separation of Dokdo from Japanese territory is retroactive to 15 August, 1948, by the Article 2(a) of the treaty.

In short, Dokdo was separated by the provision of Article 19(d) of the treaty, as provided paragraph 3 of SCAPIN No.677. And the legal effects is retroactive to 15 August, 1948.

Thus the separation of the *imperium* over Dokdo by SCAPIN No.677 was coincided with the separation of *dominium* over Dokdo by the tredy.

Key Words: SCAPIN No.677, Peace Treaty with Jap an, belligerent occupation, Dokdo, *dominium*, *imperium*

이 논문은	2012년 10월 25일에 투고하여
	2012년 12월 5일까지 심사하여
	2012년 12월 15일 게재 · 결정됨

독도자료

『오키도지(隱岐島誌)』의 「제3편 죽도(竹島)」*

송 휘 영**

제1장 위치 및 지세

위치

죽도는 일본해(동해)의 중심에 있는 일군의 암서로써,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0초에 위치하여, 오키국(隱岐國)의 서단에서 떨어지기를 85해리(浬)[1] 사이고항(西鄕港)에서 약 100해리(제2 오키노마루(第二隱岐丸) 실측)의 해상에 있다.

지세 및 면적

본섬은 원래 송도(松島)[2]라는 명칭으로 오키국의 어민들 사이에 알려진 것으로, 외국인은 이를 리앙코르트열암(Liancourt)이라고 불렀으며, 동서 2개의 암서와 수십개의 소암초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서(東嶼)는 해발

---

* 이 자료는 시마네현(島根縣) 오키지청(隱岐支廳)이 1972년에 편찬한 『隱岐島誌(全)』(隱岐支廳編, 名著出版, 昭和47年), 「제3편 죽도(竹島)」의 전문(pp.245-264)을 번역한 것이다. 또한, 이 자료에서 주(註)는 모두 역주임을 밝혀둔다.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연구교수

1) 1리(浬)=1해리(海里)=1852m

2) 다케시마(竹島) 및 마츠시마(松島)는 일본 발음을 따르지 않고, 죽도, 송도라고 하였으며, 기타 명칭은 일본 음독에 준하여 표기하였다. 또한 문헌의 경우, 우리의 음독으로 나타냈다.

226척(尺)[3], 서서(西嶼)는 해발 381척[4]로 돌출하여 해면에 우뚝 솟아 있으며, 두 섬은 불과 3정(町)[5]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그 사이에 관음암(觀音岩)이 있다. 메이지 38년(1905) 8월 당시의 시마네현 지사 마츠나가 다케요시(松永武吉)가 시찰하였을 때 명명함). 조수가 바위를 침식하여 곳곳에 동굴을 만들고, 풍랑이 토양을 씻어내려 산복 아래에는 한 톨의 흙도 남아있지 않다. 바위의 모양도 움직임이 있으면 붕괴할 듯한 상태이다.

연안은 모두 단애절벽으로 이루어져 마치 병풍을 펼쳐놓은 것과 같다. 서서(西嶼)는 특히 험준하여 등반할 수가 없고, 동서(東嶼)는 다소 완만하여 겨우 정상의 일각인 전 해군 망루가 있었던 곳에 등반할 수 있을 따름이다. 그리고 전도 암골(岩骨)이 노출하여 윗부분에 약간 경토(輕土)[6]가 뒤덥혀 있어 잡초가 자라는 이외에 한그루의 수목도 없다. 근해는 수심이 깊어 검푸른 바다가 수 십 길(尋)[7], 해저는 불규칙한 암석으로 되어 선박이 닻을 내리기에 적합하지 않다. 전도에 한 곳의 정박지도 없으므로 하루아침에 풍랑을 만나면 어선조차도 피난할 곳이 없다고 한다.

이 섬은 바위 모양으로 험준하여 정밀한 조사를 할 수가 없다고 하지만, 기존의 측량에 의하면(메이지 39년(1906) 3월, 시마네현청 시찰원의 실측), 동서(東嶼)는 주위 10정(=약1km), 면적은 5정(町)[8] 4단보(反步)[9]이며, 서서(西嶼)는 주위 15정(=약1.5km), 면적 16정 8단보[10]이고, 기타 작은 암초의 면적은 약 1정(町) 1단(反) 3무(畝步)[11]이다.

---

3) 1척(尺)=0.303m. 226척×0.303m=68.5m

4) 381척×0.303m=115.5m

5) 1정(町)=109.09m. 3정×109.09m=330m

6) 모래가 많고 점성이 적은 토양을 의미함.

7) 1심(尋)=1.818m.

8) 면적 단위의 1정(町)=0.9917ha(약 1ha). 단보(反步=段步)는 1정보의 1/10로, 약 10a.

9) 5정(町) 4단보(反步)는 5.4×0.9917ha=5.36ha.

10) 16.8×0.9917ha=16.66ha.

11) 1무(畝)=0.1단(反). 1정(町) 1단(反) 3무(畝步)는 1.13×0.9917ha=1.12ha.

지질

동서(東嶼)는 화산질의 안산암(安山巖)으로 되어 있으며, 중앙은 순전한 분화구를 이룬다. 뚫린 곳을 직하하면 해수에 잠겨있다. 이것은 정말 바다 가운데의 분화구라는 증거이다. 서서(西嶼)도 안산암질의 응탄암(凝炭巖)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 안산암, 현무암의 응탄암으로 이루어진 듯하다.

제2장 기후

온도 및 강우량

절해 무인의 암서(巖嶼)로써 여름철 어렵기 이외에 도항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온도의 고저, 강우량의 다과 등 기상의 정밀조사를 한 자가 없다고는 한다. 그러나 매년 장마철부터 7월경에 이르는 기간, 강치(海驢) 어렵을 위해 도항하는 자의 말에 의하면, 이즈모(出雲)·오키(隱岐)의 연해 지방에 비해 약간 고온인 듯하고, 강우량은 비교적 적지만 짙은 안개 낀 날이 많다고 한다. 메이지 39년(1906) 3월 27일 오전 10시(시찰 당일)의 기온·기압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사카이(境) 측후소	기온 7.2도	기압 768.5mm
하마다(濱田) 측후소	기온 7.9도	기압 767.9mm
죽도(竹島)	기온 8.4도	기압 766.0mm

제3장 생물

동물

본섬은 생목이 없는 무인의 암서로써 육상동물은 아주 희소하지만 해상동물은 비교적 많으며, 강치(海驢)·갈매기(カモメ)·가마우지(鵜)·굴(カキ)·따개비(フヂツボ)·애기삿갓조개(ヨメガサラ)·전복(鮑)·홍합(イガヒ)·따개비(カメノテ)·말미잘(イソギンチャク)·쏨뱅이(カサゴ) 등을 시찰 때 보았고, 또한 출어자의 말에 의하면 큰 쥐(大鼠), 매(鷹)·참새(雀)·흑비둘기(黒鳩)·할미새(カハラスズメ)·고추잠자리(赤蜻蛉)·파리(蠅)·먹파리(蚋)·전갱이(鰺)·날치(飛魚)·가자미(鰈)·옥돔(クヅダヒ)·광어(平目)·새끼방어(鰤の兒)·소라(螺螺)·고둥(螺)·해파리(クラゲ) 등도 서식하고 있다고 한다.

식물

본섬은 바위 덩어리가 노출하여 토양이 불과 상반부를 덮고 있을 뿐이며, 온섬 전체에 한그루의 나무도 없고 잡초가 곳곳에 자라고 있을 뿐이다. 시찰 때 동서(東嶼)의 정상에서 실견한 것은 호장(イタドリ), 꿩의비름(ベンケイソウ), 갯패랭이(ハマナデシコ), 갯씀바귀(ハマニガナ) 등이고, 해조류로는 김·모자반(ホンダハラ)·구라실비아(グラシルービア)·우뭇가사리(テングサ)·고츠노마타(コツノマタ) 등이 있다. 동서(東嶼)의 정상에는 약간 평탄한 토지가 있다. 면적 2~3단보(反步)에 불과하지만 출어자들의 식량으로서 채소류를 재배할 수 있는 듯하다. 시찰원 일행은 기념으로 소나무 묘목 몇 그루를 옮겨심었다.

제4장 어업

조류와 해조

본섬 부근의 조류는 방향이 각각으로 일정하지 않다. 그러나 2~3해리(浬)[12]의 해상에서는 대개 북쪽으로 흐르고, 그 속력은 1일 약 10리(里)[13]이다. 시찰 당일 서서(西嶼)에서 북쪽으로 약 1해리(浬) 떨어진 해상에서 실측한 해수 온도는 다음과 같다.

오전 9시	기온 8도	해수 온도 9도	비중 1,025
정오	기온 8~9도	해수 온도 8도	비중 1,025

해심(海深)은 동서(東嶼)에서 동쪽으로 약 1해리(浬) 떨어진 곳은 27~37길(尋)으로서, 저질(底質)은 조약돌(礫) 또는 불규칙한 암석이 있는 듯하다. 또한 동서의 북안에서 50간(間) 떨어진 곳에 시측(試測)한 결과에 의하면 15길(尋)의 깊이이다. 서서(西嶼)에서 북쪽으로 약 1해리(浬) 떨어진 곳에 35길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해저는 암석인 듯하다.

어초 및 어항

어초(魚礁)는 아직 정밀한 조사를 한 적은 없고, 따라서 이것은 알 수가 없다. 연안은 모두 단애 초립(斷崖峭立)하여 어선이라 하더라도 정박하기에 적합한 곳이 없으므로, 어항이라 부를만한 곳은 없다. 겨우 동서 두섬의 중간에 어선을 들일 수 있기는 하나, 풍파가 치면 아주 위험하다.

---

12) 1리(浬)=1해리(海里)=1.852km.

13) 1리(里)=3.927km.

어획물의 종류

본섬의 근해에 서식하는 해수·어류 및 해조류의 주된 것은

해수(海獸)	강치(海驢), 고래(鯨), 돌고래(真河豚), 참돌고래(シャチ), 흰줄무늬 돌고래(カマイルカ) 등
어류(魚類)	상어(鱶), 정어리(鰮), 고등어(鯖), 오징어(柔魚), 만새기(シイラ), 참다랑어(鮪), 날치(飛魚), 볼락(メバル), 여우볼락(ツヅリ) 등
패류(貝類)	애기삿갓조개(ヨメガサラ), 소라(螺螺), 전복(鮑), 고둥(螺) 종류 등
해조(海藻)	미역(和布), 김(海苔), 모자반(ホンダハラ), 바닷말(スヂモ), 우뭇가사리(石花菜), 파래(アヲサ,) 등

제5장 연혁

구기록에 나타나는 죽도

죽도가 처음 세인들에게 알려진 것은 몇 년 전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오키섬(隱岐島)의 어부들은 오래전에 이 섬을 발견한 것 같다. 그것이 기록으로 나타나는 것은『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가 처음이다. 이 책은 지금으로부터 약 240년 전(간분(寬文) 7년, 1667년) 이즈모 번사(出雲藩士) 사이토(齋藤) 아무개가 편찬한 것으로써 그는 번령(藩令)에 의해 오키를 순무하고 규이 엔고(窮井遠鄕)를 발탁하여 그 여가 때에 노농(老農), 늙은이(遺叟), 낚시꾼(釣夫), 산승(山僧) 의 일화를 수집하여 산촌수곽(山村水郭), 영사고찰(靈社古刹)의 전설을 필기하여 몇 권으로 편집하여 이름을 붙이기를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라고 하였는데 동서의 제1절에,

인슈(隱州)는 북해 가운데에 있어 오키섬이라 부른다……따라서 남쪽으로 35해리를 가면 운슈(雲州) 미호노세키(美保關)에 이르고, 남서로 하쿠슈(伯州)[14] 아카사키우라(赤崎浦)까지 40해리이다. 세키슈(石州) 유노즈(溫泉津)까지는 58해리, 9시에서 12시 방향으로 왕복 가능한 땅이 있는데 서북(戌亥間) 방향으로 2일을 가면 송도(松島)가 있고 또 하루 정도를 가면 죽도(竹島)가 있는데 속에서 말하기를 기죽도(磯竹島)라 부른다. 대나무(竹), 물고기(魚), 강치(海鹿)가 많은데, 추측하건대 이 섬은 신서(神書)에서 말하는 소위 이소타케(五十猛)일 것이다. 이 두 섬은 무인의 섬으로 고려(高麗)를 볼 수 있는데 이즈모(出雲)에서 인슈를 바라보는 것과 같다. 따라서 일본의 영토(乾地)는 이 주로써 경계를 이룬다……운운.

또한 안세이(安政) 6년(1859년) 오오니시 노리야스(大西敎保)가『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를 바탕으로 편찬한『은기고기집(隱岐古記集)』에서는 한층 더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즉,

전략(上略), 섬의 총둘레 16리(島後) 또는 남서(未申)의 방향으로 58해리를 가면 세키슈(石州)[15] 유노즈(溫泉津)에 이르고, 동남(辰巳)의 방향으로 40해리를 가면 하쿠슈(伯州) 아카사키(赤崎)가 있다. 동쪽(卯) 방향으로 몇 백리를 가면 쟈쿠슈(若州)[16] 오바마(小浜)에 이르고 북동(丑寅)의 방향으로 130여해리를 가면 노슈(能州)[17]에 닿는다. 북북서(亥)의 방향으로 40여해리를 가면 송도(松島)가 있다. 둘레 1리 정도로 살아있는 나무가 없는 바위섬이라 한다. 또한 서쪽(酉) 방향으로 70여해리를 가면 죽도(竹島)가 있다. 예로부터 이를 기죽도(磯竹島)라고 한다. 대나무가 무성하여 큰 섬의 이름이 유래하며, 여기서 조선을 바라보면 인슈

14) 호키(伯耆) 혹은 호키노쿠니(伯耆國). 지금의 돗토리현(鳥取縣)의 서부지역.
15) 이와미(石見) 혹은 이와미노쿠니(石見國). 지금의 시마네현(島根縣)의 서부지역.
16) 와카사(若狹) 혹은 와카사노쿠니(若狹國). 지금의 후쿠이현(福井縣) 남부지역으로 영남지방이라고도 함.
17) 노토(能登) 혹은 노토노쿠니(能登國). 노토반도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금의 이시카와현(石川縣)의 북부지역.

(隱州)[18]에서 운슈(雲州)[19]를 보는 것보다 더 가깝다. 지금은 조선인이 와서 살고 있다. 운운.

이상의 두 책은 오키의 어부들의 경험담을 채록한 것으로써 책상 위의 편찬물과는 크게 취지가 다르다. 즉, 오키의 서북 40해리 해상에 송도가 있는데 살아있는 나무가 없는 바위섬이라고 기록하는 것은 명확히 메이지 38년 시마네현 영토로 편입하고 신 죽도라고 하는 것이며, 다음으로 오키에서 서북으로 70여해리 떨어져 죽도(竹島)가 있다고 기록한 것은 대나무숲이 무성한(지금은 대나무숲이 없음) 큰 섬으로, 당시에 이미 조선인이 이주한 사실과 조선을 조망할 수 있다는 것을 보면, 아마도 울릉도를 지칭하는 것이다.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리앙코르트열암인 신 죽도(竹島)라고는 인정될 수 없다. 원래 운백지방(雲伯地方)[20]의 어부가 죽도(竹島)라고 부른 것은 모두 울릉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현재 역시·지리에 어두운 자는 신영토인 죽도를 종래에 불러왔던 수목이 울창한 죽도(울릉도)라고 오해하는 자도 적지 않다.

또한 북변(北邊) 경영에 일생의 심혈을 기울인 곤도 모리시게(近藤守重)[21]가 참담하게 고심한 결과, 각종의 지도를 참작하여 십 수 년의 세월

---

18) 오키(隱岐) 혹은 오키노쿠니(隱岐國). 도젠(島前)의 3개섬과 도고(島後)의 오키노시마(隱岐)에 이르는 오키제도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막부의 직할지였음..

19) 노토(能登) 혹은 노토노쿠니(能登國). 노토반도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금의 이시카와현(石川縣)의 북부지역.

20) 운파쿠지방. 이즈모(出雲), 호우키(伯耆) 지방=시마네현 동부 및 돗토리현 서부를 합쳐서 이르는 말.

21) 곤도 주조(近藤重蔵, 1771-1829)라고도 함. 에도시대 후기의 무사, 탐험가. 메이와(明和) 8년(1771) 2월 21일 태생. 막부의 관료. 간세이 10년(1798) 마츠마에(松前)·에조(蝦夷) 담당관이 되어, 모가미 도쿠나이(最上徳内)의 안내로 쿠릴 열도 등을 답사, 에토로후(択捉) 섬에 「대일본에토로후(大日本恵土呂府)」의 표지를 세웠다. 서적부교(書物奉行), 오사카유미부교(大坂弓奉行) 등을 역임. 장남 도미쿠라(富蔵)가 살인 사건을 일으켰기 때문에, 분세이(文政) 10년(1827) 오미(近江, 지금의 시가현) 오미조번(大溝藩) 위탁이 되었다. 분세이(文政) 12년(1829) 6월 16일 향년 59세로 사망. 저작에 『금은도록(金銀図録)』『순이록(巡夷録)』 등이 있음.

을 거쳐서 완성한 문카(文化) 1년(1804)의 저작『변요분개원고(邊要分界圓考)』를 저술하는데 동서「고정분개도(考定分界圖)」중에 명확하게 일본해 가운데에 송도와 죽도의 두 섬을 기재하고, 울릉도를 죽도라 기록하고 리양코르트 열암은 송도라 기록하였다. 기타『지지제요(地誌提要)』에는

> 세속에서 말하는 후쿠우라(福浦)에서 송도로 이르는 해로 약 69해리, 죽도에 이르는 항로 약 100해리, 조선에 이르는 해로 약 136해리, 운운. 후쿠우라(福浦)는 도고(島後) 서북으로 고카무라(五箇村)의 작은 항구로 조선 방면으로 도항하는 범선의 발착지가 되는 곳이다.

수로지와 죽도

이상 제도(諸島) 어느 것도 울릉도를 죽도(竹島)로 하고 리양코르트 열암을 송도(松島)라 칭하는 것이 명확하다. 그러므로 해군 수로부(海軍水路部)에서 편찬한 수로지(水路誌)는 이를 거꾸로 하여「울릉도 일명 송도」로 기록하고 송도(신 죽도)를 리양쿠르트 열암으로 하여 프랑스 선이 발견했다고 되어 있다. 이는 세인의 오해를 초래하는 원인이다. 참고로 수로지의 기사를 인용한다.

> **리양코르트 열암** : 이 열암은 서기 1849년 프랑스의 선박「리앙코르트」호가 이것을 처음으로 발견하고, 배이름을 따서 리앙코르트열암이라 명명하였다. 그 후 1854년 러시아「프레가트」형 함대인「팔라스」호는 이 열암을「메날라이」및「오리브차」열암이라 불렀으며, 1855년 영국함대「호르넷트」호는 이 열암을 탐험하여「호르넷트」열암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 배의 함장 포르시스의 말에 의하면 이 열암은 북위 37도 14분, 동경 131도 55분의 지점에 있는 2개의 물모의 암초로 이루어져 있고, 새똥이 항상 섬 위에 퇴적하고 이 때문에 섬의 색이 하얗다. 그리고 서북서에서 동남동으로 길이가 약 1해리(浬)[22]이고, 두 섬 사이의 거리 약 2.5케이블(鏈)[23]로써 보는 곳마다 암초가 있어 섬을 연결한다.

○서도는 해면 상 높이 410피트(呎)[24]으로 형태는 사탕탑과 같다. 동도는 비교적 낮고 윗부분이 평평하다. 이 열암 부근의 수심은 아주 깊은 것 같으나 그 위치는 실로 하코다테(函館)를 향하여 일본해를 항해하는 선박의 직수로(直水路)에 해당하므로 아주 위험하다.

리양코르트 암의 측정 : 미합중국 수로부 고시 제43호(메이지 35년(1902) 10월)에 따르면, 미국 군함 「뉴욕」은 일본해(동해)를 항해함에 있어 리양코르트 열암의 위치를 확정하기 위하여 경도 측정을 실시하고 더불어 위도 측정을 실시한 결과, 이 열도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0초

죽도의 발견

그렇지만 이 죽도는 프랑스선 「리양코르트」의 발견보다 183년 앞서, 간분 7년(서기 1667년) 『은주시청합기』에 송도라고 명기한 것을 보면, 이 암서를 일본인이 발견한 것은 그 이전의 일이며, 또한 프랑스선의 발견보다 41년 먼저 분카(文化) 1년(1804년)의 편찬한 「변요분개도고」의 지도에서 송도로 명기되어 있으며, 또한 프랑스선의 발견보다 27년 앞선 분세이(文政) 6년(1823년) 편찬의 『은기고기집(隱岐古記集)』에도 송도라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수로지는 이 암서 발견의 공을 외국 배에 넘기고 돌보지 않았다. 게다가, 한일 양국 연안으로부터의 거리는 일본 쪽이 10리 근거리임에도 해도에는 조선의 부분으로 편입시킨 것처럼 유감스러운 점이 적지 않다.

---

22) 1리(浬)는 바닷길 1리의 단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1해리(海里)=1.852km를 나타냄. 일본은 1872년에 해리 개념을 도입하였음.

23) 케이블(鏈=cable)은 해상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로, 1련(鏈)은 미해군에서는 720피트(약 219m), 영해군에서는 608피트(약 185m).

24) 척(呎)=feet. 일본에서 적용하는 1피트는 30.48cm.

구기록과 죽도의 도해 기사

『죽도고(竹島考)』, 『죽도도설(竹島圖說)』, 『백기민담(伯耆民談)』 등의 제서에서 죽도에 관한 기사는 모두 울릉도의 기사로 되어 있고 신 죽도의 기사는 없다. 원래 우리나라 국민이 죽도(울릉도)를 도항한 것은 게이쵸(慶長, 1596~1615), 겐나(元和, 1615~1624)의 시기부터 구기록에 보이기 시작하고 『백기지(伯耆志)』에는 겐나 3년(1617년)의 도항면허장을 게재하고 있다.

겐나(元和) 3년(1617년) 죽도도해면허장

호키국(伯耆國) 요나고(米子)로부터 죽도에 배로 도항한 적이 있는데 그와 같이 재차 도항하고자 무라카와 이치베에(村川市兵衛)·오오야 진키치(大谷甚吉)가 청해 와서, 장군께 말씀드렸더니 이의(異儀)가 없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 뜻을 받들어 도해의 건을 허락하시길 바랍니다. 삼가 말씀드립니다.

5월 16일

나가이(永井)	시나노노카미(信濃[25]守)	나오마사(尙政)	(인)
이노우에(井上)	가즈에노카미(主計頭)	마사나리(正就)	(인)
도이(土井)	오오이노카미(大炊頭)	도시카츠(利勝)	(인)
사카이(酒井)	우타노카미(雅樂頭)	다다요(忠世)	(인)

마츠타이라 신타로(松平新太郎) 전

마츠타이라 신타로(松平新太郎) 미츠마사(光政)는 당시 돗토리 번주로서 인백(因伯)[26] 2주를 영지로 삼고 있었으며, 이치베에와 신키치 두 사람의 청원을 받아 막부에 부탁하여 죽도도해(竹島渡海)를 허가하였으며, 그 이래로 10수년을 두 사람은 매년 죽도(울릉도)를 도해하여 어업을 경영하

25) 시나노(信濃)는 나가노현(長野縣)의 옛이름.
26) 이나바(因幡)와 호키(伯耆)의 2주를 일컬음.

여 각종의 산물을 수확하여 귀항하였다.

『죽도도설(竹島圖說)』에는

> 겐나(元和) 5년(1619년) 봄 2월 어느 하루, 예년과 같이 요나고를 출항하여 오키국 후쿠우라에 도착하였고, 동 3월 24일 후쿠우라를 출항하여 동 24일 아침 5시에 죽도 내 이카지마라는 곳에 도착하였다. 당시 비로소 외국인이 와서 어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아마 이곳보다 앞쪽은 가보지 않은 곳이다. 운운.

또한 동서(同書)에는

> 겐로쿠(元祿) 6년(1693년) 봄 2월 하순에 다시 요나고를 출항하여 여름 4월 17일 미각(未刻)[27]에 죽도에 도착하였다. 그리하여 작년과 같이 조선인들이 전적으로 어렵을 하여 우리를 방해하였고, 행동을 보인다면 서로 부딪혀 평화롭지 못하므로 어쩔 수 없이 그 중 대장(長子) 1명과 동료(火伴) 2명을 데리고 우리 배에 연행하여 동월 18일 죽도에서 출항하여 동월 28일에 요나고에 귀착하였으며, 그 연유를 태수인 마츠타이라 호키노카미에게 항소하고. 운운.

즉, 겐나의 시기부터 조선인도 죽도(울릉도)에 도항하여 겐로쿠 시기에 이르러서는 점차 이주민이 증가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사람들과 어업구역의 분쟁을 발생시키기에 이른 것 같다.

『백기지(伯耆志)』에도

> 겐로쿠 7년(1694년) 도항을 하니 약간의 조선인이 섬에 있었으며, 그러한 즉 귀항해서 그 내용을 관에 보고(上聞)하였다. 동 8년(1695년) 관명(官命)을 얻어 도항하니 조선인이 이미 섬 안에 가득하였다. 우리의 도항한 자가 그 조선인 두 사람을 체포하여 배로 돌아왔고 그 취지를

27) 오후 2시 전후의 2시간(오후 1시~3시 사이).

관에 알리었다. 이듬 해 관으로부터 우리 요나고는 죽도 도해를 금지하였다. 운운.

태어나면서부터 진취적 기상으로 넘치고 지지 않는 혼을 가진 해국(海國=일본) 남자가 자기가 독점해온 어장을 조선인에게 빼앗기는 것을 보고 분개를 금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조선인 2명을 생포하여 돌아와 소송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도쿠카와 막부는「무사안일(事勿れ)」주의를 취하여 이듬해 겐로쿠 9년 마침내 죽도도해금지를 명령하였다. 그 내용은『지학잡지(地學雜誌)』에서 인용할 수 있다.

지난해에 마츠타이라 신타로, 인백(因伯) 양주의 영주는 하쿠슈(伯州=호키국) 요나고 사람 무라카와 이치베에(村川市兵衛), 오오타니 진키치(大谷甚吉)가 지금 죽도로 나가 어렵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향후 입도하는 것을 금지하라는 분부를 내렸으므로 그 취지를 숙지하여야 한다고 삼가 말씀드립니다.

겐로쿠 9년(1696) 정월 28일 도이 사가미노카미 (인)
도다 야마시로노카미 (인)
아베 붕고노카미 (인)
오오쿠보 가가노카미 (인)

마츠타이라 신타로(松平新太郎) 전

또한 소우(宗) 대마도 태수 요시사토(義卿)의 족보(家譜)에

겐로쿠 9년(1696), 이나바국(因幡國)과 조선국의 사이에 죽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이 섬에 양국 사람이 함께 들어가 뒤섞여 있어 마땅치 않음으로, 조선 사람이 그 섬에 가는 것을 금지해 달라고 하였다. 금년 정월 28일 요시자네(義眞)(소우(宗)씨 21대의 성주)가 에도에서 돌아오시면, 위의 죽도에 일본인이 건너가는 것은 무익한 일이므로 도해를 하지 말라는 것을 요시자네(義眞)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운운.

즉 막부는 죽도어렵권 문제에 대해 쓰시마 태수 소우(宗)씨로 하여금 조선정부에 대한 외교담판을 하도록 개진하였으나, 교묘한 조선의 외교정책에 의해 나약하게도 막부는 무릎을 꿇고 죽도의 어업권을 완전히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그 전말은 게재한『죽도기사(竹島紀事)』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대일본지명사서(大日本地名辭書)』에는『죽도기사』를 인용하여

> 소우씨는 조선을 책망하여 말하기를, 매년 귀국 연해의 어선이 본국 죽도(本國竹島)에 많이 와서 함부로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데, 올봄에 또 다시 그곳에서 40여 명이 고기잡이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이나바주(因幡州)의 주목(州牧)이 그 어민 중에서 두 사람을 억류하여 동도(東都)[28]에 보고(馳啓)하였던 바, 그 보고를 듣고는 귀국의 어민을 금제하라 하여 어민을 돌려보냅니다. 운운.
>
> 그러므로 조선 예조는 이를 강경하게 거절하며 말하기를,「울도(蔚島)는 본래 우리의 속도로, 문적(文跡)도 소연(昭然)하여 그곳과는 멀고 이곳과는 가까우며, 강계(疆界)가 자별(自別)합니다. 귀국이 착각을 하여 일이 발생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우리 막부(幕府)는 마침내 굴하여 죽도도해를 금지하였다. 실로 겐로쿠 12년(1699)의 일이다. 운운.

죽도 도해금지와 밀항

이래로 막부는 죽도(울릉도) 도해를 엄금하였는데도 그 지방의 어민들이 누누이 밀항을 시도하여 횡재를 하는 자가 적지 않았다. 가토(加藤) 아무개가 기록한『관청수필(觀聽隨筆)』에 교호(享保) 8년(1723년) 6월, 세키슈(石州) 아노군(安濃郡) 나미네히가시무라(波根東村) 가에몽(嘉右衛門) 등 수명을 죽도 도해의 죄를 물어 오오사카마치부교(大阪町奉行)인 기타죠 아와노카미(北條安房守)[29]의 손에 의해 채포하였다는 기사가 있으며,

---

28) 에도(江戶) 막부를 가리킴.

29) 여기서 아와노(安房)는 보슈(房州)라고도 함. 현재 치바현(千葉縣)의 남부 지역인 보소반도(房總半島) 끝에 있었던 율령국가.

또한 동서에 세키슈 하마다(濱田) 해안에 돌아다니는 회선업자 아이즈야 하치에몽(會津屋八右衛門)[30]의 죽도 밀항은 사건을 몹시 중대히 여겨, 막부의 감시인의 탐지에 걸려 덴포(天保) 6년(1835년) 5월 오오사카마치부교의 손에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고, 동시에 하마다번(濱田藩)의 가로(家老)인 오카다 다노보(岡田賴母)는 하치에몽(八右衛門)과 공모의 혐의로 자살하였고, 하마다 번주(濱田藩主)인 마츠타이라 스호 태수(松平周防守)에게는 영내 관리부실의 혐의로 장기 칩거 명령이 내려졌다.

이어 막부는 전국에 명령을 내려

> 이번 마츠타이라 스오노카미(松平周防守) 영지에서 무숙자인 하치에몽(八右衛門)이 죽도에 도항한 일건은 검토한 다음, 각기 그 섬에 가는 자는 엄벌에 처하며 오랜 옛날에는 하쿠슈(伯州) 요나고(米子)의 사람이 도해하여 어렵 등을 하였지만, 겐로쿠(元祿)[31] 시기에 조선국에 건네준 이후에는 도해 정지가 명해진 곳입니다. 모든 이국도해의 건은 외국도해를 엄중히 금지하는 바, 향후 이 섬에 대해도 동일하게 주의하여 도해하지 말 것.

메이지 16년(1883)에 이르러서는 더욱이 한일 양국 정부의 담판이 있었으며, 우리 왕래하는 배를 돌아오게 하고 재차 도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는데, 명확히 죽도(울릉도)는 조선의 소속인 것이다.

송도, 죽도의 명칭 전도

이상 죽도(竹島)라고 칭하는 것은 울릉도이고, 울릉도를 송도(松島)라고 칭하는 것은 일찍이 구기록에서 보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군 수로부의『조선수로지(朝鮮水路誌)』및 해도(海圖)에「울릉도 일명 죽도」로

---

30) 아이즈야 하치에몽(會津屋八右衛門)을 일컫는 것으로, 최근의 연구에서 하치에몽의 정확한 이름은 이마즈야 하치에몽(今津屋八右衛門)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즉, 아이즈(會津), 아이즈야(會津屋) 등은 전사과정에서 생겨난 오류이다.

31) 1688~1704년.

오전된 이래 송도·죽도의 명칭을 혼동하기에 이르렀다. 게다가 두 섬은 함께 절해의 고도로써 학자로 이를 답사하는 자는 없고, 배우지 못한 어부의 말을 듣고 상상으로 일본해(=동해) 가운데 송도·죽도의 두 섬이 있다는 추측에 의해, 리앙코트암초는 구기록의 죽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되었다. 죽도(竹島)는 겐로쿠(元祿) 이래 조선의 소속으로 결정한 바, 리앙쿠르트암초는 조선의 영역으로 집어넣어 해도에 표기하기에 이르렀다.

죽도의 영토편입

메이지 37(1904년)년 사이고쵸(西鄕町)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가 리앙쿠르트암의 강치 포획사업을 경영하여, 동 섬의 일본영토 편입 및 대여원을 내무, 외무, 농상무성의 3 대신에게 제출하여 마침내 각의를 거쳐 이듬해 메이지 38년(1905년)을 2월에 리앙쿠르트 열암을 일본영토로 편입하여 죽도로 명명하게 되었다.

> 메이지 36년 하쿠슈(伯州) 도하쿠군(東伯郡) 고가모촌(小鴨村) 나카이 요자부로(현재는 사이고쵸(西鄕))는 리양코섬 강치잡이를 기도하여 동향인 오바라(小原) 아무개와 시마타니(島谷) 아무개 등과 길이 4간(間)[32]의 어선에 올라타고 일본해의 거친 파도를 헤치면서 리양코섬에 상륙하여 처음으로 일장기를 바위 위에 펄럭이게 한 것은 메이지 36년 5월 모일의 일이다. 가끔 도젠(島前)의 이시바시(石橋) 아무개의 부하인 어부도 도항하였는데 준비가 불완전하였으므로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하였다.
>
> 그리하여 강치업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이듬해인 메이지 37년(1904)의 어기에는 각지에서 어업인이 도항을 하여 경쟁 남획이 된 결과, 여러 가지의 폐해를 인정하여 요자부로는 리양코섬을 조선의 영토라고 믿고 조선정부에 대여청원을 하기로 결심하였으며, 37년의 어기가 끝나고서 곧바로 상경하여 오키 출신인 농상무성 수산국 직원 후지타

32) 1간(間)=1.8182m

간타로(藤前勘太郎)에게 부탁하여 마키(牧) 수산국장을 면회하여 진술하게 된다. 마키 국장도 또한 이것을 찬동하여 해군 수로부로 가서 특히 한일 양국 본국으로부터의 거리를 측정한바, 일본 쪽에 10리 정도가 가까웠다. 더구나 일본인으로서는 동 섬 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이상, 일본영토로 편입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설명을 듣고 마침내 마음의 결정을 하여 리양코섬 영토편입 및 대여원을 내무, 외무, 농상무의 3대신에게 제출하게 되었다.

리양코섬 영토편입 및 대여원

오키(隱岐) 열도의 서쪽 85해리, 조선 울릉도의 동남 55해리의 절해에 흔히 라양코섬이라 부르는 무인도가 있습니다. 주위 각각 약 15정(町) 정도 되는 갑을 두개의 바위섬은 중앙으로 대립해 하나의 해협을 이룬다. 대소 수십의 암초가 흩어져 점재하고 이 섬을 둘러싸고 있다.

중앙의 두 섬은 사면이 단암절벽(斷岩絕壁)을 이루어 높이 치솟아있다. 그 정상에는 약간의 토양을 덮은 잡초가 여기에 자라고 있을 뿐, 섬 전체에 한 그루의 수목도 없다.

해변만곡(海邊彎曲)인 곳은 자갈로 왕왕 바닷가를 이루고 있으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장소는 갑 섬(동도)의 해협에 면하는 부분에 불과 1개소가 있을 뿐이다. 갑 섬 중복 오목한 곳에 물웅덩이(潴水)가 있는데 다갈색을 띤다. 을 섬(서도)에는 미미한 염분을 포함한 청렬의 물이 단안에서 물방울로 떨어진다. 선박은 해협을 중심으로 하여 풍위(風位)에 따라 왼쪽 오른쪽으로 피해 정박을 하면 안전이 유지할 수 있다.

이 섬은 일본에서 오키(隱岐)열도 및 울릉도를 거쳐 조선의 강원, 함경지방으로 왕복하는 선박의 항로에 해당한다. 만약 이 섬을 경영하는 사람이 있어 이곳에 상주하게 된다면 이들 선박이 정박하고 땔나무, 물, 식량 등이 부족할 경우 결핍을 보완하는 등, 여러 가지의 편의가 발생한다. 지금 잠시 순조롭게 성운으로 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강원, 함경 지방에 대한 어업무역의 이익을 더해 주는 점이 많으므로 이 섬 경영이 앞날에 가장 필요로 할 것이다.

이 섬은 이와 같이 절해(絕海)에 우뚝 솟은 조그마한 바위섬에 불과하지만 종래에 돌보는 사람도 없고 완전히 내버려두고 있다. 그런 까닭에 저희들이 울릉도 왕복 도중에 이 섬에 정박하여 강치가 많이 서식하

고 있는 것을 보고 방치 상태에 유감을 금할 길 없다. 따라서 그 이후 여러 가지 고심하여 계획한 다음, 메이지 36년(1904년)에 이르러 단연코 결심을 하여 자본을 투자해 어사를 짓고 인부를 옮겨 어구(漁具)를 갖추어 앞서 강치잡이에 착수하였다.

당시 세인은 무모한 짓이라 하여 크게 비웃었으나, 원래부터 절해의 불편한 무인도에서 신규의 사업을 시도하게 되면 계획 어긋나 설비를 잃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잡는 방법과 가공방법이 분명하지 않고 용도와 판로 또한 불확실하다. 허다한 자본을 헛되이 잃어버리고 많은 쓴맛을 경험한 결과 올해에 잡는 방법과 가공방법을 발명하게 되었으며 판로 또한 개척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가죽을 소금으로 절이면 쇠가죽 대용으로서 용도가 아주 많으며 신선한 지방(脂肪)으로부터 채취하는 기름은 품질 가격 모두 고래기름(鯨油)에 뒤떨어지지 않고, 그 찌꺼기는 충분히 짜면 아교의 원료가 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고기는 가루로 만들면 뼈와 함께 귀중한 비료가 된다는 것 등도 확인하였다.

즉 이 섬의 강치잡이는 아주 유망하다. 그리고 강치잡이 이외 이 섬에서 일으킬 사업으로 육산(陸産)은 도저히 전망이 없고 해산(海産)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았으므로 확언을 하기 어렵다. 그러나 일본해(동해)의 요충지에 해당하므로 이 섬 부근에 여러 가지의 물고기가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으므로 이 섬의 강치 어업으로 지속하는 일을 얻는다면 따라서 이로써 시험조사의 편의와 기회를 얻어 장래에 유리 유망한 사업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말하자면 이 섬의 경영은 자본을 충실히 갖추고 설비를 완전하게 하면 강치를 포획하는 일에 앞길이 아주 유망할 것이다.

그러나 이 섬의 영토 소속이 결정되지 않는다면 훗날 외국의 방해(故障)에 조우하는 등 예측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확실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되어 이 섬 경영에 자금을 투입하고도 위험한 일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이 섬의 강치가 항상 서식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번식(生殖)을 위해 그 계절인 4~5월(해에 따라 조금 늦거나 빠르기도 함)에 와서 번식이 끝나는 7~8월 무렵 이산하게 된다.

따라서 그 어업은 기 기간에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히 강치잡이를 적당히 제한해서 번식은 적당히 보호하지 않으면 구축진멸(驅逐盡滅) 하여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제한 보호 등의 일은 경쟁을 하는 동안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므로 사람의 이익 추구는 개미가 달콤함에 붙는 것과 같이 세인은 실로 이 섬의 강치어업이 유리하다는 것을 엿듣게 되면 당초 우리들을 비웃던 사람조차 줄을 서서 많이 경쟁 남획을 나타내게 되고, 즉시 이득원을 멸종시켜 결국 함께 도산에 이를 것은 필연이 드러난다.

저희들은 전술한 바와 같이 종래 많은 고심의 결과 이 섬의 강치어업이 개략의 전망이 생기면 지금 더욱더 자금을 늘여 한편으로는 포획해야 할 크기, 개체수 등을 제하할 것, 암컷과 유아는 특히 보호를 강화할 것, 섬 내 적당한 몇 곳에 금렵 구역을 설정할 것, 강치의 해적(害敵)인 범고래, 상어 등을 포획 구축(驅逐)할 것 등 여러 가지 적절한 보호를 실시하고, 한편으로는 포획 제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교한 기계를 갖추고 장치를 설치하는 등 설비를 완전하게 해야 한다. 동시에 어구를 갖추어 다른 수족 어로를 시도하는 등 크게 경영할 곳이 많다고 의욕을 가지지만, 전술한 바와 같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좌절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것은 단지 저희들 한 몸의 재액(災厄)일 뿐만 아니라 또한 국가의 불이익이라고도 생각된다.

나아가서는 사업의 안전과 이득원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이로써 이 섬의 경영을 완수하고자 하므로 부디 조속히 이 섬을 우리나라(일본)의 영토로 편입이 되어 이와 동시에 향후 10개년 저희에게 대여해 주시기를 별지 도면을 첨부하여 이번에 봉원(奉願)하는 바이다.

메이지 37년(1904) 9월 29일

시마네현(島根県) 스키군(周吉郡) 사이고쵸(西郷町) 오아자(大字)
니시마치(西町) 아자(字) 사시무코(指向)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

내무대신(内務大臣) 자작(子爵) 요시카와 아키마사(芳川顯正) 전
외무대신(外務大臣) 남작(男爵) 고무라 고토타로(小村寿太郎) 전
농상무대신(農商務大臣) 남작(男爵) 기요우라 게이고(清浦圭吾) 전

그리하여 요자부로(養三郎)는 내무성 지방국에 출두하여 이노우에(井

上) 서기관에게 사정을 진술하고 또한 고향 출신(도하쿠군(東伯郡))인 법학박사 구와타(桑田) 귀족원 의원의 소개로 외무성에 출두하였고, 야마쟈(山座) 정무국장에게 이를 상의하여 구와타씨 또한 크게 힘을 얻게 되어 드디어 시마네현청의 의견을 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시마네 현청에서는 오키도청의 의견을 물어 정부에 상신한 결과, 마침내 각의로써 영토편입을 결정하여 리양코섬을 죽도로 명명하기에 이르렀다.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북위 37도 7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오키섬에서 떨어지기를 서북으로 85해리에 있는 도서를 죽도라 칭하고 지금 본현 소속 도사의 소관으로 결정한다.

메이지 38년(1905) 2월 22일

시마네현 지사 마츠나가 다케요시(松永武吉)

시마네현서 제 11호

오키도청(隱岐島廳)

북위 37도 7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오키섬에서 떨어지기를 서북으로 85해리에 있는 도서를 죽도라 칭하고 지금 본현 소속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이 점을 명심할 것..

메이지 38년 2월 22일

시마네현 지사 마츠나가 다케요시(松永武吉)

죽도의 영토편입

죽도로 명명한 사정은 전술한 바와 같다. 그리고 영토편입은 지위상으로 보아도 경영상으로 보아도 또한 역사상으로 논의하더라도 공연히 우리 영토로 편입해야하는 것으로 한 점의 의의를 개재할 여지를 갖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

다음으로 명명(命名)에 대해서는 수로지 및 해도 가운데 이미 울릉도를 송도로 명명한 이상 죽도에 해당하는 도서는 리양코섬 외에 달리 찾을 수 없으며, 따라서 죽도로 명명하게 된 것이다. 단 이것에 의문 사항이 있으면, 수로부에서 어떠한 자료에 의해서라도 「울릉도 일명 송도」라 명명하고 있다. 만일 예전 호칭에 따라 「울릉도 일명 죽도」라고 기재하지 않은 것은 리양코섬은 구 명칭에 의해 송도라고 명명해야 하나 도명 전도(顚倒)의 불편함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신 죽도와 일본해 해전

이 섬을 일본영토로 편입하고 나서 불과 몇 개월 만에 세계의 전쟁사에 일대 광채를 남기게 되는 일본해 대해전이 동섬 부근에서 일어났으며 죽도란 이름이 세계에 선전되기에 이르렀다.

> 연합함대의 주력 부대는 27일 이래 적에 대해 추격을 속행하였고, 28일에는 리양코르트열암 부근에서 적함 니콜라이 제1세(전함) 아리요르(전함) 세니야빈(장갑해방함), 아브라키신(장갑해방함)의 4척은 잠깐 사이에 항복하게 되어…… 운운.
> (메이지 38년(1905) 월 29일 오전 전보 도착, 도고(東鄕)[33] 사령장관 공보 제3)

> 이상 생략. 오전 10시 30분 경 죽도 남쪽 약 18해리의 지점에서 적을 포위하였다. 적은 전함 니콜라이 1세, 아리요르, 해방함 아브라키신, 세니야빈 및 순양함 이즈무르드의 5척으로 하여 …… 포화를 열자 순식간에 적함대 사령관 네보카토프 소장은 그 부하와 함께 항복을 표시하였고, 본인은 특히 장교 이상에 대해 대검 소지만 허락하여 항복을 수락하였다…… 운운.
> (메이지 37년(1904년) 6월 1일, 도고(東鄕) 사령장관 일본해 해전 상보)

33) 도고 헤이하치로(東鄕平八郎), 1848~1934.

제6장 죽도의 탐험

죽도를 시마네현 영토로 편입하자 메이지 39년(1906) 3월 하순 시마네현 사무관 진자이 요시타로(神西由太郎), 오키도사 히가시 분스케(東文輔) 이하 일행 45명은 사이고항을 출발하여 죽도 탐험의 길에 올랐다. 지금 그 개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죽도도항일지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메이지 39년(1906) 3월 27일 밤새도록 일본해(동해)의 파도에 흔들리면서도 어느새 잠에 빠져 있었다. 「죽도가 보인다. 죽도가 보인다」라는 목소리에 놀라 갑판에 올라보니, 태양은 벌써 동쪽 하늘에 솟아올라 있고 죽도의 큰 섬은 바로 눈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순식간에 범고래(돌고래 종류) 3마리가 뱃머리를 스치고 달려가며 수차례 등을 보였다. 수많은 갈매기가 파도 위에 난무하고, 수천마리의 강치(海驢)가 바위머리에 군집하여 울부짖는 울음이 괴물의 비명과 같았다. 응응거리며 우는 것이 수천 미터 밖으로까지 들렸다. 옛날 노인의 말에 「이 섬에는 이상한 동물 살아 기이한 소리를 내니 접근하지 말라」고 전하는 것은 아마 이 강치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돌출한 두 바위가 바다 위로 수백 척 우뚝 솟아 단애절벽을 이루고 있고, 차가운 조수가 암각을 침식하여 곳곳에 동굴을 만들고 수십 개의 암초가 그 부근에 나열해 있다. 수심은 깊고 수 정(町)[34] 떨어진 부근에 배를 대기는 하였으나, 해저가 좋지 않아 닻을 내릴 수가 없었다. 이날 해상이 평온하여 지자 바로 작은 배(短艇)를 내리고, 진자이(神西) 사무관은 어부 한 무리를 태우고 서서(西嶼)에 상륙하였고, 이어서 우리 일행이 상륙하였다. 봄날 새벽 잠을 자려고 하는 강치 무리가 일행이 온 것에 놀라 여기저기 바위 위에서 굴러 물속으로 잠입하더니, 순식간에 수백 마리가 바다 위로 머리를 내밀었다. 어부는 동굴 입구에 자망(刺網)을 쳐서 잠깐 동안에 몇 마리를 잡았다. 아 물개들이 일본해(동해)의 낙원으로 삼아 몇 백년간 점유해왔는데, 이 거대한 바위에도 문명의 조류가 도도히 침입하여 그 낙토(樂土)를 빼앗는다. 한발의 총성이 바위

34) 1정(町)=109.09m. 1정(町)=60간(間)=360척(尺)

모서리에 울리자 뚝뚝 떨어지는 선혈이 파도를 붉게 물들이고, 시체는 파도 위로 떠올랐다. 게다가 감각이 둔한 그들은 그 참상을 전혀 모르는 듯, 수십 또는 수백 마리가 머리를 수면으로 내밀고 있는 모습은 오히려 불쌍하기 그지없었다.

서서(西嶼)의 조사를 마치고 동서(東嶼)로 건너갔다. 바위 위에는 수백 마리의 강치가 아직 잠을 깨지 않고 있었다. 어부가 노를 집어 들고 일격을 가하니, 6척의 강치가 피를 흘렸다. 그 때문에 노가 부러졌다. 그리고 다른 강치는 여전히 수면을 취하는 듯하였다. 두 섬이 마주하고 있는 곳에 조금 넓은 자갈밭 지대가 있다. 그 부근에 죽도어렵회사의 움막집 2동이 있다. 그곳에서부터 바위 모퉁이를 따라 사다리에 매달려 절벽을 오르고, 험한 바위를 건너서 오르는 위험은 말할 나위가 없다. 대부분은 중복에서 돌아갔다. 정상에 도달한 것은 진자이(神西) 사무관, 히가시(東) 오키도사 이하 8명밖에 없었다. 정상에 서서 두 눈으로 바라보니 바다와 하늘이 끝없이 펼쳐진다. 회고해보면, 작년(1905년) 5월 28일 우리 연합함대는 러시아의 함대를 이 섬의 남쪽 약 18해리(浬)의 해상에서 요격하여 적의 사령관 네보카토프 제독이 이끄는 함대 전체를 항복시킨 곳이다. 포성이 천지를 진동하고, 화약 연기과 폭탄 연기가 해면을 뒤덮고 바다가 거세고 교룡(蛟龍)은 노하듯 큰 파도가 솟구치어 고래를 삼킬 듯한 상황에도 태연자약하던 도고(東鄕) 제독의 모습도 떠올랐다. 서쪽 아득히 엷은 안개 사이로 보이는 것은 울릉도가 아닌가. 러시아 함대 사령장관 로젠스트로벤스키 제독을 생포한 곳은 저쪽이었지. 장대한 관경을 보고 있자니 하늘과 바다는 넓디넓고 심신은 이미 속세를 떠난 듯했다. 각자 기념으로 소나무를 식재하고 내려왔다. 한걸음 잘못 디디면 천길(千仞) 낭떠러지로 떨어져 분쇄됨을 면할 길 없다. 전전긍긍하며 등에 식은땀을 흘렸다. 이하 생략. (오쿠하라 헤키운(奥原碧雲) 기록)

서 평

영원한 독도인 최종덕

(김호동 편저, 『영원한 독도인 최종덕』 경인문화사, 2012)

김 수 희*

1. 최종덕,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의 상징

이 책은 독도어장에 거주한 어민 최종덕의 삶을 기록한 것이다. 어민 최종덕은 최초로 독도에 거주하면서 어업활동을 하였고 삶을 마감하기까지 독도어장에서 거주한 어민이었다. 최종덕(1925~1987)은 1964년에 독도에 첫 입도를 한 이후 미역, 전복, 소라 등을 채취하였고 양식 사업을 위해 해안에 세 채의 살림집을 지었다. 생전에 그는 서도 꼭대기에 자신의 묘터를 파놓고 독도에 영원히 잠들기 원했던 사람이었다.

저자 김호동은 독도에서 22년간 거주한 최종덕의 삶을 객관적으로 기록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이유는 최종덕의 독도에서의 삶이 한일 양국간 영유권 분쟁 즉, 독도에 거주한 어민의 어업적 활동이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를 뒷받침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제성호씨의 논문 「최종덕씨의 독도 거주와 한국 실효 지배」를 인용하며 최종덕의 삶을 다음과 같이 의미를 부여하였다.

첫째, 최종덕씨의 일가의 주민등록 신청과 이에 대한 정부의 허가 및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연구교수

주민등록 조치는 대한민국 정부의 대인주권 행사를 의미한다. 이 같은 대인주권행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부와 시민의 협력적 활동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데 두 말할 것도 없이 최종덕씨의 독도 이주 및 거주로 인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주거지 정비와 식수 확보, 그리고 선착장 건설, 계단공사, 물골샘 공사, 해산물 채취 및 양식사업 등의 활동은 주로 최종덕씨가 독자적으로 판단해 행한 것이었지만, 여기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사전 승인 내지 사후 추인 등 국가의 관여가 있었다. 이 점에서 상기 활동은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로 귀결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전술한 바와 같이 실효적 지배는 평온성, 공연성, 실제성, 충분성, 계속성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최종덕씨 일가의 독도 거주 및 관련 내용은 대한민국의 독도 지배와 관련지워 볼 때 그 자체 공연성과 실제성을 충족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충분성 요건의 확대 및 계속성 유지에 이바지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 강화 및 확장 노력에 기여한 행위라고 할 만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최종덕씨 일가의 독도 거주와 주민등록은 하나의 선례가 되어 이후 유사한 후속 조치를 이끌어내는 동력이 됐다. 그 결과 2007년 12월 말 기준으로 613세대 2,015명이 호적에 등재돼 있었다. 이러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적 조치는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관할권 행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에 일조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현재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의 상징으로 최종덕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에 관한 학술적 논문이나 관련된 자료집이 없다. 저자는 최종덕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속출되는 가운데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를 상징하는 그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져야한다는 생각에서 본서를 기획, 저술하였다.

2. 저서의 구성과 내용

본서는 제1부와 제2부, 제3부로 나누어진다. 제1부는 제2부와 제3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최종덕 일가의 독도에서의 삶이 갖고 있는 의미」, 「최종덕 이전에 독도에 발을 디뎠던 사람들가의 비교」, 「최종덕의 가족 이력」, 「독도에서의 생활터전 확보를 위한 노력」, 「독도에서의 최종덕 일가와 제주해녀의 일상의 삶 흔적」, 「최종덕 가족의 독도이야기」를 통해 최종덕의 삶과 그의 거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였다. 제2부는 독도 영상 및 녹음 자료와 최종덕과 관련된 사람들에게서 녹취한 녹취록들이다. 제주해녀 고순자와 최경숙 대담, 해녀들과 최경숙이 녹취한 내용, 최경숙이 울릉도 주민에게 아버지의 흔적을 물어서 취재한 내용등이 수록되어 있다. 제3부는 최종덕에 관한 신문기사 (1981~ 1997년) 13건이 수록되었다.

1. 차례

제1부 영원한 독도인, 최종덕이 남긴 삶의 흔적

1. 머리말
2. 최종덕 일가의 독도에서의 삶이 갖고 있는 의미
3. 최종덕 이전에 독도에 발을 디뎠던 사람들과의 비교
4. 최종덕의 가족 이력
5. 독도에서의 생활터전 확보를 위한 노력
6. 독도에서의 최종덕 일가와 제주해녀의 일상의 삶 흔적
7. 최종덕 가족들의 독도이야기
8. 맺음말

제2부 독도 영상 및 녹음 자료

1. 최경숙의 최종덕에 대한 증언 자료

2.「영원한 독도인 최종덕」 영상자료
3. 독도둥이 '조한별' 탄생 KBS 보도
4. LIVE 화제집중 '나의 집은 독도'
5. 제주 해녀 고순자와 최경숙 대담
6. 해녀들(고순자,양경란)과 최경숙 등이 울릉도·독도 방문 때 울릉도에서 녹취한 내용
7. 최경숙이 울릉도 주민들에게 아버지의 흔적 및 독도 활동상을 물어서 영상 취재한 내용

제3부 최종덕에 관한 신문기사 모음

제1부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영원한 독도인, 최종덕이 독도에 남긴 삶의 흔적」1982년 4월 유엔해양법 협약이 채택되기 직전, 1981년 대한민국은 독도에 살고 있었던 최종덕의 독도 전입 허가로 주민등록법상 독도주민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므로 독도에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것을 1982년 4월 채택된 유엔해양법협약 121조 제3항의 "인간의 거주 또는 독자적 경제생활을 지탱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고 한 조항을 적용한다면 독도는 1982년 이전에 인간의 거주 또는 독자적 경제생활을 지탱할 수 있는 섬으로서의 자격요인을 가질 수 있다. 최종덕 가족의 거주는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이미 구비하는 것이 된다. 최종덕은 1981년 독도에 주민등록을 옮긴 후 제주해녀들에게도 주민등록을 옮기라고 종용하면서 독도에 사람이 살아야 한다는 일관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최종덕의 거주와 그의 노력으로 독도는 사람이 거주하는 유인섬이 되었다.

제3장「최종덕 이전에 독도에 발을 디뎠던 사람들과의 비교」에서는

최종덕은 1년 중 10개월을 독도에 머물러 그 이전에 거주한 사람들과 거주 양상이 확연히 달랐다. 조선시대 한국과 일본에서 독도에 온 사람들은 대개 봄에서 울릉도에 들어와 주로 울릉도에서 생활하면서 간간히 어

채 활동을 하다가 가을에 고향으로 돌아갔다. 일본의 경우 독도는 불법적으로 울릉도로 가는 도중에 잠시 들르는 정박장, 어채지에 불과하였다. 1904년 독도에서 강치잡이에 나선 일본어부들 역시 울릉도를 거점으로 하면서 약 10일 정도만 독도에서 강치잡이를 하였고 해방후 제주해녀들도 한 두달 정도 길어야 석 달정도만 머물렀다. 최종덕은 1년에 10개월간 독도에 머물렀다.

제4장 「최종덕의 가족 이력」에서는 최종덕의 출생과 독도에 입도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기술하였다. 최종덕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그는 1925년 5월 1일 울릉도 남면 사동 53번지에서 출생하였다고 기록되고 있었지만 자신은 평양에서 출생하여 1930년경 이주하였다고 한다. 그는 독도에 입도하기 전 오징어 장사와 약초 재배를 하였으며 울릉도에서 최초로 물레방앗간을 만들었고 배를 안전하게 뭍으로 끌어올려 보관하는 '동끼' 즉 도르래를 발명할 정도로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었다. 오징어잡이를 위해 개발한 수중 전기기술, 대형 그물망 개발도 모두 독도인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발명가적 기질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제5장 「독도에서의 생활 터전 확보를 위한 노력」에서는 최종덕이 독도에 입도한 배경에서 출발하고 있다. 최종덕의 딸 최경숙은 아버지의 입도 배경을 '일본이 주기적으로 독도 영유권 문제를 제기하고 망언을 일삼자 독도의 중요성을 인식해 사명감을 갖기 시작했다. 그 시절에는 동도에 순경이 근무하고 있었을 뿐이다'라는 증언을 하였으나 최종덕은 1959년부터 외삼촌 조흥수가 독도경비대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도에 드나들었다. 그는 독도의 해산물이 풍부해 1964년부터 독도에 살 결심을 하면서 독도어업채취권 획득을 위해 1964년부터 독도에 본격적으로 입도를 하였다. 다시 말하면 1964년 수산업협동조합법이 발효되면서 독도어장의 어업권이 독도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됨에 따라 최종덕은 이주를 하였고 5년 마다 도동어촌계에 어업세를 내었다. 따라서 최종덕의 독도 거주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불식시킬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독도에서 순

수한 어업 활동을 위해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먼저 그는 독도에서 거주하기 위해 거주지를 만들고 물골에 급수시설을 만들었다. 그러나 거주지가 물골과 정반대에 위치하게 되자 그는 998계단을 만들어 물골로 가는 길을 만들었고 물골에 파도가 쳐 바닷물이 들어가자 방파제를 건설하였다. 안정적 식수를 확보하기 위해 계단 공사와 방파제를 스스로 만들었고 이 공사에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대한민국은 독도영유권 공고화에 노력하였다.

제6장「독도에서의 최종덕 일가와 제주해녀의 일상의 삶 흔적」에서는 독도에서의 하루 일상이 최종덕의 딸인 최경숙씨의 증언에 의해 기술되었다. 해녀 고순자가 1973년~1991년까지 독도에서 조업한 내용, 그리고 최종덕이 문어잡이를 고용하여 문어를 대량으로 잡은 이유, 전복 양식 등 어민 최종덕이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기술되었다. 예를 들면 그는 평상시 눈이 오면 냉동실에 눈을 가득 담아 두었다가 해녀들이 잡아 온 문어, 해삼을 저장하였다가 날이 좋으면 삶아 가공하였다. 울릉도와의 거리가 멀리 때문에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었다. 최종덕은 독도주민만이 알 수 있는 독도의 자연적 환경에 해박한 지식 가지고 있어 독도경비대의 교류나 정부의 사업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동도의 선착장 공사, 동도의 계단공사, 경비대로 올라가는 삭도 공사도 최종덕이 큰 역할을 하였다.

제7장 최종덕 가족들의 독도 이야기에서는 최경숙이 18살 때부터 독도에 들어와 남년 조준기씨와 결혼을 하고 아들과 딸을 낳고 1994년 3월 강원도로 주소를 옮기기까지의 8년간의 생활을 사진과 함께 기록하고 있다. 최경숙 부부의 주민등록지가 독도의 주소인 '울릉읍 도동 산 67번지'로서 독도에 주민등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최경숙 부부의 딸 조한별은 최초의 독도둥이로 이들은 부모가 독도에 살고 독도에서 어린 시절 보냈기 때문에 독도 주민이다. 독도는 최종덕이 처음 거주함으로써 그의 딸 최경숙, 독도둥이 손자가 태어난 곳이다.

3. 본 책의 의의와 성과

본 저서는 10여년 이상 독도 연구에 매진해 온 저자가 독도의 주민 최종덕을 재조명하기 위해 저술한 책이다. 그는 '최종덕의 삶을 얼마만큼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가'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에서 최종덕과 13년간 독도에서 같이 생활한 딸 최경숙의 증언, 최종덕의 여동생, 최종덕과 함께 생활한 제주해녀들의 증언, 최종덕을 알고 있는 지인들, 신문과 영상자료 등 모든 자료를 모아 최종덕을 조명하려고 노력하였다.

이와 같이 저자가 최종덕의 삶을 기술하는데 있어서 많은 자료를 수집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한 이유는 최종덕과 함께 생활한 어민들이 지금도 일부가 독도에 거주하고 있어 최종덕의 삶을 어디까지 평가해야 하는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종덕의 독도에서의 삶이 한 개인의 삶이 아니라 대한민국 영토에 주민의 흔적을 남기는 실효적 지배의 상징을 나타내는 것임으로 더욱더 평가면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므로 저자는 최종덕과 관련된 사실에 의거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과장된 표현이나 추측적 기술은 하지 않았다. 저자가 쓴 내용은 100페이지에 불과했지만 목차에서 알 수 있듯이 최종덕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기술 방법으로 인해 최종덕의 거주는 이전에 독도에 드나들었던 어민들과 확연히 달랐고 독도에서의 생활은 독자적 판단에 의해 스스로 거주지를 마련하고 물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공사를 실시하는 등 독도의 영유권 공고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어민 최종덕의 독도 입도 과정과 독도에서의 생활만을 집중적으로 기술함에 따라 사람이 살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이 어떠한 과정을 걸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섬으로 변모되었는가가 알려졌다.

또한 기술 방법은 객관성을 중시한 역사적 방법에 따라 기술되었다. 독도에서 같이 살았던 딸 최경숙의 증언을 사실화하면서도 과감히 그녀의 증언 내용이 잘못되었음을 최종덕의 누이의 증언이나 해녀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재해석하였다. 저자가 거론했듯이 최종덕의 삶을 객관적으로 재조명하려면 최종덕과 함께 생활했던 제주해녀들의 증언, 최종덕을 기억하는 독도경비대의 증언, 현재 독도주민인 김성도의 증언등을 모은 책이 만들어져야 만이 객관성이 유지된다고 하였듯이 최종덕에 대한 평가에는 신중했고 최종덕의 삶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들을 열거하면서 어민으로서의 삶을 부각시켰다.

이러한 의미에서 『영원한 독도인 최종덕』은 국가가 어민의 거주를 인정하고 최종덕을 비롯한 어민들이 활동하는 곳임을 증명하는 학술적 가치가 큰 저서이다. 물이 없는 바위 섬 독도에 사람이 일상적 활동을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어민들은 독도마을을 만들고자 활동하면서 세금을 납부하였다. 본 저서에서는 이러한 독도 개척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러한 저자의 노력으로 국가에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주민의 모습이 드러났고 독도가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4. 마무리

영원히 독도에서 살기를 염원하던 최종덕은 1987년 세상을 떠났다. 최종덕이 거주지를 마련하고 샘이 솟는 물골까지 계단 공사를 하는 등 독도에 남긴 흔적은 많았지만 현재 독도에는 최종덕을 기리는 비석조차 없다. 독도경비대를 비롯한 지인들은 그가 서도에 살면서 독도를 개척하고 동도 경비대의 후원자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었지만 국가는 그가 살던 주거지, 그가 정비한 물골길들을 '안용복길'로 명명하였다. 또한 저자는 독도에 같이 산 딸이 2008년 아버지를 기리는 비석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누군가에 의해 훼손되었고 허가를 받지 못하자 바다에 던졌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국가가 최종덕의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고 개탄하였

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 권의 책『영원한 독도인 최종덕』의 발간은 독도가 한 어민에 의해 개발되는 과정을 알려주는 것이며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우리의 영토임을 각인시키는 소중한 연구서이다.

논문투고규정

Ⅰ. 투고 방법

1. 『독도연구』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희망하는 사람은 아래의 '원고 작성 방법'에 맞추어 작성된 원고 2부와 그 내용을 담은 디스켓과 소정의 게재신청서를 독도연구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이메일로 투고할 수도 있다.
2. 우송되거나 이메일로 투고한 원고는 뒤에 수령여부를 투고자가 확인해야 하며, 투고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3. 투고 논문은 다른 지면에 발표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투고 논문에는 다음의 사항이 첨부되어야 한다.
   1) 필자의 소속과 연락처
   2) 필자 이름의 한자 및 영문 표기
   3) 논문제목의 영문표기
   4) 한글과 영문으로 된 요약문
   (요약문에 관한 사항은 원고 작성 지침의 6항 참조)
5. 원고 분량은 논문의 경우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해제를 비롯한 그 밖의 경우는 원고의 성격에 따라 투고자가 편집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Ⅱ. 원고 작성 방법

1. 논문의 본문에서는 한문이나 외국어문 등은 원문의 제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원고는 한글워드프로세서('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본문

1) 문장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인명 · 지명 · 사건명 등 고유명사의 경우에는 처음 나올 때에만 한자와 병기한다.

2) 한자의 경우 괄호 없이 한글음에 이어서 쓴다(併記). 단, 한자의 의미를 한글로 풀어썼거나, 의미는 같되 음이 같지 않을 때는 해당 한자를 한글 뒤에 괄호로 묶는다.

→ 독도獨島,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울진蔚珍

→ '죽도(竹島) 이나바와 호키(因伯) 상하이(上海), 가와카미 (川上), "천이 명한 성을 따른다(率性)."

☞ 단, 다음에서는 한자를 그대로 노출시킨다.

① 본문에서 불가피하게 한문원전을 그대로 인용해야 할 경우.

② 본문의 괄호 속.

→ 이황李滉(號, 退溪)은 조선시대의 성리학자로서…

③ 각주 속.

④ 참고문헌란.

3) 문장 속에서 사용되는 부호는 다음과 같다.

① " " : 인용

② ' ' : 재인용 혹은 강조 어구

③ 『 』: 문헌이나 저서 이름

④ ≪ ≫ : 신문 이름

⑤「 」: 논문이나 작품 이름

⑥ · : 동일사항의 나열

→ 백두산 · 한라산 · 지리산

4) 외국어는 첫 번에 한하여 한글 옆에 부기한다. 단 중국 · 일본 인명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한자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5) 인용문의 경우, 외국어나 한문은 번역하여 인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인용문은 본문보다 두 칸 들여 쓰되(왼쪽 2, 오른쪽 0), 첫 문장 들여 쓰기는 하지 않는다(들여쓰기 0).

4. 각주

1) 단행본인 경우 동양서는 저자명(편찬주체), 역자명, 서명, 쪽수 순으로 표기하고, 서양서의 경우 순서는 같이 하되 서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沈興澤,『鬱島報告書』1쪽.

李能和, 김상억 옮김,『朝鮮女俗考』, 250쪽.

Judy Van Zile, Perspectives on Korean Dance, pp.125~133.

2) 논문의 경우에는 필자명, 제목명, 쪽수 순으로 표기하고, 서양어로 된 논문의 경우 순서는 같이 하되, 논문명은 " " 안에 넣어 표기한다.

→ 홍길동,「조선시대 서얼제도의 연구」, ×××쪽.

Edward J. Shultz, "The Early History of Andong: Central or Peripheral", p. 6.

3) 세부적인 서지사항은 참고문헌란에 일괄 표기하고, 각주에서는 이를 표기하지 않는다.

4) 신문·잡지인 경우에는 '문건(기사)명, 신문(잡지)명 발행연월일' 형식으로 표기한다.

→「미주한인사회를 합동하자는 의견」, ≪共立新報≫ 1907년 11월 29일자, 安自山,「三國時代의 文學」, ≪朝鮮日報≫1931년 4월 11일자.

5) 각주에서 같은 인용문헌이 연속되어 나올 경우, 동양서는 '저(편)자, 같은 책(같은 논문), 쪽수'의 방식으로 표기하고, 서양서는 '같은 책'에 해당하는 부분을 'Ibid'로 표기한다. 단, 인용문헌이 연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인용될 때마다 제목을 표기한다.

→ 홍길동, 같은 책, ×××쪽.

→ 홍길동, 같은 논문, ×××쪽.

→ Kant, Ibid, p. ×××.

5. 참고문헌

1) 논문 뒤에는 반드시 참고문헌란을 붙인다.

2) 참고문헌란에는 각주에서 인용된 참고문헌만 표기한다.

3) 참고문헌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저(편)자, 역자, 서명, 총서명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 저자, 역자, 논문명, 게재지 (간행처, 간행년도)

6. 요약문

1) 언어 : 한글과 영문으로 각각 작성하되, 주제 분야 3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문분류표 참조), 주제어 5개를 명기한다.

2) 분량 : 한글의 경우, 200자 원고지 2~3매로 하고, 영문은 이 한글 요약문의 분량에 준하여 작성한다.

7. 기타

1) 괄호가 따옴표나 낫쇠와 같은 문장부호와 쓰일 때는 괄호를 이들 부호 밖에 둔다.

→ '자연과 인간'(天人), 『말의 문화와 배의 문화』(馬の文化と船の文化)

2) 동양철학 개념으로 사용되는 '理'의 한글표기는 '리'로 한다.

『독도연구』 간행 및 심사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독도연구소에서 간행되는 『독도연구』의 간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제2조(간행시기) 본 학술지는 6월 30일, 12월 30일의 년 2회 간행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간행 목적에 맞는 학술지를 발행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1. 편집위원회는 국내외 독도 연구자로 근래 연구업적이 탁월하고 대외활동이 활발한 사람으로 선임한다.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의 총인원은 15명 내외로 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겸임한다.

제4조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방법)

1.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에 대하여 해당 논문과 관련된 전공 학자로 심사위원 3인을 선정 위촉하고 '게재' · '수정 후 게재' · '게재 불가' 등의 판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 집행한다.

2. 판정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심사 결과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수정 없이 게재한다.
   (2) 심사 결과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그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된 것을 확인하고 게재한다. 편집위원회는 수정한 논문에 대해 필요할 경우 재심을 의뢰할 수 있다.

(3) 심사 결과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한다.

(4)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이 '게재'· '수정 후 게재' · '게재 불가'로 나뉠 경우,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게재'의 의견을 따른다.

(5)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이 '수정 후 게재'2와 '게재 불가'1로 나뉠 경우,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게재'로 간주하고, '수정 후 게재'1과 '게재 불가'2로 나뉠 경우, 편집위원회는 '게재 불가'로 간주한다.

(6)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이 '게재'2와 '게재 불가'1로 나뉠 경우,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게재'로 간주하고, '게재'1과 '게재 불가'2로 나뉠 경우, 편집위원회는 '게재 불가'로 간주한다.

3. 그 외, 위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5조 (게재료)

1. 본 학술지의 게재료는 외부 인사(국내.외)의 경우 일백만원을 원칙으로 한다.
2. 본 연구소 연구원의 게재료는 제 5조의 1항에 준하여 지급하지만, 편집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제6조 (부칙)

1. 이 시행규칙은 2005년 9월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시행규칙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獨島硏究』 연구윤리 규정

2008년 2월 15일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지 『獨島硏究』의 논문게재와 관련한 투고자의 연구 윤리를 확립하고 준수하여 건전한 연구활동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연구자의 의무)

① 연구자는 학문의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책임있는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②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서 타인의 아이디어의 도출,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 과정 전반에 걸쳐 투명하고 정직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④ 연구자는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 게재하지 않아야한다.

⑤ 연구자는 타인의 저작물의 내용을 표절하거나 지적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⑥ 연구자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기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⑦ 연구자는 표절 또는 저작권의 침해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법한 방법으로 이를 연구소에 보고해야 한다.

⑧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

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제3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회장, 편집이사, 연구이사,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 개최)

① 연구윤리 위반이 고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해야 한다.

② 제소가 위원회에 접수되면 위원회는 제소 당사자와 협의 해당자에 통보하여 사실여부를 확인케 하고, 15일 이내에 그 답변과 상호 화해를 권장한다.

③ 제소자와 혐의 해당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한 달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한다.

④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고, 연구소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⑤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해야 한다.

제5조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

①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연구소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것을 종결하고,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보관한다.

②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은 학회지 게재를 불허한다. 개제 논문의 경우에는 학회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이 사실을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③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저자에게는 이후의 학회지 논문투고를 최소 3년 이상 금지한다.

제6조 (연구윤리 확약서) 투고자의 연구윤리 규정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윤리 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① 투고자는 학회지에 논문개제를 신청한 때 연구윤리 확약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한다.

제7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확정 시행한다.

편집위원장: 최재목(영남대)

편집위원: 박홍규(영남대) 배진수(동북아역사재단)
오상학(제주대) 정갑용(영산대)
김호동(영남대) 최장근(대구대)

편집간사: 김수희(영남대)

獨島硏究 제 13 호

2012년 12월 20일 인쇄
2012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이 효 수
편집인 최 재 목
발행처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712-749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TEL (053) 810-3686
FAX (053) 810-4704

인쇄처 도서출판 선인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324-1번지 1층
TEL : (02) 718-6252
FAX : (02) 718-6253